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조정아 · 이지순 · 이희영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연구책임자

조정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지순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희영 (대구대학교 교수)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KINU 연구총서 19-07

발행일	2019년 12월 30일
저자	조정아, 이지순, 이희영
발행인	임강택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북한연구실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인쇄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02-6948-9650)
I S B N	978-89-8479-973-8 93340
가격	11,000원

© 통일연구원, 201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례

요약	9
I. 서론	13
1. 연구 목적 및 내용	15
2. 이론적 관점과 연구 방법	17
II. 국가의 여성 (재)호명과 젠더담론	33
1. 김정은 시대 법적 장치의 연속과 변화	36
2.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호명	47
3. 모성의 사회적 확대	64
III. 북한 여성의 생애사: 계층과 세대의 변주	79
1. 평양 대학생과 상층계급의 전업주부들	81
2. 의대 지망생과 ‘교육 혁명가’를 꿈꾸던 전문직 여성	95
3. 공식직장에 다니는 노동여성들	114
4. 가족과 사회를 먹여 살리는 ‘부양가족’ 여성들	131
5. 새 세대 여성들	147

IV. 김정은 시대의 여성노동과 가족, 섹슈얼리티 ……	165
1. 여성들의 직장 노동과 젠더 위계 ……………	167
2. 시장 경험과 여성들의 자의식 변화 ……………	187
3. 사회주의 대가정의 약화와 가족의 재구성 ……………	203
4. ‘낭만적 사랑’과 세대 문화 ……………	226
V. 결론 ……………	247
참고문헌 ……………	261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69

표 차례

〈표 I -1〉 면접대상자 연령대 및 북한에서 결혼 여부 분포	27
〈표 I -2〉 면접대상자 출신지역 분포	27
〈표 I -3〉 면접대상자 인적사항	27
〈표 II -1〉 『조선말대사전(증보판)』(2017)의 ‘어머니’와 ‘아버지’ 정의 ..	64
〈표 II -2〉 북한 사전의 ‘아버지’ 정의	65
〈표 II -3〉 북한 사전의 ‘어머니’ 정의	67

그림 차례

〈그림 II-1〉 어머니날에 꽃다발과 선물을 받는 여성	50
〈그림 II-2〉 여성 전투비행사를 격려하는 김정은 위원장	56
〈그림 II-3〉 『조선녀성』에 수록된 4컷 만화 “꽃향기”	60
〈그림 II-4〉 『누구나 아름다와질수 있다』(2017) 표지와 목차 일부	62
〈그림 II-5〉 북한 여성의 옷차림과 머리단장 화보	63
〈그림 II-6〉 모성영웅이 등장하는 예술영화	73
〈그림 II-7〉 『조선녀성』에 수록된 4컷 만화 “한식술”, “친형제”	76
〈그림 IV-1〉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여성노동자들	181
〈그림 IV-2〉 시장에서 장사하는 북한 여성들	193
〈그림 IV-3〉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북한 여성	243

요 약

이 연구에서는 김정은 집권을 전후로 한 시기, 북한 여성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젠더정치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정책 및 담론 수준에서 작동하는 위로부터의 젠더정치를 고찰하고, 북한 여성들의 생애사례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 젠더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속에서 여성들의 실천은 젠더정치의 작동을 어떻게 매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젠더정치에 관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경제난 이전 시기 젠더체계의 골간을 이루었던 배급제를 대신 하여, 시장의 확대를 거치면서 남성=공식노동, 여성=비공식노동이라는 성별분업체계가 젠더체계로 등장하였다. 남성이 담당하는 공식노동 영역에만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주어지는 위계적 성별분업체계가 김정은 시대 젠더정치의 구조적 토대가 된다. 공식노동 영역 내에도 여전히 강고한 성별분업구조와 성차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젠더화된 이중 노동구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경제난과 시장화를 거치면서 경제공동체로 기능이 변화된 가족이 젠더화된 이중 노동구조를 떠받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별 가족은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환경 속에서 성별화된 역할분담에 기초해 가족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실용적인 전략'을 수행해온 주체이다. 가족 또는 여성들의 전략은 젠더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실천이기도 하다.

셋째, 가족 내의 젠더질서와 이를 유지하는 장치는 이전 시기와 연속성을 지니지만, 한편으로는 변화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모성담론과 재가족화를 강조하는 젠더담론이 전개되는 가운데, 결혼등록과 동거, 이혼 등 가족을 유지시키는 제도적 장치에 균열이 발

생하고 있다.

넷째, 젠더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낸 주역은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적 능력을 확보하고 제도/정책/관행을 넘나들며 다양한 실천을 하는 자의식과 자율성을 갖춘 여성들이다. 북한 여성들은 경쟁과 이윤, 물질적 행복과 욕망, 개성, 미래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 실재하며, 이러한 변화는 젊은 여성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상대와 ‘낭만적 연애’를 꿈꾸고, 결혼을 통해 남성의 반려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것보다는 독립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미래를 고민한다. 또한, 외모와 소비활동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며, 보수적인 성문화 속에서도 사회적 허용영역을 뛰어넘는 성적 실천을 하는 등 섹슈얼리티의 변화를 선도한다.

다섯째, 북한 젠더정치의 변화는 기존의 젠더질서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비가역적 변화’의 경로에 들어섰고, 그 변화의 동력은 북한 사회의 경제 위기 속에서 생존을 책임졌던 여성들의 고투이다.

주제어: 북한 여성, 젠더정치, 성별분업, 섹슈얼리티, 구술생애사

Abstract

Daily Lives of North Korean Women and Gender Politics

Cho, Jeong-ah et al.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of gender politics in daily lives of North Korean women before and after Kim Jong Un came into power. The study looks into the characteristics of gender politics in North Korea during the Kim Jong Un era and presents the findings as follows.

First, a gender division of labor—men in charge of formal labor and women informal labor—has emerged as a new gender system along with an expansion of the markets, replacing the distribution system that made up the backbone of the old gender system in an era of pre-economic crisis.

Second, the function of the family has shifted to an economic community after having gone through economic crisis and marketization. This changed family unit underpins a gender division of labor.

Third, the institutional mechanisms of family unit, such as marriage registration, and divorce are starting to weak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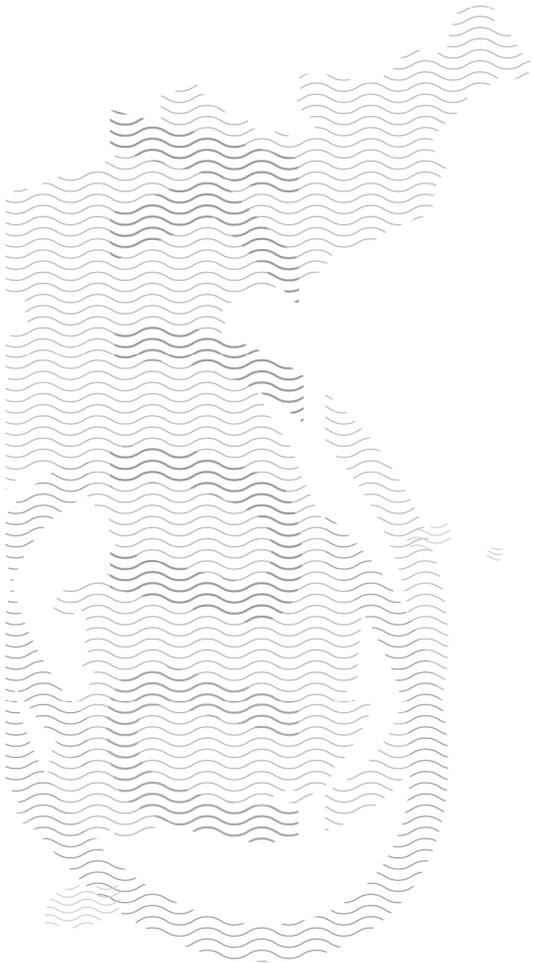
while the gender discourse with a focus on motherhood and re-familiarization has come to the surface since Kim Jong Un took power.

Fourth, it is women who have driven a change of gender politics: they have obtained economic power through economic activities, developed a sense of identity and autonomy, and practiced changing the status quo beyond institutions, policies, and practices. In particular, young women dream of being in a 'romantic relationship' with the person of their choice and contemplate their future as an independent being rather than being complete as someone's wife through marriage. There are variations but some instances suggest that women are leading the changes in sexuality: they are in control of every aspect of sexuality and seek their own style in their appearance, going beyond what is socially allowed in a conservative sex culture of North Korea.

Fifth, the changes in North Korean gender politics demonstrate that a crack is opening up in the existing gender order. Such a pattern has already entered a path of 'irreversible changes.' The driving force of such changes is the struggle of women who have been responsible for their own survival in the midst of economic crisis in North Korean society.

Keywords: North Korean women, gender politics, gender division of labor, sexuality, oral life history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내용

경제난과 시장화를 거치면서 북한 여성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고난의 행군’ 시기, 공장이 멈추고 배급이 중단되면서 국가와 가부장을 대신하여 온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게 된 것은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가정과 직장의 울타리를 넘어서 전국 각지로, 때로는 국경을 넘어가며 생존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이후 시장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가족과 사회의 생존과 유지를 위한 여성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다. 한편으로는 여성의 역할 변화를 반영하여 젠더관계와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부부관계 등 가족영역이나 시장활동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생산과 소비생활, 가치관, 이성관계와 섹슈얼리티 등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고, 전문직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장려하고,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의례를 강화하는 등 젠더 정책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의 생활세계와 의식의 변화에 대한 일종의 정책적 대응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성차별적 사회통념과 불평등한 젠더관계가 온존한다. 또한, 계층별, 지역별, 세대별로 북한 여성들의 일상생활과 젠더관계, 젠더의식이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김정은 집권을 전후로 한 시기, 북한 여성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젠더정치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우선,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젠더와 관련된 법·제도와 정책 및 담론 상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 여성들의 생애사를 통해, 여성들이 구조적 젠더체계 속에서 어떠한 실천을 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재 북한 사회와 여성들의 일상생활 속

에서 작동하는 젠더정치의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Ⅱ장에서는 김정은의 연설문담화·서한, 『로동신문』과 『조선여성』 같은 공식매체, 문화예술작품 등을 통해 김정은 집권 전후의 국가의 젠더정책과 담론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가족법, 여성권리보장법 등 김정은 시대 젠더정책의 법적 토대를 살펴보고, 여성관련 정책이나 담론이 이전 시대와 비교해 어떤 연속성과 변화를 보여주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여성을 호명하고 인정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의례와 문화행사에서 국가가 여성의 노고를 인정하고 치하하고, 여성들을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호명하며, 사회주의 문명국가 건설과 여성의 자기표현 욕구를 연결짓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또한, 경제난 이후 국가의 사회부양과 복지 의무가 모성의 사회적 확대를 통해 여성에게 부과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 특성을 잘 보여주는 생애사 사례를 살펴보았다. 여성들의 생애사례 중 최근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을 추출하여 재구성하였다. 여성들의 생애사례는 상류층, 지식인과 중산계층, 시장상인 여성, 공식 직장의 노동여성, ‘새 세대’ 청년여성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각각 주 사례와 보조 사례를 선정하고 이들의 생애를 서술하였다. 북한 여성들의 생애사례를 재구성하고 비교함에 있어 계층, 직업, 연령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면접대상자가 제한적인 가운데, 이들이 속해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맥락과 ‘교차성’¹⁾을 보다 잘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1) “사회적 범주로서의 젠더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결코 그것 하나만이 독자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젠더에 의해 규정된 성으로 살아가지만, 또한 계급, 인종, 국적, 연령, 지역, 정치적 성향 등 다양한 사회적 범주에 의해 만들어진 분절선 속에서 집단화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복합적으로 구성해 간다. 오늘날 대다수의 페미니즘 이론가들은 젠더/섹스를 반드시 교차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범주 혹은 과정으로 본다. 즉, 여성

IV장에서는 III장에서 살펴본 생애사례에서 드러나는 북한의 젠더 관련 논의의 주제를 추출하고 이에 관한 심화된 논의를 전개하였다. 논의의 주제는 크게 공식영역의 여성노동, 시장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영역의 여성노동, 가족제도 및 가족관계와 기혼여성의 섹슈얼리티, ‘새 세대’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세대문화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각각의 주제별로 가정, 직장 등 사회적 장에서 나타나는 젠더체계 및 여성들의 젠더적 실천의 특성과 그 상호작용으로서의 젠더정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II장은 이지순이 집필하였고, III장과 IV장은 조정아와 이희영이 공동집필하였음을 밝혀둔다.

2. 이론적 관점과 연구 방법

가. 이론적 관점과 주요 개념

(1) ‘여성주의적 관점’의 북한 여성 연구

북한 여성 관련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져왔다. 초기에 법, 제도, 정책 측면에 초점을 맞춘 북한 여성 연구의 주제는 1990년대를 지나면서 여성들의 생활상과 경제활동, 인권문제와 의식의 변화 등으로 그 주제와 문제의식이 확대되었다. 조영주에 의하면, 그간 북한 여성 연구의 주요 쟁점은 여성의 역할 변화, 사회 변화와

역압은 젠더나 섹스뿐 아니라 계급, 섹슈얼리티, 연령, 장애여부, 인종, 족류성(ethnicity), 민족/국적 등 다른 사회문화적인 ‘구성하는’ 범주들의 교차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교차성 분석은 젠더와 계급 뿐 아니라 여타의 사회적 범주들이 중첩적으로 작동하며 해당 여성 집단의 삶을 제약한다고 보면서, 그러한 중첩적 억압 구조를 교차적 현실 그 자체로서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배은경, “젠더 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여성학』, 제32권 1호 (2016), pp. 8~11.

여성 변화의 관계, 북한 가부장제의 성격 등이었다.²⁾ 2000년대 이후 북한 사회에서 시장화가 확대되면서 시장화와 젠더관계 및 북한 시장/노동영역의 젠더 특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³⁾ 2010년대 후반부에 들어서는 시장화와 외부 문화 유입 등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변화하는 여성들의 사적 영역, 특히 결혼과 섹슈얼리티에 관한 일련의 연구도 진행되었다.⁴⁾ 초기 북한 여성 연구가 북한 여성에 ‘대한’ 연구였다면 최근에는 ‘여성주의적 관점’을 지향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여성주의적 관점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여성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의 연구로, ‘여성’ 연구에서 ‘젠더’ 연구로 연구의 관점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여성주의 연구는 여성의 목소리와 여성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재구성하는 것이다.⁵⁾ 이는 여성의 삶으로부터 출발하며, 여성 또는 여성의 삶에 대한 남성중심적 설명에 도전하는 것이다. 여성주의적 관점의 연구는 지금까지 역사에서 무시되어 온 여성의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고, 여성의 행위성을 강조한다.⁶⁾ 본 연구는 북한 여성의 시선에서, 이들의 경험에 착목하

-
- 2) 조영주, “북한 여성의 실천과 젠더 레짐의 동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p. 3~6.
- 3)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조영주, “북한의 시장화와 젠더정치,”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2호 (2014); 이승윤·황은주·김유휘, “북한 공식·비공식 노동시장의 형성과 여성,” 『비판사회정책』, 제48호 (2015).
- 4)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영자, “선군시대 북한여성의 섹슈얼리티(Sexuality) 연구: 군사주의 국가권력의 성 정체성 구성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권금상, “북한 여성의 섹슈얼리티 연구: 국가권력과 여성주체 간의 동학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김민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여성의 이혼,”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김현아 “이동하는 북한 여성의 모성실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곽수진, “북한 여성의 출산 경험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안정은, “북한이탈여성의 건강권과 월경 경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서사가, “북한 여성 소비문화의 변화,”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5) 이재경, “여성주의 인식론과 구술사,” 이재경·윤택림·이나영, 『여성주의 역사쓰기: 구술사 연구방법』 (홍천: 아르케, 2012), p. 10.

여 최근 북한의 젠더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이다. 특히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하는지와 여성의 젠더 주체화 과정을 통해 북한 사회 변화의 징후를 읽어내고자 하였다.

(2) 젠더와 젠더정치

일반적으로 ‘젠더(gender)’는 생물학적 성 범주를 지칭하는 ‘섹스(sex)’와 달리 사회문화적 범주를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되어 왔다. 생물학적 성과 젠더의 구분은, 어떤 사실을 생물학적 또는 인식론적 본질이라고 규정하거나 암묵적으로 그것이 남성적 또는 여성적이라고 간주해버리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⁷⁾ 섹스 대 젠더라는 도식을 도입함으로써 젠더든 섹스든 그것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구성된 것인가 하는 물음을 던질 수 있는 문화적 역사적 틀이 마련된 것이다.⁸⁾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는 섹스/젠더의 구분 자체가 의문시되기 시작하였다. 섹스도 젠더도 실은 지식의 한 형태이며, 둘 다 ‘구성된 것’임을 인식하는 시각이 등장한 것이다.⁹⁾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생물학적 성에 따라 사회적, 문화적 성의 차이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젠더, 즉 사회 안에서 남성들과 여성들 간의 관계를 조직하려고 시도하는 사회적 규칙이 섹스에 대한 그리고 성차에 대한 지식을 생산한다.¹⁰⁾

6) 위의 글, p. 10.

7)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잉에 슈테판 편, 탁선미 외 역, 『젠더연구』(서울: 나남출판, 2002), p. 21.

8) 위의 책, p. 21.

9) 배은경, “사회 분석 범주로서의 ‘젠더’ 개념과 페미니스트 문화 연구: 개념사적 접근,” 『페미니즘 연구』, 제4권 1호 (2004), p. 65.

10) 조운 W. 스콧 저, 배은경 역, “젠더와 정치에 대한 몇 가지 성찰,” 『여성과 사회』, 제13호 (2001), p. 211.

페미니즘은 이제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 여성이 구성되는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젠더 개념은 ‘여성’ 혹은 ‘남성’을 구성해 내는 힘, 현실 속에 주체들과 의미들을 생산해내는 모종의 분류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¹¹⁾ 최근 젠더 개념과 관련하여 논의의 강조점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개의 분리된 부분에서 분리의 원리 자체로 이동하였다. 이제 ‘젠더’ 개념은 인간을 남녀로 분리하는 원리 자체에 주목하며, 위계와 권력관계에 대한 분석-차이들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¹²⁾ ‘젠더’ 개념을 이렇게 파악할 경우,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에 존재하는 차별화, 대립화, 위계질서들이 어떤 가치와 기능, 또 어떤 결과를 갖는가 하는 점이다.¹³⁾

이 연구에서는 젠더를 담론적, 역사적으로 생산된 효과로 보는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젠더 담론과 실태 분석을 통해 북한 사회의 공적, 사적 영역에서 젠더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북한에서 “성적인 차이 자체가 어떻게 사회를 조직하는 원칙이자 실천이 되는가?”라는¹⁴⁾ 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한편, 젠더는 역할과 규범을 근거로 결정론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행위되고 생산되는 그 무엇이다.¹⁵⁾ ‘젠더 수행’은 “젠더와 관계된 모든 행위를 사회적으로 형성할 때 작용하는 사회적 구조의 조건”인¹⁶⁾ ‘젠더체계’ 속에서 이루

11) 배은경, “사회 분석 범주로서의 ‘젠더’ 개념과 페미니스트 문화 연구: 개념사적 접근,” p. 56.

12) 위의 글, p. 71.

13)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잉에 슈테판 편, 탁선미 외 역, 『젠더연구』, p. 107.

14) 조운 W. 스콧 저, 배은경 역, “젠더와 정치에 대한 몇 가지 성찰,” p. 226.

15) 배은경, “사회 분석 범주로서의 ‘젠더’ 개념과 페미니스트 문화 연구: 개념사적 접근,” p. 88.

16) I. 슈테판, “젠더, 성, 이론,”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잉에 슈테판 공편, 탁선미 옮김,

어진다. 모든 행위자의 젠더 수행이 상호작용하면서 젠더체계에 영향을 미쳐 젠더체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젠더체계의 변화는 다시 변화된 젠더 수행을 만든다. 젠더체계는 개별 행위자의 젠더 수행을 규정하지만, 역으로 수많은 행위자들의 젠더 수행과 그들 간의 교섭에 의해 변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북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여성들의 주체적 젠더 수행이 어떤 양태로 나타나며, 이것이 구조적 젠더체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고찰하였다. 특히, 시장화와 외부 문화의 유입, 사회적 이동성의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노동 영역과 섹슈얼리티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젠더 수행의 양상과 특징을 이들의 생애경험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 사회의 구조적 젠더체계와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젠더 수행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젠더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전적인 의미로 젠더정치는 “주로 남녀의 구별 또는 차별과 관계된 문제나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일련의 정치활동”을 뜻한다.¹⁷⁾ 사전적 의미에 국한해서 보면, 젠더정치를 연구한다는 것은 “성을 정치적 실존의 주요 변수로 하여 인간의 본성, 권력, 리더십, 정치의식과 문화, 정치사회화, 의사결정과정, 정책, 정치체제, 이념, 국가의 발전, 국제관계 등의 정치적 개념들을 새롭게 정립해가는” 것을 의미한다.¹⁸⁾ 그러나 새로운 젠더 개념에 입각한 관점에서는 젠더정치를 여성과 남성들 간의 관계를 바꿔놓거나 혹은 영속화시키는 데 한정하는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성차가 구성되는 방식에 대한 질

『젠더 연구: 성평등을 위한 비판적 학문』(파주: 나남출판, 2002), 재인용: 배은경, “사회 분석 범주로서의 ‘젠더’ 개념과 페미니스트 문화 연구: 개념사적 접근,” p. 89.

17) 다음 사전, “젠더정치,”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797629&supid=kku010806973>> (검색일: 2019.9.10.).

18) 김미덕, “정치학과 젠더: 사회분석 범주로서 젠더에 대한 이해,” 『한국정치학회보』, 제45권 2호 (2011) p. 32.

문을¹⁹⁾ 핵심으로 젠더정치의 개념을 재설정한다. 이때 젠더정치 연구는 “일개인의 수준과 구조적 현상으로 드러나는 제반 정치, 사회 현상에서 중요하게 작동하는 젠더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²⁰⁾ 핵심이 된다. 즉, 이 연구에서 북한의 젠더정치를 분석하는 것은 북한 사회 내의 성차별²¹⁾ 둘러싼 국가의 기획뿐만 아니라 다양한 권력관계 속에서 젠더질서의 작동과 행위자들의 대응과 실천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나.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북한 젠더정치의 특징을 젠더/여성 정책 및 담론 차원과 북한 여성들의 실제 삶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북한 젠더/여성 정책과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김정은의 연설문·담화서한, 『로동신문』과 『조선여성』 등 공식 문헌자료를 활용하였다. 김정은의 연설문이나 담화는 법보다 우선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잣대가 된다. 예컨대 2016년 5월 제7차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이 여성 또는 여맹과 관련하여 언급한 말이나, 2016년 11월 제6차 여맹대회에 보낸 서한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여성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 단서들이다. 김정은의 ‘말’이 정책의 방향성을 지시한다면, 그 구체적인 실행을 뒷받침하고 담론으로 형성하는 것은 언론매체이다. 특히 『로동신문』 사설이나 기사들은 중요 국가 정책을 설명하고 촉진하며 담론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담론의 발신자는

19) 조운 W. 스콧 저, 배은경 역, “젠더와 정치에 대한 몇 가지 성찰,” p. 224.

20) 김미덕, “정치학과 젠더: 사회분석 범주로서 젠더에 대한 이해,” p. 46.

21) 여기서 성차는 여성과 남성, 양성간의 차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적정체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북한 현실에서 젠더정치는 남성과 여성 양성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의미가 제한된다.

『조선녀성』이다. 조선민주여성총동맹의 기관지 『조선녀성』은 『로동신문』과 어조와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만 국가가 입안한 각종 정책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선전하는 역할을 한다. 『조선녀성』은 실제로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라는 면에서 일상생활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조선문학』에 수록된 소설 등의 문학작품과 최근 제작된 예술영화를 대상으로 북한의 문학예술·선전매체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와 여성 관련 내러티브 재현 방식을 살펴보았다. 북한 문학예술 작품은 국가 정책 선전과 주민 교양의 목적을 지니는 동시에, 동시대의 감성과 경험을 반영하는 매체적 특성을 지니므로,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국가의 호명 방식과 실제 사회 속에서 재현된 모습 간의 미세한 균열 징후를 독해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삶 속에서 북한 여성들의 행위와 경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구술생애사 심층면접 등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 대상의 질적 측면에 주목하는 연구로, 연구대상이 갖고 있는 경험 세계와 가치관을 연구자가 당사자의 주관적 시각에서 이해하는 연구방법이다. ‘양’이 비교와 측정을 통해 인식되는 관계적 속성이라면 ‘질’은 비교하기 이전의 상태, 즉 개별적 사물의 고유한 속성을 의미한다.²²⁾ 이에, 질적 연구방법에서는 법칙설정적 접근보다는 개별기술적 접근을 지향한다. 질적 연구에서는 사회현상을 특정 상황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 산물로 본다.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해석학적 과정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진리에 대한 실증적 해석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통해 진리에 접근한다. 또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 일반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구체적

22) 조용환, 『질적 연구』(서울: 교육과학사, 2008), p. 15.

이고 개별적인 사례의 재구성을 통해 끌어올릴 수 있는 일상생활의 한 측면에 대한 상호주관적 설득력을 추구한다.²³⁾ 질적 연구에서 다루는 개별 사례는 그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사회에 관한 모종의 징후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지닌다.²⁴⁾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북한 체제를 설명하는 모형이나 거시담론, 실증적 통계로 환원될 수 없는 여성들의 경험과 의식에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 현실의 다양한 층위에서 작동하는 젠더정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보편적인’ 여성 실태나 ‘전형적인’ 젠더 특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다양한 여성들의 경험 속에서 젠더정치의 특성을 포착하고 변화의 징후를 찾아내며, 그 의미를 행위자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인 구술생애사 연구는 특정 집단과 사회를 표상하는 개인의 삶의 이야기와 생애사건을 통해 특정 사회의 ‘구체적 일반성’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²⁵⁾ 생애사는 개인의 직간접적인 체험에 대한 서술이라는 점에서 사적인 동시에, 개인의 생애사가 개인이 처한 사회역사적인 행위 공간에서 타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에서 공적인 성격을 띤다.²⁶⁾ 개인에게 주어진 사회적 규범과 질서는 그 자체로 개

23) 이희영, “북한 일상생활 연구자료의 생성과 해석,” 박순성·홍민 엮음, 『북한의 일상 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 (파주: 한울, 2010), p. 246.

24)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 9.

25) 인간의 구체적인 생애에 기초한 연구 방법에 대한 여러 학문 분야의 관심은 “전기적인 선회 (biographical turn)”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 선회는 실증주의(positivism), 결정주의(determinism),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 등 지배적인 사회과학 담론이 사람들의 실제 삶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P. Chamberlayne, J. Bornat and T. Wengraf, *The Turn to Biographical Methods in Social Science* (New York: Routledge, 2000).

26)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제39집 3호 (2005), p. 124.

인사를 규정하거나 개인사 속에서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생애사적 작업을 거쳐 특정한 방식으로 형상화된다.²⁷⁾ 따라서 특정한 사회의 개인과 해당 사회적 질서가 만들어낸 창발적 구성물인 생애사는 개인과 사회 혹은 내부와 외부를 통합하는 매개물이며, 생의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변화하는 사회적 경험, 역할, 지위, 신분 등은 개인화의 표현이자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사회화의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이다.²⁸⁾

또한, 구술생애사 방법론은 구술자를 인식의 주체적 위치에 두고, 그의 주관적 경험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여성주의 인식론과 만난다. 여성주의 연구는 지식 생산 과정에서 여성들을 불러온다. 무시되고 검열되고 억압되어온 여성의 경험을 찾고,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보이게 하고, 이들의 삶을 보이지 않게 해온 이념적 기제들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²⁹⁾ 여성들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구술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해석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이는 곧 젠더 주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태어나 생활하다가 최근에 탈북한 여성 22명을 대상으로 2019년 4월부터 8월에 걸쳐 생애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고, 2016년과 2017년에 면접을 실시하였던 여성 1명의 사례를 포함하여, 총 23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젠더연구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연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나, 이 연구에서는 연구 규모와 기간의 한계상 여성만을 면접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추후 북한 남성으로 면접대상을 확대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

27) 위의 글, p. 129.

28) 위의 글, p. 130.

29) 이재경, “여성주의 인식론과 구술사,” 이재경·윤택림·이나영, 『여성주의 역사쓰기: 구술사 연구방법』, p. 14.

계/갈게 작동하는 젠더정치에 대하여 탐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층, 거주지역(대도시/농촌/접경지역), 직업별 편차를 고려하여 다양한 집단이 포함되도록 면접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탈북민이라는 면접대상자의 특성상 모집단인 북한 주민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면접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어려웠다. 면접대상자가 북한 여성을 ‘표준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를 북한 여성의 평균적인 일상에 관한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개개인의 삶이 처한 다양한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의 변화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연령층인 20~30대의 여성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시장화와 김정은 집권 이후의 변화와 세대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정아 외(2013)는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 사이에 출생한 연령집단을 북한의 ‘새로운 세대’라고 명명한 바 있다.³⁰⁾ 이들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무렵에 태어나 경제난 상황 속에서 유아기를 보내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연령집단과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나 중등학교 학령기 때 고난의 행군을 맞은 연령집단을 포괄한다. 이 연구에서는 30대 중반 연령대 이하의 젊은 여성들을 주된 면접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삶의 모습을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부모나 언니 세대의 삶의 모습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면접대상자의 연령별, 지역별 분포는 다음 <표 I-1>, <표 I-2>와 같으며, 각 면접대상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다음 <표 I-3>과 같다.

30) 조정아·조영주·조은희·최은영·홍민,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 경험과 특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3).

〈표 1-1〉 면접대상자 연령대 및 북한에서 결혼 여부 분포

	20대	30대	40대
북한에서 미혼	8	5	0
북한에서 결혼	1	7	2
합계	9	12	2

〈표 1-2〉 면접대상자 출신지역 분포

평양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남도	양강도	자강도	합계
4	6	2	1	9	1	23

〈표 1-3〉 면접대상자 인적사항

사례 번호	성별	거주지역	연령대	북한에서 결혼여부	탈북 연도	북한직업	면접일시
사례 1	여성	평양시	20대 후반	X	2015	대학생	2017.4.27. 2019.4.12. 2019.4.17.
사례 2	여성	함남 군지역	30대 초반	X	2016	가내수공업/ 서비스직	2017.7.7. 2019.4.15.
사례 3	여성	양강도 시지역	20대 후반	O	2017	장사	2019.5.5.
사례 4	여성	함북 군지역	20대 중반	X	2016	노동자	2016.8.6. 2019.5.7.
사례 5	여성	함북 군지역	20대 중반	X	2018	노동자/장사	2019.5.9.
사례 6	여성	양강도 시지역	30대 후반	O	2018	장사	2019.5.9.
사례 7	여성	자강도 군지역	30대 중반	O	2017	장사	2019.5.10.
사례 8	여성	함북 군지역	30대 초반	O	2018	장사	2019.5.10.
사례 9	여성	함북 시지역	20대 초반	X	2018	간호사/장사	2019.5.11. 2019.8.2.
사례 10	여성	양강도 시지역	30대 중반	O	2018	장사	2019.5.14.
사례 11	여성	양강도 시지역	30대 초반	X	2006	무직	2019.5.18.

사례 번호	성별	거주지역	연령대	북한에서 결혼여부	탈북 연도	북한직업	면접일시
사례 12	여성	평남 시지역	20대 중반	X	2017	장사	2019.5.21.
사례 13	여성	함남 군지역	20대 초반	X	2018	학생/장사	2019.5.31.
사례 14	여성	평양시	40대 초반	O	2015	전업주부	2017.10.13. 2019.6.7.
사례 15	여성	양강도 군지역	30대 후반	O	2016	장사	2019.7.21.
사례 16	여성	함북 시지역	30대 초반	O	2018	전업주부	2019.7.24.
사례 17	여성	양강도 시지역	30대 후반	O	2018	전업주부	2019.7.25.
사례 18	여성	양강도 시지역	30대 초반	X	2017	노동자/장사	2019.7.30.
사례 19	여성	양강도 시지역	30대 초반	X	2014	노동자	2019.8.7.
사례 20	여성	함북 시지역	30대 중반	X	2017	노동자	2019.8.13.
사례 21	여성	양강도 군지역	40대 초반	O	2015	교사	2019.8.16.
사례 22	여성	평양시	20대 후반	X	2017	노동자/장사	2019.8.22.
사례 23	여성	평양시	20대 중반	X	2015	노동자	2016.7.9. 2017.10.13.

심층면접 대상자는 지역의 탈북민 지원 기관에 부탁하여 소개받거나 연구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탈북민들에게 소개받았다. 연구자가 이전 연구과정에서 면접을 한 적이 있었던 탈북여성 중 적절한 대상자라고 판단되는 여성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다시 만나기도 하였고, 연구 초기에 면접을 진행한 면접대상자가 자신이 아는 여성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소개자들을 통해 면접 희망 의사를 밝힌 면접대상자들에게 연구자가 전화로 연락하여 연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조사 참가의사를 타진하였다. 면접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통일

연구원의 생명윤리심의 절차를 거쳤고, 면접 조사 시 생명윤리심의 규정에 따라 면접대상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생애사적 인터뷰와 반구조화된 심층면접의 방식으로 면접대상자의 자택이나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2~3시간 정도씩 진행하였다. 면접대상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묻는 초기질문을 던진 후, 면접대상자의 이야기 내용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추가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대상자의 여성으로서의 삶과 성장과정, 가족관계, 다양한 장에서의 양성관계, 섹슈얼리티 등을 중심으로 추가질문을 하였다. 추가질문은 각 면접대상자의 생애경험과 면접대상자와 연구자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공통적인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북한에서 태어나 남한에 오셔서 현재까지 살아오신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 어린 시절에 관해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부모 형제 등 가족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소학교, 중학교(초급중학교/고급중학교) 등 학교생활 중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대학교 생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학교 졸업 이후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 어떻게 결혼하게 되셨는지, 이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직장 생활 중 남성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시장 활동/부업을 하게 된 과정과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 연애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가정에서 가사노동과 양육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생활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탈북 계기와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중국/제3국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 남한에 입국한 후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 남한의 남녀 관계, 부부생활에 대해 인상적인 것을 말씀해주세요.
-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행복했던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앞으로 어떤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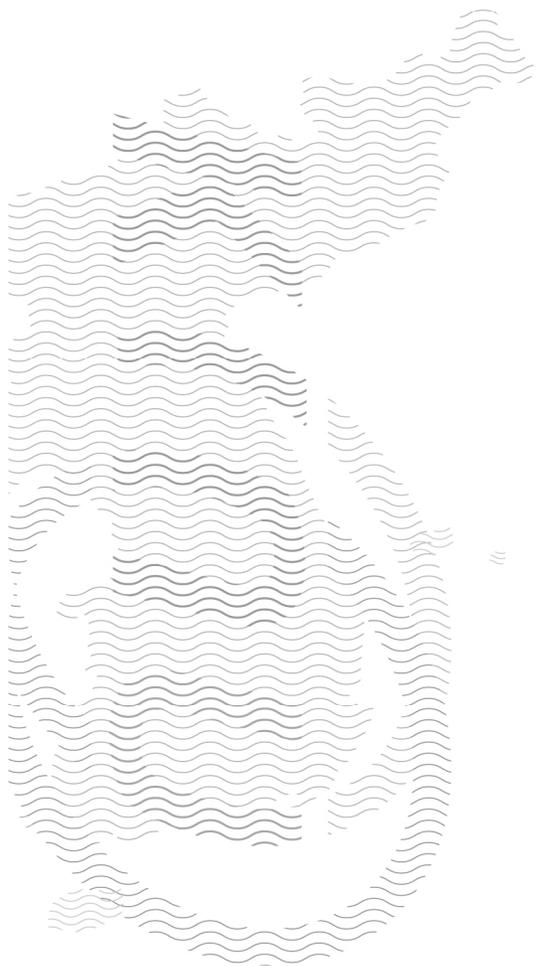
면접 내용은 면접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에 녹음하였으며, 이를 전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질적 자료 분석은 생애사 사례 분석과 주제별 코딩에 의한 내용 분석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였다. 녹취록을 여러 번 읽으면서 면접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연령대, 생애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 생애사 사례 비교분석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후 생애사 연구방법에 따라 개별 사례의 ‘이야기된 생애사’와 ‘체험된 생애사’를 재구성하였다.³¹⁾ 이 글에서는 ‘체험된 생애사’를 중심으로 사례를 소개하였다.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일상

31) “‘이야기된 생애사’ 텍스트는 생애사적으로 구성된 총체적 관점에 부응하면서 서사적 순차성에 따라 조직되는 구조를 갖는다. 연구자의 관심주제에 따라서가 아니라 구술자가 이야기한 텍스트 구조에 따라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체험된 생애사’의 재구성은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구술자의 전체적인 생애사적 사실과 정보, 그리고 이야기된 생애사를 기초로 진행된다. 여기서는 특정한 과거 사건을 구술자가 어떻게 체험하였는지를 재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과거 사실에 대한 사실성에 기초하여 구술자의 주관적인 체험의 내용을 재구성한다.”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pp. 139~140.

생활 영역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젠더정치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녹취록을 읽으면서 주요 내용을 범주화하고 주제별 코딩을 실시하였다. 코딩 내용의 비교분석을 통해 연구 주제와 관련된 중심 주제들을 도출하고 중심 주제와 주제별 해석을 정교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연구진 간에 자료 수집 및 사례 분석 과정을 공유하였다. 면접대상자의 구술 내용 중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북한 관련 연구물과 사회 동향 관련 자료, 북한 문헌 등을 참조하여 교차확인하였다.

II. 국가의 여성 (재)호명과 젠더담론



이 장에서는 김정은 시대 여성정책의 기저를 형성하는 법체계와 젠더/여성 담론을 분석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사회 기제였던 배급제는 젠더정치의 핵심 기제이기도 하였다. 북한은 모든 국가 공급과 배급을 세대 단위로 시행하였다. 가족 구성원들은 세대주의 직장에서 배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했는데, 세대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남성이었다. 가구주의 의미는 배급을 통해 가족의 생존을 책임진다는 것이었다. 세대주 중심의 정치적 지위에 따른 배급은 가정에서 남성의 지배와 통제를 정당화하는 물질 토대가 되었고, ‘동등한 공민’인 여성과 남성을 위계화하였다.³²⁾

1990년대 경제난으로 배급제가 붕괴되기 시작되면서, 젠더정치의 핵심 기제인 배급제가 붕괴되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남성 세대주가 공식직장에서 받는 배급 대신 여성이 비공식영역인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젠더정치의 핵심 기제인 배급제는 와해되었지만, 남성은 공식노동, 여성은 비공식노동이라는 성역할 분담 체계가 형성되었다. 김정은 시대의 젠더정치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개되었다.

이 장에서는 김정은 시대 젠더정치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의 여성 관련 국가정책과 담론의 변화와 지속성을 살펴본다. 젠더정책의 기저를 형성하는 법체계로서 가족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을 살펴본다. 「가족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은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젠더정책의 특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법령들이다. 젠더정책의 골간을 형성하는 이 법령들은 김정일 시대에 제정 또는 개정되었으며, 김정은 시대에도 동일하게 지속되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여성 관련 담론의 변화를 분석한다.

32) 조영주, “북한의 ‘인민만들기’와 젠더정치: 배급과 ‘성분-당원’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9권 2호 (2013), pp. 123~124.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호명 방식의 변화와 사회주의 대 가정론을 바탕으로 한 모성의 사회적 돌봄 기능 확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1. 김정은 시대 법적 장치의 연속과 변화

가. 가족법과 젠더정치의 연속성

김정은 시대의 여성 정책은 법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적인 예로, 2015년에 「사회주의로동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산전 60일 산후 90일’에서 ‘산전 60일 산후 180일’로 대폭 연장하였다. 이와 같은 모성보호정책은 여성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여 출산율을 높이려는 맥락과 관련되어 있다. 김정은 시대 여성 관련 법령과 정책은 대부분 김정일 시대의 법령과 정책을 계승한 것들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성을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로 건설하는 정책은 정권 수립 초기에 제정된 「북조선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1946)과³³⁾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1946) 등에 기초하여 현실화되었다. 노동법령의 여성관련 조항은 여성을 생산영역으로 인입하기 위한 경제적·제도적 기초 마련과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모성보호정책과 관련된 것이었다.³⁴⁾ 국가는 여

33) 1946년 6월 24일 공포된 「북조선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에서 여성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7조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 제14조 해산 전후 각각 35일과 42일 휴가 제정, 제15조 임신한 여성노동자 보호와 임금 규정, 제16조 여성노동자의 1일 2회 30분 수유시간 보장, 제17조 태모나 유모의 업과 야근 금지, 제18조 임신 및 해산으로 인한 휴가시 보조금 지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북조선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NK조선』, 2013.10.01., <http://nk.chosun.com/bbs/list.html?table=bbs_12&idno=501&page=3&total=185&sc_area=&sc_word=> (검색일 2019.10.29.).

34) 박영자, “북한의 남녀평등 정책의 형성과 굴절(1945~70): 북한여성의 정치사회적 지

성 근로자가 사회적 노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원, 편의시설을 만들고,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여성이 희망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가내작업반 등을 조직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였다.³⁵⁾ 이 법령들은 시대에 따라 세부 조항의 조율을 거치며 여성 관련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 왔다. 김정일 집권 시기에 제정된 「가족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은 현재에도 여성의 사회적 평등권을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는 제도로 유지되고 있다.

사회주의 가족 원리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가족법」은 1990년에 제정되어 1993년, 2004년, 2007년, 2009년, 총 네 차례에 걸쳐 개정되며 현재에 이르렀다. 「가족법」은 결혼과 재산, 상속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가족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³⁶⁾ 동시에 자녀양육과 교양을 여성이 전담하도록 규정하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법」은 1980년대 말 북한 경제가 지체된 것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다. 고난의 행군기가 시작되었을 때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시장에 나왔으나, 이는 비공식 경제활동으로,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경제난 시기에 기본적인 주민 통제기제인 배급제가 붕괴되었으며, 국가의 사회부양과 복지 체계도 흔들렸다. 「가족법」은 이러한 시기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세포단위인 가정이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원리로 작동하도록 뒷받침하였다.

「가족법」의 기본 사명은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가족법」 제1조

위 변화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43집 2호 (2004), pp. 300~301.

35) 「사회주의로동법」(채택 1978.4.18. 법령 제2호, 2015.6.30., 정령 제566호 수정), 제3장 제31조, <<http://www.unilaw.go.kr/bbs/selectBoardArticle.do>> (검색일: 2019.10.29.).

36) 「가족법」(채택 1990.10.24. 제5호, 2009.12.15., 제520호 수정보충), <<http://www.unilaw.go.kr/bbs/selectBoardArticle.do>> (검색일: 2019.8.3.). 이하에서 「가족법」 법령 조항 인용시 출처는 이와 동일하므로 별도의 각주 표시는 생략하였음.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하는데 이바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족법」은 개인의 사적인 결혼관계와 가족관계에 ‘국민’의 관점을 투사한다. 그렇기에 제1조의 ‘사회주의 대가정’ 규준은 남성과 여성이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 가정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관계의 규율”을³⁷⁾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법」은 가정을 사회의 기층생활단위로 규정하고, 국가는 가정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제2조). 가족정책의 방향을 봉건적인 구습을 청산하는 것으로 설정했던 정권 초기와 비교해 볼 때, 이는 가부장적 구조를 법적으로 견고히 하는 측면이 강하다. 「가족법」 제정을 통해 실생활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용인되었던 요소가 법제화되었다. 북한은 정권 초기에 단행한 호주제 폐지를 통해 부계로 이어지는 가족 형태를 부정했다. 그러나 「가족법」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부성주의 원칙을 명문화하고(제26조), 금혼범위(제10조)와 부양의무(제35~37조)를³⁸⁾ 폭넓게 규정하여 가부장질서를 제도화하였다. 특히 후견제도를 통해 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웠음에도(제4조), 부양능력이 없는 형제자매, 조부모 등의 봉양을 가족이 담당하도록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등 사회복지와 사회부양의 의무를 개별 가족에게

37) 김영규, “북한 가족법상 공민의 지위와 그 변용,” 『법학논고』, 제51집 (2015), p. 78.

38) 「가족법」에서 제1차적 부양의무로 부부와 친자간의 부양을 인정하고 있고, 제2차적 부양에 대해서는 조부모와 손자녀간(35조), 형제자매간(36조), 미성인·노동능력이 없는 자의 부양(37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7조는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성원이 없을 경우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형제자매 등 병렬적인 부양의무자 구조를 만들어 부양의무의 순위에 차등을 두었다. 국가의 사회부양보다 개인의 부양의무가 우선한다. 「가족법」(채택 1990.10.24. 제5호, 2009.12.15., 수정), 제35조, 제36조, 제37조, <<http://www.unilaw.go.kr/bbs/selectBoardArticle.do>> (검색일: 2019.8.3.).

부과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담당해 왔던 사회적 기능을 가족의 역할로 규정한 것이다.

「가족법」은 가족관계에 대한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불평등을 제도화한 측면도 간과하기 어렵다.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배반하거나 혹은 그 밖의 사유로 결혼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이혼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제21조), 재판을 통해서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여(제20조) 오히려 제도적으로 이혼을 제한하고 있다.

북한이 정권 초기부터 강조했던 정책 중 하나는 ‘미성년자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배려’이다. 「가족법」 제6조 ‘어린이와 어머니의 보호원칙’에서 국가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녀 교양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이지만(제27조), 자녀 교양과 양육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역할과 책임임을 강조한 것이다. 「남녀평등법」이 성문화되어 있고 가정생활에서 아내와 남편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가족법」의 평등 조항(제18조)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는 양육의 전담자로 여성을 호명하는 것과 같이 성별위계가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다.

한편, 「가족법」은 개인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상속을 인정하는 변화를 담고 있다(제39조, 제46~53조). 이는 그동안 경제난 이후 여성이 시장을 비롯한 비공식 경제 영역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전개하면서 가계 소득 창출과 재산 형성의 주체가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경제력을 갖춘 여성의 개인재산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족법」은 가부장적 젠더정치를 유지하는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가족법」은 가정의 성립과 해체를 국가가 규제하고 강화하는 제도로서,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가정의 유지를 우선하며, 여성의

모성 역할을 법적으로 강화한다. 「가족법」은 전통적인 가정 내 성별 위계를 제도화하고 유지하는 장치이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의 경제력을 개인재산의 인정으로 명문화하고, 상속권을 인정하는 변화도 담고 있다.

나. 여성 권익의 법적 보장

「가족법」이 규정하는 사회주의 가족 원리가 현재까지 계승되는 요소라면, 2000년대 이후 젠더정치와 관련된 법적 변화의 지점은 여성의 평등권과 권익을 구체화한 법률 제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10년에 제정된 「여성권리보장법」은 여성이 수행해야 할 의무보다 여성에게 보장해야 할 권리에 초점을 맞춘 법이다. 「여성권리보장법」은 “북한법상 최초로 여성 권익과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종합하고 체계화한 단일 법률”이라는³⁹⁾ 의미가 있다. 이 법은 김정일 집권 말기에 제정된 것으로, 김정은 시대에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는 대외적 환경의 변화도 고려할 수 있지만,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와 일상에서 제기되는 있는 여성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이 법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식량난 이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시장에 나섰던 여성들은 점차 자립적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는데, 「여성권리보장법」은 이러한 현실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성들의 요구사항, 즉 여성의 재산권, 상속권에 대한 인정과 가정폭력 금지 등을 법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⁴⁰⁾

39) 황의정·최대석, “북한의 여성관련 법제정을 통해 본 여성의 법적 지위의 변화 전망,”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2호 (2015), p. 11.

40) 「여성권리보장법」(채택 2010.12.22, 정령 제1309호, 2015.6.30., 정령 제566호 수정), <<http://www.unilaw.go.kr/bbs/selectBoardArticle.do>> (검색일: 2019.8.3.), 이하에서 법령 조항 인용시 출처는 이와 동일하므로 별도의 각주 표시는 생략하였음.

북한은 1998년에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시작으로 각종 법을 손질했다. 1999년에는 「어린이보양교육법」, 「사회주의로동법」 개정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로동보호법」을 새로 제정했다. 대외적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북한은 2001년 2월 27일에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비준한 후, 이 협약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한 여성의 사회참여 권리, 남녀불평등에 따른 차별이나 폭력 금지를 “일정부분 국내법적으로 수렴”하여⁴¹⁾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했다.⁴²⁾

2010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09호로 채택, 발표한 「여성권리보장법」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여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권리보장법」은 총 7장 5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⁴³⁾ 특히 제10조 ‘범의 규제범위와 적용’은 이 법과 북한이 가입한 국제협약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법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재산권이나 결혼·가정 관련 부분이다. 이 연구

-
- 41) 황의정·최대석, “북한의 여성관련 법제정을 통해 본 여성의 법적 지위의 변화 전망,” p. 9.
- 42) 2016년에 북한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협약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북한은 이 보고서에서 1946년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을 제정한 이래 법제도적으로나 실제에 있어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UN Doc. CEDAW/C/PRK/2-4(2016), 재인용: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8』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 280.) 2019년 5월에는 제3차 보편적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UPR)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김수경, “북한에 대한 제3차 보편적정례검토(UPR) 평가와 북한인권 증진 방향,”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9-09, 2019.5.22.), p. 3, <<http://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90ac7c05-537c-4132-8804-e1c34abce810>> (검색일: 2019. 5. 28.).
- 43) 「여성권리보장법」은 제1장 ‘여성권리보장법의 기본’, 제2장 ‘사회정치적 권리’, 제3장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 제4장 ‘로동의 권리’, 제5장 ‘인신 및 재산적 권리’, 제6장 ‘결혼, 가정의 권리’, 제7장 ‘여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권리보장법」(채택 2010.12. 22, 정령 제1309호, 2015. 6. 30., 정령 제566호 수정), <<http://www.unilaw.go.kr/bbs/selectBoardArticle.do>> (검색일: 2019. 8. 3.).

에서 최근 탈북한 북한 여성들을 통해 이러한 법 조항들이 실생활에서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여성권리보장법」 제5장 ‘인신 및 재산적 권리’, 제6장 ‘결혼, 가정의 권리’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재산권과 결혼, 가정 관련 권리의 법적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1) 여성의 재산권, 상속권

제5장 인신 및 재산적 권리 조항은 「사회주의헌법」의 인신불가침 권을 상세히 열거하면서 이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제42조와 제43조는 민법의 가정재산에 대한 공동소유권과 상속법의 상속 순위를 「여성권리보장법」에 맞게 규정한 부분이다. 제42조는 부부에게 가정재산의 공동소유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성은 자신의 수입에 상관없이 가정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혼할 경우 여성이 자신의 개별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여성이 경제활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43조는 상속법에 따라 여성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고, 상속법이 정해놓은 상속순위에서 여성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다.

제42조 (가정에서 여성의 재산권)

결혼한 여성은 가정재산의 소유권을 남편과 공동으로 가진다.
여성은 수입에 관계없이 남편과 평등하게 가정재산을 점유, 리용, 처분할수 있다.
여성은 남편과 리혼할 경우 자기의 개별재산권을 주장할수 있다.

제43조 (재산상속에서의 남녀평등)

녀성은 남성과 평등한 재산상속권을 가진다.
상속순위가 같은 경우 성별을 리유로 녀성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2) 결혼자유권과 이혼의 권리

제6장 ‘결혼, 가정의 권리’(제44조~제51조)는 한편으로는 여성 문제와 관련한 현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기구가 북한에 요구한 여성 인권 증진의 조항들을 포괄하고 있다. 제44조와 제45조는 「사회주의헌법」과 「가족법」이 보장하는 평등한 결혼의 권리와 자유를 재확인하고 있다. 국가가 가정을 보호하는 것은 결혼과 가족의 구성이 남성과 여성이 만난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국가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44조 (결혼, 가정에서 여성권리보장의 기본요구)

녀성은 남성과 평등한 결혼 및 가정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45조 (녀성의 결혼자유권)

녀성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녀성의 결혼자유권을 침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7조와 제48조는 이혼에 대한 규정이다. 제47조에서 남성은 아내가 임신 중이거나 해산 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이혼을 제기할 수 없으나, 여성은 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48조는 이혼할 때 가정 재산분할문제가 협의되지 않을 경우, 여성과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는 원칙에서 재판소가 해결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아동권리보장법」(2010년 제정, 2014년 개정)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아동권리보장법」 제54조 ‘리혼을 막기 위한 교양’은 이혼이 아동을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을 가진 부부가 이혼을 제기할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와 재판소는 아동의 이익을 위하여 부부가 갈라서지 않도록 교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여성이 이혼을 제기할 경우 사회단체와 기관이 ‘교양’을 통해 이혼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체계인 것이다.

제48조 (리혼시의 재산분할)

부부가 리혼하는 경우 가정재산분할문제는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재판소가 쌍방의 구체적실정에 근거하고 자녀와 여자측의 이익을 보호하는 원칙에서 해결한다.
국가소유의 살림집리용권과 관련한 분쟁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해결한다.

(3) 가정폭력 금지

제46조는 가정폭력 관련 조항으로, 가정 내에서 여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폭행’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항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했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법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제46조 (가정폭행의 금지)

가정에서는 여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폭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정폭행을 막기 위한 주민들과 종업원 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 관할지역 또는 자기 소속 공민들의 가정에서 가정폭행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 금지는 부부간의 대등한 관계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의 젠더담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전업주부들을 독자층으로 하는 조선민주여성총동맹의 기관지 『조선녀성』

에서는 가정폭력을 보는 약간은 다른 시선을 보여준다. 2012년 『조선여성』에 실린 한 기사에서는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남편의 울적한 기분을 명랑하게 전환시켜주고 격동적인 상태의 팽팽한 기분도 느슨하게 늦추어주는데 안해의 매력이 있다”고⁴⁴⁾ 쓰고 있다. ‘격동적인 상태의 팽팽한 기분’은 자칫하면 충돌이나 폭력이 벌어질 수도 있는 긴장 상태인데, 이를 ‘명랑하게’ 전환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아내의 역할로 묘사된다. 부부에게 갈등이 생겼을 때 아내가 노력해서 냉랭한 분위기를 풀어야 하고, 세대주인 남편을 “받들어주어야”⁴⁵⁾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돌이나 폭력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남편의 기분을 달래주지 못한 여성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기사는 다음과 같이 언어폭력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인간관계에서 접촉의 시발점은 부름말이며 인격존중은 여기서부터 나온다. 부부관계에서 부름말은 혁명전우로서 다정하고 친근감이 나는 말로 하여야 한다. 부부관계에서는 일시적인 불만족이나 이해의 부족, 성격의 과격성으로 언쟁이 생긴다 하더라도 야비한 언사를 쓰거나 몰상식한 언어표현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극단적 인격적모욕으로서 도덕적저열성의 표현이다.⁴⁶⁾

위의 기사는 부부가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가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비한 언사’나 ‘몰상식한 언어’는 곧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남녀평등이 법적,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주의 국가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공식 매체가 가정 내 언어폭력을 위와 같은 정도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며, 가정폭력 문제가

44) “안해의 다심하고 너그러운 이해력은,” 『조선여성』, 2012년 제8호, p. 43.

45) “부부사이의 룰리에서 중요한것은 믿음,” 『조선여성』, 2013년 제12호, p. 45.

46) “인격존중은 부부사이의 룰리,” 『조선여성』, 2014년 제1호, p. 47.

북한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시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출산의 자유 및 양육 관련 조항

제50조는 여성에게 출산의 자유를 주는 조항이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여성이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을 장려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여성에게 인구재생산 의무를 부과하는 이중적 의미로 해석가능하다. 다산을 장려하는 국가의 정책이 여성의 ‘낳지 않을 권리’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제50조 (출산의 자유)

녀성은 자녀를 낳거나 낳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적으로 녀성이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을 장려한다.
심태자, 다태자를 낳아 키우는 녀성과 어린이에게는 담당의사를 두며 훌륭한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같은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돌린다.

제49조는 남편과 아내가 미성년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녀에 대한 후견인의 지위를 기본적으로 남성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남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성년자녀의 후견인이 될 수 없을 때에야 여성이 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49조 (미성년자녀보호에 대한 권리, 의무)

녀성은 남편과 평등하게 미성년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남편이 사망하였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성년자녀의 후견인으로 될수 없을 경우에는 녀성에게 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녀성권리보장법」은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치이다.

식량난 이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시장에 나섰던 여성들은 점차 자립적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고, 여성들의 경제력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와 함께 현실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성들의 요구사항, 즉 여성의 재산권, 상속권에 대한 인정과 가정폭력의 금지 등을 법적으로 수용한 결과가 「녀성권리보장법」이라 할 수 있다.

「녀성권리보장법」은 고난의 행군기 이후 북한이 당면했던 갖가지 사회 변화를 수용한 것으로, 국가가 당위적 차원에서 여성의 권리를 법적으로 선언한 의미가 있다. 「녀성권리보장법」이 진보적 규정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성별위계와 성별분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족법」의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하였다. 또한 「녀성권리보장법」은 국제기구가 북한에 요구한 인권개선의 노력을 보여주는 시책이자 대외적으로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선전하는 전략이라는 함의가 있다. 그럼에도 이 법은 부분적으로는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특히 여성의 경제력 활동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 실태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며, 그러한 방향의 사회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⁴⁷⁾

2.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호명

가. 여성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사회적 인정: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시대의 꽃”

김정은 시대가 출범한 후에 개최된 국제부녀절 행사는 국가가 여성을 어떻게 호명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12년 국제부녀

47) 황의정·최대석, “북한의 여성관련 법제정을 통해 본 여성의 법적 지위의 변화 전망.” pp. 25~27 참조.

절에 북한은 “녀성들은 강성국가건설의 한쪽 수레바퀴를 힘차게 밀고나가자”를 표어로 내걸고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적극 권장했다.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는 1970년대 김일성의 담화에서 처음 등장했다. 김정은은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노작’에서 ‘한쪽수레바퀴’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우리 녀성들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 당조직들은 녀맹조직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잘하여 녀성들이 조국의 부강번영과 사회와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본분을 다하며 시대의 꽃으로서의 영예를 계속 떨쳐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48)

김정은은 정권 출범 초기에 김정일의 유훈통치를 강조하며, 49) 국가의 청사진으로 강성국가건설을 밝힌 바 있다. 50) 이때 여성은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담당하는 역할을 가진 존재로 규정되는 동시에 ‘시대의 꽃’으로 새로이 호명되었다. 김정은은 여맹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조하며 여성들이 국가, 사회, 가정의 각 영역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을 꽃으로 호명하는 것은 동서양 모두에게 공통된 문화적 상징이다. 꽃은 여성을 대상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에서는

48)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2년 4월 6일),” 『로동신문』, 2012.4.19.

49)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실것이다,” 『로동신문』, 2011.12.22.

50) 강성국가건설에 필요한 동력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경제적 변혁을 일으키는 ‘새세기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의 공개 연설에서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라고 천명했다.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강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여성의 역량도 결집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여맹에 대한 당적 지도의 강조로 나타났다.

1991년에 나온 대중가요 〈녀성은 꽃이라네〉가 대중의 인기를 얻은 이후 공공연하게 여성을 꽃으로 호명하기 시작했다. 이 노래에서는 가정을 돌보고 자식을 키우며 사회를 만드는 의무를 수행하는 여성을 ‘생활의 꽃’, ‘행복의 꽃’, ‘나라의 꽃’으로 호명하고 있다.⁵¹⁾ 또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직후 처음 맞이하는 국제부녀절 경축공연의 제명으로 이 노래를 사용한 점에서 김정은 체제의 여성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볼 수 있다.⁵²⁾ 이와 함께 꽃은 국제부녀절에 행해지는 문화적 행사와 관련되어 있다. 고난의 행군의 종식이 선언된 후에 북한 사회에서는 국제부녀절 아침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침밥을 해 주고 남성이 여성에게 꽃을 선물하는 풍습이 생겨났다. 국제부녀절의 미담으로 전해지는 꽃 선물은⁵³⁾ 고난의 행군기 때 해체되었던 “가정과 일상의 회복”을⁵⁴⁾ 함의한다. 국제부녀절의 꽃 선물은 그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고생해온 여성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51) 1991년에 나온 대중가요 〈녀성은 꽃이라네〉는 김송남이 작사하고, 〈휘파람〉과 〈반갑습니다〉를 작곡한 리종오가 곡을 붙였다. 3절로 구성된 이 노래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1절) 녀성은 꽃이라네 생활의 꽃이라네
 한가정 알뜰살뜰 돌보는 꽃이라네
 정다운 안해여 누나여 그대들 없다면
 생활의 한자리가 비어있으리
 녀성은 꽃이라네 생활의 꽃이라네
- (2절) 녀성은 꽃이라네 행복의 꽃이라네
 아들딸 영웅으로 키우는 꽃이라네
 정다운 안해여 누나여 그대들 없다면
 행복의 한자리가 비어있으리
 녀성은 꽃이라네 행복의 꽃이라네
- (3절) 녀성은 꽃이라네 나라의 꽃이라네
 걸어온 위훈의 길에 수놓을 꽃이라네
 정다운 안해여 누나여 그대들 없다면
 나라의 한자리가 비어있으리
 녀성은 꽃이라네 나라의 꽃이라네

52) 2012년 3월 8일 국제부녀절 경축공연은 은하수관현악단이 맡았는데, 이 공연의 제목이 〈녀성은 꽃이라네〉였다.

53) “홍성이는 꽃대앞에서,” 『로동신문』, 2006.3.9.

54) 이지순, “기념일의 경험과 문학적 표상,” 『아시아문화연구』, 제47집 (2018), p. 252.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꽃은 여성의 헌신을 인정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국제부녀절 외에 여성이 꽃을 선물로 받는 중요한 행사는 어머니날이다. 김정은은 2012년에, 김일성이 1961년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했던 “자녀교양에서 나타나는 어머니들의 임무” 연설을 기념하여 11월 16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하고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를 개최했다. 어머니대회에서 여성은 “뜨거운 애국충정과 참된 모성애로 강성조선을 떠받드는 역센 기둥감들, 선군혁명계승자들의 대부대를 키워가는 우리 어머니들이야말로 사회주의대가정의 자랑”이라고 칭송되었다.⁵⁵⁾ 여기서 여성은 사회주의대가정에서 혁명의 계승자를 기르는 양육자로 호명된다. 후대들의 양육자로서 여성의 애국적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어머니날이다.

<그림 11-1> 어머니날에 꽃다발과 선물을 받는 여성



자료: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2014년 11월).

55) “선군시대 어머니들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 강성조선의 미래를 꽃피워나가자: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 진행,” 『로동신문』, 2012.11.16.

국제부녀절을 비롯해 어머니날과 어머니대회는 “당과 인민의 뜨거운 감사와 송고한 경의”를⁵⁶⁾ 여성에게 보내는 의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곤란 속에서도 생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지켜온 여성의 헌신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념일과 행사인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앞장서서 여성의 가슴에 꽃을 달아주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제스처를 취하지만, 이와 함께 여성들에게는 다자녀 출산과 양육, 사회적 돌봄을 권장하는 각종 사명이 부과된다.

나. 가두여성 동원과 전문직 여성의 활약 강조

(1) 가두여성의 사회활동 독려

김정은 시대에도 별도의 직업 없이 가정살림만 맡는 전업주부를 일컫는 ‘가두여성’에 대한 노력 동원은 여전히 강조되었다. 김정은 시대 들어 가두여성의 사회참여가 국가적으로 강조된 시기는 2016년, 36년 만에 개최되는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각종 속도전이 벌어졌을 때이다.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근로여성뿐 아니라 가두여성에게도 ‘70일전투’, ‘200일전투’ 등의 증산경쟁이 요구되었다. 여맹조직에게는 “충정의 70일전투”에서 “로력혁신자, 시대의 공로자”가 되도록 여성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교양할 책무가 주어졌다.⁵⁷⁾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당조직들은 근로단체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여맹도 당 정책 관철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여맹에 대한 당적 지도의 강조는 보고자의 교체로 나타났다. 국제부녀절 기념보고는 전통적으

56) 위의 글.

57)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서 조선녀성들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떨치자,” 『로동신문』, 2016.3.8.

로 여맹위원장이 해왔다. 이러한 관례를 깨고 2015년부터 당중앙위원회 소속 간부가 보고자로 연단에 올랐다.⁵⁸⁾ 이는 “당의 위상 강화와 김정은의 당권 강화”라는⁵⁹⁾ 정치적 해석도 가능하지만, 성별 계층화가 통치구도에서 드러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⁶⁰⁾

여맹대회를 통해 가두여성에 대해 전국가적으로 책임이 부과되었다. 제7차 당대회가 열렸던 2016년에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대회가 33년 만에 개최되었고, ‘조선민주녀성동맹’의 명칭을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으로 변경하는 결정서가 발표되었다. 김정은은 11월 17일 여맹 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여맹과 여맹원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가두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독려가 재차 강조되었다.

녀맹조직들은 가두녀성들을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합니다. 가두녀성들을 사회에 진출시키는것은 긴장한 로력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비약하며 전진하는 오늘의 만리마시대에 모든 녀성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값 높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녀맹조직들은 가두녀성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일할 나이의 녀성들이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전투장들에 적극 진출하여 한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⁶¹⁾

전업주부인 가두여성들이 건설현장에 나가 ‘한뫼’하라는 김정은의

58) 2014년까지 국제부녀절 기념보고를 여맹위원장이 했다면, 2015~2017년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자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가, 2018년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희가 이를 담당했다. 2019년에는 당중앙위원회 부장 리일환이 보고자의 역할을 했다.

59) 이시순, “기념일의 경험과 문학적 표상,” p. 259.

60)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자,” 『로동신문』, 2018.3.9.

61)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따라 녀성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조선녀성』, 2016년 제12호, p. 6.

요구는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있어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을 완수하기 위해 “일할 나이에 있는 가두녀성들을 사회에 적극 진출시키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제기되는 로력문제, 기술자, 기능공문제를 원만히 해결”한다는⁶²⁾ 담론이 전개되었다. 공식부문에서의 노동력 공백을 각종 사회건설과 작업에 가두여성들을 동원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조선녀성』에는 당해년도의 중점 건설사업에 여성이 어떻게 참여하고 성과를 내는지가 기사로 실리곤 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 『조선녀성』은 축산세포기지, 마식령스키장건설, 청천강계단식발전소, 은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연풍과학자휴양소 등의 건설사업에 참가하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게재되었다. 여맹원들은 ‘여맹돌격대’로서 노동현장에 참여하거나, 기동예술선전대 활동을 하고, 노동현장에 각종 물품을 보내는 지원사업으로 건설에 동참하도록 고무되었다.

이곳 초급녀맹위원회에서는 석탄을 비롯한 동력자원을 최대한 리용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지난 9월초 탄광지원을 위한 녀맹돌격대를 조직하였다. 수많은 녀맹원들이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저저마다 돌격대에 탄원해나섰다. 수백여명의 녀맹원들은 즉시 현장에 달려나가 석탄운반은 걱정 말라고 하면서 수천t의 석탄을 저탄장까지 운반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었다. 석탄운반을 돕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나라의 전력생산에 이바지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중략) 불리한 작업조건으로 어느 한강의 석탄생산이 지장을 받을 때에도 이곳 초급녀맹위원회에서는 녀맹원들을 발동하여 생산정상화에 적극 이바지하였다.⁶³⁾

62) “가두녀성들을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짜고들자,” 『조선녀성』, 2017년 제3호, p. 28.

위의 기사는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여맹위원회에 속한 초급여맹위원회의 일화를 담고 있다. 기업소 노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맹원들은 탄광에 돌격대로 지원해서 엄청난 노동을 해내었다고 선전되었다. ‘자발적 탄원’에 의한 여성들의 동원노동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따르지 않았음은 자명하다. 여성들에 대한 노력동원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며 경제활동에 바쁜 여성에게 이중삼중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2) 전문직 여성의 활약 강조

김정은 집권 이후, 전문직 여성들을 국가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기적과 혁신의 창조자로 호명하며,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이들의 활약을 강조하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최첨단 돌파’ 구호와 ‘지식경제시대’ 담론이 등장하면서 기존에는 남성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첨단 분야 직종이 여성들의 직업으로 담론 상에 등장하였다. 전문직 여성의 소환은 현 시대를 ‘지식경제시대’라고 명명하며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맥락과 연동된다. 2016년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은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워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여성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었다. 여성들은 생산력 양양에 기여하는 기계나 약품을 개발하고, 과학적 성과를 가져올 기초 학문을 발전시키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서 주목받고 있다. 대학과 연구소, 공장기업소에서 여성들은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산현장의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는 연구성과를 올리고 공로를 인정받으며, ‘부강조국 건설자들’로 불리고 있다.⁶⁴⁾ 언론

63) “애국의 마음을 석탄증산에,” 『조선여성』, 2014년 제11호, p. 45.

64)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연구사 조신옥동무는 유전병예방에 적극 이바지 할

매체에서는 가정에서 주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하는 부담 속에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직 여성의 모습이 부각된다.

두 자식을 거느린 한 가정의 주부인 김해빙동무에게는 어머니로서, 안해로서 집안에서는 물론 관록있는 유압기계설계전문가로서 연구소에서도 일이 참으로 많았다. (중략) 설계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다루기 힘들어하는 육중한 부품품들의 제작과 조립까지도 그의 손을 기다릴 때가 많다고 한다. 말 못할 사연도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고 탐구의 길에 지혜와 재능을 깡그리 바쳐가며 그는 지난 25년동안을 묵묵히 걸어왔고 그 길에서 언제 한번 자기앞에 맡겨진 일을 남에게 미룬적이 없었다.⁶⁵⁾

위에서 인용한 기사는 한 가정의 주부이자 어머니인 여성과학자가 자기 분야에서 어떻게 열정을 다하며 남성들도 어려워하는 영역에서 성과를 내는지 보여준다. 『로동신문』은 여성과학자들이 박사 학위를 받는 소식을 전하면서 여성 과학자들이 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하고 그들의 연구 성과가 공장과 기업소에 적용되어 생산적 양양을 일으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김정은 시대에 배출되었다는 수백 명의 여성 박사 학위자들은 역량을 갖춘 전문직 여성의 질적, 양적 성장의 성과로 과시되고 있다.⁶⁶⁾ 2019년 국제부녀절을 맞아 노동신문에 실린 기사는 가정주부로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

수 있는 훌륭한 연구성과를 내놓았고 김제원해주농업대학 교원 윤혜숙동무는 산림자원에 피해를 주는 주요병해충들을 구제할수 있는 산림해충구제약을 새로 개발하였으며 평양인쇄공업대학 교원 오순희동무는 인쇄물의 질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연구성과를 공장에 도입하여 지난 1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를 받아안았다.” “과학기술로 부강조국건설을 추동해나가는 미더운 녀성들,” 『로동신문』, 2015.3.8.

65) “과학전선에 애국의 자욱을 새겨간다: 국가과학원의 녀성과학자들을 만나보고,” 『로동신문』, 2016.3.8.

66)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 관철에 앞장선 미더운 녀성들,” 『로동신문』, 2018.11.16.

문성을 갖춘 여성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주변의 반응을 보여준다.⁶⁷⁾ 이 기사에서는 김정은 시대가 중시하는 과학기술 역량과 전문성이 ‘박사학위’로 환유되고 있으며, 여성의 전문성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반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2〉 여성 전투비행사를 격려하는 김정은 위원장



자료: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2015년 6월).

미개척 분야에서 성공한 여성의 이야기는 새로운 여성의 모델을 보여주고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 김정은 시대 소설을 분석한 임옥규에 의하면, 소설에 묘사된 여성의 직업은 교양원, 방사공, 건설노동자, 돌격대원, 공장 노동자 등 주로 경공업 생산 현장의 직업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설계기사, 식료기계기사, 김책공업대학 연구사, CNC 연구사, 과학자, 국방과학연구소 등 과학기술 계통의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등장하는데,⁶⁸⁾ 이는 여성의 전문

67) “녀성이 된 긍지와 자부심을 두고,” 『로동신문』, 2019.3.8.

적 역량을 강조하고 사회생활을 통해 이를 발휘할 것을 요구하는 김정은 시대의 젠더담론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성 전투기조종사이다. 2015년 6월, 초음속전투기 미그21을 모는 첫 여성조종사 림설과 조금향은 시범훈련을 끝낸 후 김정은에게 “조선녀성의 기개를 과시한 영웅조선의 효녀, 훈련영웅들”로 치하받았다. 김정은은 남성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비행훈련을 ‘이악하게 수행’한 여성 전투비행사들을 일컬어 “건군사에 처음으로 녀성초음속전투기 비행사들이 태어났다.”고 평가하며, 이들을 “하늘의 꽃”으로 호명했다.⁶⁹⁾ 여성 전투기 조종사는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전문적 직업영역에 여성이 진출하여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의 사회진출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국가의 위상을 빛낸 ‘효녀’, ‘하늘의 꽃’이라고 가부장적 체제에 바탕하여 이들을 호명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다. 사회주의 문명국과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

북한에서 여성의 용모와 옷차림은 통제의 대상이다. “옷차림과 몸 단장은 단순한 형식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상정신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로⁷⁰⁾ 여겨지기 때문이다. 김정은 시대에 국가의 비전이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로 제시되자, 여성의 옷차림과 몸에 대한 통제도 여기에 부응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제7차 당 대회에서 처음 등장한 사회주의 문명국은 사회주의 문화를 바탕으로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창조하고 향유하는 나라로 정의할 수

68) 임옥규, “북한 문학을 통해 본 김정은 체제에서의 국가와 여성-『조선문학』(2012~2013)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제13호 (2014), pp. 250~251.

69) “선군조선의 첫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 탄생,” 『로동신문』, 2015.6.22.

70) “겨울철옷차림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하자,” 『조선녀성』, 2014년 제12호, p. 52.

있다. 여성에게 “옷차림과 몸단장을 고상하고 건전하게”⁷¹⁾ 하고 다니라는 요구는 기존의 통제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기호에 맞는 옷을 선정하여 맵시있게 입음으로써 문화적인 정서가 넘치게 하여야 한다”⁷²⁾ 지적처럼 최근에는 개인의 기호와 자기표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의 집권 초기에 여성의 옷차림은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계몽과 통제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여성들은 “시대적 요구에 맞게” “고상하고 문명한 조선녀성의 풍모”를 보여주는 선에서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한다고 제시되었다.⁷³⁾ 옷차림에서 주체성, 민족성을 살릴 것이 강조되었고, “고상하고 문명하며 강직한 조선민족의 낮이슴배여있는 민족옷”인⁷⁴⁾ 조선옷을 명절날 외에 일상에서도 즐겨 입을 것이 권장되었다. 여성들에게는 ‘자녀들의 거울인 어머니’로서, 자녀들의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도 건전하고 단정하게 ‘교양’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계절별·연령별 옷감의 종류와 색상, 치마 길이와 옷에 다는 장식, 헤어스타일부터 여성의 결혼식 옷차림과 화장까지 ‘문명한 조선녀성’의 규범이 세부적으로 제시되었다. 옷차림 단속은 “내부에 썩어빠진 부르조아생활문화를 퍼뜨리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⁷⁵⁾ 없애고, 민족성을 고수하고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위해 필요한 요구라고 강조되었다.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이나 지나치게 짧은 치마, 거무튀튀하거나 얼룩덜룩한 옷, 사치하고 요란스러운 옷들”이⁷⁶⁾ 바로 단속 대상이었다.

71) “옷차림과 몸단장을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고상하고 건전하게 하자.” 『조선녀성』, 2016년 제11호, p. 53.

72) “맵시있고 문화적인 녀성들의 가을철옷차림.” 『조선녀성』, 2016년 제11호, p. 40.

73) “녀성들의 몸매에 어울리는 옷차림.” 『조선녀성』, 2012년 제2호, p. 55; “겨울철옷차림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하자.” 『조선녀성』, 2012년 제11호, p. 53.

74) “옷차림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적극 살려나가자.” 『조선녀성』, 2012년 제5호, p. 55.

75) “결혼식옷차림과 몸단장을 우리 식으로 하자.” 『조선녀성』, 2013년 제3호, p. 52.

2016년에 여맹에 보낸 서한에서 김정은은 여성들 사이에 제국주의와 부르주아의 사상문화가 독소로 침투해 있음을 질타했다. 여성들의 교양과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외부에서 유입된 자본주의와 이색적 생활양식을 뿌리 뽑으라고 요구했다. 옷차림은 “단순히 겉치장도 아니고 자기 개인의 몸을 거두는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인민의 문명정도와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이자 “사상정신상태”를 반영하는 문제로⁷⁷⁾ 인식되었다. 또한 여성의 퇴폐적 옷차림과 건전하지 못한 사상문화는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후대들도 사상정신적으로 병들게 할 수 있다.”⁷⁸⁾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여성의 꾸밈 욕구는 퇴폐적인 외래문화가 유입되어 받은 영향으로 사회적 관리의 대상이자, 규제 대상이었다. 여성의 자기표현으로서의 꾸밈욕구는 국가의 기획 아래 새롭게 구축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다음의 <그림 II-3>은 2014년과 2016년 『조선녀성』에 실린 “꽃향기”라는 제목의 4컷 만화이다. 만화는 여성의 단정한 옷차림이 사회주의 문명과 아름다움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준다.

76) “녀성들은 옷차림과 몸단장을 우리 식으로 하자,” 『조선녀성』, 2017년 제3호, p.53.

77) “겨울첫옷차림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하자,” 『조선녀성』, 2017년 제1호, p. 54.

78)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자,” 『로동신문』, 2018.3.9.

〈그림 11-3〉 『조선여성』에 수록된 4컷 만화 “꽃향기”

(런속그림이야기)



글:김경숙 그림:김명제



* 사회주의도덕과 생활 *

(런속그림이야기)



글:김경숙, 그림:김국



자료: 『조선여성』, 2014년 제6호, p. 46(좌); 2016년 제3호, p. 47(우).

여성의 외모와 치장, 옷차림에 대한 『조선여성』 기사는 2008년 4건, 2009년 1건, 2010년 4건, 2011년 5건, 2012년 4건, 2013년 4건, 2014년 8건, 2015년 2건, 2016년 5건, 2017년 9건, 2018년 12건으로, 최근 들어 크게 증가했다. 2017년부터는 여성의 옷차림이 ‘맵시’와 같이 외적으로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느냐가 사회주의 도덕이나 문명과 함께 논의되었다. 몸치레거리인 반지와 같은 장신구도 언급이 되었다. 여성의 삶뿐만 아니라 미적 추구 또한 통치서사의 하나로 기획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⁷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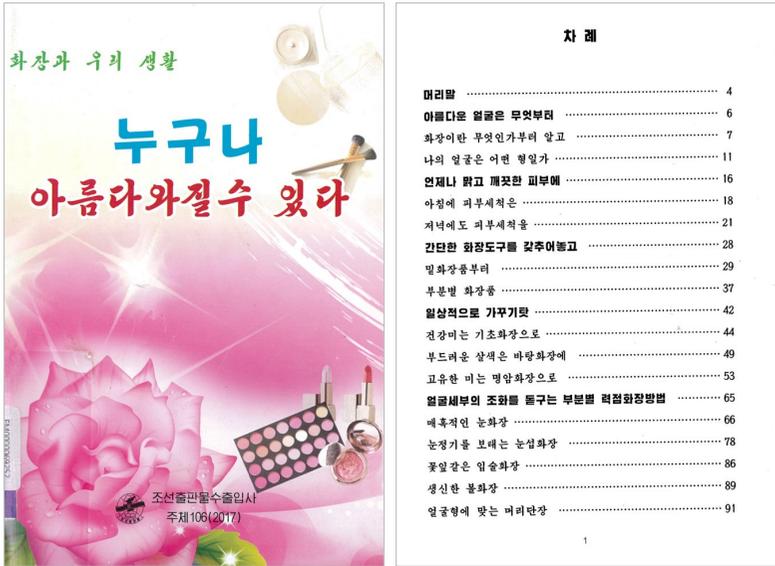
여성의 자기표현에 대한 욕구는 옷차림, 화장, 장신구 등 외모를 꾸미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는 경공업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에서 김정은이 주력하고 있는 화장품 산업과도 연계되어 있다.⁸⁰⁾ 화장은 곧 “사회주의 문명국에 사는 인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문화생활의 하나”이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화장과 몸단장은 “여성들이 갖추어야 할 기품”이자 “사회주의 문명국의 생활”로 강조된다.⁸¹⁾ 이를 보여주는 것이 『누구나 아름다와질수 있다』(2017)라는 단행본 책자이다.

79) 2017년과 2018년 『조선여성』에 실린 관련 기사 제목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겨울 철옷차림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하자”, “여성들의 옷차림은 소박하면서도 맵시있게”, “여성들은 민족성이 구현되고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이 확립된 옷차림을 하고 다니자”, “여성들은 옷차림과 몸단장을 우리 식으로 하자”, “거울(만화)”, “조선여성들의 고상한 옷차림풍습”, “여성들의 몸치레거리인 반지”, “옷차림과 몸단장을 시대적미감에 맞게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자녀들이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도록”, 2018년에는 “아름답고 우아한 조선치마저고리(사진)”, “《은하수》 향기에 실려오는 아버지 사랑”, “옷차림과 머리단장을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게 하자”, “녀성과 화장”, “여름 철옷차림에서 나서는 문제”, “주방에 숨겨진 미용의 비결”, “이색적인 생활양식을 철저히 배격하자”, “우리 나라에서 화장품의 력사”, “사랑의 《봄향기》여, 그 은정 길이 전하라”, “문화적인 옷차림과 머리단장(사진)”, “옷차림과 몸단장을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하자”, “민족의 향취 넘쳐 흐르는 우리의 조선옷(사진)” 등이다.

80) 위의 각주에서, 2018년 『조선여성』 기사에 등장하는 ‘은하수’와 ‘봄향기’는 북한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이다. 예술영화 <우리 집 이야기>(2016)의 주인공이 요리대회에서 받는 1등 상품은 ‘봄향기’ 화장품이다.

81) 전영선, “북한의 화장품: 북한 화장품이 변하고 있다,” 2019.7.10., <<https://m.blog.naver.com/gounikorea/221582335647>> (검색일 2019.9.14.).

〈그림 II-4〉 『누구나 아름다와질수 있다』(2017) 표지와 목차 일부



자료: 길수미, 『누구나 아름다와질수 있다』(평양: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7).

이 책의 머리말을 보면, 여성이 아름다운 외모에 관심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긍정하고 있다. 여성들이 몸단장을 아름답고 고상하게 하고, 그에 어울리는 화장을 세련되고 우아하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생활문화를 확립하여 최상의 문명을 향유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에 이루어진 화장품 공장의 개건과 확장은 높아진 “여성들의 미적지향과 정서적요구”에⁸²⁾ 부응하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 〈그림 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의 몸과 용모에 대한 통제에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옷차림, 머리단장, 화장 등을 개인의 기호와 개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제를 완화한 것이다. 2018년 『조선여성』 기사를 보면, 민족적 정서

82) 길수미, “머리말,” 『누구나 아름다와질수 있다』(평양: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7), p. 5.

를 담은 ‘조선치마저고리’나 양장, 머리단장 등이 이전보다 더 다양한 색감과 디자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화장품과 미용 정보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⁸³⁾

〈그림 11-5〉 북한 여성의 옷차림과 머리단장 화보



자료: 『조선여성』, 2018년 제10호, pp. 30~31.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 통제의 부분적 완화는 옷차림이나 머리, 화장, 장신구 등을 통한 여성들의 차별화와 자기과시, 자기표현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소비의 다양화를 통한 주민 생활 향상이라는 국가 정책과도 맞물리는 것이다. 이후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여성들의 자기표현의 틈을 허용하는 국가 정책은 다시 여성들의 자기표현 욕구에 영향을 준다.

83) “주방에 숨겨진 미용의 비결,” 『조선여성』, 2018년 제8호, p. 34; “우리 나라에서 화장품의 역사,” 『조선여성』, 2018년 제8호, p. 55.

3. 모성의 사회적 확대

가. 어머니 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정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제정된 기념일은 ‘어머니날’이다. 어머니날 제정은 여성을 어머니로 호명하는 기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에서 이상적인 여성상은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이다. 김일성의 혁명가계 속 여성들은 전통적인 현모양처에 공산주의, 혁명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이상적 여성상은 희생과 헌신을 기본으로 하는 어머니의 모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모성담론의 핵심인 어머니는 북한 사회에서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전의 정의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 새로 편찬된 사전에 나타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정의는 다음 <표 II-1>과 같다.

<표 II-1> 『조선말대사전(증보판)』(2017)의 ‘어머니’와 ‘아버지’ 정의

‘어머니’ 정의	‘아버지’ 정의
①자기를 낳은 여자인 웃어른. 직계 혈족이다. D《이붓어머니》를 이르는 말. D《아버지의 첩》을 이르던 말. ②《자식을 가진 녀성》을 두루 이르는 말. ③《언제나 따뜻한 친어머니심정의 사랑으로 대하여주며 극진히 보살펴주는 존재》를 친근히 이르는 말. ④《자기보다 지긋하게 나이든 여자》를 대접하여 부르는 말. ⑤《무엇이 배태되어 생겨나는 근본요인》을 비겨 이르는 말.	①자기를 낳은 어머니의 남편 또는 가정적으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 ②《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신분》을 다함없는 친근감을 가지고 높여 이르는 말. ③혈연적관계가 없는 《나이가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남자》를 높여 이르는 말.

자료: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증보판) 4』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p. 793; p. 955.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사전 뜻풀이는 흥미로운 지점을 제공한다. ‘어머니’의 첫 번째 뜻은 “자기를 낳은 여자인 웃어른. 직계 혈족”이지만, ‘아버지’의 첫 번째 뜻은 “자기를 낳은 어머니의 남편 또는 가정적으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어머니는 한국의 사전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가 배제된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가정에서의 역할 관계로 볼 때, 아버지는 어머니의 남편으로만 존재하지만, 어머니는 출산과 양육 모두를 담당하는 존재이다. 게다가 ‘의붓어머니’와 ‘아버지의 첩’도 어머니의 기본 의미 중 하나로 뜻풀이에 올랐다.⁸⁴⁾ 이는 「가족법」 등에 나타난 법적 권리는 부계 중심이지만, 가정의 존속과 유지는 모계 중심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언제부터 ‘어머니의 남편’으로 존재했을까? 이 같은 관계를 계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II-2> 북한 사전의 ‘아버지’ 정의

시기	사전명	‘아버지’ 정의
1956	조선어 소사전	자기를 낳은 남자.
1962	조선말 사전	자기를 낳은, 어머니의 남편.
1968	현대조선말사전	①남자인 어버이. ②《나이가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남자》를 높여 이르는 말.
1973	조선문화어사전	①자기를 낳은 어머니의 남편 ②《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여주며 극진히 보살펴주는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③친척관계가 없는 《나이가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남자》를 높여 이르는 말.

84) 북한 사전의 “D”는 한 올림말이 여러 뜻으로 쓰이는 경우에 구분하는 표시이다. D는 기본적인 의미에 속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를 지니거나 정치 사상적으로 중요한 뜻이 D의 앞에 놓인다.

시기	사전명	‘아버지’ 정의
1981	현대조선말사전 (2판)	①자기를 낳은 어머니의 남편. ②《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우러러 흠모하는 분》을 다함없이 친근감을 가지고 높여 이르는 말 ③친척관계가 없는 《나이가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남자》를 높여이르는 말.
1992	조선말대사전	①자기를 낳은 어머니의 남편 또는 가정적으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 ②《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신분》을 다함없는 친근감을 가지고 높여 이르는 말. ③혈연적관계가 없는 《나이가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남자》를 높여 이르는 말.
2007	조선말대사전 (증보)	
2017	조선말대사전 (증보)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사전연구실, 『조선어 소사전』(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1956), p. 6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사전연구실, 『조선말 사전』(평양: 과학원출판사, 1962), p. 4405;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현대조선말사전』(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968), p. 1188;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문화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935;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현대조선말사전(2판)』(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p. 2629;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333;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증보판) 3』(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7), p. 1202;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증보판) 4』(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p. 793.

『조선어 소사전』(1956), 『현대조선말사전』(1968)은 아버지를 “자신을 낳은 남자 또는 남자인 어버이”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정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위치를 성별로 규정한 것이다. 이때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가정을 돌보고 양육에 참여하는 위치를 내포한다. 그러나 『조선말 사전』(1962)부터 1970년대 주체시대를 거쳐 최근의 사전까지 아버지는 어머니의 남편이라는 위치로 정의되고 있다. 가정 내에서 부모 중 한 사람으로 규정되던 아버지의 의미는 1960년대 초부터 가정 내에서 돌봄과 양육의 의무에서 비껴나게 된다. 그리고 김일성 유일영도체계가 확립된 1960년대 후반 이후에 편찬된 사전에서 덧붙여진 제2의 의미는 “극진히 보살펴주는 사람”을 높이거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흠모하는 분”,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신 분”으로, 이는 수령을 의미한다. 더불어 아버지 연배의

남자를 높여 부르는 의미도 추가되었다. 즉 주체시대가 되면서 아버지의 사전적 정의는 수령제를 바탕으로 하는 가부장적 질서를 내포하게 되었다. 이는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지속된다. 아버이를 수령으로 보는 관점에서 보자면, 아버지의 개념을 사회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은 사적 수준에서나 공적 관계에서 국가가부장제가 확립되고 재생산되는 과정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에 대한 사전적 정의의 변화는 다음 <표 II-3>과 같다.

<표 II-3> 북한 사전의 ‘어머니’ 정의

시기	사전명	‘어머니’ 정의
1956	조선어 소사전	자기를 낳은 여자.
1962	조선말 사전	①자기를 낳은 여자. D《자식을 가진 여성》을 두루 이르는 말. ②《나이가 자기 어머니와 비슷한 여자》를 높여 부르는 말. ③《자애롭고 모든 것을 돌봐 주고 걱정해 주는 존재》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④《무엇이 배태되어 생겨 나는 근본》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1968	현대조선말사전	①여자인 아버지. D《자식을 가진 여성》을 두루 이르는 말. ②친척관계가 없는 《나이가 어머니 정도로 된 여자》를 높여 부르는 말. ③《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여주며 극진히 보살펴주는 존재》를 비겨이르는 말.
1973	조선문화어사전	①자기를 낳은 여자. D《자식을 가진 여성》을 두루 이르는 말. ②《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여주며 극진히 보살펴주는 존재》를 비겨이르는 말. ③친척관계가 없는, 《나이가 어머니정도로 된 여자》를 높여 부르는 말.
1981	현대조선말사전 (2판)	①자기를 낳은 여자. ②《자식을 가진 여성》을 두루 이르는 말. ③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여주며 극진히 보살펴주는 존재》를 비겨이르는 말. ④《자기보다 지긋하게 나이든 여자》를 대접하여 부르는 말.

시기	사전명	‘어머니’ 정의
1992	조선말대사전	①자기를 낳은 여자인 웃어른. 직계 혈족이다. D《이웃 어머니》를 이르는 말. D《아버지의 첩》을 이르던 말.
2007	조선말대사전 (증보)	②《자식을 가진 여성》을 두루 이르는 말. ③《언제나 따뜻한 친어머니심정의 사랑으로 대하여주며 극진히 보살펴주는 존재》를 친근히 이르는 말. ④《자기보다 지긋하게 나이든 여자》를 대접하여 부르는 말. ⑤《무엇이 배태되어 생겨나는 근본요인》을 비켜 이르는 말.
2017	조선말대사전 (증보)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사전연구실, 『조선어 소사전』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1956), p. 6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사전연구실 『조선말 사전』 (평양: 과학원출판사, 1962), p. 4521;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현대조선말사전』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968), p. 1218;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문화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973), p. 959;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현대조선말사전(2판)』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p. 2691;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427;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증보판)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7), p. 1328;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증보판) 4』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p. 955.

어머니를 ‘여성인 어버이’로 정의하던 『현대조선말사전』(1968)을 제외하면, 모든 사전의 첫 번째 뜻이 ‘자기를 낳은 여자’이다. 여기에 ‘자식을 가진 여성’을 두루 일컫는 말도 기본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아버지가 수령제 확립과 함께 수령을 함의하는 존재로 높여 부르는 말로 정착했다면, 어머니의 포괄적 의미는 1960년대 초반부터 인민대중을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당일군이나 책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도 사용되었다. 이후엔 1960년대 말에 이르면, 어머니의 의미는 조국과 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어머니당’, ‘어머니조국’ 등이 독립적인 표제어로 수록되었다.⁸⁵⁾

85) 『조선말 사전』(1962)부터는 의미가 어떻게 일상에 사용되는지 보여주는 용례를 상세히 달아둔 것을 참조해 볼 수 있다. ③번 뜻은 “당 일군들은 당일 대중을 항상 사랑해주고 가르쳐 주는 ~가 되고 사업의 선두에 서는 기수가 되어야 한다.” 또는 “다시 말해서 합숙 책임자는 합숙 성원의 ~가 되어야 하오.”와 같이 부기되었다. 마찬가지로 『현대조선말사전』(1968)의 ③번 뜻의 용례로 “~조국의 품에 안기다.” “당일군들은 대중을 늘 사랑하고 가르쳐주는 ~가 되고 사업의 앞장에 서는 기수가 되어야 한

사전에 표기된 ‘어머니’와 ‘아버지’ 정의를 통해, 아버지는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대가정’ 속에서 위치지어지고 역할이 부여되지만, 어머니의 위치와 역할은 단위 가족 내에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존재로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구조는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7년에 편찬한 사전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이는 여성을 돌봄과 양육이라는 전통적 성별분업구조 속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나. 모성의 사회적 돌봄 기능 확대

북한은 여성에게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동자의 의무와, 자녀를 양육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구성원을 훌륭히 교양하는 어머니 역할을 동시에 부여해 왔다. 이를 위해 육아와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여성이 가정과 사회를 오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해왔다. 이러한 양상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변화하지 않고 지속된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여성에게 부과되는 양육과 돌봄노동의 영역을 전체 사회로 확대하면서, 경제난 이전 시기에 국가가 담당해왔던 복지와 사회적 보육·교육 기능을 일부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다.

김정은이 2016년에 여맹대회에 보낸 서한과 최휘의 2018년 국제부녀절 중앙보고에는 여성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보육과 돌봄의 의무가 잘 나타나있다.

다.”가 수록되어 있다. 『현대조선말사전(2판)』(1981)의 ③번 뜻의 용례는 “~조국”으로 간단히 제시되었고, 『조선말대사전』(1992)에서는 “~당”과 “~조국”이 추가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사전연구실, 『조선말 사전』(평양: 과학원출판사, 1962), p. 4521;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현대조선말사전(2판)』(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p. 2691;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427.

녀맹원들과 녀성들이 자녀교양을 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녀맹원들과 녀성들은 어머니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자녀교양에 힘을 들이고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언행과 생활의 모든 계기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교양과정으로 되게 하여 아들딸들을 혁명의 계승자, 미래의 주인공들로 훌륭히 키우며 가정을 혁명적인 군인가정, 과학자가정, 애국자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훌륭히 키우려면 어머니 자신이 고상한 인간적, 혁명가적품성과 깊은 지식,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녀야 합니다. 녀성들이 아들딸을 많이 낳아 잘 키우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녀성들이 아들딸을 많이 낳아 키우도록 하여야 합니다.⁸⁶⁾

녀맹원들과 녀성들은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스승과 옷사람을 존경하며 안해로서, 며느리로서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도덕적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⁸⁷⁾

위의 서한에서 김정은은 여성의 재생산이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책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자녀 보육과 교육 역할을 국가발전과 민족의 미래 전망과 연결시켜 거시적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녀의 양육과 돌봄이 전적으로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사명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휘의 보고문에서는 여성들이 자녀 양육뿐 아니라 남편과 시부모, 혁명선배, 스승, 옷사람 등에 대해서도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비판하고 있는 ‘현모양처주의’와⁸⁸⁾ 크게 다를 바 없는 언술이다. 이

86)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따라 녀성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조선녀성』, 2016년 제12호, p. 7.

87)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자,” 『로동신문』, 2018.3.9.

88) 북한 사전에 의하면 현모양처주의는 “아이를 잘 키우는 현숙한 어머니, 남편을 잘 섬기

와 같이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자식들을 키워 혁명의 길에 내세우고 남편이 혁명임무에 충실하도록 뒤바라지를 하는” 어머니 역할로⁸⁹⁾ 규정하는 것으로, 여성의 직업적 전문 능력을 강조하는 담론과는 다르게 여성의 정체성을 ‘모성’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가 전국어머니대회이다. 이 대회는 1961년 제1차 대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제1차 대회(1961년)가 여성들에게 공산주의 어머니와 사회주의 건설자가 될 것을 요구했다면, 김정일 시대에 개최된 제2차 대회(1998년)에서는 고난의 행군기에 헌신했던 여성의 모범을 확산시키고 강성대국 건설에 헌신하는 ‘혁명적 건설자 어머니’를 요구하며 출산을 장려했다. 이는 경제난 시기 영아사망률 증가와 출산률 감소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이루어진 인구재생산을 위한 기획이었다. 제3차 대회(2005년)는 여성들에게 ‘선군혁명총진군’ 아래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자식을 총폭탄 용사로 키우고, 선군시대 여성 혁명가가 될 것을 요구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에 개최된 제4차 대회는 여성에게 모성영웅과 노력영웅이 될 것을 촉구했다. 2차 대회에서 4차 대회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사항은 여성에게 ‘다자녀 출산’을 요구한 점이었다.

북한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아 키운 여성들을 모성영웅으로 칭하며, 고아나 난치병에 걸린 아이를 데려다 키운 여성들에게도 노력영웅 칭호를 수여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열린 어머니대회에서는 어머니날을 새로 제정하고, 많은 여성들에게 모성영웅 칭호를 수여하고

는 좋은 안해”의 뜻을 담고 있다. 현모양처주의는 북한에서 남존여비사상과 여성을 남성의 부속물로 만들려는 낡은 사상으로 규정되고 있다. 남성의 신변잡사를 거들어 주는 현모양처주의가 여성의 혁명화와 노동계급화를 저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모양처주의,” 『조선대백과사전』 DVD (평양: 삼일포정보센터, 2001~2005).

89) “선군시대 어머니들은 애국충정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끝없이 이어나가자,” 『로동신문』, 2014.11.16.

이들을 영웅으로 상징화하였다.⁹⁰⁾

모성영웅의 이야기는 김정은 집권을 전후한 시기 북한의 예술영화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예술영화 <눈속에 핀 꽃>(2011)은 망해가는 공장의 새 지배인이 된 여성이 동료들이 남긴 고아를 키우며 공장도 부활시키는 이야기로, 자강도 주복순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비슷한 서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집 이야기>(2016)는 2015년에 고아 7명을 거둬 키웠다는 20살의 처녀 장정화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이다. 김정은이 장정화를 ‘처녀어머니’로 부른 후에⁹¹⁾ 각종 문학예술의 장르를 오가며 모성영웅의 이상적 모델로서 처녀어머니가 선전되었다. 영화 <우리 집 이야기>는 2016년 제15차 평양국제영화축전에서 최우수영화상과 장편예술영화 여배우연기상을 받으며 북한에서 인기를 모았다.⁹²⁾ 이들 영화의 주인공들은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처녀어머니》가 되는 것과 같은 미덕은 사랑과 정으로 사회주의대가정을 가꾸어가는 우리 여성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로서⁹³⁾ 모성영웅의 모델이 되었다. 이는 국가가 담당해야 할 사회복지와 부양의 의무를 개인에게, 특히 여성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혁명적 현모양처의 역할을 기본으로, 군대에 물자를 지원하고 노병과 영예군인에게 봉사하며 원군원호를 하는 선군시대 여성의 역할이 김정은 시대에도 여성들에게 부과된다.⁹⁴⁾

90) 송현진, “북한의 영웅정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p. 242.

91) “조선에서 만사함을 감동시키는 《처녀어머니》,” 『로동신문』, 2015.7.6.

92) “제15차 평양국제영화축전 폐막,” 『로동신문』, 2016.9.24.

93)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서 조선여성들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펼치자,” 『로동신문』, 2016.3.8.

94)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은 여맹에 보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녀맹원들은 인민군군인들을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하여야 합니다. 군인가족들은 선군시대의 녀성혁명가, 최고사령부 작식대원답게 총잡은 남편의 믿음직한 혁명동지, 혁명전우가 되고 병사들의 친누이, 친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녀맹원들과 녀성들은 자녀들을 사상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 조국보위추소

〈그림 11-6〉 모성영웅이 등장하는 예술영화



자료: 조선영화촬영소, 〈눈속에 핀 꽃〉, 2011; 조선영화촬영소, 〈우리 집 이야기〉, 2016.

어머니, 주부, 며느리라는 전통적인 성 역할이 혈연가족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대된 모성을 강조하는 양상은 김정일 시대 들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여성은 총잡은 남편의 혁명전우, 병사들의 친누이, 친어머니로 불리며, 인민군대를 원호하는 여성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여성들에게는 또한 영예군인과 전사자가족과 후방가족을 보살피는 책임도 맡겨지고 있다. 고아, 부양가족 없는 노인, 상이군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돌보는 역할이 여성의 책임으로 돌려진 것이다. 여성의 모성은 자신이 낳은 자녀를 대상으로 할뿐 아니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의 모든 구성원을 향

에 세우는것을 혁명적가풍으로, 자랑으로 여기며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 전사자가족들과 후방가족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들을 따듯이 돌봐주어야 합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따라 녀성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2016년 11월 17일), 『조선녀성』, 2016년 제12호, p. 6.

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사회적 모성 실천을 독려하거나 보여주는 기사들은 2018년 『조선여성』에도 꾸준히 수록되고 있다.⁹⁵⁾ 예컨대 평범한 여맹원이 친혈육처럼 인민군 군인들을 원호한 사례에 대해 ‘사회주의 대가정’의 미덕이자 ‘아름다운 소행들’이라고 감상문을 적어 보낸 독자의 글이나,⁹⁶⁾ 〈그림 II-7〉과 같이 여맹통신원이 보낸 이야기를 4컷 만화로 표현한 〈한식술〉, 〈친형제〉와 같은 코너는 북한의 젠더정치가 여성들의 일상생활에서 모성을 통한 ‘사회주의 대가정’의 구현을 어떻게 이루어내려고 하는지를 보여준다.

『조선여성』 2015년 3호의 〈한식술〉은 남편의 병치료로 고생하는 인민반원을 위해 여맹원들이 땀감을 모으고 약을 구해주며 도움을 주는 내용이고, 2017년 3호의 〈친형제〉는 화상을 입은 여맹원을 위해 피부이식에 자원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림 II-7〉의 만화 〈친형제〉처럼 ‘고상하고 의리심이 깊은 여성들’의 이야기는 각종 미담으로 재생산되었다.⁹⁷⁾ 이때 여성들은 사회주의대가정에 생기와 활력을 부여하는 생활의 창조자로서 가정을 돌보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는 것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이상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여성들의 출산력 강화로 극복하고, 여성들에게 가족과 자녀 돌봄뿐만 아니라 사회복

95) “어머니의 본분을 자각하고,” 『조선여성』, 2018년 제1호, p. 32; “동지들사이, 이웃들 사이에 서로 돕고 진심으로 위해주는것은 조선여성의 고상한 미풍,” 『조선여성』, 2018년 제4호, p. 30; “어머니의 본분을 다해가며,” 『조선여성』, 2018년 제7호, p. 48; “병사의 어머니들,” 『조선여성』, 2018년 제10호, p. 38.

96) “일심대단결의 화원, 로동당시대에서만 꽃피날수 있는 미덕이다,” 『조선여성』, 2013년 제5호, p. 35.

97) 조선적십자병원에서 일하던 림현단이 8년동안 노력을 기울여 화상을 입은 노동자 처녀의 얼굴을 찾아주었다는 이야기는 미담으로 소개된 바 있다. “녀성들은 당의 호소 따라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로동신문』, 2015.3.8. 참조.

지 체계의 기능 약화로 중단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북한 젠더정치의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확대된 여성의 모성에 기대어, 노동력의 생산 및 재생산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난 이후 발생한 국가권력의 빈틈을 메우려는 전략으로, 김정은 시대 모성신화의 창조라고 명명할 수 있겠다.⁹⁸⁾

98) 페미니즘에서는 모성을 여성의 본성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로 본다. 사라 루덕에 의하면,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자녀를 낳긴 하지만 양육의 운명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성은 역사적 경험의 결과이며, 모성의 실천은 남성도 가능한 것이다. 사라 루덕, “어머니의 사고방식,” 배리 쏘온·매릴린 알롬 편, 권오주·김선영·노영주 옮김,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1), pp. 104~124. 여성에게 사회적 규범으로 작동하는 모성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본질을 모성에 두고, 모든 여성에게 어머니로서 역할할 것을 요구하고 책임을 지운다. 여성과 모성을 동일시하며 신화화하는 모성담론은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규정된 사회적 구성물이다. 슬라미스 파이어스톤 지음, 김예숙 옮김, 『성의 변증법』 (서울: 풀빛, 1983).

〈그림 11-7〉 『조선여성』에 수록된 4컷 만화 “한식술”, “친형제”

* 사회주의도덕과 생활 *
(권속그림이야기)

한 식 술

- 위원군 화장리조급녀맹위원회 녀맹통신원
김춘란동무가 보내온 이야기 -

그림: 김 국



* 사회주의도덕과 생활 *

(그림이야기)

친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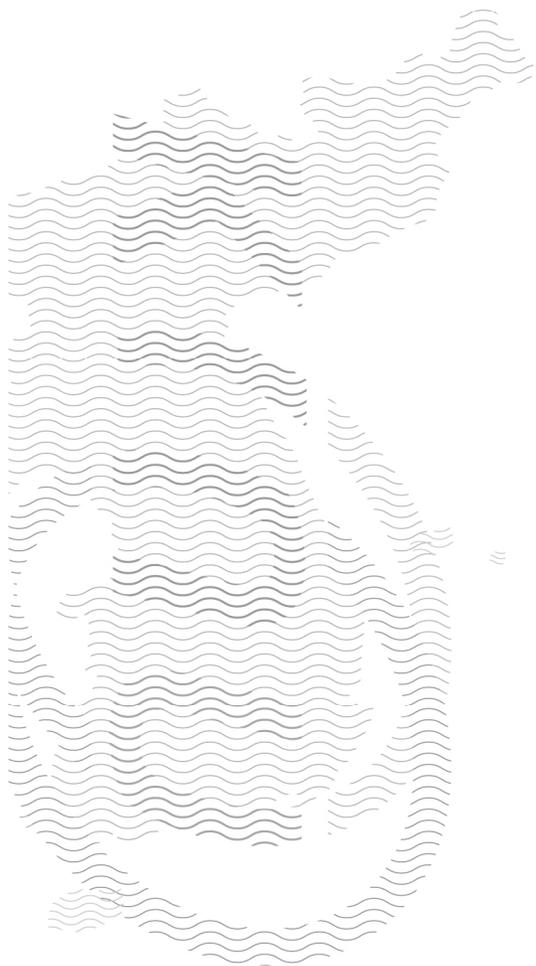
-무산군 창렬로동자구조급녀맹위원회 녀맹통신원 신옥숙동무가 전해온 이야기-

글: 김경숙, 그림: 김명일



자료: 『조선여성』, 2015년 제3호(좌), p. 47; 2017년 제3호(우), p. 43.

III. 북한 여성의 생애사: 계층과 세대의 변주



이 장에서는 최근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여성들의 생애사례를 살펴본다. 북한의 젠더정치는 성장과정과 교육, 노동과 직장생활, 가족관계와 가정생활 등 여성들의 삶 전반을 관통한다. 이는 모든 여성의 삶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계층, 연령, 지역 등 다양한 사회적 범주와 여성들이 처한 구체적인 삶의 조건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계층 및 세대와 교차하는 젠더정치에 주목한다. 여성들의 구체적인 생애사례를 상류층을 대표하는 평양의 대학생과 상층계급 전업주부,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직 여성과 중산계층 여성, 공식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여성, ‘부양’이라 불리는 시장활동을 하는 여성, ‘새 세대’ 청년여성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평양 대학생과 상층계급의 전업주부들

가. 재일동포 집안의 평양 대학생

(1) ‘땀 세상’에서 보낸 어린 시절과 평양 이주

사례 1은 1990년대 초반에 북한의 한 지방 도시에서 재일동포 집안의 3세로 출생했다. 일제 강점기에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갔던 양가 조부모들이 1960년대에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이주한 것이 가족사의 배경이다. 일본에서 태어나 1960년대에 대여섯살의 나이로 부모와 함께 북송선을 탔던 사례 1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1980년대 말 재일동포 집안 사이의 중매로 결혼하여 정착하였다. 1990년 일본에서 온 편지가 가족에게 전달된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 친척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1남 1녀 중 장녀였던 사례 1의 어린 시절에 아버

지는 군부대의 간부였고,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았다.

그냥 자전거 타고 학교 가서 피아노만 배우고, 아빠가 아빠 차, 겨울 같은 경우에는 차타고 집에 오고 이러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보니까 좀 부유한 생활을 했어요. 어려움이 없이 살았구요. 그러다보니까 어린 시절의 추억 하면은... 학교에 오는 애들은 다 잘사는 집 애들이 와요. 네, 피아노. 어차피 집에 피아노가 있어야지 피아노도 하고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잘사는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97년, 고난의 행군이 언제인가? 90년도 그때 굶어죽고 그런 거를 제가 전혀... 제가 라오스에 와서야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가. (중략) 그래서 전혀 판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는 판 세상에서 살았구나.” 할 정도로. (사례 1 구술녹취록, 2019 1차 면담/2)⁹⁹⁾

1990년대 중반부터 수백만 명이 식량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고난의 행군’ 자체를 알지 못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례 1은 중학교에¹⁰⁰⁾ 입학할 무렵인 2003년 가족과 함께 평양으로 이주하였다. 아버지가 간부로 승진하여 군부대의 ‘먹을 알’이 많은 직위에 있었고, 어머니도 종업원이 200여 명이나 되는 평양의 식당 지배인을 하여 사례 1의 가족은 권력과 재력을 갖추게 되었다. 2000년대 초부터 ‘일본의 할아버지’가 조총련계 활동을 하면서 막대한 금액을 북한에 투자하는 등 사실상 사례 1의 가족은 일

99) 사례 1과 2019년에 실시한 면접의 구술녹취록 2페이지에서 발췌했다는 의미이다. 인용문 중간에 생략된 부분은 (중략)으로 표시하였고, [] 안에 서술된 부분은 연구자의 부연설명이다.

100) 이 연구에서 생애사례 속에 등장하는 학교 명칭은 각각의 구술자가 재학할 당시의 명칭으로 표기하였다. 시기에 따라 초등교육기관은 인민학교 또는 소학교로, 중등교육기관은 고등중학교, 중학교, 초급중학교/고급중학교 등으로 불린다.

본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배경으로 평양에 거주하는 상층계급의 일원이 되었다.

(2) 평양대학생 시절의 연애와 통제

남들이 ‘축복받은 집안’이라고 부러워하던 집안의 딸로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 레슨을 받으면서 예술대학을 준비하던 사례 1은 중학교 때 일반대학 진학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중학교 마지막 3년 동안 집에서 영어, 수학, 화학 개별 과외를 받으며 공부하여 2008년 여학생들이 선망하는 평양의 한 대학에 진학하였다. 대학생이 된 사례 1은 평양 소재 각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준비에서 우연히 한 조로 활동하게 된 대학생과 3년 동안 연애하였다. 같은 재일동포 집안의 남학생으로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며 “수영장도 가고 아이스링크장도 가서 스케이트도 타고 말 타러도 가고 그 다음에는 영화도 같이 보고 식당도 가는” 등의 만남을 하였다.¹⁰¹⁾

커플들끼리 많이 놀러가요. 서너 커플들이 차를 하나 렌트해서 바닷가를 놀러가든 산에 놀러가는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주말이라든지 명절 때, 청년절 때, 이런 때. 그러면서 커플이 안 맞으면 재미 없으니까 커플이 없는 애는 저쪽에 다른 대학교 커플한테 “야, 한 명 싱글남자 하나 더 데려와.” 이러면서 커플 맞춰서 놀러가고 이렇게도 하거든요. 거의 대학생들은 “남자친구 없어.” 하면 “저거 어딘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생 때는 재미로라도 되게 많이 친해요. (사례 1 구술녹취록, 2019 1차 면담/14)

101) 사례 14는 이런 연애의 형식은 “한국과 똑같다.”고 평가하였다.

위의 구술에 의하면 2010년대 평양 거주 대학생들 사이에 연애는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남자들이 연애 과정을 주도하며, 밥값 등의 비용도 여자보다는 ‘항상’ 더 많이 내는 편이다. 여전히 부모들에 의한 중매결혼이 일반적인 북한 사회에서 대학생들 사이의 연애가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능력이 우수하고 가족의 경제력과 정치력이 검증된 ‘평양 대학생들’이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대학 생활 중 토대가 훌륭하고 능력도 있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사례 1은 대학시절 연애를 하면서 “첫 키스의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다. 사건 지 3개월 무렵 손도 잡고 포옹도 하던 두 사람이 모란봉 쪽을 걸으며 데이트를 하다가 을밀대에서 첫 키스를 하던 중 보안원의 제지를 받고 ‘비판서’를 쓰게 되었던 것이다.

그 을밀대에서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입만 딱 부딪히는 순간에 뒤에서 “동무”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소스라쳐서 돌아봤는데 안전원... 안전원이 “이 동무들이 말이야, 뭐야 이거? 이런 성스러운 곳에서.” 하면서. 여기는 저는 OO대학 배지 달고 거기는 OO대학 대학생 배지를 달고 있는데, “대학생 것들이” 하면서 막 욕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려가자 해서 그 중구역 보안서로 끌려 내려갔어요. (중략) 그래서 100불을 주고 반성문 다 찢고 살아난 거예요. (사례 1 구술녹취록, 2019 1차 면담/28)

사례 1은 위의 구술과정에서 ‘키스 때문에 대학에서 쫓겨날 뻔한 상황’에서 평평 울었던 당시의 ‘충격과 공포’를 토로하였다. 위의 사건은 사례 1에게 연애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뻔했던 일이었으며, 이로 인해 정서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신과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던 달리를 모아서 조사하던 안전원에게 ‘고이고’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반성문을 찢어버림으로써 정치적 생명을 되살렸다. 이처럼 대학생들 사이에 광범하게 일반화된 연애와 달리 사회적 규범은 여전히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적인 행동을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일상생활과 공식적인 방침 사이의 ‘괴리’는 ‘권력’을 부릴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고, 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방침과 상관없이 활동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평백성’들은 규제와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는 셈이다.

3년 동안 연애했던 남자친구가 졸업과 동시에 교수로 선발된 후 해외유학을 가게 되자 두 사람은 헤어졌다. 당에서 발탁하여 5년 동안 유학을 보낸 경우로, 그 동안 두 사람이 서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이후 사례 1은 다른 남학생들의 구애를 받는 등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였다.

(3) 졸업 후 군 입대와 인생 계획

2000년부터 여성들도 당원인 경우에만 간부직 직장 배치를 하라는 당 방침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여학생 중 다수가 빨리 당원이 되기 위해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대졸 여성들의 평균 결혼 연령이 30대 초반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사례 1은 말한다. 사례 1은 휴양 차 고향을 방문했을 때 24~25세인 고향 친구들이 모두 결혼한 상태라서 깜짝 놀랐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여성들의 결혼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탓이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정상적인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많은 여성들이 직장 대신 결혼하여 부양가족이 된 후 장사하는 길을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사례 1도 2014년 대학을 졸업한 후 군 입대를 계획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당원이 돼서 오면은 그나마 괜찮은 직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옥류관, 청류관, 평양시에 있는 각 상업부문으로 다 갈 수가 있는 거야. 고려호텔, 평양호텔, 물고기상점, 각 상업부문으로 다 가는데,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잘 활성화되고 있는 공장이거든요. 거기서 월급은 둘 다 똑같이 0.5볼 정도의 돈이 나오지만 그 외에 플러스알파가 굉장히 큰 거죠. (사례 1 구술녹취록, 2019 1차 면담/19)

위의 구술에 의하면, 사례 1의 모교를 졸업하고 당원이 되는 경우, 사회 엘리트 집단의 일원으로서 북한 경제의 주요부문에 배치를 받아 넉넉히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월급 외에 비공식적인 혜택을 의미하는 ‘먹을 알’이 많은 옥류관 등으로 배치되는 경우 하루 판매량 이외에 빠져나오는 표 한 장이 5~6볼로 압거래되고, 식당으로 들어오는 온갖 부식물 중 일부가 개인들에게 나눠져서 “냉동고에 고기들이 뒤굴뒤굴, 메추리알이 뒤굴 뒤굴 썩어갓고 살고” 있을 정도의 삶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사례 1은 여군 장교로 입대하기를 희망했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가려고 했어요. 여군 장교로 가려고 하다가... 아빠가 계셨으면 밀리는 일은 없었을텐데. 항일혁명자녀, 빨치산투사자녀, 뭐 이런 자녀가 있었어요. 그 여자한테, 제가 가려고 하던 곳에 개가 가고 제가 밀려났어요. 거기서 그래서 일단 군대 가는 것도 돈이 거의 한 만 불씩 주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보니까 돈을 받은 사람은 일단 저를 못 보내고 돈을...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데 자리가 나면.” 4년마다 계속 제대되고 새로 들어오고 제대되고 새로 들어오고 하는 자리거든요, 저희가 여군 장교로 나

가는 자리는. (사례 1 구술녹취록, 2019 1차 면담/3)

위의 구술처럼 장교로 입대하기 위해 사례 1은 당시 1만 달러라는 큰돈을 ‘고였으나’, 토대가 좋고 권력이 있던 다른 여성에게 밀려나게 된 것이다. 특히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귀족자 집안이지만 군부대 내의 고위직에 있던 아버지가 2010년 사망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도 했다. 사례 1로서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권력’ 부재로 인한 ‘상처’를 경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례 1의 경험에 의하면, 똑똑하고 토대와 경제력이 입증된 ‘엘리트’들이 전국에서 모인 평양시 소재 대학의 졸업생들의 경우, 절대다수인 60~70%는 연애결혼을 하고 있다. 반면 당과 군대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소수의 최상층 집안들은 여전히 소개에 의해 중매결혼을 한다.

한 30~40%가 중매결혼인데, 중매결혼인 거는 대부분 부모들끼리 알면서 이미 다 결정을 지어놓고 잘사는 사람끼리는 잘사는 사람끼리,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끼리 다 살거든요, 북한도. 그러니까 아빠들이... 저희 친구 같은 경우도, 운이 좋게 개는 대학 때 당원이 됐어요. 수도건설이라는 걸 저희가 2년 하면서 화선입당이라는 걸 시켰어요. 돈 많이 내는 애들 시키는 거거든요. 한 20만 불씩 냈어요. 그런 애들 저희 학교 애들 세 명이 입당을 했는데, 그런데 개네들은 5년이란 시간을 벌은 거잖아요. 네, 그러다보니까 그 아빠가 군대은행 총재였는데, 군부대은행. 자기 밑에 푹푹한 남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직원으로. 그러니까 탁 눈여겨보다가 요거는 내가 사위를 해야 되겠다. 점찍어 놓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개는 바로 시집갔어요. 시집가서 같이 마카오로 나갔어요. 남편 따라서 외국으로. (사례 1 구술녹취록, 2019 1차 면담/21~22)

위의 구술은 북한에서 선망하는 최상층 여성으로서의 삶을 그리고 있다. 사례 1은 대학 재학 중 ‘화선 입당’한 여성이 졸업과 동시에 집안의 중매로 결혼하여 함께 해외로 나간 구체적인 사례를 옆에서 지켜본 것이다. 이것은 북한 사회 내에서 중매결혼을 통해 권력과 재력을 대물림하는 상층계급의 재생산 과정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남성(아버지, 남편)의 정치적 권력이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당과 군대의 주요 권력을 가진 자리가 비공식적인 재력을 보장하는 구조이므로, 이 경우 남성의 직장이 온 가족을 실질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되는 것이다. 사례 1의 경우 막강한 재력을 가진 귀족자 집안이지만 고위직에 있던 아버지가 사망함으로써 사실상 북한 사회 내 권력을 상실한 셈이었다.

(4) 탈북과 한국에서의 생활

사례 1은 계획했던 군대 입대에 실패하고 6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2014년 말, 외할머니가 탈북하다가 체포되어 한 달간 구금 생활을 하였다. 풀려난 할머니가 사례 1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가족들에게 ‘일본으로 갈 것’을 강력하게 권유하였다.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북한 사회 내에서 정치적 권력이 없어진 것을 실감한 할머니는 자신의 ‘고향’인 일본으로 탈출할 것을 결심한 것이었다. 1990년대 일본 친척들이 보내오는 물품과 사진, 그리고 ‘한국 드라마’ 등을 통해 ‘다른 세계’의 모습을 경험했던 구술자는 직접 일본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어, 2015년에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1년 뒤 어머니와 남동생이 탈북하면서 함께 서울에 정착하였다. 사례 1은 현재 일본 친척들의 경제적 지원 속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

나. 평양과 혜산의 ‘전업주부들’

(1)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 남자와 결혼한 여성

사례 14는 1970년대 말 평양에서 1남 2녀 중 막내로 출생했다. 아버지는 지방 출신으로, 1960년대 말에 군예술단원으로 발탁되어 평양으로 이주한 전통예술 전수자였다. 그런데 1980년 아버지가 ‘사건’에 연루되어 군복을 벗고 한 지방 도시의 일반예술단으로 배치되었다. 평양에서 지방 도시로 이주한 가족들은 식료공장 지배인이던 외할머니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생활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례 14는 인민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며 초급단체위원장과 학급반장을 하고, 중앙사로청 표창을 받는 등 활발히 생활하였다. 1990년대 초, 언니가 평양의 대학에 입학한 뒤 오빠도 평양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자, 사례 14는 처음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다. 난생 처음 평양역에 내리자 버스가 다니고 전기가 휘황찬란한 모습에 충격을 받고 “나는 꼭 평양에서 살테다.”라는 생각을 했다(사례 14 구술녹취록, 2017/6~8).

1990년대 중반에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서 평양의 한 대학에 진학하고자 했으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던 상황에서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집안의 소개로 자신이 살고 있던 도시의 직장에서 사로청위원회에서 일하며 평양 OO촬영소 시험에 응시하는 등 평양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이후 사례 14는 결국 통신과정으로 평양의 한 대학을 졸업하였다. 이 시기 사례 14의 생애이야기는 평양의 대학에 가기 위해 시험에 응시했다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결국 부모님이 있던 지방 도시에 머물게 된 과정으로 구성된다.

20대 중반이었던 2003년에 사례 14는 친구의 소개로 평양에 올라가 선을 보고 20일 만에 군부대 기업소의 사장인 남성과 결혼하였

다. 당시 남편은 30대 초반으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버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군부대 소속의 남성이므로 결혼하는 경우 배우자가 평양으로 이주할 수 있는 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결혼의 배경이 되었다(사례 14, 구술녹취록, 2017/16). ‘평양’에 살고 싶어 했던 사례 14의 소원이 이루어진 셈이었다.

남편과 직장 동료들이 준비한 결혼식장에서 결혼한 사례 14는 먼저 결혼하여 평양 모란봉 구역의 새 아파트에 살고 있던 언니 집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사례 14의 부부는 결혼 후 아들을 출산하고 일년 만에 회사에서 마련해 준 평양 시내의 새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2) 성악을 전공한 헤산의 부양 여성

1980년대 초반 접경 지역의 대도시에서 3남 1녀 중 막내딸로 태어난 사례 17은 “어린 시절부터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잘 살았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구술자료에 의하면, 사례 17의 아버지는 기업소 지배원이었고, 어머니는 상점 판매원이었다. 사례 17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들과의 관계보다는 주로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손퐁금을 배우는 등의 생활을 하다가 중학교 때 음악전공으로 선발되었다. 공부보다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중학교 생활을 하던 사례 17은 선생님의 추천으로 예술대학에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1990년대 말에 대학에 입학한 사례 17은 성악을 전공한 예술인이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학 3학년 때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부양’ 가족이 되었다. 일곱 살 연상인 남편은 항일혁명투사 집안의 외아들로, 대학을 졸업하고 무역회사의 판매소장으로 일했다. “불같은 성격으

로 완전히 남자다운 성격이고 아무 일이나 못하는 게 없는” 남편은 돈을 잘 버는 회사생활을 하고, 사례 14는 결혼 직후부터 시댁에 들어가 십여 년간 시어머니 병구완을 하며 지냈다.

(3) 상층계급 ‘전업주부’의 역할과 일상생활

북한에서 결혼한 여성들은 국가기업소에 나가지 않고 ‘부양’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된 여성들의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인민반 활동을 해야 하지만, 경제력이 있으면 일정한 금액을 미리 내고 동원을 면제 받는다고 한다.

그거는 인민반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다 돈이에요, 그냥. 북한은 다 그 인력을 공짜로 쓰잖아요. 위대한 수령님 뭐 어떻고 이렇게 다 정치적으로 걸어가지고 무조건 다 이렇게 하는데. (중략) 내가 못할 거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돈 줘요. 인민반에다 돈 내면은 인민반에서 그 돈을 걷어가지고는 그 돈을 갈 수 있는 사람한테 주면은 그 사람 또 앉아 그 돈을 까요. 그 돈을 까서는 또 바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대체로 동원 같은 거랑 빠지면 한 번에 얼마라는 돈을 내면 돼요. 그리고 그제 싫으면 “나 1년에 얼마를 낼게, 나를 좀 찾지도 마.” 이렇게 하고서 1년 동안 돈을 내고 이렇게 하면은 집에 와서 문 안 두드려요. (사례 17 구술녹취록, 2019/19)

위에서 설명하는 인민반 활동은 북한 사회에서 부양가족이 된 ‘여성 노동력’을 동원하는 주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 14와 사례 17은 결혼 후 부양가족으로 생활하면서 돈을 내고 인민반의 동원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치 사업의 일환으로 동상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자갈 깔기 사업에 참여하는 대신,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돈을 내고 ‘집안 일’을 하였다. 남편이 주는 돈을 받아서 가사노동을 하며 남편을 ‘봉양’하고, 자식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다.

남편이 퇴근할 때 **딱** 집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남편이 들어오면 남편이 세수하고 씻는 동안에는 상을 **딱** 차려서 밥 준비를 **딱 헤드려야** 되거든요. 밥 준비 **딱** 하고 남편이 식사하면 그걸 **딱** 내가고. 그 다음에 뭐… 우린 정전이 자주 되니까. 남편들이 좀 힘들잖아요, 아침에. 집에 들어오면 힘들다 그래요. 어쨌든 일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럼 청소 **쫌** 하고 이불자리를 뭐 어쨌든 정돈, 그 준비 **딱** 하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면 남편은 그저 집에 들어와 세수하고 옷만 **딱** 벗고, 옷도 자기가 벗어놓으면 여자들이 정돈해주고. 자기는 밥 먹으면 그저 그 이부자리 흘랑 들어가서 자고. 그저 그렇게, 그 시간에 집에 들어오면. 우린 또 나갈 때 신발까지 다 닦아서 남편이 신게 **딱** 신발을 바로 앞에 놔주거든요. 그러면 양말까지 다 갖다드려요, 우리는. 옷부터 양말까지 이렇게 다 갖다 드리면 [입고 간다]. (사례 14 구술녹취록, 2019/7)¹⁰²⁾

위의 텍스트는 2000년대 중반에 2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한 사례 14가 기술한 아내의 활동이다. 남편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이전부터 식사준비와 집안청소 등을 하고, 남편이 들어와서 다음 날 출근할 때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고 있다. “딱 딱 딱”으로 강조되고 있는 아내로서의 자기 활동은 이미 정해진 규범에 따라 ‘완벽하게 준비된’ 반복적인 활동임을 시사한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마치 시중을 드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암묵적인 긴장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어지는 구술에서 사례 14는 북한에서 생활할 때는 “남편이 신경 쓰면 여자는 무조건 “네 잘못했

102) 굵은 글씨체로 밑줄친 부분은 연구자가 강조한 것이다.

습니다. 고치겠습니다.”라고 하며 빌어야 했다.”고 한다. 남편이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소리를 치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고”, “자기가 잘못된 거 없어도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분위기 속에서 “대답질”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다(사례 14 구술녹취록, 2019/9). 사례 14와 사례 17의 경험에 의하면, 남편이 높은 지위의 당 간부거나 힘이 있는 기업소에 다니며 상층계급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대부분의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암묵적인 아내의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부부 사이의 대화 도중 “강반석 어머니, 김정숙 장군을 따라 배우라.”는 남편의 말은 북한 사회에서 남편을 충실하게 보좌하고 목숨으로 받들어야 하는 아내의 태도를 환기시키는 것이다.¹⁰³⁾

북한에서 자식 교육은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다. 북한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상층계급의 부양 여성들은 남편이 제공하는 충분한 돈으로 자식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고위 당직에 배치되는 성공적인 인생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예를 들어 최근 유행인 피아노를 배우거나, 중학교 진학에 필요한 주요 과목의 능력 있는 선생님을 찾아서 과외를 조직하고, 희망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유리한 정보를 수집하여 ‘작업’을 한다. 사례 1의 경우처럼 평양과 대도시의 주요 대학을 졸업하고 고위당직이나 해외근무가 가능한 곳에 배치되기 위해 ‘트럭 한 대 값’ 혹은 ‘수만 달러’의 돈이 필요할 때도 있다. 상층 가족에서는 가사노동을 대신하는 ‘아줌마’나 ‘언니’를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있다.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친척’이라고 하고 집에 함께 머물며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냥 아줌마면 “아주머니” 이렇게 하고, 뭐 언니면 언니, 동생이

103) 전영선, 『북한에서 여자로서 산다는 것』 (서울: 경진출판, 2016), p. 6.

면 동생이고. 그저 한 달에 지방 같은 거는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인민비 200원, 평균 그저 200원을 주면 해요. 빨래부터 집 다 거둬 주고 밥 다 해주고 장 다 봐주고 하는 게. (중략) 저는 그냥 열아홉 살짜리 애를 썼는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먼 친척이 된다든가 어쨌든 좀 관계있는 사람, 집에다 뒤서 불편하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집에서 같이 있죠. 집집마다 달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집이 아홉칸이 돼가지고 잘 데도 많고 하니까. (사례 17 구술녹취록, 2019/24)

위에서 설명하는 아줌마와 주인의 관계는 1970~80년대 한국 사회의 '숙식하는 식모'와 유사한 상황을 보여준다. '파출부'와 같이 시간을 정해두고 오가며 일을 하거나, 돈을 받고 빨래를 수거하여 배달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례 14는 2010년 당시 평양에서는 이와 같은 노동에 월 30불 정도의 돈을 지불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남편 봉양, 자녀 양육과 교육에 전념하는 사례 14와 사례 17의 경험에 의하면 북한 상층계급 부양여성들의 역할은 한국 사회의 고학력 전업주부와 유사한 점이 많다. 사회주의 혁명으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보장되었다고 선전하는 21세기 북한 상층계급의 가족관계가 '사회주의 대가정'의 가부장적 규범에 따르고 있는 동시에 시장화의 영향으로 인민반 활동과 가사노동이 상품화 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사례 14와 사례 17은 남편들이 북한 내의 정치적 숙청 혹은 비법 활동의 발각으로 인해 '정치적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탈북하였다. 두 가족 모두 자신들이 정치적 처벌을 받을 경우 자식들의 미래가 없다는 점이 한국 이주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2. 의대 지망생과 ‘교육 혁명가’를 꿈꾸던 전문직 여성

가. 의대에 합격한 대대장의 딸

(1) 군대 율타리 안에서 지냈던 어린 시절

사례 13은 1990년대 후반 함경남도 지역에서 1남 1녀 중 장녀로 출생했다. 당시 아버지는 10년 군복무를 마친 뒤 군관학교에서 “별을 달고” 군대 간부로 근무하였고, 어머니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군부대의 회계 관련 일을 했다.

사례 13은 만 18세가 될 때까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포함한 다섯 명의 가족과 함께 장교사택에서 생활하였다. 군부대 율타리 내에서 군대의 일상적인 생활총화, 부업반 활동 등 조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부대에서도 엄마들이랑 보면, 주에 한 두 번 모여서 생활총화 그 비슷한 거 하고, 그 다음 당에서 뭐 이렇게 신문이랑 사설이랑 나오면 그걸 암송시키고, 그리고 일을 해요. 부업반이라고 있는데 농사 대대 그 아저씨들, 군대아저씨들 이렇게 부업이랑 남새랑 채소, 채소 그런 거랑 심어가지고 가을김장이요, 강냉이 옥수수랑 심어가지고 사료나 배급이나 이런 거 본인들이 하고 그러니까 장사를 못해요. 일단 시간 없어 장사를 못하고, 대대에서 장사도 못하게 하고.
(사례 13 구술녹취록, 2019/3)

위의 묘사에 따르며 군부대에서는 텃밭 등을 활용한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식자재를 조달하면서 고난의 행군 이후 사회에서 광범하게 이루어지던 장사활동은 ‘공식적으로’ 금지하였다. 율타리 안의 군부대는 ‘사회’와 격리된 공간이었고, 여기서 생활하는 군인가

족들 또한 동일한 일상규범을 지키며 생활했다.

사례 13의 기억에 의하면 2000년대 초반 당시 군인들에게 하루 750그램, 가족들에게는 450그램 정도의 배급이 이루어졌으나, 운송도중의 감소분 등 때문에 이보다 훨씬 적은 양의 배급이 이루어졌다. 실질적인 식량부족을 겪은 것이다.

군대에서 힘들잖아요. 북한은 10년인데, 뇌물을 고이고 뭐 그냥 그렇게 뇌물을 받으면서 그 나머지를 충족시켜요. 그러니까 돈을 가라앉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직업이 어떤 거 쥐는가에 따라서 같은 부대 안에서도, 대대 안에서도 직업을 어떤 거 쥐는가에 따라서 그 돈을 좀 쓰고 안 쓰다가 달려 있어요. (중략) 후방 그런... 후방이 그러니까 식량, 피복 뭐 다 쥐고 있어요. 배급 이랑 주는 게 다 후방부에서 하는데, 그 직업을 준 사람은 그냥 그 집은 좀 살아요. (사례 13 구술녹취록, 2019/3)

장교들의 경우 일반 사병들이 고이는 뇌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배급을 담당하는 후방부의 경우 담당하는 물자를 일부 나눠 갖는 등의 비공식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중대 및 대대급 장교와 가족들의 경우 일반 사병이나 금방 별을 달고 나온 군관보다 훨씬 여유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사례 13의 가족들도 대대급 사택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장교였던 사례 13의 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군장교로 생활하여 사례 13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같이 놀아본 기억이 없다. 아버지는 “되게 무섭고 정이 없는 사람”으로 기억된 반면, 어머니는 학부형 총회, 등산이나 운동회 등의 행사에 참석하였고, 사례 13의 “인생진료”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하는 방식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

였다고 한다. 사례 13은 군부대 율타리 내에서 엄격한 아버지의 생활통제를 받으며 10여 분 거리에 있던 학교를 오갈 때만 “사회사람”을 만났다고 한다.

[오후] 5~6시면 집에 와서, 전기가 안 왔는데 북한은, 전기가 안 오니까 그냥 배터리 가지고, 아빠가 좀 직업 있었으니까 배터리도 부대 거 내려다봐요. 차 배터리 크다만 거 그냥 내려다보고, 올려 갔다 다른 거 보고 이러는데, TV는 보는데, TV 북한 영화 아니면 소련 영화, 중국 영화밖에 안 봐요. 한국 영화 못 봐요. 그냥 그거 보고, 친구 애들도 못 들어와요, 저희 집에. 대대라서. 친구 애들... 보초소를 딱 통과해서 들어오니까 친구 애들도 못 들어오고, 제가 가끔씩 나가 노는데 아빠엄마가 딱 시간 정해줘요. 언제까지 딱 놓고 오라 하게 되면 진짜 그때까지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빠가 아저씨들 데리러 보내요, 그 집에. 그래서 같이 가요, 그냥 잡혀가지고. 막 마음은 진짜 중학교 때랑 놀고 싶은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한 10분, 15분 이렇게 가까웠어요. 대대에서 가까웠으니까 바로 데리러 와가지고 가고. 애들끼리 모여 놀다가도 아빠가 데리러 오면 저는 무조건 와요. 개들끼리 놀고. 그런데 되게 놀고 싶은데 부모님이 통제했어요. 그 사회 애들하고 접하면 나쁜 물이 든다고. (사례 13 구술녹취록, 2019/4)

위의 구술에 의하면 대대장이었던 아버지의 권력으로 다른 집에는 부족한 전기를 끌어올 수는 있었으나, 북한 영화나 소련, 중국 영화 밖에 볼 수 없도록 통제가 있었다. 즉 2000년대부터 북한 사회에서 유행하던 한국 영화를 부모들이 철저히 통제했고, 군부대 내에서는 수시로 검열이 이루어지므로 “USB를 건사 못해서” 집에서 한국영화를 볼 기회를 갖지 못했다. 사례 13은 특별한 일이 있어도 저녁 8시 이후에는 집 밖을 나가지 못했고, 학교의 친구들도 부대 내로

들어올 수 없어서 대부분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생활하는 등 또래집단과의 접촉이 제한되었다. 특히 “사회 애들하고 접하면 나쁜 물이 든다.”는 군 장교집안의 규범에 따라 생활했다. 선군정치의 핵심인 군 장교집안의 구성원들은 부족하지만 여전히 국가의 배급을 받았으며 군대 내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된 물자로 생활하는 등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장마당 경제가 확산되고 있던 ‘일반 사회’와 분리된 채 생활하였던 것이다.

(2) 학교의 규율과 저변의 한국 문화

사례 13의 중학교 시절,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옷차림과 머리 길이를 단속하고, 학생들 사이의 연애를 금지하는 등의 규율이 있었다.

학교생활은... 조직생활 너무 싫었어요. 4.15, 2월 16일 진짜 머리까지 다 저거해요, 머리까지. 이렇게 다 풍지는 것도 저희 소학교 때 단속했는데, 그냥 풍지는 거 지금 괜찮은가? 꽤 따지 않으면 머리를 이렇게 자르라 해요, 귀 밑에까지 딱. 여기에 어깨 닿지 않게. 머리 자르고, 바지도 청바지랑 못 입고 다녀요. 청바지 저 혜산에서 처음 봤어요. (중략) 학교 때 청바지도 못 입고 다니고. 무주름, 무주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팔에 무주름도 못 입고 딱 주름 세운 바지에다가, 여름엔 딱 치마를 입고 다녀야 되고. 한 겨울에도 치마를 입게 해요. 겨울에 12월 중순부터는 바지를 입게 해요. 그런데 딱 주름 세운 바지만. 몸의 윤곽선이 다 드러나는 바지는 또 못 입게 해요. 되게 신발도 막 편리화를 신게 하고 구두를 신지 못하게 하고, 화장은 더 말할 게 없고, 단속 되게 심하게 했어요. 규찰대 딱 세워 가지고 정문 앞에서 딱 체크 쳐가지고 들여보내고. 그 다음 좀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애들은 이름 다 적어가지고 제재를 줘요. 처벌을 주고. 뭐 학교 전교 300명이 모인 앞에서 망신을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 그래요. (사례 13 구술녹취록, 2019/19)

사례 13은 위의 구술에서 여학생들의 머리 모양과 길이를 단속하고, 가능하면 치마나 몸이 드러나지 않는 ‘무성적인’ 바지를 입도록 하는가 하면, 화장과 구두 착용 등을 금지하는 등 학생들의 몸과 정신을 훈육하는 학교의 오래된 규범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당시 북한의 중학교에서 통용되던 규율은 ‘자본주의 날라리 풍’을 단속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규범이지만, 인신에 대한 구속이라는 점에서 봉건적이고,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점에서 성차별적인 특성을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사례 13이 군대 바깥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는 학교에 가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정확히 말하면 학교와 군대의 ‘사이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 13은 적당한 수업시간에 빠져서 가까운 애들 집에 가서 놀기도 하는 등의 기회를 통해 처음 “한국 노래”를 들었다고 한다.

제가 거기서 처음 총련애들 노래라고 들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한국 노래예요. 일본에서 들어와... 그냥 경기장에서 춤이랑 추는 거 있는데, 알판 한창 돌 때 CD알, 그걸로. “야, 우리 집에 알 완전 신기한 게 있어.” 수업시간에 좀 재미없는 수업이, 아니면 그냥 빠져도 될 수업이면, 쌤 그냥 눈감아줄 선생이면 그냥 빠져서 개네 집에서 “야, 보자보자.” 애들 막 데리고 가요. 가서 문 걸고 보고, 이려고, 되게 신기하고, 노래가. 좀 북한 노래는 박력 있고 이렇게 깨끗한데, **생활적인 노래**도 나오고 되게 막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그냥 따라 듣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한국 노래예요. (사례 13 구술녹취록, 2019/5)

위의 구술에 의하면 사례 13이 중학교를 다니던 2000년 중반에 북한 학생들은 한국 노래를 일본 조총련에서 들여온 노래라고 하며 몰래 접했다. 사례 13은 졸업식 준비나 농촌동원을 한 달씩 나가게

될 때, 공식적인 자유 시간을 가지며 집안의 통제 없이 친구들과 함께 한국 문화와 놀이를 즐겼다.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한국 노래를 “꽁꽁 닫아걸고” 듣고, “증폭기를 켜놓고 아이들이 모여서 그냥 춤만 추고 노는” 생활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사례 13은 당시 들었던 한국 노래를 “생활노래”라고 표현하였다. ‘생활적인 노래’의 가사를 통해, 북한 사회에서는 “여자는 어디까지나 고백을 받지 고백할 수 없다.”는 생각이 박혀 있는 반면, 한국 노래에는 “야, 너 좋아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짐작하였다고 한다.

생활노래. 되게 가고 싶고... 북한은 그걸 표현을 못해요. 예를 들어 누구를 좋아한다면 그걸 표현하는 데 한국은 “야, 너 좋아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유니까. 그런데 그걸 되게, 뭐랄까 여자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고백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여자는 어디까지는 고백을 받지 고백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종이에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내가 재를 좋아하는데 말할 수도 없고, 좀 자유가 없어요, 보니까. 여기하고 대비해 보면 자유가 없어요. (사례 13 구술녹취록, 2019/5)

사춘기였던 사례 13은 한국 노래의 가사를 음미하며 그 속에 녹아 있는 사랑에 대한 관념을 북한 사회의 그것과 비교하며 사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의 부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텍스트에 등장하는 “여기하고 대비해 보면 자유가 없어요.”라는 판단은 그 이전의 경험을 현재 한국에서의 생활을 바탕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사례 13은 여자들의 경우 짝사랑을 넘어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서로 사귀다가도 부모들이 중매하여 “너 자네 가문이랑 살아야 된다면, 그냥 좋아해도 갈라지는 룰이 많은” 북한과 달리, 개인의 결정이 중요한 ‘바깥세계’

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유일하게 의학대학에 합격한 졸업생

사례 13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인 2000년대 중반에, 도 내의 한 대도시에 있는 의학대학에 가기를 희망하였다.

우리 [북한] 학교는 되게 [뇌물이] 많아요. 뇌물을 고이고 최우등을 하고 표창장 받고 그 학교 간부랑 하잖아요. 사로청위원장 뭐 이런 거랑 하면 다가, 다 돈 있고 좀 간부 집 자식에…. 공부하는 사람들, 되게 가정이 못 살아서 그런 거 같아요. 그냥 부모들 열성도 많고 하면 그런 간부를 시켜요. 앞으로 문건이 그게 남으니까, 문건이 중요하니까 간부를 시켜요. (사례 13 구술녹취록, 2019/19)

위의 구술에 의하면, 중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에 갈 수 있는 조건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능력만이 아니라 부모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이기도 하다. 북한에서 대학 입시는 예비시험과 본고사를 거치는데, 예비시험 성적, 가정배경 등의 기준에 따라 ‘뽀트’라 불리는 대학별 본고사 추천권을 받은 학생만 본고사에 지원할 수 있다. 사례 13은 각 학교에 배당된 대학 진학 ‘뽀트’가 “보기 좋게 생활환경과 자란 환경”을 엮을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집 자녀들을 중심으로 배당되었다고 구술한다(사례 13 구술녹취록, 2019/20~21).

당시 사례 13이 다니던 중학교에서 대학 가기를 희망한 학생 네 명 중 세 명이 의학대학을 지망했으나 결국 사례 13이 “끝까지 뽀트서” 합격하고, 나머지 한 명은 교원대학, 다른 한 명은 청년동맹 양성기관으로 진학하였다. 한 학교에 의학대학 ‘뽀트’가 한 개밖에 없었으므로 부모들이 합의하여 결정하였다고 한다. 당시 대대장이었던 사례 13의 아버지 권력과 집안의 재력이 의학대학 합격에 결정적

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례 13은 4년 후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한 후 ‘좋은 곳’에 배치되기를 희망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가면 3년제인데, 거기서 입당을 시켜… 입당을 해가지고 간부를 바로 할 수 있어요. 남들처럼 10년을 안 하잖아요. 10년을 하고 대학 4년 가면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 사람들은 대학 4년제 다니고 3년을 대학을, 저 군복무하면 7년을 [다니니까] 절반은 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해요, 돈 있고 좀 힘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아빠가 힘 있고 엄마가 힘 있고 하면 배치도 또 좋은데 돼요. (사례 13 구술녹취록, 2019/28)

위의 구술에 따르면, 대학 진학은 힘든 군복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동시에 좋은 직장으로 배치되어 엘리트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조건이다. 졸업 후 최소한의 군복무를 한 경우 당원 자격과 동시에 편하고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장 배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 다니는 동안 생활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회 중간계급 이상의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킨다. 사례 13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생각하기도 했다.

그때 ○○의대 졸업하면, ○○의대도 4년짜리 있고, 치과라는 거 있는데, 여기 치위생과 4년이에요, 거기는. 4년에, 대학 과마다 달라요. 외과 같은 데는 6년 6개월이에요. 거기 가면은 정형… 정형외과라고 있는데, 거기는 해외도 나갈 수 있어요. 유일하게 해외 나갈 수 있는 게 병원 아니면 외교단이나 이런 데. 외교는 완전 그런 데고. 해외 나가려면 정형외과 같은 데 나가면 그냥. 그냥 거기까지 생각했어요. (중략) 그냥 여기서 말하면 그 흠집이랑 안 나게

이렇게 방사선이랑 아마 그런가 봐요.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런 데, 북한에서 그 병원 되게 알아주거든요.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중앙 당간부들도 와서 치료받는 데인데, 그 좀 기술이 발전하고 직업도 깨끗하고 뭐. (사례 13 구술녹취록, 2019/33)

사례 13은 의과대학에 입학한 후 “기술도 발전하고 직업도 깨끗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정형외과를 선택하여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미래를 꿈꾸었다. 흥미로운 점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보장된 직업이 사회적 전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주민에게 해외 생활은 북한 사회를 벗어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 질 높은 생활을 누리며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해외 파견자’에 대한 사회적 통제에 걸려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사례 13은 대대장의 딸로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북한 사회의 상층계급으로 살아갈 미래를 계획한 것이다.

(4) 아버지의 퇴직과 탈북

2010년대 중반에 대대장이던 아버지가 부대에서 발생한 ‘총기남용사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강제퇴직 당했다. 사례 13의 가족은 아버지의 퇴직과 동시에 20여년 살았던 군부대 내의 사택을 반납하고, 빈 몸으로 ‘사회’에 나오게 되었다. 외가와 친가의 권력을 동원하여 아버지가 처벌 받는 것은 막았으나, 평생의 생활 기반이자 정치적 생명이었던 군대 내 지위를 잃은 것이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의과대학 합격증을 받았던 사례 13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2015년 가족들과 함께 외가가 있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 사촌들의 도움을 받

아 장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 국경으로 갔던 부모님이 밀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송 도중 아버지가 극적으로 탈출하여 중국의 친척 집으로 갔다가, 이미 6형제 중 5형제의 가족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던 사촌들의 권유로 한국에 입국했다.

사례 13은 부모님이 갑자기 사라진 3개월 동안 동생과 함께 아는 언니의 장사를 도우며 간신히 연명하였다. 이후 한국으로 간 아버지의 연락과 지원을 받으며 3년을 준비하여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사례 13은 현재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다니며 간호대학 입학 준비하고 있다. 이 사례는 북한군 장교 집안이 국가의 처벌을 받으며 사회적 추락을 하게 되자 결국 탈북한 경우이다. 아버지의 퇴직과 탈북은 대학 진학을 앞두었던 사례 13의 삶에서 생애사적 전환이 되었다. 사례 13은 탈북하고 나서야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자신의 북한 생활을 평가하였다. 이 여성의 사례를 통해 군대 장교 가족들의 분리된 생활세계를 짐작할 수 있다.

나. ‘교육혁명가’를 꿈꾸던 엘리트 교사

(1) ‘바퀴 굴리는 집안’의 착한 둘째 딸

사례 21은 1970년대 말 양강도 지역에서 4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운전수였고, 어머니는 부양으로 인민위원회의 사무일을 맡아하였다. 모두 두 살 터울의 네 딸을 둔 어머니는 한편으로 양육과 가사노동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인민반의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사례 21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게 된 계기는 1988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평양에서 개최된 것이었다.¹⁰⁴⁾

104) 세계 사회주의 국가의 청년학생들이 반제반전의 기치 아래 모여 친선과 평화, 단결을 도모했던 행사로 1947년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제1회 축전이 개최되었다. 1989년 당시에는 177개 국가에서 약 2만 2천여 명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네이버지식백

당시 북한 당국은 축전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승용차를 운전 할 사람들을 전국에서 모집하였고, 아버지가 여기에 발탁된 것이다. 축제가 끝난 뒤 아버지는 보안소 소속 물자 수송을 담당하는 운전수가 되었다. 교통수단이 잘 발달하지 못한 북한에서 “바퀴 굴리는 사람”은 다양한 정보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직업이었는데, 보안소 물자 수송을 담당하게 되면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인정 받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그냥 운전수들이라는 게, 사실 지금은 북한에서 그 바퀴 굴린다고 하거든요, 그거 보고, 바퀴 돌아... 바퀴 굴리는 사람이 제일 잘 산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아빠가 노동자이지만 나름대로 북한에 있을 때는 엄청 생활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다 온 집안을 진짜... 고난의 행군 때도 고난의 행군을 못 거쳤었던 거 같아요. (사례 21 구술녹취록, 2019/4)

구술자의 말처럼 아버지는 비록 노동자였으나, 중국에 통나무 등을 실어다주고 밀가루나 쌀 등을 받아오는 무역 관련 일을 담당하는 ‘먹을 알’이 많은 일을 하였다. 이런 덕분에 가족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식량난 때도 어려움을 실감하지 못할 정도로 넉넉한 생활을 하였다.

사례 21이 어린 시절, 배송 등의 업무를 위해 아침에 나가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고 늦게 돌아오는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는 “아버지가 오면 저녁을 딱 먹자.”며 어린 딸들과 저녁을 먹지 않고 늦게까지 기다리기도 하였다. 딸 많은 집안의 둘째 딸이었던 사례 21은 7~8세의 나이부터 언니와 함께 동생을 돌보고 어머니의 집안일을 거들었다.

과, “세계청년학생축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45794&cid=43124&categoryId=43124>> (검색일: 2019.9.3.).

우리는 되게 여자들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요. 나중에 이제 시집을 가서도 시집에 이제 잘 해야 되고 남편을 잘 공대하고 그 다음에 가족생활을 잘 꾸려나가려면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이제 그런 법을 다 배워주거든요. 이제 같이 뭐 밥 먹고 설거지 하는 일, 그 다음에 장판 이거 닦는 일, 그 다음 빨래하는 거, 이걸 다 엄마가 배워줘가지고, 진짜 제 생각에는 열 살 때부터 아마 했었던 거 같아요. 열 살 때부터 밥 먹으면 우리 언니가 설거지하면 나는 장판을 닦았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크면 우리가 다 좋은 일이잖아요. 이제 시집을 가서도 뭐 다 할 수 있는. 뭐 막힘없이 다 잘하라고 엄마가 항상 그렇게 했었고. (사례 21 구술녹취록, 2019/4~5)

위에서 묘사하는 장면은 아버지가 출근한 뒤 어머니가 딸들에게 설거지와 빨래, 집안 청소 등을 나눠서 가르치는 일상을 보여준다. 사례 21은 1980년대인 어린 시절부터 ‘현재의 아내’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여자는 남편을 ‘공대’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한다는 성역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교육받았고, 지금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어머니와 함께 집안일을 하던 언니가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집을 떠나게 되자 사례 21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등짐으로 빨나무를 아파트 꼭대기까지 올려다 놓는 등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기억하였다.

(2) 코피 흘리며 공부해 입학한 사범대학

김일성이 사망하고 고난의 행군이 막 시작되었던 시기에 중학교 졸업반이 된 사례 21은 1990년대 중반에 뛰어난 성적으로 사범대학에 입학하였다. 당시 북한에서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대략 10%정도 되던 시기에 언니에 이어서 둘째 딸인 구술자가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뛰어난 성적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일성 일가의 이름을 딴 ‘명함대학’에 다니는 동안 사례 13은 자신택처럼 중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온 ‘직발생’, 직장에 다니며 입학한 ‘사회현직생’, 그리고 제대군인으로 구성된 30여명의 학급생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런데 사례 13이 대학생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한 번도 ‘남녀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진짜 우리 4년 동안에 다른 학부나 다른 학과에서 그런 일이 있어본 적도 없었고. 이제 어떤 때 한 번, 그러니까 졸업 거의 할 때, 우리는 아직... 북한은 약간 제가 보는데, 제 생각인데 북한이 약간 그런 면에서는 엄청 성교육 자체를 없잖아요. 성에 대한 것도 모르고 성교육 자체가 없고, 뭐 그냥 말하면 우리가 뭐 남녀칠세부동석이라 해놓고. 막 그냥 남자여자 옆에 같이 앉아도, 같이 이렇게 있어도 임신하고 뭐 이런 그런 생각도 있었고. 뭐 완전 아무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남자하고 여자는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항상 그, 뭐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철저하게 대학교에서도 남녀문제 뭐 친해서 연애하고 이런 것도 엄청 장려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예가 없었거든요. 만약 있다면 그게 이제 대학 쪽으로 드러나고 하면 완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드러나면 그걸 막 퇴학시켜서 가서 그 엄청 대대적으로... (사례 21 구술녹취록, 2019/11)

위의 구술에 의하면 사례 21은 대학 생활 중 남녀 사이에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금지하는 문화 속에서 생활하였다. 당시에는 ‘연애사실’이 공개되는 경우 당사자를 퇴학시키는 대학규범이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손잡고 다녀도 그게 벌써 손가락질 대상이” 되던 문화는 200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례 1이 공공연한 연

애문화를 경험하였던 것과 비교할 만한 세대 차이이다. 그런데 위의 구술에서 사례 21이 북한에는 ‘성교육 자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1970~80년대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性)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했던 문화가 아닐까? 공식적인 성교육이 있기는 했으나 생물학적 수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머물렀으며, 현실의 성(性)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한국의 규범과 유사함을 짐작할 수 있다.¹⁰⁵⁾ 사례 21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엄격한 어머니의 교육 속에서 생활했는데, 대표적으로 집 이외의 곳에서는 오래 머물거나 외박하지 못했다. 여성들의 생활을 집안으로 정하고, 외출을 단속하던 전(前) 근대적 관습을 환기시킨다.

(3) 군복 입은 장교와 결혼한 중학교 교사

1990년대 말에 대학을 졸업한 사례 21은 당시 새로 생긴 제1중학교 국어교사로 배치되었다. 소위 ‘수재학교’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한 사례 21은 스스로를 ‘직업적 혁명가’로 정체화하였다. 정규수업이 끝나고도 새벽 2~3시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교육하여 전국 최고의 대학으로 보내는 것을 임무로 생각하며 ‘혁명적 교사’가 되기를 희망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가르친 학생 두 명을 5과나 6과에 선발되도록 하여 ‘화선입당(火線入黨)’을 하고 결혼하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¹⁰⁶⁾ 당시 23세 정도의 여성 결혼 ‘적령기’와

105) 1970~80년대 한국은 이러한 공식 규범과 달리 성산업이 번창했고, 소위 성에 대한 이중규범이 구조화되었다. 공식적으로 성은 금기의 주제이지만, 일상적으로는 성을 매개한 문화가 지배한다는 점에서 이중규범이다. 한국에서는 1987년 이후 정치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1990년대 공론장에서 성에 대한 담론이 폭발하였다. 엄숙주의적 일상문화의 균열이라고 할 수 있다.

106) 화선입당은 사회주의 건설현장에서 검열 받은 사람이 당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데, 사회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현장을 전선(戰線)에 비유한 말이다. 화선입당은 1년 동안의 노동당 후보당원 검증절차 없이 곧바로 노동당원증을 수여받는 경우인데,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허가되는 것이다.

상관없이 “선 입당, 후 결혼”이라는 인생 계획을 세웠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2000년 초반에 의사로 일하던 언니가 ‘항일 혁명가 집안’ 출신이면서 모두가 알아주는 군부대를 제대한 남성과 결혼하였다. 나이 차이가 여덟 살이나 났지만, 토대가 좋고 권력을 가진 남성과 의사인 여성의 혼인을 양가에서 지지하여 성사되었다. 모범적인 교사생활을 하던 사례 21은 그 다음해에 친구 어머니의 중매로 군부대 장교인 남성을 소개받았다. 당시 사례 21은 스물세 살이었다.

어떤 남자하고 살고 싶다,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때 저는 항상 군복 입은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군복 입은 사람한테 무조건 시집을 갈 테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생동안 군복 입는 사람. 일생동안 군복 입고 진짜 키도 크고 잘나기도 해야 되지만, 남자로서 자기 할 소리도 하고 주먹질도 하고. (중략) 북한의 여자들이 거의나 이렇게 군사복무 하는 장교들한테 시집가는 걸 선호하기도 해요. 왜냐면 생활이 좋으니까. 시집가면 생활이 엄청 좋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선호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거 선호보다도 오직 정복을 선호했고. (사례 21 구술녹취록, 2019/15)

위의 구술에서 묘사하는 사춘기 시절 구술자의 ‘이상형’은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주먹질도 잘 할 수 있는 남자로 군복을 입은 사람이었다. 군인 가족이 갖는 북한 사회에서의 특혜보다도 자신은 “오직 정복을 선호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선군정치가 지배하는 북한 사회에서 군인은 모든 의미에서 권력의 중심이었으므로, 집단적 권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카리스마를 부여받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를 ‘혁명적 교육가’로 정체화했던 사례 21에게 군인은 직업 혁명가 그 자체로 보였을 법하다. 이런 관점에서 사례 21은 북한 사

회의 주요 규범을 충실히 내화한 교육엘리트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소개받은 남성은 군장교로 복무 중이었으며, 군대 내 수재 대학을 다니던 재원이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규정에 따르면 군사 복무 중인 장교는 만 30세가 되어야 결혼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군복을 벗어야’ 했다. 따라서 소개받은 남성은 “3년 동안은 그냥 우린 집에 다닌 거”라고 했다. 결혼하기 전까지 군대 내에서 ‘여자관계’를 드러낼 수 없었던 예비 남편은 각종 핑계를 대고 사례 21의 집을 방문하였고, 부모님들은 함께 식사는 하지만 “저녁 되면 따로 딱 잠자리를 깔아주는” 방식으로 만남을 허락했다고 한다. 남성이 만 30세가 되던 2000년대 중반이 되어서 두 사람은 약혼식 없이 바로 결혼하였다. 당시 사례 21은 25세였다. 흥미로운 점은 성인이 된 남녀의 만남과 결혼과정에서 군대와 집안의 엄격한 성별분리 규범이 작동하였다는 점이다. 군복무 중인 남성은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못한다는 규칙과 혼인 전에는 성관계를 포함한 신체적 접촉을 금지하는 일상문화가 21세기에도 작동하고 있었다.

(4) 중대의 가족비서인 고급중학교 교사

소위 ‘명함대학’ 출신인 사례 21은 결혼한 후에도 열성적인 학교 생활을 하였다. 결혼 직후 딸을 출산한 뒤 남편의 근무지를 따라 자주 이사를 하게 되자 친정어머니가 육아를 대신했다. 대신 사례 21은 학교에서 담당하는 교육임무에 충실하면서 남편이 속한 중대의 가족비서로도 활동했다.¹⁰⁷⁾ “남편이 총이라면 우리[아내]는 총꾼이라”는 규범에 따라 군인 가족들을 조직하는 비서의 활동을 한 것이

107) 사례 21에 의하면 각종 조직의 비서와 마찬가지로 군부대에도 군인가족의 비서 역할이 공식적으로 주어져있다. 대부분은 장교의 부인이 가족 비서를 맡는다.

다. 매주 혹은 매월 탄창주머니를 꿰매거나 새로 만들고, 명절 등이 되면 음식을 세 가지 정도로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위해 밤잠을 자지 못하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집안의 가사노동은 여성이 담당이었고, 사회주의 혁명가로서 학교생활을 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의 ‘총대’를 보좌하는 여성으로서 중대장인 남편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이 아내인 여성에게 주어져있는 것이다. 세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벅찼던 구슬자는 한동안 친정어머니에게 양육의 역할을 맡겼다.

사례 21은 국경수비대 소속이었던 남편이 2011년 거리상으로 떨어진 외곽지대에서 근무하게 되자 1년 동안 학교를 쉬었던 것을 제외하고, 계속 교사로 일했다. 다시 말해 남편의 부양가족이 아니라 직접 일하며 배급을 받는 직장생활을 하였다. 한국의 ‘맞벌이’ 부부에 해당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가족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자는 군대를 통해 배급받았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또 이상하긴 하네요. 이중으로 탈 수 있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대에서 줘서 그러겠죠. 내가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서 배급을 타잖아요. 학교에 내가 정식교사로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급을 타지만, 결론은 그게 그러니까 중대에서 생각을 해서 준 거네요. 그렇게 두 번을 겹쳐서 줄 수는 없지만, 중대에서 뭐 내가 어쨌든 가정생활을 하고 가족생활을 하니까 아마 그렇게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이나 저는 학교에서 탔거든요. 학교생활 할 때 학교에 내가 적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이제처럼 뭐...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처럼 군대에서 주는 24킬로가 아니고 1년에 막 몰아서 한 1년에 뭐 5개월에 한 번 정도, 5개월에 한 번 정도를 이제 배급을 이렇게 몰아서 줬거든요. 옥수수 같은 거. 통 거 뭐 이제 총 500킬로 줘야 된다면 수분 그거 나가는 거 계산해가지고 한 700킬로인가 60%나 70% 타산해가지고 그

렇게 줘서 배급을 탔었거든요. 그런데 왜 중대에서 주는가하면 중대는 중대 나름대로 우리 가족생활 있으니까. 그건 그러니까 개인이 준 거죠. 내가 거기 중대 소속 있어서 이중으로 탔다기보다 이제처럼 중대에서 안 주면 안 주기도 하지만 중대에서 그거를 준 거죠. (사례 21 구술녹취록, 2019/22)

배급에 대한 사례 21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교사로서 학교에서 일년에 한두 차례 500킬로그램 정도의 옥수수를 배급받았다. 그는 부양가족이 아니라 교사였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배급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례 21의 가족은 남편이 속한 군대에서 ‘부양가족’이 아닌 사례 21의 뒤편까지 배급량을 지급받아서 생활했다. 위의 구술에서 사례 21은 원칙적으로는 이중으로 배급을 탈 수 없었으나 실제로는 학교와 군부대에서 동시에 자신의 몫을 배급받았던 것을 돌아보며 “이상하긴 하네요.”라고 평가했다. 결국 공식적인 부양가족이 아니었으므로 군대에서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어지는 설명에서 사례 21은 군대 내에서 ‘비법’이 많았고, 중대장이라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서로 알아서 가족이 먹고 남을 만큼의 식량과 물품을 “내려 보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고 한다. 반면 교사로서 사례 21이 받았던 배급은 5~6개월에 한번씩 말리지 않은 옥수수 500킬로 정도였다. 결국 생옥수수 500킬로는 쌀 200킬로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례 21의 가족에게는 “그냥 뭐 타도 그만 안타도 그만”인 배급이었다고 한다.¹⁰⁸⁾ 이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북한 사회에서 배급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정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최우선의 위치를 가진 군대의 배급, 특히 군부대 장교의 배급이 갖는 특권적 위치를 짐작할 수 있게

108) 당시 북한의 일반 가족에게 쌀 200킬로는 생존을 위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이었던 사례 21에게는 다른 의미로 경험된 것이다.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례 21은 엘리트 교사로 수재양성 중 학교에 배치되어 일했지만, 상대적으로 군부대 장교인 남편의 월등한 지위와 경제력에 종속된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사례 21이 설명하는 것처럼 자신 또한 군대 내에서 가족비서로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결국 군장교인 남편을 통해 지급되는 배급에 의존하여 생활했고, 자신의 교사활동은 가족 내 인정에서 배제된 것이다.

(5) 비법활동 발각에 따른 탈북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지대에 배치된 군부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와 밀수, 밀매를 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부대별로 부족한 경제조건을 충당하였다. 이는 사례 21의 남편이 속한 부대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에 남편이 속한 부대에서 한국으로 탈북한 사람과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연결시켜주고 사례비를 받는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연결되었던 가족 중 한 명이 보위부의 취조 과정에서 사실을 털어놓자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의 ‘시꺼먼 안경 낀 사람들’이 가택수색을 하였다. 남편과 가족이 모두 잡혀가서 수사를 받았으나 고위간부였던 친척들의 힘으로 큰 처벌은 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번 잘못을 하여 문건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석방된 다음 날 온 가족이 한국으로 오는 길을 택했다.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례 21은 보위부에서 석방된 남편의 ‘결심’을 듣고 하루 이틀 만에 북한을 떠나게 되었다고 했다. 북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직 장교 집안이 ‘비법’활동이 드러나자 체제를 이탈해 한국으로의 정치적 이주를 선택한 것이다. 이는 북한 상층계급의 특권적 폐쇄성이자 경직성을 보여준다.

3. 공식직장에 다니는 노동여성들

가. 공장이 내집인 신발공장 노동자

(1) “국가가 키워주는 곳”에서 자란 어린시절

사례 19는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달라는 연구자의 초기질문에 “하층, 한국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못사는 사람은 못살고, 잘사는 사람은 잘살고 등급이 있고, 등급이 없는 사람은 계속 그 밑에서 일해야 되고. 그저 그렇게 살아서.”라는 말로 시작해서, “등급 없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이야기했다. 사례 19는 1980년대 중반 양강도 접경지역의 도시에서 태어났다. 산림노동자인 아버지와 예술인 어머니 사이에서 맏이로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소학교 4학년 때까지 크게 힘든 일을 모르고 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듬해에 동생과 어머니가 연달아 세상을 떠났고, 그는 홀로 남겨졌다. 친척들도 있었지만, 그는 국가가 고아들을 맡아 키워준다는 중등학원을 떠올렸다. 부모님과 함께 살 때 TV에서 중등학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보고 부모님 잔소리도 듣지 않고 집단생활하는 것을 부러워했던 것이 기억났다. 그는 제 발로 중등학원에 찾아가 자신을 의탁했다.

사례 19가 중등학원에 찾아간 때는 고난의 행군이 끝나갈 무렵으로, 대부분의 국가기업이 정상적 기능을 멈추고 배급이 중단되었고, 교육과 의료 등 사회복지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서 국가의 권위가 추락하던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기에 학교와 선전매체를 통해 이루어졌던 사회주의 교양의 힘은 사례 19를 ‘잘사는 친척’ 대신 국가의 품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결과, 그는 탈북을 감행하기 전까지

‘사회주의 대가정’의 통제와 요구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사례 19는 중등학원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중등교육을 받았다. 중등학원은 육아원, 애육원과 함께 국가가 운영하는 고아 보육·교육시설이다. 당시 한 학년당 이삼십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고, 이들은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학교교육을 받았다. UN기구의 지원이 있어 식사와 간식이 지급됐지만 보육시설의 급식은 몸과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에 충분치 않았다.

사례 19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서 중등학원에 들어간 첫 해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렇지만 교실에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산나물과 약초 채취, 나무하기, 감자 캐기, 무·배추 심기, 김매기 등 각종 동원노동으로 밖에 나가 일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는 자신이 대학 진학을 꿈꾸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앞서 살펴본 중상계층 출신 여성들과 달리, 가정배경도 경제력도 없는 사례 19가 대학에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공부를 하니깐 언니들이 앉아서 대학 여기서 못 간다고, “니 부모 없는데 대학을 어떻게 다니냐?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어떻게 벌어서...” (중략) 애들이 졸업해서 뭇도 하고프고 뭇도 되고프고 이런 꿈이야 다 있었죠. 학원생활 하는 그 어간에 “그저 할 수 없네. 우리는 일해야 되겠네. 그것밖에 없네. 부모 없고 집 없고 돈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국가에서 키워줬으니까 거기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네.” 오직 그것밖에 우리는 배운 게 없으니까,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사례 19 구술녹취록, 2019/10~11)

중등학원 출신들은 졸업 후 모두 ‘집단진출’ 형식으로 같은 직장

에 배정이 됐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집단진출을 피할 수 없었는데, 대부분 일이 힘들어 일반학교 학생들이 꺼리는 돌격대로¹⁰⁹⁾ 배치되었다. 2000년대 중반에 중등학원을 졸업하면서 사례 19 학급의 여학생 22명 전원은 돌격대 대신 신발공장으로 ‘무리배치’되었다. 이는 북한의 공식직장 중 남성들이나 기혼여성들이 기피하는 가동률과 노동강도가 높은 공장들에 취약계층의 여성들이 순치된 노동력으로 배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가정’인 가족의 울타리가 없이 ‘대가정’인 국가에 직접 편제해 있는 ‘고아 여성’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집단이며, 이들의 동원을 정당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으로 대표되는 국가가부장제이다.

(2) 또 다른 집, 신발공장에서의 생활과 “배려에 보답”하는 노동

사례 19는 2000년대 중반에 중등학원을 졸업한 후 탈북할 때까지 10년간 신발공장에서 재봉공으로 일했다. 중등학원 기숙사가 자신의 집이었듯, 중등학원을 졸업해서는 공장 기숙사가 자기 집이고 신발공장 간부가 자신의 보호자가 되었다. 사례 19가 다녔던 신발공장은 시에서 가동률이 제일 높은 500명 규모의 공장이었다. 일 년 내내 ‘100일 전투’, ‘200일 전투’ 같은 노력동원이 끊이지 않아, 밤에도 자지 않고 일해야 하는 곳이었다. 사례 19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숙사 청소부터 시작해서 공장 마당과 작업장을 청소하며 하루의 노동을 시작하였다. 작업은 교대제로 이루어지지만, 100일 전투, 200일 전투와 같은 속도전이 진행되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기숙사에 사

109) 북한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돌격대를 조직해 건설현장에 투입해 왔는데, 가장 규모가 큰 조직이 ‘속도전청년돌격대’이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직속으로 운영하는 청년돌격대는 대학에 가기 어렵고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대다수 자원입대한다. 또 입대에 관심이 높은 학생들이 지원하기도 한다. 이관세 외, 『북한 지식 사전』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pp. 244~245.

는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출퇴근시간이라는 것이 따로 없었다. 사례 19는 일이 힘들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도 공장 울타리 밖에는 자신이 살 집이 없어서 공장을 그만둘 수가 없었다.

졸업해서 신발공장 가서 거기 기숙사가 있거든요. 기숙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학원졸업생이다보니까 **어디 집이, 자택 할 집이 없잖아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신발공장에서 우리 보호자로 앉고**, 뭐, 거기서리 기숙사를 꾸려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신발공장에서 일했으니까. 뭐 다른 데 가려고도 생각 많이 했죠. 다른 데 가서도 일하고프고. 너무 일이 힘들니까. 그런데 다른 데 가면 기숙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갈 수가 없고. (사례 19 구술녹취록, 2019/2)

다른 사람들이 받는 식량 배급 대신 기숙사생들에게는 하루 세끼 식사가 제공됐다. 한 달에 5kg 정도의 쌀과, 명절에는 돼지고기와 기름, 설탕 등의 부식물도 배급되었고 노임도 몇 달치씩 몰아서 지급되곤 했지만, 직장에 식비와 각종 지원금을 내야 해서 수중에 남는 돈이 없었다. 옷과 화장품, 신발, 비누, 책 등을 살 돈이 필요했지만, 직장생활에 매여 있어서 생활비와 용돈을 따로 벌 시간이 없었다. 얼마 안 되는 배급과 노임을 받고 강도 높은 노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신발공장은 중등학교 출신같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특히,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노동자들은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중등학교 출신이었다. 사례 19가 입사할 때, 공장 구내에 위치한 기숙사는 구들에 불을 때는 작은 규모의 시설이었는데, 나중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다녀간 후 “전국 모범단위 합숙”이 되었다. 변기와 세면대, 온수시설, 바다난방, 통유리창에 커튼을 갖춘 “호텔처럼 멋

있는 합숙”은 집이 없는 중등학교 출신 고아 여성들에게 국가가 지어준 집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실은 이 기숙사는 국가가 따로 내준 노동력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라, 기숙사 생활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손으로 직접 지은 것이었다. 이들은 “건설하다가 돌아와서 미성질을 해야 했다.” 사례 12가 출퇴근시간이 따로 없는 노동과 모든 사생활이 통제되는 기숙사생활 속에서도 공장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이 국가의 배려를 받았고, 또 현재도 그러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국가배려를 받고 자랐는데 그만큼 보답해라. 죽어도 현장에서 죽고, 살아도 현장에서 살아라.”라는 “뇌세김”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국가의 배려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 떳떳하다고 생각했다.

(3) 신발공장 재봉공의 노동

신발공장은 노동강도가 아주 높았는데, 공장에서 일을 잘하면 입당을 하기도 했다. 노동강도가 높아 일반주민들이 기피하는 공식직장에서 노동을 강제하는 유인으로 입당이라는 정치적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신발공장 여성노동자들은 “일하는 데서는 따왕”이라고 인정받았다. 농촌동원을 가서 신발공장에서 왔다고 하면, 다른 데서 온 남성들이 일 잘하고 사납다고 “어우” 하면서 돌아설 정도였다. 사례 19도 처음에는 일을 열심히 해서 입당을 해보자는 생각도 했다. 그런데 주위에서 “여자가 입당해서 뭘 하냐, 돈 벌어서 집을 잘 가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생각해보니 입당을 해야 남보다 일만 더 많이 할 뿐 아무런 혜택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발공장에는 “여자 할 일 따로 남자 할 일이 따로” 있다. 제화직장, 공무직장 등 고무원, 철강 같은 무거운 자재와 공구를 다루는 직장에서는¹¹⁰⁾ 주로 남성들이 일했고, 사례 19가 일했던 재봉직장은

수리공 한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여성이었다. 남성들은 재봉일은 못하고,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천 재단은 여성이 하지만, 고무 재단은 대부분 남성이 하고, 운전공 중에는 여성이 하나도 없으며, 여성들은 기계수리를 할 수 있어도 공무직장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남성이 할 일을 잘 해내는 여자들에 대해서는 “저거 완전 남자”라고 하며 “보통여자”로 취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공식노동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성별분업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

연구 과정에서 만났던 여성 중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식직장에 다녔던 사람은 교사로 일했던 엘리트계층의 여성인 사례 21뿐이었고, 탈북 직전까지 공식직장에 다녔던 여성들은 모두 미혼이었다. 이는 남성과 미혼여성은 공식직장, 기혼여성은 비공식 시장경제활동이라는 북한의 젠더화된 노동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사례 19나 이후에 살펴볼 사례 20이 다녔던 직장에는 기혼여성도 있었다고 한다. 신발공장 여성노동자들은 결혼을 하면서 공장을 그만두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혼 후에도 공장에 다니면서 약간의 배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장에서 주는 배급과 임금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수준은 아니어서, 신발공장에 다니는 기혼여성들은 대부분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부업으로 집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장사 등의 시장활동이나 농사일을 병행하였다. 이들은 직장에 나오지 않고 적(籍)만 올려놓기 위해 직장에 돈을 내는 것을 감수할 만큼 장사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식직장에서의 노동과 비공식영역에서의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것이다.

사례 19에 의하면, 기혼여성들에게는 퇴근 후에 또 다른 생계노동

110) 직장은 “공장이나 기업소 안에 몇 개로 나뉘어진 부문별 생산작업단위”를 의미한다.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증보판)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p. 632.

이 남아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웬만하면 잔업을 시키거나 ‘100일 전투’ 같은 속도전노동을 시키지 않았다. 특히 어린 아기를 키우는 여성들은 대체로 8시간 노동을 준수했다. 공장에 탁아소가 있었지만, 형편상 여의치 않아 공장에서 아기를 업고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간혹 ‘야간 전투’ 때 손이 딸리면 기혼여성도 물론 애기엄마들도 나와서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는 남편이나 할머니들이 아기를 업고 젖을 먹이러 공장에 오기도 했다. 기혼여성, 특히 애기엄마들에게는 야간노동을 강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사례 19와 같은 합숙생들이었다. 사례 19의 구술에 의하면, 신발공장과 같이 노동강도가 높은 노동현장에서 모성보호 관련 법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울타리 밖으로의 외출과 탈북

공장 생활을 벗어나려면 결혼을 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결혼을 하는 것도, 결혼 후에 살아가는 것도 사례 19에게는 막막한 일이었다. 주위 사람들이 남자를 소개해주었지만, 낮에는 일을 해야 하고 밤에는 잠을 자기 바빠 연애를 할 수가 없었다. 공장에 같이 다녔던 친구들도 대부분 연애할 시간이 없어서 중매로 결혼을 했다. 북한에는 여자들이 돈도 없고 빈 몸으로 결혼을 하면 시집에서 천대받는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시집가서 천대받고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신발공장에 다니다 결혼을 하면 공장에서 결혼식 상을 차려주는데, 사례 19는 공장에서 차려주는 결혼식상은 죽어도 받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결혼식상을 받으면 평생 신발공장에 다니면서 ‘보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을 차려줘요. 그런데 그걸 그만큼 받았으면 또 더 보답해야 돼

요, 저희 같은 거는 국가배려도 받았지, 공부도 했지, 또 그렇게 해줬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그 잘난 **결혼식상 받고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나는 그게 싫었거든요. 신발공장에서 결혼식이라는 게, 내 일생에 신발공장 다니는 한 결혼식이라는 건 없다. (사례 19 구술녹취록, 2019/28)

일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결혼할 때 결혼식상을 차려주는 것은 양가 부모이다.¹¹¹⁾ 결혼식상을 차린다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 가족을 이루는 것을 부모로서 승인하고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중등학교 출신 여성들에게 공장에서 ‘차려주는’ 결혼식상은 육체적 부모를 대신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을 준 부모인 당과 수령이 차려주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대가정의 세포인 가족을 이루는 것을 국가가 승인함과 동시에 대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지우는 의례이다. 신발공장 노동자들에게 그 의무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고된 노동을 지속하는 것이며, 사례 19는 그 점을 간파한 것이다.

사례 19는 청소년기에는 중등학교, 중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신발공장과 기숙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생활했다. 공장에는 공장보위대가 있어서 일과 후에도 합숙생들이 공장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통제했다. 공장에 다닌지 7년이 지났을 때, 그는 갇힌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공장을 나와 한 달간 무단결근을 했다. 중등학교 시절 단체로 평양답사를 갔던 것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본 것이었다. 그는 한 달간 친척집에 가서 장사를 도우면서 다른 지역에도 다녀보고, 친구와 롤러스케이트장에도 놀러가보았다.

사례 19는 공민증 받을 나이가 됐지만 공민증을 받지 못했다. 다

111) 전통적인 결혼 의례에 관해서는 각주 132를 참조하라.

른 학원 출신 친구들도 마찬가지로였다. 공민증을 내달라고 하면 “어디로 가자고 공민증 내냐?”고 하면서 내주지 않았다. 그는 다른 지역으로 다니기 위해 공민증 대신 출생증명서의 나이를 고쳐서 가지고 다녔다. 공민증 발급대상보다 어린 연령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여행 시 크게 단속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간혀 살다가 자유가 생기고, 이것저것 하라는 지시를 듣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다 보니 공장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한 달 후, 사례 19는 직장을 그만두려고 공장에 나갔다. 한 달간 무단결근을 했으니 “비판무대에 나서야” 했지만, 직장에서는 사례 19를 설득해서 다시 일을 시키려고 비판도 면제해 주었다. 사례 19는 “적 떼려고 갔다가 거기 또 속아서” 일을 계속했다. 그 뒤로는 쉬고 싶을 때는 직장에 휴가를 요청하고 친구들과 놀러다니기도 했다.

시간 달라 해서 안 주면은 “나는 한 달을 어디 또 사라진다.” 하니까 시간을 줬거든요. 하루 이틀은 줬어요. 하루 이틀은 시간을. 진짜 그런데 그건 자주 안 받았으니까. 가끔씩 가다가 친구들끼리 놀 일이 생기면 놀고, 뭐 친구들이 찾아와서 받아 주고 뭐 그럼 받아줬어요. 할 수 없이 막 우루루 한 무리떼 공장 앞에서 서서리 막 복잡하게 놀면은 내가 가서 “저기 와서 기다리는데 하루만 좀 달라.”하고 뭐 주고. (사례 19 구술녹취록, 2019/48)

사례 19는 친구들과 만나 같이 다니면서 중국과 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중국에 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3년 후 탈북하게 된다. 계속 신발공장에서 일하다가 “내 인생은 아예 없을 것 같아서” 그는 탈북을 결심했다. 탈북할 때는 중국에서 두세 달만 일을 하면 “집을 사서 혼자 살 수 있을 만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중국에 와서야 그것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

달게 되었다. 후회했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되느니 중국에서 결혼해서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례 19는 2년 뒤인 2017년에 한국으로 들어왔다.

나. 공식직장의 노동자들

(1) 인민군협주단원이 되고 싶었던 철도 대표원

사례 18은 1980년대 후반에 양강도의 접경도시에서 “평범한 가정의 맏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당 일꾼으로 “집에 쌀이 얼마나 있는지, 장마당에서 무얼 파는지도 모르는” 고지식한 분이었다. 어머니가 일찍이 장사를 시작해서 가족이 먹고살았지만, 장사를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풍파가 심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장사로 보름씩 집을 비울 때면 자신이 새벽에 일어나 식구들이 먹을 밥을 짓고 집안일을 했다.

사례 18은 성악에 소질이 있어서 학교 다닐 때 음악소조를 했고,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인민군협주단에 들어가고 싶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4학년 때 집안이 경제적으로 기울어 힘들어져서, 2000년대 중반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음악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다. 그는 “내게 희망이 있을까?” 생각하고 앓아누웠다. 그때 철도 부문에서 일하던 지인이 철도원으로 취직해서 예술소조 활동을 하면 어떻겠냐고 했고, 어머니도 “철도는 눈 돌아가면 용돈도 쓸 수 있는” 곳이라고 취직을 권유해서 철도분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례 18은 철도역에서 안내원과 대표원 일을 맡았는데, 직원 세 명이 역을 이용하는 수많은 이용객들을 상대해야 하고, 업무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 차표를 팔고 기입하는 업무를 전부 손으로 해야 했다. 또 이용객들을 통제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사람들과 싸우거나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일들이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았다. 그렇지만 미리 부탁받은 표를 웃돈을 받고 팔 수 있어서 직무를 활용한 용돈벌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직장이었다.

사례 18은 직장을 다니면서 음악 써클조에서 활동했는데, 일 년에 반 정도는 공연을 하거나 전국 경연에 나가기 위해 연습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비록 전문직으로 뻥지는 못했지만” 그 활동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스스로 긍지를 가질 수 있었다. 직장 동료들과는 성별에 관계없이 잘 어울려 지냈다. 일과 후에는 남녀 동료들이 어울려 같이 저녁을 먹고 술도 종종 같이 마셨다. 예전에는 여성들이 “남성들의 상에 같이 앉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두 섞여 앉아서 “여성들 앞에 우선적으로 잔을 놔줘야 되고, 여성들한테 술을 부어주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사례 18은 다른 곳에 다녀오는 길에 열차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3년 정도 연애를 했다. 서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거리를 걸어다니는 게 유일한 데이트였다. 비교적 길게 사귀었지만, 남자친구의 평판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어머니도 발전할 가능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며 반대하셔서 헤어졌다.

사례 18은 업무가 고되어 8년간 역의 매표원으로 일한 뒤, 같은 철도 부문의 사무직 일자리로 자리를 옮겼다. 일은 편했지만, 학습회 등의 회의와 동원이 많아서 “진절머리가 났다.” “나한테 대체 희망이 뭐냐? 그냥 남자 만나 잘 사는 것 그거 하나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2) 탄광지역에서 태어난 탄광노동자

사례 20은 1980년대 중반 함경북도 탄광지역에서 탄광소속 공장 노동자의 딸로 태어났다. 돌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부모님이 이혼

을 해서 어머니와 둘이서 살게 되었다. 어머니가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면서 집밖으로 다니기 어려워지면서, 사례 20은 여섯 살 때부터 나무하고 석탄을 저나르는 등 집안에서 남자가 해야 할 일을 도맡아 해야 했다. 어릴 때는 중국에 사는 친척의 지원으로 생활수준이 괜찮았는데, 고등중학교 다닐 때는 경제난에다 중국 친척의 지원마저 끊겨서 어렵게 살았다. 어머니가 소소하게 장사를 했지만 생계유지가 쉽지 않아서, 옥수수속대를 가루 내거나 민들레, 씌바귀, 토끼풀을 뜯어 풀죽을 쑤어먹었고, 소나무껍질도 벗겨먹었다. 고등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탄광에서 나오는 석탄 운반기차에서 석탄을 훔쳐다 팔아서 먹고살았다.

2000년대 초반에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사례 20은 지역에 있는 1년제 탄광기능공학교에 들어갔다. 그 기능공학교는 어머니가 다녔던 연합탄광에 부설된 학교로, 졸업자들은 모두 탄광노동자로 배치되었다. 기능공학교 졸업 후, 사례 20은 탄광에서 운전공으로 일하게 되었다. 탄광은 비교적 가동률이 높은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배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배급만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만이 가능할 뿐이었다. 그는 명절날에나 쌀밥을 먹었고 평상시에는 하루 세끼 옥수수밥을 먹으면서 “밑에서 20% 정도 하루 계층의 삶”을 살았다.

사례 20은 탄광에서 일 년 남짓 일을 하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의 지원을 받으려고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는 친척의 권유로 중국에서 조선족 남성과 살다가 아이를 낳고 쫓겨나왔다. 갈 곳이 없었던 그는 한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조선족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종교를 접하게 되었다. 그 후 다시 남성 한명을 소개받아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남성이 “부실하고 일할 줄도 몰라서 앞길이 막막했다.” 사례 20은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에 잡혀서 북송되었다. 북한을 나온 지 4년 만이었다.

사례 20은 재판에서 3년형을 받고 만기출소하자마자 이전에 다녔던 탄광에 다시 배치되었다. 처음에는 막장 밖에서 일하다가 상사와 갈등이 있어 막장 운전공으로 직무를 옮겨 힘들게 일했다. 탈북해서 중국을 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계속 감시를 하고 “사람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힘들었다. 더군다나 그는 중국에서 신앙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에 대한 의례가 우상숭배로 여겨져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주변에서 북한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며 은밀하게 “복음을 전했다” 사례 20은 그로 인해 어머니를 두고 탈북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출소하여 다시 탄광에서 일한 지 5년 만에 재탈북에 성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다.

(3) 공식노동의 틈새와 성별 노동분업

경제난 이후 북한의 공식 직장 중 운영되지 않거나 가동률이 떨어지는 공장, 기업소가 많았지만, 사례 18이 일했던 직장은 사회인프라 부문이어서 정상적으로 유지되었고, 사례 20이 다녔던 연합탄광에서도 석탄생산이 이루어졌다. 사례 20이 다녔던 탄광은 8시간 노동제로, 노동자들은 3교대로 돌아가면서 일을 했다. 아침 출근일 경우에는 아침 7시 30분까지 출근해서 조회를 하고나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 작업 총화 후에 6시쯤 퇴근했다. 임금은 1만 5천원 정도, 계획량을 달성하면 3만원 정도 받았다. 탄광이어서 다른 직장보다 임금수준이 높았지만, 군대 지원금과 건설 지원금 등을 내고 나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기업소는 대부분 배급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사례 20이 다녔던 직장은 탄광부문이어서 통옥수수로 정량 배급을 받았고 명절에는 쌀 배급도 몇 킬로씩 받았다. 기업소에서 중국에 석탄을 팔고 쌀이나 기름을 사서 노동자들에게 간헐적으로 공급해주기도 했다. 그래도 직장에 제대

로 출근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계획(달성)하면 쌀도 주고 기름도 주겠다.”고 노동자들을 “얼러서 일을 시켰다.” 석탄도 일정량은 가져가서 집에서 땔 수 있게 해 주었는데, 불을 안 때는 여름에는 석탄을 모아서 팔기도 하기 때문에 생활에 보탬이 되었다.

사례 20이 살았던 탄광지역에서는 이 탄광연합기업소 소속 직장에 배속된 주민들이 많았는데, 직장에서 공급하는 배급은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만큼 충분하지 못했다. 자본금이 있어서 자기 집에서 “앉아서 장사할 수 있는” 일부 주민들은 직장에 적(籍)만 두고 장사를 했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직장 출근을 기본으로 하면서 “배급으로 살았다.”

구술자: 조금 돈 있고 조금 능력 있고 하는 사람은 장사하겠는지 모르겠지만 장사도 뭐야 잘못하면 망해가지고 빚지고, 빚더미에 앉고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중략) 여자들은 또 조금 낫죠. 그러니까 여자가 조금씩 벌어가지고, 남자들은 이거 뭐야 탄광일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자기 노력하면 먹고는 사니까. 직장에 얹매이지 않고서는 또 안 되고, 직장 얹매이면서도 이제 조금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교대작업이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노력을 하면 사는 거죠.

연구자 : 그럼 남자들도 그런 노력을 하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술자 : 남자들도 그런 노력을 하긴 하는데, 하긴 하는데 조금 탄광남자들이 부지런한 형태가 못 돼요. 이해 가지죠? 탄광남자들이 직장일만 일이고 집일은 안 하니까. 그냥 여자가 벌어서 먹고 살아요, 여자가. (사례 20 구술록, 2019/49, 51~52)

위의 구술은 북한에서 남성을 공식직장에 긴박하는 젠더구조가 오히려 여성에게 공식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 자유, 시장 영역에서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틈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이러한 성별분업은 남성에게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동을 면하게 하는 구실로 작용한다. 사례 20은 직장에서 남성들은 직장노동만 하는데 비해, 기혼여성들은 직장노동에 더하여 시장과 연계된 노동을 부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들은 직장에 출근하여 일해서 배급을 받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토끼, 돼지 등 가축 가르기, 버섯과 약초 채취, 술, 두부, 국수 장사 등 부업을 하여 가계에 보태어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

사례 18이 다녔던 철도 부문 직장은 철도가 완전히 마비되지 않는 한 유지되어야 하는 일이어서, 직장 소속 노동자들은 다 출근해야 했다. 그러나 이 직장에서는 배급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임금도 낮아 월급을 받아서 “얼음보숭이 두 개 사먹으면 남는 게 없을 정도”였다. 배급도 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는 물질적 대가가 없었지만, 직무를 이용해서 약간의 돈벌이를 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다음 인용문과 같이 웃돈을 주고 기차표를 판매하고 차액을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제가 그 처음에 철도를 택한 또 중요한 원인의 하나도 용돈도 쓸 수 있다, 본인이 이렇게 눈 돌리면, 북한에서는 야매차표, 야매차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뭐 제한된 좌석이라는 게 있어서 그 게 가려는 사람들은 많고 제한된 좌석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좌석을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매차표라는 게 생기게 되거든요. 백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지도원한테 “지도원 동지, 저 차표가 지금 생겼습니다.” 하면 “알았어.”하고 지도원이

또... 그걸 또 지도원이 그냥 떼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손님들하고 또 받은 돈 만원이다, 예를 들면 만원이다, 이런 돈이면 지도원한테 한 6천원, 이쯤은 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또 뭐 이런 우에서 간부들이... 북한은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간부들이 뭐 오늘은 어느 선전비서 숙제, 조직비서 숙제, 이런 게 있어 갖고 지도원들한테 떨어지거든요. 지도원들도 그걸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본인이 주머니돈을 꺼내서 뭐 그런 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들도 살아야 하고, 뭐 북한말로 말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둥지 털어 볼 때는 격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뭐 사람들로부터 차표... 그 다음에 지도원이 해서 지도원은 또 그걸로 해서 자기가 숙제를 푸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용돈은 좀 썼던 거 같습니다. (사례 18 구술녹취록, 2019/16)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파는 차표의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의 두세 배 정도 됐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차표를 못 살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차표를 부탁했다. 사례 18에 의하면 판매되는 기차표의 절반 정도는 “뒷문으로 나갔다.” 하루에 한 장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날은 하루에 20만원¹¹²⁾ 어치 정도를 부탁받는 날도 있었다. 이런 방법으로 버는 돈은 간부들에게 상납하는 몫을 제외해도, 생활비로는 조금 부족할지언정 용돈으로는 충분한 돈이었다. 공식직장일을 하면서 그 틈새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직장은 배급도 없고 돈벌이도 안 되는 다른 직장에 비해 괜찮은 조건의 직장으로 여겨졌다. 사례 18은 이 직장이 “나가서 힘들게 띄약벌에 앉아서 장사하지 않아도 돼서 괜찮다.”고 생각했다.

한편, 사례 18과 사례 20의 직장에서는 여성이 주로 하는 일과 남

112) 북한에서 쌀값은 1kg당 6천원 정도이므로, 이는 쌀 30kg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이다.

성이 주로 하는 일이 구분되어 있었다. 사례 20은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선탄직장에 ‘컨베아 운전공’으로 배치되었다. ‘컨베아 운전공’은 채탄공들이 캐서 가지고 나온 석탄을 컨베이어벨트에 실어서 “빵통”이라고 부르는 60톤짜리 화물간에 적재하는 일을 했다. 육체적인 힘을 쓸 일은 많지 않았고, 주로 컨베이어벨트와 기계 작동을 감시하고 떨어지는 탄을 삼질해 올리는 일이었다. 선탄직장은 3개 소대로 구성되었고, 소대는 15명 정도의 여성노동자와 남성 소대장 1명으로 구성되었다. 탄광에는 사고가 많아서 사고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주로 선탄직장에서 일했다고 한다. 사례 20은 막장에 직접 들어가는 막장운전공으로도 일했다. 막장 노동은 중노동이고, 가스를 마시거나 동발이 무너져 사고가 나기도 한다. 채탄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반은 남성 6명, 여성 2명에 소대장 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소대장은 역시 남성이 담당했다. 남성은 채탄, 굴진 등 힘이 필요한 일을 하고, 여성은 발파와 운반에 필요한 기계를 조작하는 운전공으로 일했다. 그렇지만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컨베이어벨트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아서 남성들과 같이 캐낸 석탄을 등짐으로 나르는 일도 많이 했다. 같은 소대에서 일하더라도 남성의 하루 식량배급량은 여성보다 100g 더 많았다.

사례 18이 일했던 여객작업반은 매표원과 안내원으로 나뉘는데, 매표원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안내원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매표원들은 차표를 판매하고, 안내원들은 역 구내에서 안내를 하거나 승차차 통제를 한다. 여객작업반은 지도원 한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여성이었고, 특히 안내원은 전부 미혼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례 18은 안내원, 매표원으로 일하다가 일이 힘들고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아서 같은 철도 부문에서 물자 관리와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으로 직장을 옮겼다. 국가에서 지급되는 계획물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출근을 해도 크게 할 일은 없어 편했지만, 대표원처럼 직업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 그는 직장을 옮겨 2년 남짓 더 다니다 그만두고, 몇 달간 장사를 하다가 기회를 보아 탈북했다.

4. 가족과 사회를 먹여 살리는 ‘부양가족’ 여성들

가. 장사로 가족 부양하다가 김정은 시대에 이혼한 여성

(1) 교사인 어머니 덕분에 유복했던 어린 시절

사례 7은 1980년대 중반에 자강도에서 출생했다. 광산노동자였던 아버지와 중학교 교사였던 어머니 덕분에 상대적으로 부유한 생활을 했다고 기억한다. 교원활동으로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어머니 대신 아버지가 집안일을 거두었고, 사례 7은 유치원을 다니던 일곱 살 때부터 밥을 하는 등 집안일을 도왔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식량난으로 사례 7이 인민학교를 다니던 때 북한 사회 전역은 살기가 어려웠다.

우리 집은 [집안일을] 아버지가 했어요. 네, 아버지가... 어머니는 이렇게 나와서 버는 수입이 조금 있어요. 교원이니까 학부형들도 이렇게 뭐 명절 때마다 이렇게 뭘 해 주고 해 주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많죠. 아버지가 그런 걸 이해했죠. 엄마가 교원이니까 바빠서 이렇다 하고. 아버지가 먼저 와서 밥도 하고 우리들도 돌보고, 또 어떤 때는 엄마가 아침에 식사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침 6시 반이면 출근하죠, 식사도 못하고. 밥만 해놓고서 나가면 또 아버지가 우리를 다 챙겨서 학교도 보내고 또 그랬어요. 보게

되면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가 세간살이도 하고 나가서 일도 하고 아버지가 많은 역할을 했어요. (사례 7 구술녹취록, 2019/22~23)

중학교 교사였던 어머니는 수업 외에도 학교 일 때문에 항상 학교에서 아버지보다 늦게 귀가하였다. 학교에서 주는 실질적인 배급이 줄어든 반면, 학부모들이 명절 등에 주는 비공식적인 수입이 있었고, 개인지도를 원하는 학생에게 따로 수업을 주면 좀 더 많은 일을 하는 동시에 ‘버는 수입’이 늘어나기도 하였다. 이런 사정을 아버지가 “이해하고” 자녀 등교준비나 밥 챙겨 먹이기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집안 세간살이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북한 사회에서 여성들이 교사, 의사 등 합법적인 사회 배치를 통해 배급을 받고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경우 부부관계에서도 ‘실용적인 가사분담’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7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사회활동과 돈벌이로 유지되는 생활을 경험하였다.

그런데 어머니가 돈을 벌어오고 아버지가 ‘세간살이’를 분담하기는 했으나 원칙적으로 어머니는 아버지의 결정에 순종하고, 자신의 ‘권력’으로 남편에게 투자하였다고 한다.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네, 집에서도 그랬죠. 아버지가 암만 집 세간살이 한다 해도,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이렇게 아버지한테 미안한 감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투자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레가지고 아버지가 엄마 덕에 입당도 좀 하고 그랬어요. 엄마가 교원 하다나니까 학부형들이, 간부자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발판으로 해가지고, 간부들 자녀들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많이 신경을 써줬죠 (중략)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남자여자 보면, 여자들이 값이 없어요. (사례 7 구술녹취록, 2019/26)

위의 구술에 의하면 평생 교사로 일을 하고 돈을 벌어 가족 생계를 꾸리는 역할을 했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가족 내에서 행해지는 중요한 결정권은 아버지에게 있었다. 이것은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가족 전체에 대한 인정과 결합된 반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가족에 대한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북한사회의 가부장적인 질서를 보여준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어머니는 자신이 아는 학부모들을 통해 형성된 ‘관계’를 이용하여 남편의 입당을 성사시키는 등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어머니가 김정일 ‘당 자금’을 만드는 회사의 창고장을 했던 사례 8의 경우도 ‘고난의 행군’을 모르고 지낼 정도로 어머니의 경제력으로 살았지만, 어머니와 가족들은 “아빠가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는” 복종생활을 하였다(사례 8 구술녹취록, 2019/12). 북한에서 1960~70년대에 출생한 부모 세대의 경우 ‘남성에게 절대 복종하는 여성’이라는 규범이 부부사이에 관철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만 6년 군복무 후 입당 가방만 메고 제대

2000년대 초반에 중학교를 졸업한 사례 7은 군에 입대하여 만 6년을 복무했다. 인민학교 시절부터 고난의 행군을 겪은 사례 7은 “군대 나가서 입당을 해서 간부가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군대에 지원했다. ‘평백성’들이 온갖 육체노동을 해도 생계를 잇지 못하는 반면, 간부들은 ‘말로 먹고사는’ 현실을 고려하여 부모들이 고된 ‘군입대’를 추천하였다. 사례 7의 가족이 딸을 대학에 보낼 수 있을 만큼의 권력과 재력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군입대를 통해 당이나 군부대 간부로 배치되기를 기대하고 내린 결정이었다.

그런데 사례 7이 입대했던 당시는 고난의 행군 직후로, 군대에서

도 ‘영양실조’를 겪어야 할 정도로 여전히 혹독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군대 나가서는 조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조금 부유하게 살았는데, 군대 나가서 보니까 다 모든 게 보급이 안 되고, 우리 여성들은 특히 이게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누도 많이 써야 되고, 이게 생리대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리대 걱정은 안 해요. 그러니까 군대 나가니까, 이 영양이 딸리니까 그런 건 또 안 하는 거예요. 네, 한 달에 10개... 생리대 여기서 **대동강생리대** 그거 가지고 나왔어요. 군대들만 딱 보급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씩 줬거든요. 한 달에 하나씩. 그런데 이것을 안 하다니니까 그걸 계속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배고프면 그걸 또 사택에다 가져다 팔고 또 먹을 걸 사먹고. (사례 7 구술녹취록, 2019/6)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지 못한 채 고된 군사훈련을 받았던 여성들 대부분이 생리가 끊어지는 경험을 했다. 군대에서만 특별히 지급되던 “대동강 생리대”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여성들은 다른 경로로 생리대를 팔아서 먹을 것을 보충해야 하는 생활을 했다. 그런데 2005년부터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대대장들이 남자로 교체된 후 군대 내에서 ‘비사회주의현상’이 다수 발생하였다. 장교들이 여성군관들을 희롱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했고, 많은 경우 여성들만 생활제대를 당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사례 7은 2007년 만 6년의 군 생활을 무사히 견디고 입당하였다. 그러나 입당 가방 메고 돈 한 푼 없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전보다 집안 형편이 나빠졌고, 집도 광산에서 농촌 시골로 이사한 상태였다.

(3) 결혼과 함께 시작된 혹독한 ‘부양노동’

사례 7은 돈을 빌려서, 중국 밀매로 외화벌이를 하는 친구에게 약초를 대주는 장사를 시작하였다. 일 년 장사로 돈을 벌어서 결혼할 살림살이를 마련하였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의 병세가 심해져서 “딸 시집가는 거 못보고 죽겠다”는 상황이 되자, 아버지가 급하게 중매한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이를 받아들여 혼인식을 하였다.

연애는 이렇게 하다가 갈라지면 끝이고, 또 중매는 모르는 사람.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사는 룰이 더 많거든요. 네, 중매가 많거든요 (중략) 결혼은 중매. 연애결혼도 하고 하는데, 기본 제가 말하는 거는 중매결혼이 더 많다 이거죠 (중략) 제가 그 사람을 봐서 싫어도 또 부모들이 요구하면 할 수 없이 사는 거죠. (사례 7 구술녹취록, 2019/13)

위의 구술에서는 사례 7은 여전히 북한 사회에서 중매에 의한 결혼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례 7이 결혼했던 2000년대 중반에 지방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연애하는 일이 많았지만, 결혼은 집안을 아는 사람들의 중매를 통해 성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결혼 후 사례 7은 시어머니와 시동생, 제대 군인이었던 남편과 시집에서 생활하며 시동생 두 명을 수발하고 집을 얻어 장가를 보내고, 시엄마의 비위를 맞추며 집안 살림을 살아야 하는 고된 생활을 하였다. 동시에 부양가족의 의무인 여맹과 인민반에서 요구하는 각종 동원과 ‘외화벌이’에 참여하거나 대신 돈을 내야하는 고통에 시달렸다.

남성들은 나가서 직장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북한

에선 배급도 제 정량을 안 주고 하다나니까 **한 달 배급이 열흘도 못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안 살림 책임진 우리 가정부인들이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 거예요. 네, 자식도 키울래, 세대주도 뒷수발을 해줄래. 아 그러다나니까 장사도 하고 농사도 하고 하는데, 또 그게 반면에 인민반 생활 또 하고 여맹생활도 하고. 그게 조직생활이 간단치 않은 거예요. 네, 계속 내라 하고, 계속 어디 건설장 동원이 되고.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진짜 여성들이 뭐랄까 막 기를 못 펴고 항상 그 먹고 살기 위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 고생을 많이 하죠. (사례 7 구술녹취록, 2019/2)

사례 7과 사례 8은 모두 결혼하여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온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노동하였다. 남편 직장의 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지 오래된 상태이므로 여성들이 농사와 장사 등을 해서 돈을 벌면서 각종 집안 일을 하는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부양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민반과 여맹의 동원노동과 각종 ‘지원’을 위해 할당된 돈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다. 형식상으로는 남편이 부양하는 가족이 된 일반 기혼여성들이 실질적으로는 가족부양과 국가부양의 역할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처음 음식장사로 두부와 술을 만들어 팔던 사례 7은 친구의 도움으로 약초장사를 하여 돈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약초를 수집하고 중개하기 위해 각 지역을 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남편 및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겼다.

그전에는 집 살림 하면서 음식장사도 하고, 계속 제가 집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눈이 터가지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돈을 못 벌겠다 해가지고 동무 방조로 해가지고 이렇

게 좀 다니면서 장사를 했죠. 산에 다니며, 산골로 다니면서 약초 수집해가지고 사가지고 이렇게 하다다니까 조금 다니는 룰이 많았으니까 시엄마가 또 싫어하는 거예요. 네, 우리 남편도 싫어하고. 그런데 어쨌든 저도 살아야 하니까. 네, 뿌리치죠. 그 다음에 아마 그런 거 요구해도, 하지 말라는 요구해도 돈은 또 돈대로 버니까 그거 또 재미가 들잖아요. 뿌리치고 하니까 남편은 내가 또 그전 같지 않으니까. 그전에는 남편이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하라는 대로 하고, 여자 봐도 말 안 하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좀 다툼이 세졌어요. 어떤 때는 막 때리기도 하고, 여기로 말하면 폭행도 하고. 네, 그런 일이 점점 잦아졌어요. (사례 7 구술녹취록, 2019/15)

위의 구술에서 사례 7은 장사가 활발해지고 바깥 활동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자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간섭과 요구가 세졌지만, 돈을 벌어야 자신도 살 수 있다는 확신과 ‘돈을 버는 재미’가 커지면서 자신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사례 7의 자의식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그 것처럼 고된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남편의 말에 ‘고분고분 하라는 대로 하고 여자 봐도 말 안 하던’ 태도가 아니라 남편의 말을 “뿌리치고” 살길을 찾으려 하자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다.

(4) 의무로 하는 성생활과 남편의 외도

시집에 들어가서 생활했던 사례 7은 부부생활의 제약을 경험하였다. 다음은 두 칸의 방이 있는 집에서 다섯 명의 성인이 함께 생활하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시집살림 하다다니까 네, 시엄마, 아들, 제가 놓고 남편 누웠어요. 윗[윗]방에는 시동생들이 누웠어요. 그러다나니

까 조금 우리 시어머니가 남편을 일찍 죽었거든요. 여의었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계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부부생활에서도 또 그렇다니까 남편이 자기 충족을 못 시키잖아요. 어머니 눈치를 봐야지, 뭐 나는 또 나대로 집 세간살이 고되니까 힘들니까 그렇지 한니까, 그걸 충족 못 시키니까. (중략) 너무 계심을 부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싸움도 많이 했어요. 남편하고 우리 시엄마. (사례 7 구술녹취록, 2019/21)

나란히 붙은 방 두 칸 중 윗방에는 시동생들이 자고, 아랫방에서는 시어머니와 사례 7 부부가 같이 생활하였으므로 성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일찍 남편이 사망한 시어머니의 눈치와 간섭으로 남편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고, 그 사이에서 사례 7은 감정과 행동을 억제하며 지내야 했다.

그런데 어려운 생활 조건 속에서 사례 7이 여러 날에 걸쳐 장사를 하고 돌아오는 동안 남편은 직장의 여성들과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이런 일들이 점점 노골적인 상황이 되었다. 이런 남편의 행동 때문에 자주 싸우기도 했지만 “자식이 있으니깐 조금 남편을 교양해서 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겠다,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또 하면서” 몇 년을 참았으나, 남편이 여성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점점 “농질도 심하게” 하는 상황이 되었고, 시어머니도 남편을 두둔하기 시작하자, 사례 7은 정신적 갈등을 겪으며 이혼을 결심하였다.

(5) 이혼에 대한 감정은 시대의 새로운 방침

사례 7이 이혼을 생각하며 갈등하고 있을 때 교사였던 친정어머니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다고 한다.

제 딸이 집에 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렇게 노니까 가슴이 아프죠. 어머니는 계속 제가 오면 이게 아파서 “너 사는 거 보고 아파서 엄마가 더 병이 오겠다.”고 막 그렇게 그랬어요, 계속. 그러면서 좀 다툼이 있어서 집에 가면 “살지 말라.”고 막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래 난 또 “자식 있어서 가야 된다.”고 뿌리치고 가고. 그래 몇 번을 그렇게 반복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너희 안 된다. 너네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하는데 앞길이 창창한데, 자식 데리고, 너 시집갈 생각이 없으면 자식 데리고 살아라. 엄마가 다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또 남편도 그렇게 나오지 하니까 저도 포기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왔죠. (사례 7 구술녹취록, 2019/24)

평생 교사로 생활하며 가족부양을 책임졌던 친정어머니는 혹독한 고생을 하며 결혼생활을 하는 딸이 남편의 외도와 폭력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이혼을 권유하였다. 어머니가 이혼 후의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밝히자, 마침내 사례 7은 아들을 데리고 시집을 나와 친정으로 왔다. 사례 7의 어머니가 같은 여성으로서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딸에게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례 7은 2011년에 아들과 함께 친정에 와서 생활하며 장사활동을 계속하였다.

사례 7과 사례 8에 의하면 북한 사회에서 법적으로 이혼이 보장되지만 실질적으로 이혼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 2015년 김정은의 특별 방침으로 이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네, 국가적으로 이혼하지 마라, 무슨 김정은이 방침이다, 김정일이 방침이다, 이런 거 비준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김정은이 시대에 이혼했어요. 그때 김정일이 때는 안 되고, 김정은이 때가 너무 이혼... 안 살겠다는 룰이 많아가지고 몇 년씩 갈라져

살거든요. 이혼을 안 해주지 하니까 갈라져 살거든요. 그러면서 또 남자는 여자 살겠는데 여자는 또 안 살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또 살인도 나오고. 서로 이혼 안 시켜 주니까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죽기내기로 막.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 때는 무슨 1호 보고 올라가서 김정은이가 그럼 3년 이상 갈라진 그거는 다시 요해해보고 조사해보고 그래도 못 살겠다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갈라져 사는 경우에는 이혼시켜 주라.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당선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혼했죠. 제가 한 4년을 갈라져 있었거든요. (사례 7 구술녹취록, 2019/10)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어려운 경제조건 속에서 실제 헤어져 사는 부부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법적인 이혼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늘자, 가족의 해체를 막기 위해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던 이전의 당 방침을 2015년 일시적으로 수정하였다고 한다.¹¹³⁾ 실질적으로 헤어져 살아가는 부부가 늘자, 이로 인한 사회적 범죄와 중혼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한 현실적 조치로 보인다. 어려운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극심한 변동을 겪고 있는 새로운 가족의 양상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공식적인 이혼이 성립된 것에 대해 사례 7은 스스로 행운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이혼 후 본격적인 장사를 하던 사례 7은 좀 더 수입이 좋은 광석 밀수를 하다가 발각되어 2018년 가족에게도 연락하지 못한 채 중국 대방을 통해 중국으로 갔다. 잠시 단속을 피하기 위한 도피였다. 그런데 중국에서 중국 공안의 단속을 받게 되자 ‘선’을 잡아서 한국으로 왔다.

113) 사례 8은 2011/12년 이혼을 허락하지 않던 당 방침에 따라 남편과 이혼하지 못한 채 따로 나가 살았다. 당시 북한 당국은 “이혼하면 고아가 많이 생긴다.”는 이유로 이혼을 막았다고 한다.

나. 시집살이와 장사로 가족을 먹여 살린 전직 간호사

(1) 고난의 행군 때 행방불명된 어머니

사례 10은 1980년대 중반 양강도에서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그는 세 살 때부터 다른 지역에 혼자 살고 있던 외할머니 집에서 성장했다. 면담 시 사례 10은 어렵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구술 자료에 의하면 그는 인민학교 시절 빈번히 ‘부모 없는 아이’라는 놀림을 받는 것이 싫어서 중학교에 진학할 때인 1990년대 중반 부모님의 집으로 왔다. 그런데 2년도 되지 않아 어머니가 ‘행방불명’되었다.

장사를 한다고 할머니 집에... 내가 할머니 집에서 오고, 할머니 집에 장사하러 갔다가, 장사하는 게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장사하는 걸 몽땅 헐잡을 맞히다나니까, 사기를 맞히다나니까 그 다음에 난처해... 황당한 거예요. 황당하니까, 그때 고난의 행군 시기는 함북도에서 사람들이 뛰는 게 많았거든요. 그 온성 쪽으로, 두만강 쪽으로, 거기로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거기 한국이 아니고 중국으로 다 갔거든요. 흔히 이렇게 사람을 파는 우리 말하면 인신매매라고, 북한에서는 인신매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 가면 돈 벌기 쉽다는 거, 가서 돈을 많이 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략) 엄마도 그렇게 간 거예요. (사례 10 구술녹취록, 2019/12)

1990년대 후반에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배급이 끊기고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되자 사례 10의 어머니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행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여행이나 이주가 불가능하므로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이 브로커를 통해 국경을 넘었던 것처럼 ‘선’을 타고 중국으로 갔으나 연락이 두절되었던 것이다. 이후 사례 10의 가

족들이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한편으로 어머니를 애타게 기다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갖은 고생을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얼마 지난 후 아버지는 ‘새엄마’를 얻어서 같이 생활하였다.

(2)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6년 연애한 남자와 결혼

2003년 중학교를 졸업한 사례 10은 교원대학에 가고 싶었으나 진학을 위해서는 “휘발유는 한 도람, 180킬로를 내야 되고, 디젤유는 두 도람을 내야 되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 결국 대학 진학 기회를 놓친 사례 10은 병원에서 일하다가 추천을 받아서 2000년대 중반에 ‘직빠’로 간호원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학교에 가지 않고 기업소에 배치될 경우 대부분 ‘돌격대’로 동원되거나 동원을 면하기 위해 돈을 ‘고여야 하는’ 상황이라서 미래를 위해 학교를 다니는 길을 택했다고 한다. 사례 10은 2년제인 간호원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작은 병원에서 일했다. 공식적으로 무상의료체제인 북한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배급을 받으며 생활해야 하지만, 정상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사는 치료한 환자에게 받는 ‘뇌물’과 일과 후의 비공식적인 진료로 생활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간호원들에게는 “차려지는 것”이 없었다. 원칙적으로 8시간 3교대로 일했지만 환자들이 많아서 점심 대기를 서면서 저녁 근무를 하는 등 고된 노동을 하였다.

구술 자료에 의하면, 사례 10은 중학교 졸업반이었던 2000년대 초반 무렵부터 아버지가 출장을 오갈 때 함께 역전을 다니며 알게 된 군인과 연애를 하였다. 사춘기의 나이에 갑자기 어머니가 행방불명이 된 후 외롭고 힘들었던 시기에 같은 지역에 살면서 군사복무를 하느라 오가던 남성을 알게 되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1년에 한 두 번씩 집에 오면 그저 만나고 선물 주고 그런 관계로

지내다가” 2000년대 중반에 제대한 남성이 의과대학에 들어간 후 정식으로 가족들에게 관계를 밝혔으나 가족들의 반대가 컸다. 토대는 좋지 않지만 어머니가 장사를 크게 하여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남성의 집에서는 장사의 ‘빚’이 될 수 있는 권력 있는 집안과의 혼사를 원했던 것이다. 가족의 강한 반대에 지쳐서 1년 동안 헤어졌던 두 사람은 남성이 “병원에 친구들을 보내고 찾아오고 해가지고 다시 또 결합”하게 되었다. 결국 남성이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하고 사례 10의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생활하였다. 사례 10은 병원에 다니면서 당시 의과대학 학생이던 남편을 뒷바라지하였다. 일 년여 후 사례 10이 딸을 출산하자 “시엄마가 용단을 내려가지고” 서둘러 약혼식을 하고 닳새 뒤에 결혼식을 치렀다. 북한에서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 “말소리”가 많이 나는 등 부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결국 결혼을 하게 되면 용인된다고 한다.

결혼 후 시댁으로 들어간 사례 10은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다. 시부모를 포함해 열세명이나 되는 가족들을 위한 가사노동과 양육을 도맡아하면서 뇌혈전으로 쓰러진 시아버지의 병구완까지 해야 했다.

제가 아침에는 깨나면 한 4시 반쯤. 4시쯤 깨나가지고 제가 세면
을 하고 화장을 하고 한 4시 반이면 부엌에 내려가서 막 이렇게 음식상을 차려가지고 음식을 차리고 또 거두고. 집이 엄청 컸으니까, 지금은 여기 청소기랑 나오고 했는데, 북한도 지금은 나오거든요, 중국에서 이렇게 나오고 한국 것도 오고 하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다 이렇게 나일론 걸레를 가지고 다 이렇게 청소를 했어요. 함흥 비날론 걸레를 가지고. 집이 평수가 엄청 컸어요. 그랬으니까 그걸 청소를 다 하고 애를 낳았으니까 애 기저귀 빨고 뭐 어찌고 하는 그 과정이... 점심시간이 다 되거든요. 집을 거두고 설거지를 하고 뭐 어찌고 하면. 또 점심밥을 차리고 어찌고 어찌고

하면 저녁이 되고, 영치를 땅에 붙일 새가 없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곱지 못한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엄청 저를 달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불장에 있는 이불도 솜재로 통거 다 빨라고 해가지고, 지금 작년도부터 우리 북한도 통돌이 세탁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나올 때 금방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 그냥 이렇게 탈수기, 세탁기 따로 따로 분리된 그런 이전에 나온 거 우리도 썼거든요. 그런데 그제 통이 작으니까 이불 같은 건 못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걸 이고 압록강이라는 데 나가서 빨고, 이렇게 했거든요. 시집살이 정말 고되게 했어요. (사례 10 구술녹취록, 2019/34)

위의 구술에서 사례 10은 요즈음 북한에서 쓰는 청소기와 통돌이 세탁기가 없던 시절 비날론 걸레로 청소하고 압록강 물에서 이불빨래까지 하던 당시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 각 지역을 다니며 장사를 하던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하며 각종 눈치와 고된 노동까지 감당해야 했던 당시의 어려움을 면담에서 절절히 소개하였다. 그러나 결혼 후 5개월이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가족들은 큰 집을 팔아서 각자 헤어지게 되었다. 사례 10의 가족은 치매로 누워있던 시아버지를 모시고 작은 집으로 분가하였다.

(3) 장사하며 남편 뒷바라지를 한 부양여성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돈으로 아이를 키우고 대학생인 남편 뒷바라지를 하던 사례 10은 2011년 무렵부터 장사를 시작했다. 친구의 매대를 빌려서 신발장사, 해외에서 들어온 중고 옷 장사를 하였다. “민족적 자존심” 없이 외국 옷을 파는 일을 금지하는 방침 속에서도 길거리에서 고되게 장사를 했다. “단속하는 사람한테 몇 번 당했고 좀 법에도 많이 이렇게 가서 조사도 많이 받고” 그런 형편

에서도 달리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계속 앉아서 팔았다고 한다. 그러나 자꾸 물건이 없어지고 이런 저런 일로 걸리는 일이 많아서 아예 집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서 지방의 ‘선’들을 잡아 계속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2018년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8년 이상 중국 도매 등을 하여 돈을 “남들보다 잘 살만큼” 벌었다.

2010년대 초반에 의과대학을 졸업한 남편은 국가 의료관련 기관에 배치를 받았다. 사례 10은 남편을 잘 뒷바라지하여 ‘법기관’으로 보내려고 하였다.

남편은 벌어는 못 들어와도, 내가 가족을 세대주라고 해도, 가족을 유지는 못해도 사회적으로 당당하고, 남편이 그런 지위에 있으면 내가 무슨 불법을 할 때 조금 잡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줄이 되거든요. 내가 이걸 팔다가... 선생님 형사한테 단속됐어요. 그럼 저희 남편 도당에 뭐뒀한 거로 있는데, “이거 왜 단속품인데 왜 했어? 벌금 얼마 내.” 벌금이 아니에요. 벌금으로 국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송을 걸어서 법적처리를 받아야 되지만, 그게 싫어가지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사리사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무 것도 없는 그냥 노동자 와이프예요. 그러면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만큼 고일게요.” 하지만, 내가 남편이 이 자리에 있으면 “저 형사님, 저희 남편 어디 있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자기도 그 선에 영켜 있고, 제가 또 무슨 일이, 이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위치에 올려놓는 게 첫 번째 이유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나는 비록 장사를 하지만 선생님이나 다 같은, 우리 같은 여성들이라고 볼 때, “저 애 남편은 도당에 다니는데, 저애 남편은 검찰소야.” 이렇게. 사람들이 좀 우상화한다든가 아니면 좀 부러워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례 10 구술녹취록, 2019/29)

위의 구술에서 사례 10은 북한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인정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남편의 직장은 가족의 사회적 지위이자, 아내 혹은 가족의 경제활동을 위한 ‘뺨’이 되는 반면, 여성의 직장은 자기 스스로의 사회적 지위는 되지만 가족을 위한 울타리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남성은 직장배치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의 ‘총대’로 활동한다는 사회적 인정이 주어지는 반면, 여성의 사회활동은 개인적인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내로서 남편을 지원해야하는 추가적인 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배급제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남편이 소위 ‘권력’이 있는 직장배치를 받을 경우 ‘뇌물’을 챙길 수 있는 것과 함께 아내의 장사활동을 암묵적으로 지원하는 ‘뺨’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사례 10은 의대를 졸업한 남편이 ‘법 일꾼’이 되도록 힘을 썼다. 이전의 북한에서는 남편감으로 ‘당 일꾼’을 선호했으나 모든 것이 불법으로 돌아가는 요즈음은 문제가 생길 경우 뒤를 봐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법 일꾼’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사례 10 구술녹취록, 2019/30). 그래서 직업을 “마땅한 것을 잡지 않고 그냥 기회를 노렸는데” 잘 되지 않았다고 한다. 남편은 의료관련 기관에 출근은 하지만 가족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례 10은 사례 18은 어머니가 행방불명되어도 ‘문건’을 떼지 못해 중국에 갈 수 없었던 아픔과 그 어머니 때문에 ‘토대가 나빠서’ 앞으로 자식들의 미래가 제한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민하다가 가족들과 함께 한국으로 왔다. 어린 시절 고난의 행군과 어머니의 부재, 갖은 시집살이와 부양노동을 하며 살아온 여성이 가족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한국으로 온 것이다. 최선은 아니지만 내 힘으로 노력하여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곳이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선택한 길이다.

5. 새 세대 여성들

가. “다른 여자와 다른” 처녀 장사꾼

(1) 장사에 일찍 눈 뜬 어린시절

사례 12는 북한에서 경제난이 시작되었던 1990년대 중반 평안남도 의 도시에서 노동자가정의 맏딸로 태어난 20대 중반의 여성이다. 갓난아기 때는 배급이 끊겨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부모님이 일찍 장사를 시작하면서 소학교 들어갈 무렵에는 당시 그 동네에 한두 대밖에 없었던 자전거를 갖춰 놓고 살 정도로 풍족한 생활을 했다. 아버지는 직장에 적(籍)만 걸어놓고 장사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시에서 이름이 자자할 정도였다. 장사를 유지하기 위해 간부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주어야 했는데, 뇌물을 받지 않은 간부가 신고를 해서 장사밧신을 빼앗기는 일이 몇 차례 반복됐다.

사례 12는 중학교 때 대학에 진학해서 간부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지만, 점차 사회현실을 알게 되면서 차라리 장사를 해서 돈을 잘 버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중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장사를 한참 잘 될 때, 저도 대학 가려고 생각했었는데, 북한에서는 아무리 대학가도, 여자가 뭐 간부 한 다 해도 힘들어요. 하긴 해도, 여자 간부도 많은데 막 간부들 시달림 받고 뭐 할래면 차라리 장사해서 나 그냥 책임자하고서 사장하고 있는 게 낫지, 물주 하는 게 낫지. (중략) 다른 언니들도 이렇게 무슨 시내에서 의대, 이런 대학도 나오고도 대학 나온 거 간판이지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저 다 장사하는 거예요. 대학 나와서 막 국수장사하고 비리비리 하면서 기지지해서 돌아댁기는 사람들이지. 차라리 나는 대학 안 나오고 그냥 어릴 때부터 장사했으

니까 장사 물계도 더 밝구. 그냥 그러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제가 대학 졸업증 하나 필요하다 이러면 그냥 대학에 가서 제일 높은 교수들한테 다 돈 찢러주고 대학졸업증 하나 한 2년 뒤에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런데 고민을 안 했어요. (사례 12 구술녹취록, 2019/10~11)

위의 구술은 대학졸업장도 살 수 있다는 돈의 위력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감각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렇다 할 가정배경이 없는 노동자가정 출신 여성의 젠더정치에 대한 간파를 보여준다. 사례 12는 북한에서 여성이 대학을 졸업해도 간부를 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간부를 한다고 해도 쉽게 출세하기는 어렵다는 성차별 구조를 10대 중후반인 중학교 졸업 전에 인지한 것이다. 그는 뒷배경 없는 여성에게 ‘간판’에 불과한 대학입학 대신 장사를 통해 돈을 버는 길을 별 ‘고민 없이’ 선택한다.

구술자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버지가 장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장사 밑천을 몰수당하게 되었다. 이후 아버지는 고향을 떠나 홀로 산골로 들어갔고, 사례 12는 아픈 어머니와 동생을 돌봐야 하는 가정의 처지가 되었다.

(2) 처녀장사꾼으로 자리잡다

사례 12는 2010년대 중반에 중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에 적(籍)을 걸어두고 열여덟 나이에 장사를 시작한다. 첫 장사는 리어카를 끌고 지역에 있는 공장에 가서 물품을 사서 싣고 와서 소매상들에게 파는 것이었다. 처음 2년간은 죽을 먹으면서 힘들게 장사를 했고 많이 울기도 했다. 장사의 기반이 된 것은 아버지의 거래처와 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장사하시는 걸 종종 따라다니며 쌓았던 장사에 대한 “식견”이었다.

아버지도 직장에 적을 걸어 놓고 장사를 하신 거죠. 그런데 장사를 했는데 아버지가 너무 크게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다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이젠 아버지 이름이 너무 이렇게 자자해서 바닥에서 장사를 할 수 없게 돼가지고, 그 자리에. 아버지가 하렸으니까 제가 그 바탕이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바탕으로 제가 시작한 거죠. (중략) 아빠는 마음이 또 착해가지고 그냥 다 그냥 그저 안 줘도 되는 작은 간부까지 조그만 거까지 다 줬거든요. 차라리 저는 아버지 사례를 보고 저리 큰 간부한테 붙었어요. 작은 간부들 다 떼버리고. 그리고 그냥 잔간부가 와서 어찌고저찌고 하면 말시키지 말라고 그러고, “너 가만두지 않겠어.” 이러면 잔다음에 큰간부한테 전화해서 무슨 “부부장 동지, 이렇게 됐는데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면 “알았어, 걱정말아.” 그럼 그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사례 12 구술녹취록, 2019/4, 13)

위의 인용문을 보면, 사례 12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식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는 그것을 “어떤 품목으로 장사를 하는지”와 “사람과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라고 요약하여 말한다. 사례 12는 아버지가 구축해놓은 장사 품목의 공급처와 판매처를 바탕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장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어떤 간부와 ‘사업’을 해야 하는가이다. 북한에서 시장활동은 늘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것이고, 규모가 큰 장사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돈주들은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 권력을 가진 간부들과 결탁하여 사경제활동에 대한 보호를 받는다. 합법적 보호막은 불완전한 것이어서, 언제든지 더 큰 권력에 의해 불법화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사례 12의 아버지가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압수당한 것은 이 결탁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사업이 커지는 과정에서 몇 차례 이런 일이 있었고, 사례 12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잔간부”가 아닌 “큰간부”와 연계를 형

성했다.

“사람과의 사업”은 간부와의 결탁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함한다. 잘 팔리는 물건을 많이 사다 놓고 많이 팔아야 이익을 창출하고 자본금도 불릴 수 있는데, 초반에는 돈이 잘 돌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 수금이 안 돼서 식량도 떨어지고 초기 장사밑천마저 잃을 상황이 되자, 사례 12는 수금을 하기 위해 도끼를 들고 직접 거래자를 찾아갔다. 그는 대금 지불을 미루는 거래자에게 “나 도끼 들고 이 집안 재산 다 까고 너 죽고 나도 죽을래.”라고 위협하여 돈을 받아냈다. 이 일로 그가 “어려도 만만치 않다.”는 소문이 나면서 여러 군데에서 못 받았던 빚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사례 12는 그릇, 비닐방막, 옷, 파철, 철근 등 취급품목을 하나씩 불러가다가 마지막에는 돈장사까지 하면서 큰 돈을 벌었다.

북한에서 보호자가 변변히 않은 어린 나이의 여성이 장사를 하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지만, 사례 12는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갖는 제약을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여성이라는 점을 잘 활용했다. 북한에서 여성이 혼자 장사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육체적 완력을 쓸 수 없고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는데,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례 12는 이삼십 대 남성 두 명을 경호원이자 수금원으로 고용하였다. 처음에는 이들에게 북한돈으로 30만원씩 주었다가 일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생기면 더 많은 돈을 지급했다. 나중에는 고용한 남성들에게 자신의 친척을 중매해주고 결혼을 시켜서 혈연관계를 만들었다.

내가 좀 장사가 되면서 남자들을 고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해가지고, 그래서 고르는 거 완전, 진짜 막 사람 한 명 고르는 거 거의 5개월 먹었어요. 그거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나 이런

사람 구하고 싶다.” 이러니까 사방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나 좀 고용해 달라고. (중략) [고용한 남성들에게] 여자를 일단 붙여줘서 마음이, 가정적으로 안착을 시켜야지. (중략)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가족 지키고, 그냥 가족처럼 돌봐주고 가족에서 뺏어져서 저리 먼 친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비밀도 보장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 가족도 먹고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례 12 구술녹취록, 2019/15~16)

사례 12는 여성이어서 오히려 장사가 용이한 측면도 있었다고 말한다. 아버지가 직장에 적(籍)을 붙여두고 장사하기 위해 여기저기 뇌물로 많은 돈을 내야 했던 데 비해, 여성인 그는 적은 돈을 내도 되었고, 간부들에게 필요한 부탁을 하는 데도 여성이어서 유리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간부들이 또 와서 그러거든요. 계속 와요. 그래가지고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저희가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남자니까 그런데, 저는 여자니까 간부들한테 그냥 뭐 웃음 한 번 지어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대처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하기가 여자가 더 편하더라고요. (사례 12 구술녹취록, 2019/4)

위의 구술은 구술자가 공식적인 영역에서 여성의 사회적 성취가 불리한 젠더불평등 구조를 간파할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영역에서 “웃음 한번 짓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오히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젠더불평등 구조의 틈새를 공략하는 세 세대 여성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성교제와 결혼: “난 다른 여자들과 달라”

사례 12가 중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는 딸의 이성교제를 심하게

통제했다. 나중에 간부집으로 시집보내야 하는데, 연애를 해서 소문이 나면 안 된다고, ‘평민집 아들’과 연애를 하면 집에서 내쫓겠다고 했다. 그래서 학급의 다른 친구들이 이성교제를 할 때, 사례 12는 쫓아다니는 남자친구들을 다 거절했다. 사례 12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다른 지방으로 가신 뒤에도, 아버지가 무섭다고 소문이 나서 사귀자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동창생 한 명이 계속 따라다녔다. 사례 12는 자신도 의지할 데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와 연애를 하게 되었다. 당시 군인이었던 남자친구가 휴가를 나오면 같이 길거리를 걸어 다니거나 근처의 경치가 좋은 곳이나 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데이트를 하였다.

사례 12는 결혼하면 구속될까봐 두렵고 가사노동도 하기 싫어서 처음에는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 2년쯤 만나다보니 남자친구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집안에 소개해서 어머니에게 교제를 승인받았다. 남자친구네 집안도 장사를 해서 돈이 많았지만, 사례 12는 자신이 경제적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남자친구 집안의 경제력을 그다지 매력적인 조건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북한 여성들은 결혼하기 이전이라도 예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기 마련이고, 시댁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지만, 사례 12는 오히려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를 잘 길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남자친구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얘기했다.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많이 해보지 않았고, 장사를 하면서도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고 다녔던 사례 12는 “색시가 반찬을 못하면 불행하다.”고 하는 남자친구에게 자신은 요리를 할 줄 모르고 집안일 할 시간도 없으니, 결혼하면 밥을 해주든지 집안일 하는 사람을 따로 두어야 한다고 대응했다.

시부모들은 별로 달갑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돈주니까…, [일반적으로] 시부모들이 북한에서 막 대하거든요. 남자들도 색시한테 막 대해요. (중략) 저는 돈 많으니까 시엄마가 무슨 대수냐. 기분이 맞지 않으면 그냥 안 살면 되지. 결혼등록도 안한 거. 뭐 다 따로 나와서 살면 되니까 시엄마, 시아버지 굳이 눈치 볼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래 난 인식 줬죠. 살기 전에 진짜 오빠하고 산다면 난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난 다른 여자들하고 달라.** (중략) 시엄마한테는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지 저를 숙볼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 있는데 어른한테, 내가 이리니까 내 마음에 들면 살고 내 안 마음에 들면 관둬라. (중략) 오빠, 나 반찬 같은 거 모르는데 오빠가 군대 나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나 해 줘야 돼. 아니면 집에 식모를 두든가 해야 돼. 못 하겠어요. 밥을 삼시세끼, 아침밥 하고 출근하면 점심 되고 하고 치우고 나면 저녁 되고, 저녁밥 하고 또 치우고 나면 자야 되는데. 내가 그럼 돈은 언제 벌어? 그럼 내가 삼시세끼, 요리 대학 가서 요리 배워가지고 밥 해주겠으니까 나만큼 돈 벌어. (사례 12 구술녹취록, 2019/24~29)

위의 구술은 시집과의 관계나 가사노동에 대해, 앞서 살펴본 전업 주부나 30~40대 여성들 사례와 다른, 새 세대 여성의 변화하는 시각을 보여준다. 사례 12가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당당할 뿐 아니라 시어머니를 미리 “길들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남자친구에게 가사노동을 요구한 것은 결혼할 경우 집안의 경제력은 큰 장사를 하는 자신이 쥐고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이는 장사일을 해서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면서도 생계노동에 대해 가정 내에서 인정을 못하고 가사노동도 도맡아했던 앞의 몇몇 사례들과 대조적이다.

한편,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면서 사례 12는 남자친구를 뒷바라지 해서 대학을 졸업시켜 간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장사를

하는 데는 ‘권력’이 필요한데, 자신이 대학 공부를 해서 직접 간부가 되기보다는 권력을 가진 남편을 두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는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간부집에 시집가는 것 대신 남자친구를 “키워서” 간부를 만드는 것을 택한다. 그러나 이 계획은 사례 12가 갑작스럽게 중국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제가 차라리 대학졸업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저리 간부를 사귀는 게. 그러면 나한테만 돈 들이고 간부집 자식이나 그런 사람은 그냥 툭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려면 장사에 이렇게 신경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할 수 없이 그냥 키우는 게... (중략) 남편이라도 세워주는 건 세워주고 내 말은 좀 들을 건 듣는 사람을 택해야지, 너무 자기만 알고 이러면서 저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키워가지고 내 말 잘 듣는 남편이 나올 거 같더라고요. (사례 12 구술녹취록, 2019/26)

(4) 탈북 이후의 생활

사례 12는 돈을 받으러 중국에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북한에서 잘 살았고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 오게 된 것이어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한국은 돈을 벌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보다 살기 좋다고 생각한다. 중국 남성들은 여성에게 밥도 해주고 “멸사봉공”하는데, 한국 남성들은 영화에서처럼 여자를 위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한국 남성들을 몇 명 만나봤지만, 밥 해주겠다는 남성은 없어서 조금 만나다가 그만두었다.

북한에서는 장사해서 돈 버는 게 최고이지만 한국에서는 공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법에도 관심이 있고 정치와 남북관계에도 관심이 많아 언젠가는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는 꿈도 꾀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공부를 해야 하는데, 학비가 지원되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걱정이다. 현재는 온라인으로 대학 학점취득을 하고 있는데, 공부에 집중해야 하나 돈을 벌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짬짬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다가 정 안되면 장사를 해볼 생각도 있다.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시간을 많이 허비할 것 같아” 결혼은 공부를 마친 후 서른 넘어서 하려고 미루어두고 있다.

나. ‘새 세대’ 여성들

(1) ‘나만의 스타일’을 추구하고픈 여성

사례 9는 1990년대 후반 평안남도 군 지역에서 태어났다. 세 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소학교에 들어갈 무렵 함경북도 국경 지역 도시에 있는 외가로 오게 되었다. 이후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어머니, 새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다. 사례 9는 이때부터 탈북하기까지의 시기를 외동딸로 살면서 “입고 싶은 것 다 입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었고,” 가족이 서로를 아끼고 지지해주었던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한다.

사례 9는 중등학교 시절, 공부에 대한 큰 부담감 없이 학급 친구들과 어울려 즐겁게 학교생활을 했다. 대학에 진학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고, 주사 놓는 것이라도 배워두면 좋지 않겠느냐는 부모님의 권유로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6개월제 간호원양성소에 들어갔다.

간호원양성소 졸업 후에는 시병원에서 2년 반 정도 일했다. 간호사 일은 적성에도 맞고 직장 내 인간관계도 좋았는데, 청년동맹 조직생활과 정치학습, 생활총화 등 ‘규율생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 돈을 벌기보다는 직장에 내야하는 돈이 많아서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존을 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직장생활을 계속하다가는 결혼 준비도 못해서 결혼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례 9는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하고 싶었지만, 미혼여성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려면 직장을 다닐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정기적으로 돈을 내고 적(籍)만 유지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직’으로 처리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사례 9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하고, 보안서에서 가짜 결혼확인증을 만들어 직장에 제출하고 퇴직하였다. 사례 9는 스무 살에 직장을 그만두고 양곡장사를 하는 부모님을 졸라 장사밑천을 얻어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장사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20대 젊은 여성이 장사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 통제가 따랐다. 옷차림이나 장사 통제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차에 한국에 온 친척의 연락을 받게 되고, 〈상속자들〉, 〈부자의 탄생〉 같은 한국 드라마도 보게 되었다. 드라마 속의 또래들의 생활 모습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스타일”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갔다. 그러면서 북한 사회에서는 “나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추구할 수 없다는 데 대한 반감이 커졌다. “더 좋은 세상을 가고 싶다.”는 생각에 “머리가 확 돌아가서” 한 달 만에 탈북을 결심하게 된다. 남자친구가 좋긴 했지만 인생의 앞길을 생각하면 그 한 남자를 위해서 힘든 일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또 뭐 바쳐야 된다는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힘들게 돈도 안 되는 장사를 하느니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게 더 나은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게 걱정됐지만, 새아버지가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2)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소녀 가장

사례 2는 80년대 후반에 함경남도 바닷가 마을의 노동자 집안에서 1남 1녀의 장녀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국가에 충실하여 가정에는 신경을 안 쓰고 직장생활과 동원노동만 다녔고, 고난의 행군 때에도 입당을 하겠다고 3년간 다른 지역으로 건설노동을 나갔다. 경제난 시기에는 어머니가 직장일을 이용해서 약간의 돈을 벌었고 외가로 부터도 도움을 받아 크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는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병을 앓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부모님은 성격 차이로 부부사이가 좋지 못했고, 아버지는 음주벽이 있었고 종종 가정폭력도 행사했다.

사례 2가 중학교 2학년이 된 2000년대 초반,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져 굶는 날이 많아졌다. 아버지는 배급도 주지 않는 직장에 종일 나가 있고, 어머니는 몸이 아파 직장을 못 다니게 되었다. 사례 2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각종 '세부담'¹¹⁴⁾ 감당할 수 없어서,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직접 돈 버는 일에 뛰어들었다. 장사밑천이 없었던 그는 자신의 노동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가내수공업으로 그물 뜨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가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식구들은 쌀밥을 먹지는 못했지만, 죽을 먹는 일은 없었다. 남자는 배워야 한다는 어머니 말씀에 남동생은 학교에 보냈지만, 사례 2는 일을 하느라고 학교에 가지 못했고, 졸업할 나이가 돼서 학교에 적(籍)만 붙여 서류상으로 졸업을 했다. 사례 2는 그물 뜨는 일을 하면서 이발을 배워서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이발해주고 돈을 벌기도 했다. 그렇게 사례 2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집에서 그물 뜨는 일과 이발을 해서 네 식구를 먹여 살렸다.

114) '세부담'은 학교나 사회조직에서 각종 명목으로 거두는 돈과 물품을 북한 주민들이 일컫는 말이다.

탈북하기 몇 년 전 겨울에 벽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집이 무너진 적이 있었다. 사례 2는 비닐을 치고 그 안에서 손이 얼어 갈라지도록 일을 해서 일 년 만에 집을 다시 짓고 나서 앓아누웠다. 그때가 사례 2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였다고 한다.

이후 사례 2는 어머니의 권유로 탈북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보름을 생각하다가 어머니를 따라나섰다. 아버지는 “완전 법대로”인 분이고 탈북을 한다고 하면 보위부에 신고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말을 하고 않고, 동생까지 세 식구가 함께 한 국으로 왔다.

(3) 새 세대 여성들의 일과 연애

20대 초반인 사례 9는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원양성소에서 6개월의 직업훈련을 거쳐 간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시병원에서 2년 반 정도 일하다가 병원을 그만두고 6개월여 장사를 하다 탈북했다. 사례 9보다 여덟 살 많은 30대 초반의 사례 2는 10대 중반인 중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그물 뜨는 일을 시작했고, 이후 이발업도 병행하면서 한국에 오기까지 십여 년을 일했다. 이들의 첫 직업선택은 자신이 원하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북한에서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는 여성들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장에 배치되거나 군에 자원하여 입대한다. 직장 배치는 원칙적으로 졸업 시 국가의 노동력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 도·시·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이루어지는 직장 배치는 성별, 연령, 체질, 기술기술수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모의 직업, 거주지역 등이 주요 결정요인이 되며, 당사자의 진로희망이 전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더구나 경제난 이후 지방의 공장과 기업소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배급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선택지가 넓지 않다. 대학 진학은 예비시험과 본고사를 거쳐 이루어지며, 예비시험 성적, 가정배경 등의 기준에 따라 지역별, 학교별로 배정되는 대학별 본고사 추천권을 받은 학생만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도 ‘뽀트’라고 부르는 대학추천권을 받지 못하면 입학시험을 치를 수 없다.

새 세대 여성의 사례들은 북한의 제한적인 학업 및 직업 진로 선택 구조 속에서 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례 9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미용과 회계 분야였다. 그는 고급중학교 때부터 화장과 미용에 관심이 많아서, 용돈을 벌어 화장품을 사서 화장을 하고 봉사소에 피부관리도 받으러 다녔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약간 천하고” 사회적으로 “대접을 못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 직업으로 선택하지는 않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돈 버는 일에 흥미를 느껴 대학에 진학해서 회계 관련 공부를 하기를 원했지만, 해당 대학 추천권은 받지 못하고 교원대학 추천권을 받았다. 그는 교원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에서 일반 계층의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의사, 교사, 간호사, 요리사, 경리 정도이기 때문에 고급중학교를 졸업할 당시 진로에 대해 그다지 큰 고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사례 9는 첫 직업을 선택할 때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지만,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장사를 할 때는 매우 주도적으로 일에 임했다. 그는 자신의 미래와 직업전망에 대한 고민 끝에 부모님을 설득하여 장사를 시작했고, 대방과 연계하고 물품가격을 매기는 것까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나만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민했다. 그는 장사에 성공해서 자신이 사는 동네에 2층짜리 건물을 멋지게 짓고 식당과 매장을 운영한다는 희망을 품었다.

현재 30대 초반인 사례 2의 경우, 직업선택의 여지는 더욱 좁았다. 아버지가 직장에 다녔지만 생계에 도움이 전혀 안 됐고, 어머니는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례 2는 열네 살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자신이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장사밑천도 없는 어린 여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지만, 사례 2는 먹고 살 방도를 찾아다녔다. 그는 아는 언니네 집에 가서 그물뜨는 방법을 몰래 배워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어머니도 함께 일을 하게 됐고, 학교에 다니는 남동생에게도 작업량을 할당해서 틈틈이 일을 하도록 했다.

사례 2는 중학교 졸업 후에 무직자라고 청년동맹에서 시달림을 받고 공식직장에 들어올 것을 종용받았다. 그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뇌물을 주고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떼어 노동을 면제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청년동맹 생활총화만 나갔다. 그물 뜨는 일을 시작하고 몇 년 뒤에는 보다 확실한 기술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발기술을 배우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아버지 직장에 가서 지배인에게 사정을 해서 직장 부설 기능공양성소에 들어가 이발기술을 배우고 집에서 이발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발을 해주면서 그물 뜨는 일을 병행했다.

사례 9와 사례 2의 직업 경험을 보면, 공식 노동영역에서는 직업 선택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거나 공식 노동영역 참여를 회피하였던 것과 달리, 시장활동과 연계된 비공식 노동영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직업기술을 익히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새 세대 여성들의 삶에서 공식노동은 주변화되고 비공식 노동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비공식노동 영역에서 일을 찾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흥미와 경제적 효과, 미래 전망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여성들의 주체

성을 보여준다.

새 세대 여성들의 적극성은 연애 경험에서도 드러난다. 사례 2는 집에서 혼자 일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러다가 청년동맹 생활총화에서 만난 남성이 사귀자고 따라다녔다. 사례 2는 남자친구가 장사를 잘하고 생활력이 있다고 생각되어 사귀어 보기로 했다. 어머니도 남자친구를 좋게 생각했는데, 자신의 집안형편을 알게 되자 남자친구가 실망하는 눈치를 보였다. 압박한 사람이라고 판단되어 6개월쯤 사귀다가 헤어졌다. 20대 중반을 넘기면서 친구들이 사례 2에게 계속 남자를 소개해줘서 몇 번 만나봤다. 어머니는 사례 2를 많이 의지해서 처가살이 들어올 수 있는 사위를 맞기를 바랐다. 사례 2는 기술이 있어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거나 장사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처가살이를 하겠다는 남성은 대개 “빈 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자신이 힘들게 그물을 떠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 경제력이 없는 남성을 만나 결혼 후에도 또 그런 고생을 할까봐 염려가 되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혼에 급급하기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스물다섯 살 이전에 시집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스물다섯 살 이후를 딱 벗어나면 시집가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세계관이 서니깐 앞으로를 계속 내다보는 거예요. 스물다섯 살 미만은 지금 현재가 좋으면 사는 거지만 **스물다섯 살, 일곱 살 이렇게 딱 넘어가서부터는 자꾸 먼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사례 2 구술녹취록, 2019/41)

위의 구술에서 사례 2는 혼기가 되어 적당한 혼처를 찾아 시집갈 준비를 하는 대신, 자신의 ‘세계관’을 세우고 ‘미래를 내다보는’ 북한만의 젊은 여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사례 2는 한국에 와서 공부를 시작해서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다. 생

대비 수급을 받아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신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는 늦게나마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

사례 9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 진료를 받으러 왔던 군인을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다. 병원에는 입원해서 며칠 쉬려고 오는 군인들이 많았는데, 여러 사람이 사례 9에게 연애를 걸었고, 자신이 그중 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귀게 되었다. 남자친구는 평양 간부 집안의 외아들로, “평백성”인 자신의 집안과 너무 차이가 났다. 자신의 부모님은 집안 차이가 너무 나서 제대 후에 결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데, 소문만 나면 큰일이라고 교제에 반대하셨다. 사례 9는 부모님이 단속하는 가운데 부모님의 눈을 피해 연애를 했다.

사례 9는 여자는 결혼하면 장사를 해서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라고 생각했고, 결혼할 때 여성의 경제적 부담이 많은 것에 대한 불만도 가졌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하면 자신이 돈을 벌어서 남편 뒷바라지를 해서 남편을 “높이 세우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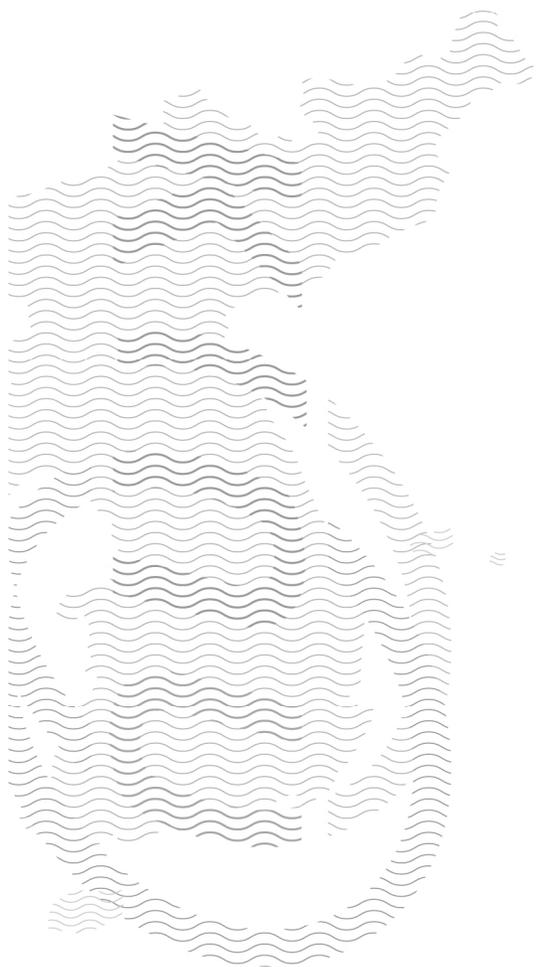
자는 그냥 직장출근하고, 그냥 뭐 주는 것도 없는 출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여자들은 시집가면 응당히 장사를 해야 살아야 된다, 이런 인식이 박힌 거예요. (중략) 왜 여자가, 여자만 그렇게 많이 해야 되냐? 남자도 똑같이 반반을 해야지 왜 여자만 많이 해야 되냐? 그게 불만이 많았어요. (중략) 장사하는 사람 말고 이런 진짜 간부라든지 뭐 이렇게 뭔가 좀 스타일 있는 사람. 그렇게 좀 멋진, 진짜 내 남편이라고 나가서 자랑해도 좀 멋있는. 내가 약간 좀 힘들어서 장사를 벌어서 남편을 뒷바라지해주더라도 남편만은 좀 멋있게, 사회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살 수 있게 좀. 어디 나가더라도 진짜 남편 따라 나가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미지. 남편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데서 좀 그런 걸 많이 생각했었어요. (사례 9 구술녹취록, 2019 1차 면담 /27~28)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에게 사례 9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제대하면 같이 인사를 가기로 한 상황에서, 사례 9는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탈북했다. 남자친구를 좋아했지만, “신분차이”가 나서 결혼해서 산다고 할 때 “힘든 길”이 될 거라 생각했다. 돈을 벌어서 남자친구 대학 뒷바라지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결혼해도 시댁에서 무시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한 남자를 위해서 바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새로운 세상, 더 좋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자는 생각에 혼자 한국으로 왔다. 그는 현재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대학 입학 준비하고 있고,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피부미용을 전공하려고 한다. 대학 졸업하고 직업에서 성공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얻어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가 됐을 때 결혼할 생각이다.

사례 9는 삶에서 ‘나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새 세대 여성의 전형으로, 연애에서도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결혼을 생각하면서 남자친구 집안과의 ‘신분차이’를 고민하고, 자신의 사회적 성취보다는 남편을 뒷바라지해서 “높이 세우려는” 생각을 앞세우고 있다. 이점은 북한의 새 세대 여성들이 연애관계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젠더 수행 역시 성차별적 분업구조와 가부장제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음을 시사한다.

IV. 김정은 시대의 여성노동과 가족, 섹슈얼리티



이 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북한 여성들의 구체적인 생애사례에서 드러나는 북한의 젠더정치 관련 주제를 추출하고, 주제별로 가정, 직장 등 사회적 장에서 나타나는 젠더체계 및 여성들의 젠더적 실천의 특성과 그 상호작용으로서의 젠더정치의 역동에 대해 살펴본다. 주요 주제는 크게 공식영역의 여성노동, 시장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영역의 여성노동, 가족제도 및 가족관계와 기혼여성의 섹슈얼리티, ‘새 세대’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세대문화 등이다.

1. 여성들의 직장 노동과 젠더 위계

경제난 시기에 국가 배급이 중단되고 대부분의 공식직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식 직장 밖으로 나와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고난의 행군’ 종료 이후 남성들은 다시 공식직장의 통제 하에 들어갔지만, 여성들, 특히 기혼 여성들은 대부분 공식직장 대신 시장과 연계된 경제활동을 선택했다. 그러나 미혼여성들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고급중학교 졸업과 함께 공식직장에 배치되어 일을 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다양한 공식부문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노동의 양상과 공식부문 내의 성별분업 구조, 직장 내 성차별과 성별위계구조에 대해 살펴본다.

가. 성별 노동분업과 성차별 구조

(1) 여성의 직업 선택과 성별 노동분업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에서는 정책적 차원에서 여성들의 직업활동 참여를 강조하고, 전문직 여성들의 모

범사례를 내세우며 여성들을 공식노동의 영역으로 불러들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연구에서 확인된 것은 남성은 공식노동, 여성은 비공식노동이라는 성별노동분업 체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공식노동 내에서도 여성노동은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미혼여성들은 뇌물(사례 12, 사례 22), 질병(사례 2), 가짜결혼(사례 9) 등의 방법을 써서 공식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피하고 시장활동에 뛰어들다. 결혼 전에 공식직장에 다녔던 여성들도 결혼을 하면 대부분 공식직장을 그만두고 비공식부문에서 장사 등의 생계활동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 과정에서 만난 10명의 기혼여성 중 5명은 결혼 전과 후에 모두 공식직장에 다니지 않았으며, 4명은 간호사, 공장노동자, 보위대 등 공식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다. 결혼 후에도 이전의 직업을 유지한 여성은 전문직 여성 한 명(사례 21)뿐이었다. 경제난 이후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비공식부문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공식노동 부문에서 여성들의 이탈과 ‘남성노동=공식부문 노동, 여성노동=비공식부문 노동’이라는 성별노동분업 구조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공식노동에서 여성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배급 중단 또는 감소로 인해 공식노동의 유인이 사라진 반면, 시장과 연계한 비공식부문의 노동은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한 여성들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난 이후 배급을 통해 생계를 보장해주는 공식직업이 흔치 않은 가운데서도 지속되는 공식부문 내의 강고한 성별분업 구조에 기인한다. 북한에서는 국가 계획에 따라 노동력이 배치되는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임금이 낮은 직종, 그 중에서도 ‘여성의 특성’이 요구되는 특정 직업에 편중되어 배치된다.¹¹⁵⁾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장려되는 부분은 경공업, 교육, 문화, 편의봉사 부문 등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규정된 영역이다.¹¹⁶⁾ 2008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북한의 16세 이상 산업별 남녀의 인구비중을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상당히 큰 산업부문은 채취, 전력, 도시경영, 건설, 운수 및 보관, 체신 및 정보, 과학연구, 공공봉사 및 국토, 국가관리 부문이며, 여성의 비율이 큰 산업부문은 농수산 및 임업, 소매 및 소매, 여관 및 급양, 교육, 보건 및 보양, 편의봉사 부문이다.¹¹⁷⁾

공식노동부문 내의 산업별 성별분업구조는 고등교육부문의 성별구조와 맞물린다. 국제기구에 보고한 북한의 통계자료상에 나타난 대학 졸업생의 전공분야별 성별 비중을 보면, 전공별로 큰 젠더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 부문을 전공한 여성은 전체의 31.6%로, 전공 부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 비해, 남성은 19.9%로, 27.3%인 제조·건설 부문보다 낮다. 농업부문은 남성의 16.5%, 여성의 11.7%가 전공하고 있고, 공공의료 부문은 여성의 12.8%, 남성의 9.2%가 전공하고 있다.¹¹⁸⁾ 산업구조와 고등교육에서 산업부문별, 전공별 젠더 차이가 크며, 산업부문과 고등교육 전공의 젠더구조가 대체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대학별, 학과별 선발 인원은 해마다 각 산업부문별 인력을 고려하여 국가계획 지표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 전공 구조의 비율은 국가계획상 산업부문별 고급인력 배치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녀성권리보장법」 제28조 “로력배차에서의 차별금지”

115)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14), p. 185.

116) 박영자, 『북한 여자: 탄생과 굴곡의 70년사』 (서울: 엘피, 2017), p. 356.

117) 장지연·김화순, 『통일한국의 노동시장과 여성 고용 및 일가정 양립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p. 20.

118) Education Commission DPRK, *Education For all national EFA 2015 review: DPR Korea* (S.I.: Education Commission, 2014), p. 68.

조항을 통해 직장에서 성별, 결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 취업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 부문별 인력양성 계획과 산업부문별 노동자 배치가 맞물리며 공식노동 영역의 산업부문별 노동력의 젠더 차이가 발생하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식노동 영역의 성별분업구조는 여성들의 직업선호도에 그대로 반영된다. 면담 과정 중 북한에서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물었을 때,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거의 똑같은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의사, 교사, 무역회사 회계원, 간호사가 그것이다. 이 직업 중 의사와 교사는 해당분야의 대학졸업장이 필요한 전문직이고, 회계원은 대학 또는 전문학교 관련학과 전공자들에게 유리하기는 하지만, 고등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자리를 얻기도 한다. 간호사는 1~2년제 간호원학교나 6개월제 기능공양성소를 졸업하면 직장을 얻을 수 있어 전문성의 정도는 조금 약하다. 이 직업 중 의사, 교사, 무역회사 회계원은 직장에서 지급하는 임금 이외에 직업적 지위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고, 의사와 교사는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사회적 지위도 높다. 여성들이 이러한 직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런 직업이 공장노동이나 농사일에 비해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깨끗한 직업”, “여자다운 일”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괜찮은 직업이라면 의사도 괜찮고 선생님도 괜찮고, 그 다음에 사람들 생각에는 간호사도 그래도 **깔끔하고 여자다운** 흰 옷 입었으니까 괜찮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회계원. 일단은 **일하는 그제 깨끗해야**, 일하는 시설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환경, 환경이 좀 깔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로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높아야 되고, 그래도 교원 같은 거 하면 일단 돈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학부형들이 자주 막 뭐 시켜달라 어쩌라 하면 진짜 엄청 많이 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업은 그것대로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의사들도 또 괜찮죠. 국가에서 딱히 주는 건 없지만, 이렇게 환자들이 그래도 선생님 수고했다고 사례비도 줄 수 있고 하다보니까 약간 자기 그런 게 있잖아요. 간호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회계원 같은 거는 또 이렇게 자기가 돈을 다루니까 거기서 자기가 좀만 어떻게 머리만 쓰면 자기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사례 9 구술녹취록, 2019 2차 면담/12~13)

직업선택의 폭이 좁다보니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여성들은 직업진로와 관련해서 ‘뚜렷한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다. “절만한 직업”이 없다보니, 평범한 집안의 젊은 여성들은 “시집 가는 게 최고 대학 나온 것”과 같다고 말한다(사례 3, 사례 23). 반면, 간부집 자녀이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여성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 사례 1은 2000년대 중반에 평양의 대학을 졸업했다. 그가 다니는 대학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았는데, 대학 졸업생 중에는 국가기관 산하의 외화벌이 기관과 큰 호텔과 식당,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학생들도 거의 대부분 졸업 후 군에 입대해서 군 생활을 하고 입당하여 간부의 자격을 갖추려고 했다. 사례 1의 여자친구들은 대부분 “이상이 있고 롤모델이 있었다.” 그들은 장래희망으로 옥류관의 지배인, 여성간부를 꿈꾸거나, 중국과 무역하는 개인기업을 차리고 싶어했다. 사례 1도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에서 큰 복합위락시설을 운영하는 선배언니를 롤모델 삼아서 졸업 후에 투자를 받아 그런 시설을 지어서 경영하는 꿈을 가졌다.

존경하는 롤모델 같은 언니가 평양에서 유명한 그런 지하에 주차장, 1층에 식당, 2층에 상점, 3층에 사우나, 4층에 헬스장, 이런 걸로 해서 거의 봉사센터, 서비스센터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게

개인이, 2009년, 10년부터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갑자기 확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굉장히 하고 싶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입당하고 와서 저거를 무조건 할 거야 하고, 저도 친척이 돈을 투자해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딱 그런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멋있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무슨 위에 누구 눈치 안 보고 자기가 사장인 거잖아요. 돈 만지고 사람 관리하고 모든 걸 다 하니깐, 그게 나는 멋있었어요. (사례 1 구술녹취록, 2019 2차 면담/28)

(2) 직장 내 성차별과 유리천장

면접에 참여했던 여성들 중에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남편의 대학공부 뒷바라지를 하거나 남편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뒷받침한 여성들이 많았다. 결혼하지 않은 20대 여성들 중에도 북한의 남녀관계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결혼 후에는 남편을 뒷바라지해서 “올려세우겠다”고 생각했던 여성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투자하여 교육수준을 높이고 좋은 직장에 가서 출세하는 것을 택하는 대신 남편을 출세시키는 것을 택한 이유 중의 하나는 여성이 권력기관의 고위직에서 일하거나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앞 장의 사례에 등장하는 여성노동력 위주의 직장에서도 간부나 관리자는 남성이 담당하고 있다. 산업이나 직종에서 남녀 간의 강력한 성별분업구조가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여성의 승진과 고위직 진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고위직군 중 여성의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은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북한의 16세 이상 직업군별 남녀의 인구비중을 살펴보면, 가장 고위직

군인 책임일꾼의 비중이 여성 중에는 0.5%인데 비해 남성 중에는 2.5%로 다섯 배나 차이가 난다. 전문가 비중도 여성 중 5.9%, 남성 중 10.5%로, 남성 중 전문가 비중이 훨씬 높다. 그에 비해 여성의 4.9%, 남성의 2.4%가 보조전문가로, 관리자와 전문가 중 고위직일수록 남성의 비중이 높고, 하위직일수록 여성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¹⁹⁾

상위직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현상은 단일한 직종 내에서도 나타난다. 북한에서 교원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각 학교급별 교원 중 여성의 비중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소학교 교사의 84.5%, 초급중학교 교사의 47.7%, 고급중학교 교사의 43.7%이다. 이에 비해 대학교원 중 여성의 비중은 20.6%에 불과하다.¹²⁰⁾ 또한, 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중 여성비율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16.3%로,¹²¹⁾ 정치적 측면에서도 여성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듯 보인다.

사례연구에 의하면, 북한 여성들이 체감하는 여성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은 통계수치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욱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여성들은 북한 사회에서 여성의 영향력과 고위직 진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이야기한다.

여자들은 별로 뭐 높은 직위에 앉는 게 진짜 없어요. 법관들도 그래. 법 쪽에도 그렇고 뭐 군관이라든가 어쨌든 기관직에는 몽땅 다 남자들이 앉아 있거든요. 여자들은 별로 없어요. 여자들 보면은

119) 장지연·김화순, 『통일한국의 노동시장과 여성 고용 및 일 가정 양립연구』, p. 22.

120) UIS Statistics, <<http://data.uis.unesco.org/>> (Accessed August 30, 2019).

121) 이는 UN가입국 193개국 중 128위 수준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17.1%로 UN가입국 193개국 중 121위 수준이다. UN Women, <<http://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2019/03/women-in-politics-2019-map>> (Accessed October 2, 2019).

큰 장사를 하든 뭐, 큰 장사꾼이라고 볼 때 여자들이 많지 법 쪽으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여자가 별로 없어요. (중략) 여자라면 여자는 큰 간부를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한국]는 프로수는 작아도 그래도 보편은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는 큰 간부는 다 남자들이 하는 거로 보고, 어쨌든 여기[한국]서는 좀 평등한게 많은 거 같아요. 북한에는 여자들이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은데. (사례 3 구술녹취록, 2019/37, 41)

확률적으로 보면 남자는 90% 대의원, 여자는 10%. 그러니까 뭐 아예 여자들이 그렇게 뭐, 여자들이 영향력은 없어요. 진짜 1도 없는데 그냥 우리는 여성평등을 주장한다, 그걸 보여주느라고 내 생각엔 얹혀 놓은 거 같고. 종당에는 남자들이 다 계획을 세우고 남자들이 결론 내릴 거 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여자들은 병풍이라고 봐야 되나. (사례 22 구술녹취록, 2019/33)

위의 구술은 여성들이 공적 노동영역에서 존재하는 ‘유리천장’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기관직에는 몽땅 다 남자”이며 “여자는 큰 간부는 못하고” “여자들은 영향력이 없고” “평등을 주장한다는 걸 보여주느라고 얹혀 놓은” 것에 불과하며, 결국은 “남자들이 결론을 내릴 게 뻔하다.”는 직접적이고 원색적인 언어로 북한의 공식노동영역에 존재하는 유리천장을 지적하고 차별적 현실을 비판한다. 공식노동 영역에 존재하는 유리천장은 여성들이 공식노동 부문에서 직업생활과 사회적 성공 대신 시장경제 활동을 통한 경제적 성공을 택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위의 텍스트에 나타난 여성들의 인식은 한편으로는 김정은 시대의 젠더정책의 배경이 되는 여성들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은 집권 이후 정책적 차원에서 여성의 사

회적 노동이 장려되고, 특히 과학기술자 등 전문직 분야에서 여성 진출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장식용 병풍”을 크게 벗어날 정도가 되지는 못한다고 여성들은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 면에서는 이전에 비해 “여성을 많이 내세워준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있었다.¹²²⁾ 김정은 집권 이후 젠더정책으로 여성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3.8국제부녀절 같은 ‘여성명절’을 크게 치르고 어머니날을 제정하는 등 여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노고를 치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여성비행사 등 전문직업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장려하고 직업적으로 우대하는 것 등이다(사례 16, 사례 21). 2015년까지 교사로 일했던 사례 21은 김정은 집권 이후 정권기관에서 무조건 간부 중 30%를 여성으로 임명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군사복무를 한 대학졸업생들을 기관장, 당비서 등 간부직에 대거 발탁하였다고 증언한다. 이는 일종의 여성할당제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나. 다양한 공식부문의 여성 노동과 직장 내 성별분업

(1) 생산 ‘전투’가 벌어지는 경공업 공장과 노동의 젠더화

공식노동 부문 중 주로 여성노동자들이 일하는 여성작업장은 경공업과 식료부문 공장들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생활 향상과 직결된 산업부문 발전을 강조하면서, 관련 공장에서 생산이 활성화되고 강도 높은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Ⅲ장에서 사례로 살펴보았던 사례 19가 다녔던 신발공장과 사례 20이 다녔던 탄광기업소는 노동

122) 한편, 면접대상자 중 여성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녀성권리보장법」과 같은 법 제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여성은 없었다.

강도가 매우 센 곳이다. 100명 이하 규모의 지방공장 중에는 가동률이 매우 낮거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공장들이 많은 데 비해서, 국가적 중요성을 띠는 중앙기업소나 지방의 식료, 경공업 부문의 공장들에서는 비교적 활발한 생산이 이루어진다. 사례 19가 경험한 것과 같이 ‘만가동’과 생산을 위한 ‘전투’가 일상화되어 있는 곳도 많다. 후자에 속하는 공장 중에는 여성노동자들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생산 ‘전투’가 이루어지는 경공업 부문의 공장들에서는 강도 높은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고, 지방공장처럼 노동자들이 시간을 내서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공장들은 대부분 중등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이 배치되는 젠더특성을 보인다. 이는 육체적 힘을 요하는 기계공업 등 중공업 부문의 노동과 달리, 경공업 부문 노동은 세밀한 작업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섬세함과 장시간의 반복적 노동을 견딜 수 있는 지구력이 필요한 노동이어서 여성의 특성에 맞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는 1960~70년대 한국의 산업화과정에서 섬유, 의류, 봉제, 제조업 부문의 노동을 저학력 여성노동자가 담당했던 것과 유사하다.

평양의 큰 방직공장에서 일했던 사례 23의 사례는 1960~70년대 한국의 방직공장 노동자의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사례 23은 양강도의 국경도시에서 생활하다 중학교 졸업 후 친척의 권유로 평양 거주권을 받기 위해 평양의 한 방직공장에 입사했다. 5년간 공장에서 일하고 일정한 기술급수를 획득하면 평양시민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에서 올라온 다른 여성들과의 경쟁을 뚫고 그 공장에 들어갔다. 그가 다녔던 방직공장에는 여성 숙련노동자들과 숙련공이 되고자 하는 미혼여성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사례 23처럼 평양시민이 되고 싶어 자발적으로 입사한 지방출신

여성들이거나 경제적으로 하층인 평양 거주 여성들이 그 공장에 다녔다.

원래 3교대로 8시간 노동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일을 하면서 정해진 작업량을 달성해야 하는 ‘전투’기간에는 2교대제로 일했기 때문에 대부분 12시간씩 일을 했다. 노동의 숙련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 공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결혼하더라도 병이나 사고로 그만둘 때까지는 이직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 공장에서는 높은 경제적 유인으로 작업량을 완수했을 경우 높은 임금과 배급을 지급했다. 작업량을 완수하여 일반 노동자 임금의 수십배를 받는 노동자는 전체 인원의 십여 퍼센트에 불과했다. 사례 23은 늘 작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해서 각종 납부금을 공제하고 한 달에 500원 정도의 돈 밖에는 받지 못했다. 집에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일정량의 배급이 지급되었지만,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공장에서 세 끼 식사를 주는 것으로 배급을 대신하였다. 사례 23은 일 년여를 공장에서 일하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오갈 데가 없거나 다른 생활수단이 없는 여성들은 공장기숙사에서 살면서 숙련노동자가 되어 힘들게 일하고 약간의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삶을 지속했다.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비교하지는 못하겠지만, 사례 23이 들려주는 북한의 방직공장 노동자에 관한 이야기는 산업화 시기에 농촌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기숙사생활을 하면서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와 매우 닮아있다.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이 국가로부터는 ‘산업역군’으로 호명되었으나 사회에서는 ‘공순이’로 불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은 국가로부터 ‘노력영웅’으로 호명되었으나 사회에서는 “한심한 애들”이라는 눈초리를 받았다.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이 가족의

생계유지와 남동생의 진학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부분적으로는 중학교 교육기회를 얻기 위해서 상경해서 공장에 취직했다면, 북한의 여성노동자들은 평양거주권을 얻기 위해 공장에 들어갔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약간의 배급이라는 경제적 유인으로 공장생활을 버렸다.

사례 23의 이야기 속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여성노동자와 소수의 남성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식으로 직장/국가가 결혼을 주선하였다는 것이다. 사례 23에 의하면, 방직공장에 다니는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길어 연애할 시간도 없었고 이미지도 좋지 않아 결혼이 쉽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젊은 여성들이 방직공장 노동을 기피하자, 한번은 제대군인들을 집단배치 형식으로 공장에 배치하여 방직공장 여성들과 결혼을 추진했다고 한다.

우리 방직공장 여자들은 시집을 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계속 일하느라고 언제 연애할 새도 없고. 그렇다고 방직공장 여자들을 이렇게 누가 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기분 없더라고요, 저는. 방직공장 여자들은 좀 한심하게 봐요. 그러니까 좀 건전하지 못하다 해야 하나? 좀 시집가기가 힘들어요. (중략) 어느 해인가, 제대군인들이 집에 못가고 무리배치를 받았어요. 무리배치를 받아가지고서 여자들 사진을 찍 놓는대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여자가 마음 있는가 물어본대요. 이 여자가 마음에 있으면 다짜고짜로 선 본대요. 봐가지고 그냥 살아야 된대요. 이 여자가 마음에 없다면 세 번까지는 가능하게 했대요. 그래서 보면은 셋 중에 마음 있으면 저 여자하고 살겠다 하고. 그래서 사는 게 우리 직장장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사례 23 구술녹취록, 2017/32~34)

이는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사례 19가 다녔던 신발공장에서 부모가 없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직장에서 결혼상을 차려주었던 것의 연

장선상에 사회주의 대가정론의 작동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배우자를 구하기 어려운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제대군인을 공장에 배치하고, 중매의 형식으로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을 연결시킨다. 그 과정은 위의 인용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결혼을 원하는 남성들에게 세 번 기회를 주어 사진 속의 여성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매우 봉건적인 양상을 띤다. 국가가 사적인 영역인 결혼에 직접 개입하여 대가정의 구성원인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고 결혼을 성사시킨다. 이를 통해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를 실제 가족으로 결속시키는 동시에 국가발전에 필요한 산업부문의 노동력으로 공장에 긴박함으로써 국가와 수령이 부과하는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생산의 의무를 다하도록 만든다.

사례 4가 다녔던 지방의 경공업 공장에서도 여성노동자들이 주로 일했고, 공정에 따라 성별로 분업화된 노동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나타난다. 함경북도 군 지역에서 거주했던 사례 4는 2010년대 초반에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에 있는 식료공장에 들어가 1년 반 정도 일했다. 식료공장에서는 된장과 간장 등 장류, 과자와 사탕 등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에 공급되는 ‘선물’ 품목, 술, 기름 등을 생산했다. 그런 생산품들은 주민들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식료공장은 그 지역에 있는 지방공장 중 가동률이 높은 편에 속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정책적 차원에서 인민생활 향상이 강조되면서 식료공장의 가동률이 높아졌다. 거의 연중 내내 생산이 이루어졌고, 2월 선물생산 종료 후에 20일 정도 휴식을 취했다. 주야간 2교대로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절반 정도 되었고, 그럴 때는 다른 작업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이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점심식사로 국수를 배식하는 것으로 배급을 대신하였고, 그 이외에는 일 년에 국수 2kg 정도

를 지급하였다. 한 달 임금은 1,750원이었고, 생산량이 많으면 3천 원 정도 지급됐지만, 각종 동원 명목으로 내야하는 돈을 제하고 나면, 받는 돈이 거의 없었다.

사례 4가 다녔던 식료공장에는 재직 당시 200명 정도의 노동자가 근무하였다. 200명 중 제품 원료로 쓰이는 농산물을 경작하는 분조원이 130명 정도였고, 나머지 70여명이 장반, 술반, 기름반, 당과류반, 공무반, 건설반, 운수작업반 등의 작업반에 소속되어 일했다. 공정 특성에 따라 여성이 대부분인 작업반, 남성이 대부분인 작업반, 남성과 여성이 섞여있는 작업반이 있었는데, 사례 4가 일했던 당과류반에서는 주로 여성들이 일을 했다.

저희 쪽에는 그게 다 여자들이 할 일이잖아요. 남자가 사탕을 구부리는 게 그게 하루 이틀 하고 나면 못해요. 지루하고 막... 또 **저기는 남자를 그런 거 안 시켜요. 왜냐면 남자는 우선 힘쓰는 일 아니면 남자다운 일.** 나무패기 아니면 뭐 석탄 나르지 않으면 이렇게 뭐 집을 지을 때 무슨 뭐 미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힘쓰는 일. 그렇지 여자들처럼 이렇게 막 자르고 이런 거 안 하고 안 시켜요. 그러다보니까 [당과류반에는 남자들이] 없어요. 남자들이 한 서너명 될까? 설탕 나르고. 그러니까 설탕가루를 날라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 나르고 설탕이랑 사탕생산을 하면 무거운... 이렇게 한 포대에 다 넣잖아요. 그걸 만든 걸 나르는 사람, 그리고 불을 지피 주는 사람,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중략) 다른 반에는 남자가 많아요. 건설반 같은 데는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열명 정도 되고 공무반도 거기에는 이렇게 용접도 하고 뭐 문도 만들고 일단은 수리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거기도 맨 남자. 여자는 한명도 없고. (사례 4 구술녹취록, 2016/7~8)

위의 구술에 의하면, 식료공장에서도 남성은 “힘쓰는 일”, 여성은 큰 육체적 힘이 들지 않는 대신 지구력을 요하는 “지루한 일”이라는 분업의 기준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1〉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여성노동자들



자료: AP/연합뉴스(2017년 1월).

(2) 작업장의 젠더위계

사례를 살펴보면, 여성노동자들이 근무했던 직장은 대부분 여성이 주를 이루는 직장이지만, 소수의 관리자들은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어, 나이 많은 남성 관리자들이 나이 어린 여성노동자들은 통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위계와 연령에 따른 위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젠더위계 구조이다. 연구 과정에서 만난 여성 중 북한에서 공식직장에 충실하게 출근했던 사례는 사례 4, 사례 5, 사례 9, 사례 18, 사례 19, 사례 20, 사례 21, 사례 23 정도이다. 이중 사례 4, 사례 19, 사례 20, 사례 23은 생산직에 종사했는데,

작업반원은 수리공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여성이었지만, 직장장 등 관리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사무직이었던 사례 5, 철도부문 노동자였던 사례 18도 마찬가지였다. 사례 18이 일했던 직장의 여객작업반은 관리자급인 지도원 한 명만 남성이었고 나머지 안내원과 매표원들은 전부 여성이었다. 군 내의 기관에 출판물을 배달하는 일을 했던 사례 5는 유일하게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곳에서 일했는데, 직원 십여 명 중 세 명의 관리자는 모두 남성이었다. 사례 9는 간호원으로 약간의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했지만, 그가 일했던 병원에서 의사들은 남성이 더 많은데 비해 간호사들은 전원 여성이었다. 사례 21은 몇 차례 학교를 옮기며 15년 이상을 교사로 일했는데, 동료교사들 중에는 여성이 많았지만 교장이나 학교당위 원장이 여성인 경우는 없었다. 정확한 통계적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연구 과정에서 만난 여성들이 길고 짧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간부’로 통칭되는 여성 관리자와 함께 일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북한의 공식노동부에서 수평적 성별분업구조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직 내에서 남성은 관리자, 여성은 관리자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일반노동자라는 수직적 젠더위계가 존재함을 말해준다.

특히 사례 20의 사례는 ‘남성=관리자, 여성=일반노동자’라는 젠더위계가 어떻게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사례 20이 다녔던 탄광연합기업소는 남성노동자들이 많았지만, 사례 20은 비교적 육체적으로 힘이 덜 드는 선탄직장에서 일했다. 선탄직장의 노동자들은 간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이었지만 ‘소대장’이라는 직함의 관리자는 남성이었다.

여소대장 없고 남자소대장. 왜인가 하면 그 여자들 입살이 세니까, 거만 다 아줌마들이 돼서 입살이 세니까, 말이 많고 입살이 세고 드살이 세니까 남자 이렇게 소대를 세워 놓는 거예요. 남자를

세워 놓는 거예요. 거기 법은... 거기에 직장에 법은 무조건 소대장 남자에요, 여자 없어요, 그리고 당원들 소대장 시켜요, 남자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갔다 오고 입당하고 제대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소대장 시키지, 여느 아줌마는 여자 소대장 안돼요. (중략) [통제 방법은] 소대장이가 말 못하게 하지. 말 못하게 하고 좀 상스럽게 욕하죠. 상스럽게 욕하고 말 못하게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거기 동원이 많거든요. 돌격대 동원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 동원 내보내요. 그러니까 소대장한테 잘 보이려고 많이 하죠. 소대장한테 잘 보여야 자기가 점수 따겠으니까 소대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죠. 폭력 쓰거나 그런 거는 혹시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대부분 여자들이 드살짝 세가지고 폭력을 못해요. 그게 좀 우리 컨베아 운전공 여자들이 아줌마들이 돼가지고 드살이 세요. 그리고 또 과부들이 많고. (사례 20 구술녹취록, 2019/35)

위 인용문에서 사례 20은 관리자인 소대장은 남자만 될 수 있고 여자는 절대로 소대장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한다. 선탄직장의 여성노동자 중에는 성질이 드센 기혼여성들이 많은데, 이를 통제하기 위해 관리자를 남성으로 임명한다는 것이다. 성질이 드센 여성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은 때로는 폭력도 불사하는 남성의 힘이다. 힘을 가진 남성이라는 젠더권력은 당원이라는 정치권력과 결합되어 여성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3) 공식직장 노동과 비공식노동의 병행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큰 공장들이나 지방의 경공업, 식료공장들과 달리, 많은 지방의 공장이나 기업소에서는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배급도 지급되지 않는다. 사무직 또는 사회기간산업 부

문 노동도 앞 장에서 살펴본 사례 18처럼 직장일 자체가 상당한 부수입을 가져다주는 일이 아닌 경우에는 노동자들을 일터에 긴박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이런 경우에 직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배급이나 경제적 인센티브 대신 ‘시간’을 준다.

사례 5가 다녔던 사무직 직장이 그런 곳이었다. 사례 5는 2010년대 초반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기능공학교에 들어가 이발을 배웠다. 기능공학교는 원래 1년제였지만, 더 다니면서 기능을 더 배우겠다고 부탁해서 3년을 다녔다. 기능공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 봐야 매일 출근해야 하고 내라는 것도 많아서 차라리 학교를 오래 다니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2010년대 중반에 지방행정기관의 사무직으로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다. 직장에서 받는 것은 노임 1,500원이 전부였지만, 한 달에 일주일 정도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자유시간’을 갖고 다른 경제활동도 할 수 있었다.

사례 5는 기능공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해서 집에서 이발을 해주고 돈을 벌었다. 2017년에는 경제봉쇄로 인해 지역 내에서 가장 큰 연합기업소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배급이 끊기면서 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먹고살기 어려워졌다. 국경경비가 강화되고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장사도 이전만큼 쉽지 않아졌다. 사례 5를 비롯한 여성들은 모자뜨기, 가발만들기 등 ‘씨비일’을 해서 돈을 벌기도 했다.

[여성들이 졸업하면] 할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뭐 별로 없어... 한 때 그건 어떻게 들어왔는지, 중국에서 이렇게 모자랑 가발이랑 뜨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애들이 찾아가지고 씨비..., 그런 거 보고 씨비일이라고 하는데, 씨비 그거 모자 한개 뜨면 뭐 8천원. 8천원씩 받고 그걸 온밤 떠요, 앉아서. 이렇게 온밤 떠가지고 눈이 이렇게 충혈이 지고 그래가지고 8천원 받고, 그걸로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매일 매일 8천원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쌀도 사고 옷도 사

입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이 머리칼도 팔아가지고. 그게 한창 지금 또 맨 머리칼 장사가 많아가지고, 머리 긴 사람은 “센치당 얼마다.” 이래가지고, 머리를 다 슈아서 모아 놓고 해가지고 그거 또 걷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사례 5 구술녹취록, 2019/15)

경제난 이후 공식직장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이후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비공식부문의 노동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례 5의 사례는 장사 이외에도 서비스업종이나 가내수공업 부문에서 여성의 비공식적 노동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공식부문 노동의 성별화된 특성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였다. 추후 여성과 남성 노동의 비교를 통해 비공식부문 노동의 젠더특성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4) 전문직 여성의 노동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가급적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거나 장사나 비공식부문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비해서, 전문직 여성 중에는 자신이 하는 일에 긍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여성들이 있다. 대부분의 전문직 여성은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다. 북한에서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은 지역의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직장을 배치하지만, 대학 졸업생은 간부대상자로 도·시·군당의 간부부에서 직장을 배치한다. 면접 대상자 중 전문직 여성은 드물지만, 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일반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의 일상과는 조금 결이 다른 노동의 세계를 짐작해볼 수 있다.

Ⅲ장에서 살펴본 사례 21은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발령받아 탈북 직전까지 15년 이상 교사로 일했다. 그는 대학 졸업자들은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지 “일 안하고 장사하려고” 하거나 “남편 덕에 놀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교사는 여성이 택할 수 있는 “좋고 편안한 직업”이어서, 그는 교사가 되기 위해 고난의 행군 시기 대학을 다니면서 코피를 쏟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다. 처음 발령받은 학교는 수재를 양성하는 학교였는데, 교사들은 “수재를 키운다는 목적으로 직업적 혁명가의 긍지를 가지고” 새벽 두세 시까지 학생들을 공부시켰다.

사례 21은 교사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했고, 결혼 후에 남편 직장 때문에 근무지를 몇 번 옮겼지만,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다. 교직에 있으면서 자녀를 낳아 키웠는데, 임신했을 때는 법적인 산전산후 휴가 이외에도 수업시간도 조절하는 등 직장의 배려로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출산 후에는 가사노동과 양육의 부담을 피할 수 없었다. 유치원 때까지는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다시피 했고, 학령기가 되어서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시켜 같이 데리고 다녔다. 오래 일하다보니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 근무지에 따라가 1년간 학교를 쉬었는데, 너무 편하고 좋다고 생각했다가도 거리에서 아이들을 보면 “진짜 교사밖에 할 게 없다. 교사하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다시 학교로 복귀해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우리는 직업적 혁명가라는 이런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그래서 엄청 진짜 정말 노력을 하거든요. 나는 여기[남한]에서 학부형들이 오히려 교사들한테 가서 뭐 잘못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은 아니거든요. 학부형들이 교사한테 진짜... 교사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교사에게 자기 애를 전적으로 다 맡기기 때문에. 엄청 교사로서 긍지감, 자부심 이런 게 엄청 높잖아요. (사례 21 구술녹취록, 2019/18)

위의 인용문에서는 생산직이나 일반 사무직에서 일했던 여성들에게는 들을 수 없었던 직업적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사례 21은 면접 도중에 김일성이 아들 김정일의 담임선생님이 오자 맨발로 뛰어나가 영접했다는 일화를 얘기하면서 교사의 긍지에 대해 강조했다. 이러한 직업적 자부심과 긍지는 결혼 후에도 교사라는 공식직업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동력이다. 교사로서의 긍지의 일면은 아이들을 훌륭한 국가의 인재로 키워낸다는 점이지만, 동시에 학부모들이 교사에 대해 갖는 존중과 그 표현으로서의 경제적 보답도 교사로서 갖는 긍지의 한 부분이다. 교사들에게는 다달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은 아니었지만, 배급이 지급됐다. 주로 옥수수를 받았고 간혹 쌀도 몇 킬로씩 받을 때가 있었다. 그러나 교사의 경제적 소득은 배급이나 임금이 아니라 학부모들로부터 나왔다. 북한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자녀를 한 명씩 낳는 추세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교육에 열성을 보이고 교권도 높아졌다. 교사들은 “국가에서 돈 조금 주는 것 안 바라고” 학급 학생들의 부모가 “교사가 한 달 먹을 식량을 다 대준다.” 전문직으로서 교사의 노동이 일반 여성노동자의 노동과 구분되는 점은 자신이 행하는 노동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그것에 대한 사회적 인정, 공식적 소득 이외에 직업의 유지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과 같은 것들이다.

2. 시장 경험과 여성들의 자의식 변화

경제난 속에서 먹고 살기위한 암시장으로 출발했던 종합시장 및 상거래 공간들은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를 추동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이는 자본주의적 거래와 경쟁, 물질 중심의 가치와 미래 전망 등이 싹트고, 외부 세계로부터 수입된 ‘문화’가 폭발하는 곳이다. 현

재 국가 주요기관을 중심으로 한 배급체제와 나란히 북한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시장경제의 주역은 여성들이다. 경제난 이후 30여 년 동안 자신의 몸으로 수행한 노동을 통해 가족과 사회를 먹여살려 온 여성들은 시장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일상 관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가.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과 시장 활동

(1) 경제공동체가 된 가족과 여성의 역할

경제난과 시장화 이후 가족은 생존의 단위이자 경제공동체가 되었다. 개인의 생명을 보장하던 국가 배급체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개인은 개별가족을 중심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경험한 것이다. 죽음 앞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결국 혈육인 가족들 밖에 없다는 체험은 당과 국가에 대한 암묵적인 불신과 회의의 정서를 형성했다. 결혼 중매시장에서 ‘당일군’의 지위가 떨어진 것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2000년대 들어 장마당 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조직화되었고, 여성들은 제도화된 시장을 매개로 합법, 비법의 경계를 오가며 각 분야별 물품을 도소매하거나 증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2002년의 경제관리개선조치, 2003년의 종합시장제조치를 통해 시장이 합법화되면서 북한 사회에는 사실상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이중경제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기업의 독립채산제 등 자율권이 확대되면서 생산영역에서 혁명정신 대신 개인주의적, 물질주의적 가치가 확산되었다. 또 종합시장과 국영상점을 통한 소비재 시장이 발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물품을 제외한 생필품과 공산품 및 외국 수입품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¹²³⁾ 누구나 임대료와

국가납부금을 내면 개인 또는 단체로 시장의 매대를 빌려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와 당의 핵심적인 조직에 배치된 경우를 제외한 일반 노동자들 중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일하는 비중이 크게 떨어진 반면, 장사 등을 통해 생계유지 활동을 하는 주민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시장이 합법화된 후 비공식적 노동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시장을 통한 장사와 방문장사 및 밀수, 생산 물품이나 음식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자영업, 농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일용직 등이 있다. 사회적으로 묵인되는 주변적 노동으로 시장 규찰대, 소토지 생산자, 소작인, 계절노동, 식모 혹은 가정부, 페인트공, 대리동원 노동, 개인교사, 품삯노동, 건설업 일용노동, 외화벌이 고용원, 8·3작업반원, 가내작업반원 등 다양한 직업”이 등장했다. 또 교사나 의사 등은 사교육과 사설의료행위를 통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거래하고 있다.¹²⁴⁾ 이런 변화 속에서 북한의 개별 가족 내에서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들이 상호 역할 분담을 하면서 가족 생계노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실천들을 하고 있다.

이번 사례연구에서도 상층계급의 대학생과 전업주부(사례 1, 사례 14, 17) 및 군인가족(사례 21), 일부 공식직장의 노동자(사례 19)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여성들이 다양한 형태의 장사를 했다.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은 교사, 의사 등의 직업 활동을 하면서 개별 과외활동이나 치료 활동을 하는 반면, 중학교를 졸업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공식직장에 적(籍)을 걸어두는 등의 방식으로¹²⁵⁾ 어머니 혹은 언니, 친구들과 연계하여 상업 활동을 하

123) 이승윤·황은주·김유휘, “북한 공식-비공식 노동시장의 형성과 여성,” pp. 304~305.

124) 위의 글, p. 306.

125) 적(籍)을 둔 기업에서 실제 일하지 않으며 돈을 내고, 시장 활동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버는 노동자를 8·3노동자라고 부른다.

였다.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장사를 해서 가족생활에 보태고, 자신의 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혼 여성들의 경우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각종 장사를 통해 가족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개별 가족이 여성의 재생산 및 생산노동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배급제도라고 하는 경제적 토대에 의해 직접 결합되었던 수령-당-인민의 관계가 시장 활동을 통해 침윤된 반면, 개별 가족단위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된 변화를 보여준다.

(2)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시장 활동

사례연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시장 활동은 지방 소도시의 장마당에서 평양 부자동네를 장악한 국제적 거래까지 다양한 형태와 수준으로 구조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평양의 경우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한국 물건’이 가장 비싸게 거래되고 있고, 일본 및 중국 제품, 국제사회의 지원 물품 등을 트럭이나 컨테이너로 거래하는 큰손과 이를 받아서 판매하는 소매상들이 있다. 평양과 대도시에서는 유아들의 분유에서 독일제 의약품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소비제품이 거래되고 있다. 중국 등의 대방과 거래하는 큰 손들은 남자인 경우가 많지만, 큰 자본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평양 상층계급이었던 사례 14의 시누이는 직접 버스 두 대를 사서 교통사업을 하였다. 이처럼 남편이 확실한 권력을 가진 상층계급인 경우 여성이 큰 식당, 상점 등의 지배인을 하는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이전 시기부터 가능했다. 흥미로운 점은 큰돈을 가진 상층계급 여성들이 최근 확장된 시장 경제 내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옷을 비롯한 소비재와 약초, 광물 등이 국경

밀수를 통해 거래된다. 돈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소규모의 음식장사나 재배한 농산물 거래에서 약간의 돈을 모으거나 빌려서 약초, 광물 중간유통을 하는 등 자본의 규모에 따라 중층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사례 7, 사례 8, 사례 10 이외에도 사례 6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18년 한국으로 올 때까지 10여년간 장사를 하며 생활했다. 사례 6은 1980년대 초에 양강도에서 1남 1녀 중 장녀로 출생했다. 어머니는 평양외국어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대학의 ‘영어교원’으로 30년 일하고 퇴직했다. 의사인 아버지는 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다가 집에서 개인진료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례 6이 소학교를 다니던 1990년대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가족들이 배를 굶는 일이 허다했다. 대학 교원이자 의사인 부모들은 당에 충실한 ‘지식인’으로 장사 기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법을 할 줄 모르는 ‘고지식’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1990년대 후반에 중학교를 졸업한 사례 6은 ‘고일 돈’이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하고 기능공 학교에서 2년 동안 일하며 재봉기술을 배웠다. 그는 졸업 후 천을 사서 아동용 옷을 만들어 장마당에 팔기 시작한 이후 2018년 한국으로 올 때까지 화장품 장사, 중고 옷장사, 음식장사, 약장사 등을 하며 가족 생계를 도왔다. 2000년대 중반에 아버지의 친구 아들과 중매로 결혼한 사례 6은 장사를 계속했다. 당원인 남편이 군생활 중 사고를 당한 후유증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보장’ 처리가 되었지만 실제 지원받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약장사를 하면 굶어죽지 않는다’는 아버지 권유로 결혼한 이듬해부터 약장사를 시작했다.

약이라는 거 할 때는 여러 가지 대중약, 중국약으로부터 해서 이제 점점 한 300가지 수로 약이 많습니다, 수가. 액체로부터 시작해서 다 있으니까. 25% 포도당, 그 다음에 종합아미노산, 폴리타민 이런 액체로... 비타민제 해서 액체도 있고. **집에서 이렇게 환자들**

치료하면서 주사하매 점적[링거액]도 달고 그 다음에 부항도 붙여 주고 뜸도 떠주고 이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내가. 약도 팔면서 그 걸 해야 되니까. 자격증이 없는데 그거 왜 했는가? 내가 임상의전 내과의사 편을 자체 공부를 했던 말입니다. 공부를 하고, 아버지가 의사다나니까나 아버지가 다 배워줬단 말입니다. 침혈로부터 시작 해서. 그래서리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약장사를 하기 시작해서, 그거 연한 있습니다, 내가. 거의 한 10년 했습니다, 내가 장사를. (사례 6 구술녹취록, 2019/1)

고지식하게 배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대학교원을 하는 어머니와 의사생활을 하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어머니의 명의로 시장의 매대를 사서 화장품 판매를 하는 등 각종 장사를 하던 구술자는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장마당에 나가서 약장사를 하였다.¹²⁶⁾ 위의 구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의 의료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의사들이 집에서 치료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누구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인이 약을 팔면서 의사면허 없이 치료 활동까지 하고 있다. 북한 사회의 부족한 의료체계를 여성들의 비공식적 노동이 대체하거나 보충하고 있는 양상이다. 흥미로운 점은 ‘고지식한’ 사례 6의 부모들도 결국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자 사례 6에게 침술을 비롯한 의료 기술을 ‘개별적으로’ 가르쳐서 약장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대학 영어 교원이었던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시집간 사례 6의 아이를 돌보았다는 점이다. 이처럼 온 가족이 자신이 가진

126) 2007년 경부터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당국의 단속이 본격화되었다. 단속 통제는 장사 연령 제한, 장사 품목 및 판매액 제한, 장사 장소 제한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2007년 경에는 통제가 강화되어, 상행위 연령이 45세 이상으로 제한되었다. 이후 상행위 제한 연령은 30세 이하, 40세 이하, 45세 이하, 49세 미만 등 시기별,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양문수, “2000년대 북한의 반(反)시장화 정책: 실태와 평가,” 『현대북한연구』, 제15권 1호 (2012), pp. 90~91.

자원을 동원하여 생계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IV-2〉 시장에서 장사하는 북한 여성들



자료: “북한 공식 장마당 436개…5600만 달러 이상 징세.” 『VOA』, 20018.8.29.
(<https://www.voakorea.com/a/4547810.html>) (검색일: 2019.10.22).

구술 자료에 의하면, 양강도 대도시의 장마당에서 도매와 소매를 망라하고 대부분의 장사를 하는 것은 여성들이다.

거기는 개인이 맘만 먹으면, 돈만 있으면 약도매집이라는 게 장마당 주변에 근방이 다 도매집입니다, 다 도매집. 화장품도매집, 약도매집, 공업품도매집, 다 도매장입니다, 그게. 도매장이라는 게 집 하나가 이렇게 큼니다. 그런 데 물건이 꼭 찻습니다, 도매. 그 돈 많은 사람들은 도매 쳐서 먹고 산단 말야, 전문. 앞지대 달리기, 짐쓰기 해서, 그래 상품 받아. 그래 그렇게 해서 약이랑 그저 집에 가면 그저 여러 가지를 받아가지고 한 배낭씩 쳐가지고 와서, 또 집에서 엄마 계속 매탁 팔다가는 또 집에서 저녁에 팔고. (사례 6 구술녹취록, 2019/16)

장마당에 대한 단속이 수시로 변하므로 사례 6이 아침부터 밤까지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기까지 온갖 노력을 해서 아이들 돌과 살아갈 돈을 벌었다. ‘이런 옷’은 팔면 안 된다, ‘저런 물건’은 안 된다고 하는 단속 기준이 바뀔 때마다 신경 써서 물품을 바꾸지 않으면 단속에 걸려 뇌물을 고이거나 장사를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었다. 눈치와 소문, 주변의 정보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생활해 내느라 사례 6은 노후걱정, 미래걱정은 해 볼 수도 없었다. 그러나 여성들이 수행하는 온갖 종류의 노동은 결국 ‘가두여성’들의 주변적 노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남자들이 장사를 하는 게 없습니다, 북한에는. 흑간 앞 지대에서 온 남자들이. 그거 영예군인들이란 말입니다, 짝다리들. 영예군인들이 앉아서리 이런 수산물들, 마른 미역, 까나리 이런 거나 파는데. 그 다음 외에는 남자들이 장사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북한은 다 여자들이. (사례 6 구술녹취록, 2019/37)

시장화 이후 20여년이 되어가지만 장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공식 활동이며, 성인 남성들의 참여는 금지되고 있다. 위에서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바와 같이 남성들 중에서는 살아갈 길이 막힌 영예군인들만 소수 예외적으로 장사에 참여하는 반면, 온갖 종류의 도매업부터 텃밭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까지 시장 활동을 주도하는 것은 ‘가두여성’들인 것이다.

(3) ‘남편 출세시키기’를 통한 가족 내 이중경제전략

사례연구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결혼한 여성들은 국가와 사회의 교육과 간접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결혼한 후 남편의 ‘부양가족’으

로 등록된 여성들이 실질적으로는 온 가족을 '부양하는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성공의 길이 제한된 북한 사회의 여성들은 자신이 공식적 노동 영역에서 성공을 도모하기보다는 돈을 벌어 남편을 공부시키고 사회적으로 좋은 지위를 얻도록 뒷바라지 하는 역할을 선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권력 있는 공직에 배치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고, 여맹위원장과 같이 여성들이 담당하는 직위는 상대적으로 권력이 없다. 따라서 여성들은 자신이 출세하기보다 남편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중매과정에서도 여성은 시장에서 돈을 벌고, 남성들은 직업(당, 법, 경찰계통)에 배치 받아서 돈도 벌고 권력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이상적인 부부의 역할로 생각한다. 따라서 돈 많은 여성과 출세할 수 있는 조건(토대와 학력)을 갖춘 남성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런 여성들의 생활전략에는 남편의 출세를 통한 대리 명예의 의미뿐만 아니라 역할 분담에 의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도 작용하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적 지원으로 남편이 좋은 직위에 배치되면 가족 전체의 명예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남편의 권력이라는 '빚'을 통해서 여성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장에서 사례 10이 구체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소개한 바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1970~80년대 가족처럼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여성의 지위와 동일시되고, 가족과 여성 개인의 자아실현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성들의 선택에는 권력을 활용한 비법행위가 일상 속에 깊게 배태되어 있고, 이것이 가족의 경제활동 및 부의 축적과 직결되는 북한 사회의 특수성이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화를 경유하면서 이전 시기와 달리 가족의 경제공동체적 특성이 강화되었다. 고난의 행군과 같은 압축적인 사회변동을

통해 단기간에 ‘북한식 성역할 분담’이 개별 가족단위의 생존전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즉 여성은 비공식노동, 남성은 공식노동이라는 역할 분담이 그것이다. 그런데 장마당을 통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에서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자원 동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것은 가족관계 안팎에서 남성 권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즉 여성들의 시장노동에 의해 남편을 출세시키는 경우 경제공동체인 개별 가족의 위상이 높아지고 권력을 통해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결과가 실제 경제활동을 한 여성 노동에 대한 인정으로 연결되지 않고 남성의 직위 향상과 권력 강화로 귀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공식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시장경제활동이 가족관계 내의 권력구조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한다면 시장화를 거치며 광범해진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고 해서 기존의 젠더 권력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권력구조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도 가능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여성들의 시장경제활동이 갖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¹²⁷⁾ 그러나 이번 연구의 사례들은 여성들의 시장경험과 경제적 능력 강화가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가족관계 내에서의 발언권 강화 및 가족관계의 변화 등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경제난 이후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를 동유럽사회주의 국가 및 중국의 변화와 비교하여 분석한 최근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북한 가족단위 내에서의 역할 분담을 사회적 이중노동체제의 결과로 이해한다.¹²⁸⁾ 그런데 이번 사례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난 이후 기존의

127) 조영주, “북한의 시장화와 젠더정치”; 박영자, “경제난 이후 북한 체제와 젠더의 구조 및 변화,” 『통일논총』, 제25권 (2007); 박영자, “북한의 젠더시스템과 여성 삶의 전략,” 『동북아연구』, 제16권, (2011).

계획경제체제에서 이루어지던 공식노동과 시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확대된 비공식노동이라는 이중경제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의 주요 행위자는 개별 가족들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별화된 역할 분담에 기초해 가족 생존을 위한 ‘실용적인 전략’을 수행해온 개별 가족, 그 중에서도 모든 책임을 떠맡은 여성들이 북한 사회 변화의 중요한 주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의 합법화 이후에 수차례 비공식부문을 축소하기 위한 북한 정권의 조치들이 있었으나 사실상 실패하였다.¹²⁹⁾ 김정은 체제에서도 이와 같은 이중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성들의 피땀으로 출발하여 사회 각 영역에 거미줄처럼 형성된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을 더 이상 무력화시킬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나. 시장 경험을 통한 자의식의 변화

(1) 비공식노동 수입의 증가와 가족 내 발언권

경제난 이후 30여년이 되도록 여성들의 장사 등 시장경제활동은 북한 사회에서 공식노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여성들은 시장 활동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각종 비법 활동(뇌물, 사기, 협박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빈번하게 개인적 피해를 입고 있다. 여성들이 남편을 공식부문에 출세시키려는 이유도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호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성들의 비공식부문 경제활동에 대한 제도적 인정이 부재하지만, 2000년대 북한의 가구별 수입에서 여성들의 장사활동으로 번

128) 이승윤·황은주·김유휘, “북한 공식-비공식 노동시장의 형성과 여성.”

129) 2005년 하반기 7.1조치 시행 중단, 2009년 11월 화폐 개혁 실시와 종합시장 폐쇄 등을 말한다. 2010년 종합 시장이 재가동되었다.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p. 140.

수입이 남편에 의한 공식 수입을 훨씬 능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가족의 물질 토대가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일반 기업소의 가동률이 여전히 낮은 조건에서 남편의 배급은 형식적인 반면, 여성의 장사 수입은 실제 가족의 생계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 소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를 위해 필요한 '뇌물'뿐만 아니라 각종 사교육을 위한 지출을 여성들의 수입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장마당을 중심으로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를 수시로 오가며 돈을 벌고 있는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의 '봉건적인 요구'에 암묵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전의 관습대로 가족 내에서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외도 등이 발생할 경우, 여성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사례 7과 사례 8은 피와 땀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자신에게 권위를 부리고, 직장에 '다니며' 바람을 피우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참고 일만 하도록 요구하자 참지 않았다. 처음에는 못 들은 척 하며 장사를 지속하여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여성들의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큰소리**를 많이 치죠. 그래도 옛날보다는 괜찮죠. 우리 엄마네처럼 무턱대고 순종하고 살던 시대는 다른데. **칼자루**가 아무튼 여자한테 주어 있으니까. (사례 8 구술 녹취록, 2019/12)

위의 구술에서 사례 8은 남편과 시집 식구들이 요구하는 이전의 관습들이 남아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실질적인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사실이며, 또한 이를 자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성들의 생계활동(칼자루)에 대한 남성들의 의식 변화와 가족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제도의 지원은 없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자각은 결국 여성들의 '새로운 자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이는 경제활동과 결부된 물질 기반을 통해 형성된 자의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례연구에 참여한 현재 30대 여성들, 즉 198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들의 시장 경험은 적어도 ‘자의식’의 변화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주도권의 인정과 관계의 변화를 둘러싼 각축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형식적인 ‘칭송’에 머무르고 있지만, 가족관계 내에서의 변화는 확산되고 있다. 여성들이 장사를 통해 큰돈을 버는 경우 경제적 역할에 대한 가족의 인정을 얻게 되고 가족 내 젠더 관계의 변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위계적 관계가 약화되거나, 실질적으로 역전되기도 하는 것이다.

가족 내에서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들을 지칭하는 ‘멍멍이’나 ‘낮전등’ 혹은 ‘불편’ 등의 용어가 북한 사회에서 회자되는 것은 사회의 공식담론에 대한 여성들의 ‘비웃음’이며, 자신들의 생계 노동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는 이중적 의미로 볼 수 있다. 실제 국가나 당의 주요 기관에 배치된 소수의 남성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소의 남성들은 자신의 배급으로 살아갈 수 없는 처지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물질 기반을 상실한 것이며, 가족 내에서 이전과 같은 권위를 부리며 여성들의 ‘순종’을 요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적 현모양처’를 요구하며 가족 내에서 권위적인 행동, 나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앞의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갈등을 표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남성들이 공동운명체인 가족의 생계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 변화된 성역할을 수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사례 7의 어머니는 교원으로 이른 아침

출근하여 밤까지 학교수업과 활동 및 개별 과외까지 수행하는 한편, 광산 노동자인 아버지가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일을 하는 등 필요에 의한 역할 분담을 수행하였다(사례 7). 그러나 아버지는 가구주로서의 권위를 공공연히 표시하였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젊은 세대 남성들의 경우 ‘돈 많은 여성’을 아내로 둔 것을 다행으로 여기거나, 결혼 시장에서 장사 수완이 있는 여성을 찾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젊은 여성들이 큰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 결혼하여 가사 노동을 남편에게 요구하거나 인력을 고용하여 대체하겠다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 연구 과정에서 장사를 통해 가족의 생계를 부양했던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직업을 ‘무직’ 또는 ‘부양’이라고 소개하였다. 이것은 북한에서 국가가 시장 활동을 하는 가두여성들을 분류하는 방식인데, 북한 여성들 스스로 이것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한국 입국 이후에도 동일한 호칭으로 자신을 소개하였다. 10여년 이상 장사를 하며 살아온 여성도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호명하는 것은 북한 사회에서 여성들의 장사활동을 비공식노동으로 분류하여 사회적인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어떤 경우 이를 대체할 자신들의 ‘단어’를 갖지 못한 결과이다. 또 자신의 직업에 대해 ‘부양’이라고 대응하는 것은 실제 여성들이 남편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공식 체계에서 부양의 대상으로 위치지어지고 있는 현실을 재현한다. 이는 부양 노동의 ‘역전 현상’이 30여년에 이르고 있지만 제도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 젠더정치의 단면이다.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에서는 이처럼 한편으로 여성들의 생계활동 및 미래를 위한 노동을 비공식부문으로 취급하며 직업적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통제와, 다른 한편으로 이미 운명적 경제공동체가 된 가족 내에서 자의식 및

관계의 변화가 현실화되는 등의 새로운 흐름이 각축하고 있다.

(3) 자율성의 증대와 새로운 실천들

북한의 「녀성권리보장법」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결과에서도 지적하듯이 국가는 여성의 권리를 법으로 강조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젠더 체계를 재정비하였다.¹³⁰⁾ 여성들이 ‘낙태의 권리’를 갖지만 인구정책의 차원에서 ‘다산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성별화된 역할에 기초한 남녀의 사회적 역할을 정당화하고 있다. 나아가 법 제정의 배경으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전히 가정 내 남편의 폭력이 만연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혼을 막기 위한 방침들이 관철되면서 여성들의 자율적 선택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경제활동 능력 및 경험으로 축적된 사회적 관계를 가진 여성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의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기존의 남편 배급에 의존하지 않고 돈을 벌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일상의 가치가 형성되면서, 수령과 당에 대한 의식적 결합이 느슨해지는 동시에 ‘자율성’이 커진 것이다. 자신의 경제활동을 억압하거나, 부당한 시집 가족들의 요구나 개입 혹은 남편의 외도나 폭력이 발생할 경우 살아갈 다른 방법이 없어서 참고 살던 과거와 달리,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은 이혼을 막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기도 한다.

실제 자신과 자녀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사 활동이 ‘부당한 요구에 순종해야 하는 결혼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사례 7은 중국에 오가면서 돈을 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의 집에서 나와 별거하였다. 교사로 경제활동

130) 박영자, “북한의 젠더시스템과 여성 삶의 전략,” p. 586.

능력을 가지고 있던 친정어머니의 정신적, 물질적 지원 또한 사례 7의 결단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친정에 머물며 아이들을 맡기고 이전의 인간관계를 활용해 장사를 계속했고, 1년 후 독집을 구해 이사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기반을 마련하였다. 앞 장의 사례연구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15년 ‘3년 이상 별거한 사례’에 대해 이혼을 허용한 당의 조치는 증가하는 이혼 요구를 일시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난으로 인한 가족의 자연적 해체에 대응하기 위해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던 이전의 조치가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한 범죄와 중혼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자 현상의 봉합을 위해 이혼을 허용한 것이다. 사례 8과 같이 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대부분 여성들이 ‘나가서 사는’ 별거를 하지만, 이 경우 공식적인 부부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므로 국가와 당에서 요구하는 가족부양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2015년 새로운 당의 방침에 따라 이혼할 수 있었던 사례 7은 이것을 큰 행운으로 설명하였다. 더 이상 전 남편과 가족들의 간섭 없이 장사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된 것이고, 재혼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기혼 여성들의 생애사 속에서는 개인으로서의 여성과 가족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여성의 모습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시장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자의식을 가지고 자율성을 실현하려는 모습과 ‘혁명적 현모양처’를 지향하는 남편의 부양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것은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도 “가족단위에서 무슨 내 통장이 필요하겠어요.”라는 말과 “모자라는 나를 좀 채워서 더 완벽해지고 좀 더 발전하고 더 높은 데 올라갈 수 있게 되는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희망이 공존하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3. 사회주의 대가정의 약화와 가족의 재구성

사례연구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남녀평등이 보장된 북한 사회의 여성 ‘개인’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은 사회적 지위와 인정,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여준다. 소위 결혼적령기가 될 때까지 북한 여성들은 형식적으로 남성과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입당의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거나 제대를 한 후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직업 배치를 통해 성별화될 뿐만 아니라, 결혼제도를 통해 차별적으로 구조화된다. 결혼한 여성들의 사회적 의무와 지위는 남편과의 종속적 관계를 매개로 부여된다. 이것은 선군 정치의 기반이 되는 가정의 혁명화, 혁명적 현모양처의 규범에 의해 재생산되어 왔고, 김정은 시대로 이어지는 국가가부장제의 실현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식량난을 겪으며 전 사회적으로 확대된 시장경제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한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서, 특히 2000년대 이후 수행된 결혼과 가족관계에서 새로운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부부관계에서의 역할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혼여성들의 역할에 대해 칭송하며 인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선군시대로부터 공고화된 ‘가정의 혁명화’라는 의무와 역할이 여전히 강조되는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의 일상 속에서 가족 및 결혼제도를 둘러싼 관행과 의식의 변화를 세대별, 계층별 차이에 주목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가. '정상 결혼'에 대한 선망과 변화하는 혼인 양식들

(1) 상층계급의 새로운 결혼 문화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 대다수는 20~30대의 나이로, 북한에서 10대와 20대에 시장화와 김정은 시대를 경험한 여성들이다.¹³¹⁾ 사례연구에 의하면 여전히 북한 사회에서는 부모들이 남성과 여성의 토대와 사회적 지위를 따져서 중매결혼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가운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연애결혼이 확산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중 반역자 등이 없는 '혁명가' 집안으로 토대가 확실해야 하고, 당원이 된 사람을 선호하는 것은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이다. 여기에 대학을 나와서 당기관, 법기관 등의 권력을 가진 직장에 배치된 경우 최상층의 집안으로 분류되어 대부분 비슷한 집안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진다. '제비는 제비끼리, 까치는 까치끼리'라는 혼인의 규범이 여전히 통용되는 이유는 한쪽 집안의 결함으로 인해 다른 쪽 집안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최저의 행위규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례연구에서 세대 경험의 비교를 위해 인터뷰한 40대 여성인 사례 14와 사례 21의 경우, 대학에 입학할 무렵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으며, 결혼을 하던 2000년대 초중반에는 모두 25살로 소위 결혼적령기였다. 두 사람의 중매는 친구의 남편 혹은 친구의 어머니 소개로 성사되었다. 전자의 경우 '평양살이'를 선망하여 갖은 노력을 하던 대졸 여성이며, 후자의 경우 '군복 입은 남성'과 결혼을 희망하던 엘리트 중학교 교사였다. 지방도시의 교사였던 사례 21은 약혼식과 결혼식을 치르고 남편의 군부대 내 사택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결혼생활을 위해 필요한 '5장 6기' 등의

131) 이 연구에서 심층면접을 실시한 여성 중, 북한에서 결혼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 10명이고 없는 여성들은 13명이다. 나이로 보면 20대가 9명이고, 30대가 12명 그리고 40대 초반이 2명으로 절대 다수가 20~30대의 여성들이다.

혼수품은 신부인 사례 21이 준비했다. 사례 14의 경우 신랑이 평양에 거주하는 군부대 소속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신분으로 평양 이주가 가능했다. 흥미로운 점은 신랑이 군부대 소속 회사의 ‘힘’으로 결혼식장을 비롯해 식당 등을 모두 준비하였고, 신부인 사례 14는 중요한 물품 정도를 챙겨서 결혼식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보통 신부이나 신부의 집에서 직접 음식을 준비하여 약혼식과 결혼식을 하는 방식과 달리, 평양에서는 이 시기에도 결혼식장과 피로연 식당을 대여하여 결혼식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¹³²⁾ 다른 지방과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혜산 등의 대도시 및 평양의 결혼양식 변화는 사례 1의 구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사례 1은 위 40대 여성들보다 열세 살 정도 나이가 어리며, 20대 중반인 2015년까지 평양에서 생활하였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바뀌면서, 지방은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평양에서는 100% 그렇게 변해서. 따로 집 나가서 살 경우에도 집 살 때 좀 수수하게 작은 집 같은 경우에는 한 9천 불, 만 불 정도 하고요, 큰집 같은 거는 2~3만 불 하잖아요. 그러면은 딱 반씩 딱 내서 집을 사요. 그러다가 만약에 여자가 좀 더 어려운 집이면 남자가 알아서 좀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절반씩. 결혼식도 옛날에는 집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결혼식 식당에서 다 하거든요. (사례 1 구술녹취록, 2019 1차 면담/17)

132) 북한 민속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를 고찰하고 있다. 2000년대 이전까지 양가 부모 상견례를 대신한 약혼식을 치르고,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 집을 방문하여 상을 받은 후,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와서 다시 상을 받는 두 번의 잔치로 이루어졌으나, 경제난을 거치며 한번으로 통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평양에서는 여타 지역과 다른 의례 형식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각종 의례 양식에서 친족이나 지역공동체 내에서 수행했던 상호부조의 역할이 쇠퇴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강정원, “북한 민속문화의 체계와 구조-일생의례를 중심으로” (북한민속연구단 워크숍 자료집, 2019.5.3.), pp. 4~6.

결혼이 진행될 경우 대부분 남성이 집을 준비하고 여성은 '5장 6기'의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지만, 김정은 시대로 오면서 양가 가족들의 권력과 경제력이 상당한 대도시 상층계급의 경우 결혼식 비용, 결혼 후 살게 될 집과 살림살이를 마련하는 비용 등을 동등하게 분담하여 책임지는 문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 결혼문화의 형식에 있어서는 적어도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집이 아닌 결혼 서비스로 특화된 공간에서 혼인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평양 등의 대도시 결혼문화에서는 세대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20대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연애가 일반화되었고, 토대와 권력을 따지는 상위 20~30%의 집안을 제외한 대다수 남녀가 연애 결혼을 하고 있다. 2000년부터 여성들도 당원인 경우 간부직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는 방침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입당을 위해 군복무를 하게 되면서 평균 결혼 연령도 30대 초반으로 상승하였다(사례 1 구술녹취록, 2019/18). 이처럼 대도시 중상층계급 여성들 내에서는 결혼연령, 결혼문화, 결혼 이후의 사회활동을 위한 삶의 계획에서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 고학력 당원인 여성들을 간부직에 배치하도록 하는 당의 방침은 한편으로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사회 부양을 떠맡은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활동의 영향이 커지면서 당과 군대보다 '장사'와 '돈'이 위력을 갖게 된 현실에 대응하여 고학력 여성들의 군 입대를 확대하고 제도 내로 조직화하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당원인 경우 간부직 배치라는 '권력 구조' 속으로 편입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 이것은 대학을 졸업한 소수의 여성들만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원이 되기

위해 중학교를 졸업하고 2000년대 초반에 입대를 선택했던 사례 7은 6년 만에 ‘입당 가방을 메고’ 제대했지만, 빈털터리로 생계를 걱정해야 했다. 이것은 배급제의 붕괴로 북한의 중간계급이 와해되는 단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군대에서 6년을 복무하며 입당을 하고 간호원학교까지 졸업한 여성에게 당에서 선전한 ‘간부직 배치’, 즉 생계를 보장할 직장을 배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2) ‘평백성’들의 실용적 혼인의 양상

시장화가 전면화된 2000년대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연애가 확산되고 있지만, 대도시와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 결혼은 남녀의 사정을 아는 친척이나 친지, 직장동료 혹은 동네 이웃 등의 중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여전히 일반적이다. 사례연구 중 지방의 중하층 계급에 속하는 다섯 명의 여성들은 모두 부모나 친척의 소개로 중매결혼을 하였다.¹³³⁾ 모두 1980년대에 출생하여 현재 30대인 이 여성들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장사를 하거나 공장에 다니다가 20대 중반의 나이인 2000년대에 중매로 혼인하였다. 앞 장에서 살펴본 사례 9의 경우에는 남자친구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애를 했지만, 아버지가 중앙부처 간부인 남자친구 집안과 “완전 평백성”인 자기 집안 간의 차이로 인해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접었다. 이와 다른 사례로, 앞 장에서 살펴본 사례 10은 우연히 알게 된 이웃의 군인과 5년을 연애하였다. 권력 있는 집안과 혼사를 맺기를 원했던 남성 집안의 반대가 심해 결혼하지 못하자 남성이 사례 10의 집에서 동거를 하다가 이듬해 자녀를 출산한 뒤 결혼식을 하였다. 자녀까지 출산하게 되자 시댁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중매결혼에서는 상대방이 지닌 조건이 만남 성사의 가

133) 사례 6, 사례 7, 사례 8, 사례 15, 사례 16의 경우이다.

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여성의 돈과 생활력, 남성의 직업, 토대, 능력이 교환된다. 여성들이 보는 배우자의 조건은 돈, 배경, 발전가능성이다. 돈이 많거나 돈이 나올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데, 외화벌이 이외에도 법관, 군관, 안전원, 보위부원 같은 “정복 입은 사람들”과 간부가 이에 해당한다. 운전수나 의사 같이 큰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도 여성들이 배우자 직업으로 선호한다. 배경으로는 집안의 토대와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본다. 경제난 이후 당원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권력이 이전 시기처럼 절대시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중요한 결혼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것은 당성을 통해 누렸던 혜택이 정치적 권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자본들을 획득하여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¹³⁴⁾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군대를 다녀와서 당원이 되어야 하고, 대학 졸업자이거나 여성이 뒷바라지를 해주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한 것을 의미한다.

사례 3은 남성들이 배우자로 선호하는 여성의 조건이 계층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한다. “간부들 계열”은 좋은 대학 졸업생을 선호하지만, “평범한 사람들 계열”은 장사를 잘 하는 게 똑똑하다고 보고, 돈을 벌 줄 모르면 “머저리로 여긴다.” 부모들은 딸들이 중등학교를 졸업하면 장사밑천을 들여서 장사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장사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면 중매도 잘 들어온다. “갓출 것을 다 갓춘 남자”들도 간부가 되거나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신의 “발전을 위해” 돈 있는 여성을 찾는다. 최근 평양에서는 돈이 많은 남성들 사이에서 외국어대학을 졸업하고 관광안내통역원

134) 조영주 “북한의 ‘인민만들기’와 젠더 정치: 배급과 ‘성분-당원’ 제도를 중심으로,” p. 138.

을 하는 여성들의 인기가 높아졌는데(사례 22), 이는 이 여성들이 “깨어 있고 힘찬 일도 안 하고 스타일도 괜찮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돈 없는 남성들은 “건강하고 가정을 떠메고 갈 수 있는 여성”을 선호한다. 사회 변화와 함께 일반 남성들의 무력함을 짐작하게 한다.

(3) 결혼제도의 이완

김정은 집권 이후 모성담론과 재가족화를 강조하는 젠더 담론 속에서도 세포로서의 가족을 구성하고 결속시키는 결혼제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기존의 결혼제도의 틀을 벗어나거나 이를 변형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결혼제도의 틀을 벗어나는 대표적인 행위는 결혼 기피이다. 북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결혼한 적이 없는 여성 비율은 20~24세에서 80.9%, 25~29세에서 20.0%, 30~34세에서 2.8%이다.¹³⁵⁾ 이 수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25세에서 29세 사이에 결혼하고, 34세 이후에 미혼으로 남아있는 여성은 3% 미만으로 매우 소수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성들이 경제적 부담과 결혼 이후 여성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노동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30대 초반의 여성인 사례 18은 예전에는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부담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하며 닦치는 대로 살자.”고 생각했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결혼을 늦추거나 기피하는 여성들이 생겨났다고 말한다. 20대 중반의 여성인 사례 5는 또래들의 결혼 기피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또래 보게 되면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려고 안 합니다. 그냥

135) 중앙통계국, 『201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평양: 중앙통계국, 2015), p. 34.

사회 나가서 장사를 어떻게 제 손으로 벌여가지고, 뭐 시집갈 생각도 안하는 거 같습니다. 살기 힘드니까, 시집가서... 내 친구들도 다 시집가서 애 낳고... 처녀 때는 진짜 멋있게 하고 막 그렇던 게 시집가서 너무 살이 빠져가지고 그러는 거 보고 엄마들이 막 “야, 절대로 시집가서 너무 너무 힘들게 살 바에는 시집가지 말고 혼자서 살면서 그냥 장사나 해서 혼자 먹고 사는 게 제일 좋겠다.” 이라고, 시집갈 생각도 좀 안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시집장가를 가자고 해도 뭐 갖춘 게 없고 하니까, 뭐 어떻게 벌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시집장가를 못가는 거죠, 여자도 못가고 남자도 못가고. (사례 5 구술녹취록, 2019/12)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25~49세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5.0세로, 28.0세인 남성에 비해 세 살 낮다.¹³⁶⁾ 최근 탈북여성들의 구술은 여성들의 결혼 연령이 약간씩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접경지역 거주자 사례 3은 여성들이 “스물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지나면은 처음에는 이것저것 고르다가 일곱, 여덟 되면은 그 다음에 후물이 된다.”고 말한다. 사례 2는 25세 미만은 “지금 현재가 좋으면 사는 것”이지만, 그 나이를 지나면 “세계관이 서서 먼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결혼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이처럼 여성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망설이는 이유는 여성들이 가정의 경제를 담당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젠더구조와 관계가 있다.

결혼을 할 경우에도, 일정 기간 혼전동거를 하거나 결혼식을 한 후에도 자녀를 낳기 전까지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사는 커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과의 접경지역에서만 아니라 내륙지역의 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평안남도 도시 지역에서 거주했던 20대 중반의 여성 사례 12는 동거 후 아이를 낳고나서 결혼등

136) 이 중 도시거주 여성의 초혼 연령은 25.1세, 농촌 거주 여성 24.7세로, 농촌 거주 여성이 약간 빨리 결혼한다. 위의 책, p. 34.

록을 하는 사람이 40%는 된다고 말하고 있다. 10여 년 전에만 해도 “약혼 전에는 남녀가 절대 같이 못 잔다는 게” 보편적인 생각(사례 21)이었다면, 최근에는 혼전동거를 하더라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오랜 연애와 혼전 동거 후 결혼식을 한 사례 10에 의하면 최근 북한 사회에서 연애를 하다가 동거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이에 대해 “뒷소리가 많은” 등 사회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여성들의 장사활동이 보편화되고, 지역을 넘어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개인 사이의 연애가 확대되고 실용적인 목적에 의한 동거가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적 규범은 여전한 것이다. 그러나 사례 10의 경우와 같이 동거를 하다가 양가의 승인 속에 결혼식을 하는 경우 동거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의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와 마찬가지로 이해되는 것이다. 반면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게 될 때는 특별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뒤따른다. 다른 남자와 중매가 이루어질 때 부정적인 ‘경력’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결혼을 미루고 혼전동거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 혼인에 대한 국가의 인정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식량난 이후 배급제도가 유명무실화됨으로 인해 혼인등록에 따르는 남성 가부장의 가족부양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례 10은 긴 연애와 시댁의 반대로 인한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지만, 결혼등록은 결혼식 후에 바로 하지 않았다. 결혼등록을 한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집을 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서둘러 결혼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경제난 이전의 북한 사회에서 배급제도는 남성 생계부양자를 중심으로 가족 내 위계질서를 구성하고, 성별화된 사회적 역할을 정당화하는 중심 기제였다.¹³⁷⁾ 기존의

137) 조영주, “북한의 ‘인민만들기’와 젠더정치: 배급과 ‘성분-당원’제도를 중심으로.”

배급제 운영 방식에 따르면, 각 기업소나 소속 단위에서 양식공급신청서를 교부하면, 가구주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민반장, 동사무소, 보안서 도장을 받아서 제출한다. 제출된 신청서에 근거하여 원장등록이 이루어지고 배급표가 교부되면 세대별로 배급소에 가서 배급표를 식량으로 교환하는 것이다. 이때 보안서에 결혼등록 및 출생등록을 한 가족 구성원은 가구주인 아버지 혹은 남편의 부양가족으로서 가구주인 남성을 통해 세대별 배급을 받을 수 있었다. 만일 맞벌이를 하는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은 가구주의 직장에서 배급을 받고, 부인만 자기 소속기관에 등록하여 배급표를 받는다. 단 여성이 단독으로 소속기관에 등록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는 것보다 배급량이 많았다.¹³⁸⁾ 이처럼 가구주의 의미는 세대를 대표하여 배급을 받음으로써 온 가족의 생존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등록제도는 한국과 같이 신고행위를 기반으로 한 관료제라기보다, 배급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실질적인 가부장적 가족통제의 기제라고 할 수 있다.¹³⁹⁾ 이런 관점에서 북한 사회 전반에서 행해지고 있는 결혼등록의 연기는 배급제를 근간으로 한 국가가부장제가 통제능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

(4) 성분-당원제도를 횡단하는 ‘통혼’의 증가

북한 사회의 결혼문화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토대를 기본으

pp. 123~124.

138) 북한 노동 성인의 계층별 월 단위 주·부식 배급 기준 및 분배 방식은 다음을 참고하라. 위의 글, pp. 122~123.

139) 한국 사회에서도 1990년대까지 직장을 가진 남성에게만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 가부장제의 유산이라고 비판되었다. 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젠더와 세대 사이의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가족에 대한 복지수당(아내, 또는 남편 수당, 아동 수당, 출산 수당, 양육수당 등)을 해당 당사자(아동, 여성, 남성 개인)에게 직접 지불하고 있다.

로 한 권력 배분이 상대화된 점이다. 이전의 경우 성분-당원제도에 의해 직장 배치와 혼인이 엄격히 이루어진 반면, 1990년대의 식량난을 거치면서 ‘경제적 능력’을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방침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전 시기 월북자 집안이나 귀국자 집안(중국이나 일본에서 해방 혹은 전쟁 전후로 이주한 가족들)은 ‘성분’이 확실하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되어 주요한 직장에 배치되지 못했으며, 혼인관계에서도 통혼 범위에서 배제되었다.¹⁴⁰⁾ 재일동포 3세인 사례 1의 경우에서도 여전히 ‘귀국자 집안끼리 혼인’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재일동포 친척들의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사례 1의 아버지가 ‘권력이 있는 직위’로 배치되어 지방에서 평양으로 이주하는 등 상대적인 권력의 분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례 14의 집안에서는 평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언니가 귀국자 집안의 아들과 혼인하였고,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례 14의 남편도 귀국자인 언니의 남편을 문제 삼지 않았다.

옛날에 아저씨[형부]가 조금, 북한에서 보면 좀 유명한 집 됐거든요. 재일, 그러니까 귀국자인데, 일본에서 왔는데, 가구공장 일본에서 하다가 유명해가지고 그 일본에서도 엄청 잘살았어요. 그런데 ○○○한테 속아가지고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서 북한에서 김일성이 딱 단독사진 찍고 악수하고, 옛날 뭐 친필 말씀 받고 환갑상다 선물 내려받고, 그런 집안 됐거든요. 북한에 와서도 이렇게 중앙당 올라가는 가구공장 있잖아요. 국가에서 고려호텔... 거기 가구들 몽땅 우리 언니 시집에서 다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중앙당 가구, 고려호텔 거 호텔 설비, 중앙당 설비, 아저씨네 거기서 다 들어

140) 북한 사회안전부 1993년 자료에 의하면, 북한 주민은 성분에 따라 기본군중, 복잡한군중, 적대계급잔여분자로 분류되었다. 이에 의하면 귀국자 집안은 적어도 복잡한군중(귀환사민)이나 적대계급(친일파, 상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북한 사회안전부, 『주민등록사업참고서』, 1993, 재인용: 조영주, “북한의 ‘인민만들기’와 젠더 정치: 배급과 ‘성분-당원’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9권 2호 (2013), p. 128.

갔거든요. 거기 형제들이 7형제인데 그 형제들이 5형제가 와서, 일본에 두 형제가 있고 5형제가 와서 가구공장을 지배인, 기사장, 무슨 부지배인 이렇게 하면서, 직장장 하면서 가구공장을 운영한 거예요. (사례 14 구술녹취록, 2017/18~19)

위의 구술에서 사례 14는 북한 사회 권력과 부의 핵심인 중앙당, 고려호텔 등을 거론하며 귀국자 출신인 형부 집안에 대한 ‘부러움’과 선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귀국자 집안 중에서도 막강한 경제력이 있을 경우 당에서 발탁하여 경제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2000년대가 되면서 경제력을 가진 귀국자들이 각종 합작회사 등을 통해 당과 군대의 자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주요 직위에 배치되고 있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토대는 귀국자 집안이지만 경제력을 인정받아 사회적 권력도 가지게 된 것이다. 비록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까치와 제비” 사이의 통혼이 이루어지는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중하층계급의 혼인에서는 부모가 사망하여 보호 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경우 경제력이나 권력이 있지만 신체적, 사회적 문제가 있는 남성과 ‘통혼’하기도 한다. 이것은 과거부터 있어온 혼인의 관습들이지만 식량난과 장사가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계층 사이의 혼인이 확대되는 등 실용주의적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적대계급 출신의 여성들이 시장을 통해 돈을 벌어서 토대가 좋은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토대가 나쁘고 장사를 하는 여성들을 무시하던 이전과 달리, 2000년대 이후 장사수완을 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남편을 출세시킬 수 있는 자본과 인적관계를 가진 여성들을 선망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이다.

나. 부부의 성역할과 관계의 균열들

(1) 사회주의 대가정과 변화된 실천들

2000년대 북한에서 결혼한 사례들에서 짐작할 수 있는 부부의 성역할과 관계는 여전히 사회주의 대가정의 규범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결혼하여 가족을 구성한 개인은 수령과 당에 충성하는 인민으로서 개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한국 사회와 비교하면 개별 가족의 행복과 실현을 위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개별 가족은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북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할 전사를 양성하고 보위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를 위해 가족 구성원 중 남성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직장에서 활동하고, 여성은 ‘강반석 어머니와 김정숙 동지’를 따라 배우며 ‘혁명적 현모양처’가 되도록 요구받는다.¹⁴¹⁾ 이와 같은 선군시대의 ‘혁명적 여성상’은 고난의 행군 시기 국가의 부양의무를 여성들에게 전가하는 토대가 되었으며,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기치에서도 이어지고 있다.¹⁴²⁾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주요 사전에도 어머니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으나 아버지에 대한 정의는 ‘어머니의 남편’이라는 한 줄로 요약되듯이 개별 가족 내에 ‘아버지’는 부재하다. 공식적으로 주어진 가족 내의 의무가 없는 것이다. 반면 여성에게는 가사노동과 양육 및 가두노동을 수행하며, 남편을 공대하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있다.

141)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권금상, “북한 여성의 섹슈얼리티 연구: 국가권력과 여성 주체 간의 동학을 중심으로”; 김경희·강은애·손명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국가부장제의 재생산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55권 1호 (2016) 참조.

142) 조선중앙통신사,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17), pp. 89~95.

이와 같은 김정은 시대의 사회적 규범과 분위기 속에서 평양과 대도시의 상층계급 여성들(사례 14와 사례 17)은 남편의 직장을 통해 받는 배급과 물자에 의지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며 가사노동과 양육에 전념하는 반면, 인민반 활동을 통한 혁명 사업에서는 빠져있다. 인민반 활동에 나오도록 ‘문을 두드리는 성가심’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 달에 일정 금액의 돈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종 ‘혁명 사업’이 ‘돈’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남편의 공식적인 배급 이외의 실질적인 수입과 돈으로 동원노동을 대체하는 방식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므로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암묵적으로 상호 인정될 뿐이다. 특히 평양의 상층계급은 해산 등의 대도시와 비교하여 정치적 규범을 의식하면서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있다. 의식적으로 화려한 ‘옷’이나 ‘핸드폰’의 사용을 꺼리는 등 언제 있을지 모르는 정치적 단속에 대비하는 것이다(사례 14). 특히 선군정치의 핵심인 군 장교 가족인 경우 여성이 부대 내 군인가족들을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비서로 활동하며 군대 내의 각종 노력동원에 참여하고 있다. 고급중학교 교원이었던 사례 21의 경우 교사를 하면서도 군부대 내에서 필요한 물자조달을 위해 군인 가족을 동원하여 직접 노동하였다. 직업 활동과 군 장교인 남편에 대한 가족지원 사업을 위해 어린 아이들의 양육을 친정 부모에게 위탁하기도 했다. 혼자서 세 가지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선택한 결정이었다. 이처럼 국가의 배급과 직장을 통한 수입이 보장되는 북한 내 상층계급의 가족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혁명적 현모양처’의 규범이 관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에서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부모 시대와 같은 남편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는 30대 부부들 사이에서 ‘구시대’의 문화로 여겨지고 있다.

네,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대 때 갈아도 막 같이 어디를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거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부부간에 그저 어디를 부부 부부끼리 해가지고 어디 놀러도 많이 다니고. 뭐 사람들 있는데도 그저, 옛날에는 “여보 당신” 했다면, 그저 뭐 “아무개야 아무개야” 와이프 보고도 와이프 이름 부르고, “우리 색시 우리 색시”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도 막 이러는 것도 많고. 아버지 어머니 대에는 그런 게 없은 거 같아요. “여보 당신” 그저 이거면 끝인데, 지금 세대는 안 그런 거 같아요. (사례 17 구술녹취록, 2019/40)

지방 대도시에서 살았던 사례 17은 남편이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는’ 여성들을 “머저리”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위의 구술에 서처럼 부모 세대와 자신이 속한 세대를 구분하는 부부 사이의 새로운 일상문화를 소개하며, 여성들이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시대임을 강조하였다. 부부 사이에 서로 이름을 부르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로에 대한 애뜻함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대 문화임을 기술하고 있다.

(2) 고통과 강압으로 유지되는 ‘가정의 혁명화’

사례연구에 참여한 여섯 명의 중하층 기혼여성들과 결혼 경험 없이 한국으로 온 20대 여성들의 어머니는 결혼 관계에서 세 가지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경험을 보여준다. 이들이 결혼한 2000년대에는 이미 배급 제도를 통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남편들이 기업소 등에 배치되어 출근을 해도 사실상 물자부족으로 기업소가 운영되지 않아서 배급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한 달에 열흘도 먹고 살지 못할 만큼의 배급’을 보충하기 위해 여성들은 작은 땅에서라도 농사를 짓거나, 먹고 입을 것을 절약

하여 국수장사, 옷장사, 신발장사 등 낮은 수준의 장사에서 중국 밑 무역에 이르는 경제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즉 여성들은 남편의 부양 가족으로 등록되었으나, 기존의 가사노동과 양육이라는 재생산 노동과 인민반을 통한 사회 동원활동 외에도 남편의 배급을 대신할 수 있는 생산노동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남성들이 ‘멍멍이’ 등으로 불리며 가족에게 유명무실한 존재가 된 반면, 여성들은 가족의 재생산, 사회적 동원 노동 그리고 생산 노동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구술 면담 과정에서 만난 상당수 북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상처와 고통을 담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사례 15는 1980년대 초반에 양강도에서 2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사무직에서 일하고, 아버지는 군수동원 예비물자를 담당하는 창고장으로 유복한 생활을 하였다. 살던 지역에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 배급이 끊어지자 어머니는 가족생계를 위해 직장에 나가지 않고 가축도 키우고 장사를 하러 다녔다. 사례 15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 성적이 좋아서 대학에 가기를 희망했으나 “고이는 것이 없어서” 떨어졌다. 대학 졸업 후 유치원 교양원이 되고 싶었으나 미래의 생활을 위해 아버지의 권유로 보위대에 근무하였다. 그런데 보위부 지휘관이 ‘성폭력’을 시도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6년 만에 자진 제대 신청을 하였다. 몇 개월만 참으면 입당하고 제대를 할 수 있던 시기에 내린 억울한 결정이었다.

그 시기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상태라 사례 15는 어머니와 같이 약초도 캐고 열매도 따오고 작은 장사 등도 하며 집을 꾸리다가 집안의 소개로 ‘시집을 갔다.’ 딸을 출산하고 1년 정도를 살다가 남편이 ‘아무 것도 처리할 능력이 없는’ 생활을 지속하자 ‘이혼’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친정에서 가족생활을 하며 아이를 낳았으나 혼인 등록을 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출산등록을 할 때 같이 혼인등록을

하려고 했으나, 출산등록 전에 서로 갈라지게 되면서 이혼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는 2000년대 중반에 집안의 소개로 이혼한 적이 있는 남성과 재혼하여 아들을 출산하였다. 그런데 남편의 주사와 폭력이 갈수록 심해져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두 번째 남편과 이혼 후 예상되는 주변의 ‘소문’ 때문에 8년을 맞으면서 살았다. 매를 피해 친정에 갔으나 아이들이 ‘눈치 생활’을 하자 다시 “매를 맞아도 내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폭력이 시작되자 헤어지자는 심정으로 친정에 머물며 생활했다. 그 당시 그는 혼자서 돈을 벌기위해 중국으로 몰래 넘어가 일을 해주고 일당을 모아서 돌아오기도 했다.

그런데 남편이 친정으로 간 사례 15를 집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보위부를 찾아가 아내의 도강사실을 신고하며 조사를 하도록 종용하여 담당 지도원이 친정으로 찾아와 조사를 했다. 끝까지 사례 15가 부인하여 일이 수습되었으나, 그 뒤에도 남편 때문에 수회에 걸쳐서 중국 다녀온 사실에 대한 보위부 조사가 이어지면서, “지금 보안서 꾸리기가 힘든데, 기름 20킬로를 내겠냐, 아니면 단련대를 가겠냐?”고 협박을 당하고 기름을 바치기도 하였다.

집에 엄마네 집에 올라가면서 **한 2년 동안 있었는데 다시 보안서에서 부르더라고요.** 불렀는데, 그걸 그때 그걸 가지고 지금 조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거주가 안 붙어 있고 거주는 제가 사는 동네에서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안 살고 올라와 있으니까 **계속 저를 지금 거기를 내려가서 살라는 거예요, 보안서에서. 미거주등록이라고.** 그래서 아니 저희 부모님이랑 동생이랑 “아니, 그러면 그 사람 어디 가서 사냐?”고. “지금 그 상태에서 그 신랑하고 안 살고 신랑이 계속 언니한테 손대고 이러니까 거기서 살 형편이 못돼서 여기 올라왔는데, 여기서 계속 쫓으면 그 사람 어디를 가겠냐?”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중략) 그러니까 보위부에서는 더 다시 안 왔었는데, 보안서에서는 몇 번 계속 와가지고 담당지도원이 와가지고 저를 계속 그 원래 살던 데로 내려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간다고, 저 못간다고 저를 계속 이렇게 단련하지 말라고, 단련시키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못살게 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이렇게 살다가 아니, 보안서에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 예전에 중국에 갔다온 그 건을 들추는 거예요. (사례 15 구술녹취록, 2019/8~9)

위의 구술에서 주목할 점은 반복되는 폭력에 10여년을 시달리다가 친정으로 간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남편이 아내의 ‘도강’ 사실을 보위부에 신고한 것이다. 그리고 남편의 폭력을 피해 친정에 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보위부 담당 지도원들은 이런 사실을 빌미로 뇌물을 요구했고, 남편의 신고가 반복될 때마다 사례 15에게 ‘미거주등록’ 사실을 지적하며, 등록지로 와서 살도록 강요한 것이다. 혼자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중국까지 가서 일한 아내를 남편이 고발하고, 보위부에서는 온 동네에서 다 알고 있는 ‘남편의 폭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거주등록을 하지 않고 친정에 머물고 있는 것만을 문제 삼으며 ‘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폭력’의 관점에서 보면 보위부가 가해자의 접근을 막아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등록법」을 근거로 피해자를 가해자에게 돌아가지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이런 일은 1980년대 중반 함경북도에서 2녀 중 장녀로 출생한 사례 16에게서도 반복되고 있다. 고난의 행군 때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사망하고 2년 뒤에는 아버지가 공장에서 사고로 사망하면서 자매는 고아가 되었다. 친할머니 집에서 학교를 다니며 오후 시간에는 장마당 밖에 앉아서 채소나 과일을 팔아서 겨우 생활을 이어갔다. 중학

교를 졸업할 무렵 동생이 중국으로 “팔려갔다.” 혼자서 장사를 하며 주변의 평판이 좋았던 사례 16은 스물세 살이 되던 2000년대 중반에 중매로 결혼하였다. 그런데 “아들 하나뿐이니 들어와 살면 된다”고 하던 시대에는 남편의 전처가 낳은 여섯 살 된 아이와 시누이 한 명이 같이 살고 있었고, 이웃에 사는 시집간 시누이 두 명도 수시로 친정을 드나들면서 먹을 것 등을 가져가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시집살이’와 모진 바다 일을 견디느라 사례 16은 “시집가서부터 눈물로 살았다.”(사례 16 구술녹취록, 2019/6). 사례 16은 결혼한 다음 해 아이를 출산했으나 과로와 영양실조 등으로 조산을 하였고, 아이는 결국 1년이 되지 못해 사망했다. 이후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생활하던 중 남편의 폭력이 시작되었다. 일만 하고 “저의 형제가 와서 뭐 가져가고 와서 먹고 하는 건 나보고 상관하지 말라고” 하면서 때리는 것이었다. 2012년 시누이와 남편이 합세해서 극심하게 폭력을 행사한 날, 사례 16은 옷도 걸치지 못하고 집을 나와 다른 도시에 살던 친척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했다. 며칠 후 남편이 찾아와서 협박하자 “아이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으나 폭력은 반복되었다. 3년 뒤 사례 16은 다른 지역의 친척에게 피신을 갔으나 남편이 다시 찾아왔다. 사례 15와 마찬가지로 ‘거주등록’이 된 곳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로 보위부와 합세하여 압력을 넣었고, 사례 16은 친척 집으로 피하고 싶었으나 ‘증명서’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으로 병까지 얻은 그는 주변 사람들이 모아준 돈으로 병원에 나왔던 길에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서 갔다.” 아이를 두고 온 사례 16은 2016년 대부분을 병원에서 앓으며 지냈다. 어디를 가든 따라오는 남편의 폭력과 보위부 등의 압력을 피하지 못하던 그는 10여 년 전에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간 동생을 찾아 2018년 홀로 탈북하였다.

사례 15는 북한의 가족 내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여자는 그렇게 별로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남편을 내세워주고 자식을 키워서 내세워주고 자식을 키워주고 이렇게 해도 남편을 더 우선시 하거든요, 여자는 그냥 내가 응당 해야 될 일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몫이라고 여자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남편에 대한 우대감이 있고, 여자는 그런 우대감이 없어요. (사례 15 구술녹취록, 2019/28)

위의 텍스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대가정을 구성하는 개별 가족 내에서 여성들은 가사노동, 양육, 장사활동을 통해 자녀와 남편을 부양하고, 여성동맹과 인민반의 동원 노동을 감당하지만, 남성 중심의 국가가부장제에 의해 사회적 인정에서 배제되어 있다. 시택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전력을 투구해도 그에 대한 가족 내에서의 인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폭력’을 휘둘러도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치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것이 여성을 “시대의 꽃”으로 칭송하고 「여성권리보장법」 등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인정체계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젠더정치 이면의 모습이다.

고난의 행군으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적 조건 속에서 여성들의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고통과 가족관계 내에서의 차별로 인한 상처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던 하층 계급의 여성들 속에서는, 이와 같은 차별적 경험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이들이 북한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여성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내

가 해야 되는 몫이라고” 여겼던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들 또한 국가가부장제를 지탱하는 북한 가족의 행위자인 것이다.

(3) 배급제의 흔적과 결혼제도의 변화들

사례연구에 의하면 현재 북한 사회에서는 배급제라고 하는 국가가부장제의 물적 기반이 사실상 붕괴되었지만, 이에 의한 통제의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일상생활의 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남성들은 배급과 무관하게 공식적인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사회적 노동’을 인정받는 반면, 직장의 적(籍)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기혼여성들은 장사 등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다. 결혼한 여성들이 직장에 다니거나 혹은 남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가족 내 양육과 가사노동 부담을 고려한 점이지만, 동시에 여성들의 의무를 재생산 노동에 결박시키는 성별화된 제도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 배급제가 무너진 현재 북한 사회에서는 기존의 사회통제체제와 젠더체계가 서로 어긋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전 시기 배급제도를 통해 남성 중심의 성별화된 부부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경제난 이후 배급이 유명무실화된 현실 속에서 여전히 남성 중심의 규범이 강조되는 불균형에 대한 의문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동을 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제도화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남성을 통한 사회적 통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배급제도의 약화는 국가 등록을 전제로 한 혼인제도의 쇠퇴로 이어지고 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등록을 해도 배급을 받지 못하므로 대다수의 중하층 계급에서는 부모들의 승인 하에 혼전 동거를 하면서 결혼등록을 미루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

다. 사실상 결혼등록제도가 느슨해진 것이다. 배급과 결합되어 있던 결혼등록과 출생등록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사라지면서 사회적 통제 기능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것이다. 그러나 사례 1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생등록이 되어야 자녀들이 각종 기념일에 배부되는 ‘지도자 동지의 선물’을 받고 학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성이 생길 때 출생등록과 결혼등록을 함께 하는 방식으로 연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보면 ‘사회주의 대가정’의 물질 기반이 실질적으로 쇠퇴했지만 ‘선물 정치’를 통해 사회적 인정과 소속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탱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결혼등록을 미루는 다른 이유 중 하나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가족 구성원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태가 되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였고,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가족 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가족을 유지하는 것이 예측가능하지 않게 된 반면, 당에서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여성이 이혼을 원할 경우 여성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쉽지 않고, 절차도 복잡하다. 그런데 결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거생활을 통해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 때 복잡한 이혼 절차 없이 헤어질 수 있다.

그게 지금 유행이 된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신고를 법적신고 해가지고 결혼등록하면은... 북한은 이혼하기가 힘들잖아요. 여기처럼 둘이 동의만 하면 이혼하기가 험하면 결혼도 뭐 이런데. 이혼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실지로 말하면 살다가 생활에 부딪혀가지고 막 갈라지겠다는 게 좀 많아요, 북한도. 그러니까 이혼하기가 너무 힘들니까 이제는 그 결혼등록을 하기가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애를 낳고 한 2~3년 살아보고 다른 게 없으면 절차를 밟는 거예요. 이혼하기가 너무 힘들니까 그냥 애를 낳고 살다가도 벌써

저처럼 이런 경우가 부닥치면 결혼신고 안 하면 그냥 이혼이 없이 헤어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이렇게 인츰 결혼신고하기를 많이 꺼려... 그게 유행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는 그냥 그게 뭐... 한 5년 전부터 그런 거 같아요. (사례 16 구술녹취록, 2019/25)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등록을 미루는 최근의 관행들은 가족제도의 경직성을 우회하며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북한 여성들의 전략적 젠더수행의 단면을 보여준다. 즉 경제난 이후 가족해체가 확대되자 당에서는 재생산과 양육을 담당할 가족유지를 위해 이혼을 금지하는 방침들을 내려 보내고, 이와 같은 방침을 회피하기 위해 여성들은 결혼 등록 자체를 연기하는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사회의 혁명가족은 형태에 있어서는 핵가족으로 정착되었으나 ‘사회주의 대가정’을 구성하는 개별 단위로 기능하고 있다. 개별 가족은 혁명적 전사를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이를 위한 물질, 정서적 노동을 수행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개인들의 친밀성이 존중될 수 있는 사적의 공간이 부재하며, 국가는 언제나 ‘단속’을 통해 개인의 섹슈얼리티에까지 직접 개입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의 공적 서사에서도 여전히 ‘혁명적 현모양처’에 의한 가족의 혁명화 규범이 유지되고 있지만, 동시에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정의 의례들이 수행되고 있다.¹⁴³⁾ 이것은 개별 가족의 일상 속에서 여성들이 수행한 생산노동에 대한 사후적 수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고난의 행군으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현재 유명무실해진 사회주의 대가정의 배급 제도를 대신하여 가족 안팎에서 생계노동을 수행하고 사회적 동원에 참여해온

143) 이는 2010년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2012년 제4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김정은이 어머니날(11월 16일)을 제정한 사실 등을 말한다. 전자의 법 제정은 그 자체로 국가의 여성권리 존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실질적인 법 조항과 의미에 대해서는 II장을 참조하라.

여성들의 가슴에 달아주는 ‘꽃’, 즉 ‘훈장’이라는 의례이다. 그러나 수령과 당에 대한 자발적 충성과 헌신으로 ‘충만’하였던 북한 가족 내에 시장의 논리와 문화가 일반화된 현실을 제도적 변화가 아닌 의례적 ‘훈장정치’만으로 대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결혼과정에서부터 가족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물질적 행복을 우선에 두는 개인의 의사와 결정이 더욱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또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이 클수록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율이 높은 경향으로 나타나는 등 부부 사이의 성역할에도 현실적인 변화가 수용되고 있다.

4. ‘낭만적 사랑’과 세대 문화

최근 북한 여성의 삶에서 생산 영역 못지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섹슈얼리티 영역일 것이다. 섹슈얼리티는 광범위한 의미로 “성역할, 성행위, 성적 감수성, 성적지향, 성적 환상과 정체성을 정의하고 생산하는 모든 영역”¹⁴⁴⁾을 의미한다. 섹슈얼리티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권력의 장 안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이기¹⁴⁵⁾ 때문에 사회적 환경과 젠더정치의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이 절에서는 연애와 데이트, 성적 실천의 변화와 이와 연동된 젊은 세대들의 문화에 대해 살펴본다.

144)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페미니즘의 개념들』 (파주: 동녘, 2015), p. 162.

145) 앤소니 기든스 저, 황정미·배은경 역,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서울: 새물결, 1996), p. 57.

가. '낭만적 사랑'과 친밀성의 장소들

(1) 사랑노래, 사랑영화와 '낭만적 사랑'

최근 북한의 젊은 세대들 속에서는 연애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함경북도 국경도시에 살았던 20대 초반의 여성인 사례 9는 또래친구들 사이에서 남자친구가 없으면 “재는 왜 없지? 뭐가 모자라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성교제가 많아졌다고 말한다. 함경북도의 군 지역에서 살았던 20대 중반 여성 사례 4도 몇 년 전부터 중등학교 동창들과 “자유롭게 연애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다고 말한다.

북한의 공식담론에서 진정한 사랑은 ‘혁명적 동지애’로 그려져왔다. 북한 소설에서 청춘 남녀의 사랑은 동지애적 관계와 공공윤리적 신념의 확인이 감정교류에 우선한다.¹⁴⁶⁾ 그런데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현 시기 북한 여성들이 들려주는 연애담은 ‘혁명적 동지애’에 기초한 동지애적 사랑과 다를 뿐만 아니라, 사례 14나 사례 21 같은 40대 여성들의 그것과도 다르다. 20대 여성들의 연애담에서는 기든스(A. Giddens)가 ‘낭만적 사랑’이라 명명한 사랑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¹⁴⁷⁾

평양에 거주했던 20대 여성인 사례 22는 평양에서 가장 좋아했던 장소를 묻자 엉뚱하게도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146) 오태호, “북한 단편소설에 나타난 연애 담론 연구,” 『국제어문』, 제58집 (2013), p. 564.

147) 타자에게 빨려들어가는 것은 열정적 사랑의 전형적 특성인데, 낭만적 사랑에서 이것은 추구라는 특정한 지향 안에 통합된다. 추구는 하나의 오딧세이, 그 안에서 자기정체성이 타자가 자기를 발견해 줌으로써 비로소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오딧세이이다. 추구는 능동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현대 로맨스가 중세의 낭만적 이야기와 대조되는 점이다. 앤소니 기든스 저, 배은경·황정미 옮김,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p. 87. ‘낭만적 사랑’은 두 사람간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협상으로서의 친밀성을 내포하는 관계이다. 이 관계에서는 성적인 협상의 세계, 헌신과 친밀성이라는 새로운 용어들이 전면적으로 부상한다. 위의 책, p. 27, p. 36.

연구자: 평양에서 본인이 제일 좋아했던 장소는?

구술자: 네, 집이에요. 집에서 나는 누구처럼 그 드라마랑 보고, 한 번 여유롭게 뭐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연구자: 드라마라는 건 남한 드라마요?

구술자: 네, 그러니까 뭐 무슨 태양의 후예나 공동경비구역 이런 거 말고, 그냥 사랑에 대한 로맨스, 그런 거. (사례 22 구술녹취록, 2019/46)

위 인용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영상매체에 등장하는 로맨스, 즉 낭만적 사랑의 세계가 북한의 젊은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세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사례 22가 말한 “사랑에 대한 로맨스”를 전하는 매체는 바로 외부사회로부터 유입된 영화, 드라마, 노래 등의 문화 콘텐츠들이다. 40대 초반인 사례 14는 자신이 미혼이었던 시절과 사뭇 달라진 새 세대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얘기하면서 고난의 행군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비디오와 테이프의 영향력’을 거론한다.

경제난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 중 하나는 ‘비디오와 테이프’, ‘알’이라 불리는 CD와 DVD, MP3를 통해 유입된 외부 세계의 영상물과 노래의 확산이다. 경제난 시기 생존을 위해 북한 주민들은 중국과의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한 물품을 들여왔는데, 한국, 중국, 미국의 영화, 드라마, 노래와 이를 재생하는 디지털기기도 그것에 포함되었다. 이 노래와 영상물들은 각지로 퍼진 거래선을 타고 전국으로 유통되었고, 북한 여성들의 의식과 행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례 22가 갈망했던 “사랑에 대한 로맨스”를 보여주는 드라마 속의 세계는 북한 사회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이지만, 이제는 젊은 청춘남녀의 일상에서 감지되고, 이야기되고, 다양한 실천을 통해 추구되고 있다.

20대 초반의 여성인 사례 13은 한국 노래를 제일조총련이 만든 노래로 알고 들었다. 북한 노래는 박력은 있지만 “나가자, 백두 뭐 그런 노래밖에 없는데” 비해, 그 노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표현하는” “생활적인 노래”여서 신기했다. “슬플 때는 내 심정을 이해해주는 것 같고 좋을 때도 들으면 신이 났고,” 한번 들은 노래는 콧노래로 흥얼 흥얼 나왔다. 그는 노래 가사를 음미하며, 연애 관계에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자각했다. 그는 남성의 고백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북한과는 다른 세계와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외부세계로부터 흘러들어온 새로운 노래는 노래에 그치지 않고 연애 관계에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섹슈얼리티의 변화로 연결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영화와 드라마는 북한 매체에서는 보기 드문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과 낭만적 연인관계를 더욱 직접적으로 눈앞에 보여준다. 여성들은 한국과 중국의 영상물들을 통해 ‘낭만적 사랑’의 원형을 발견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남녀의 연애이야기에 몰입하며, 남녀관계의 차이에 주목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한국 영상물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젊은 여성들은 통제를 피해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믿을만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눈다. 20대 중반의 여성 사례 4는 2016년에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단속에 걸렸지만 담배 세 보루를 주고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그는 당시 <천하무적 이평강> (KBS 16부작, 2009)을 보면서 “신세계”를 경험했다. 드라마 내용이 너무 “달달하고 호기심을 끌었고,” 사람들도 “다 번쩍번쩍하게 살아서” 그런 세계를 그리면서 중국으로 넘어왔다. 계급적 차이는 있지만 한국 드라마를 통해 재현되는 ‘풍족한 물질문화’와 ‘낭만적 사랑’에 대한 동경은 적어도 북한의 젊은 여성들의 공통된 정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서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젠더수행을 만들어내는 바탕이 된다.

한국 영상물이 보여주는 사랑의 정서는 북한 젊은 여성들의 정서에 반영되고, 영상물이 보여주는 남녀 간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의 방식은 북한의 기성세대와는 다른 “깡 세대”의 행동양식을 만들어낸다. 북한의 젊은 여성들은 한국이나 중국의 영화와 드라마에 나타나는 남녀의 행동방식, 예를 들어 남성에게 대항하는 여성의 행동이나 여성을 배려하는 남성의 행동에 주목한다. 여성들은 영상물에 나타나는 남녀관계를 북한 현실 세계에서 여성을 “무시하고 짓밟는” 북한 남성들의 행동양식과 비교한다.

우리 시대 와서는 조금 깡어요. 왜인가 하면... 김정은이 올라와 가지고 조금 보는 게 이제 중국을 통해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중국 드라마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녹화물이란 게 많이 들어와요, 비법으로. 그런 거 보는 애들, 지금 젊은 애들 다 그거 보거든요. 그런 거 볼 때, 그거 보면 조금 깡 거죠. 조금 나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부분 보면 남자들이 들었다 놔다 하죠, 여자를. 막 무시하고 짓밟고 그런 거 있어요. (사례 20 구술녹취록, 2019/52)

여성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드라마와 영화 속의 정서와 행동을 재현한다. 낭만적 사랑은 개인의 마음속에 자리잡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사회적으로 표현되며 또래들 속에서 공감받을 수 있다. 이런 힘들에 의해 ‘낭만적 사랑’은 결혼이라는 제도와 결합된다.¹⁴⁸⁾ 이전 세대가 중매를 통해 상대방이 지닌 ‘조건’에 기반

148) 낭만적 사랑과 연애결혼에 대한 지지는 부모와 가족, 친족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리는 근대적 개인의 성찰성에 대한 요청을 의미한다.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으로서 연애결혼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간관을 출발점으로 한다. 사랑과

한 결혼을 했다면, 젊은 세대는 사랑을 결혼으로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례 9는 병원 환자와 간호원으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사례 4와 사례 12는 중학교 동창, 사례 5는 직장동료와 사귀었으며, 사례 1은 국가 동원 행사에서, 사례 18은 열차를 타고가다 만난 남성과 6개월에서 3년에 이르는 기간 연애를 하였다. 이들 중 상당수(사례 2, 사례 9, 사례 12, 사례 18)가 연애했던 상대방과 결혼까지 생각하며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고민하였다. 북한에서 상당수의 20대 여성들은 ‘낭만적 사랑’의 실천을 결혼이라는 주요한 생애전환점으로 연결지며 자기 삶의 경로를 주체적으로 결정한다. 사랑의 성취로서의 결혼과 이후의 행복한 결혼생활은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 되었다.¹⁴⁹⁾

(2) 연애와 친밀성의 장소

낭만적 사랑의 특징인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협상으로서의 친밀성’¹⁵⁰⁾은 데이트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형성된다. 연인들의 데이트 양상은 지역과 연령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기성세대의 데이트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공원이나 가로등 아래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면, 최근 청년들의 데이트 문화는 보다 공개적이고 풍부해졌다.¹⁵¹⁾ 특히 평양과 같은 대도시에서 들어선 유희장, 봉사센터, 롤러스케이트장, 수영장, 영화관, 노래방 등의

결혼의 결합은 전통이나 관습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스스로의 행위를 설명하는 행위자, 스스로의 삶을 기획하고 예측하며 협상하고 책임지는 주체를 전제한다. 조은주, 『가족과 통치』 (서울: 창비, 2018), p. 229.

149) 위의 책, p. 229.

150) 앤소니 기든스 저, 배은경·황정미 옮김,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서울: 새물결, 1996, 2001), p. 27.

151)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계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 89.

놀이·문화 공간은 젊은 세대들의 데이트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평양 출신 20대 후반의 여성 사례 1은 북한에서 대학에 다닐 때, 동원된 행사에 나갔다가 같은 조에서 행사 준비를 했던 대학생과 “커플”이 돼서 3년간 연애를 했다. 대학생들 간에 연애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사례 1 주위에는 다른 대학교 남학생들과 연애하는 여대생들이 많았다. 이들은 커플들끼리 짝을 지어 평양의 문화·오락시설에 놀러가거나 자동차를 빌려 바닷가나 산으로 놀러가기도 했다.

평양과 같은 대도시와는 달리 농촌지역에서는 별달리 데이트를 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 함경북도 농촌지역에서 살았던 20대 중반의 여성 사례 5는 직장 동료와 연애를 했다. 남자친구는 할머니와 둘이서 살았던 사례 5의 집에 와서 빨감 마련, 지붕 기와 손질 등의 집안일을 도와주곤 했는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집을 오가며 같이 다니는 것이 데이트의 전부였다. 함경남도의 농촌지역에서 살았던 사례 13은 사귀는 남녀가 낮에 손을 잡고 다니면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고 여성이 남자와 서서 말만 해도 연애한다고 소문이 났다고 말한다. 그래서 연애하는 청춘남녀들은 동네를 벗어나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구석진 곳이나 다른 지역의 공원에 가서 데이트를 한다.

최근에는 중국 영화, 한국 드라마 같은 외부 문화의 영향으로 과감한 스킨십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사례 5, 사례 12). 북한에는 교제를 하는 남녀간에 성적인 친밀성을 형성할 수 있는 공공연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데이트와 스킨십에 관해 질문했을 때 많은 여성들이 북한에는 연애하는 남녀가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숙박시설 대신 이들은 당사자의 집에서 “부모님들이 없는 시간대를 노리거나” “비어있는 친구집을 이용해야”

한다(사례 1). 한 북한 여성은 북한 청춘남녀의 데이트장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여기[한국]는 모텔이 있고 병원도 언제든지 내가 산부인과 가고 싶으면 가고, 조건이 그냥 다 주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북한]는 남자여자 자려고 해도 모텔이 없고, 그리고 내가 임신이 됐다고 해도 그걸 없앨 수 있는 그런 병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병원에 가면 그런 미혼 이런 사람들은 안 받아줘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성인이 됐어도 혼자서 못 가요. 손가락질해요. 조그만 게 지금 산부인과 왔다고. 시집을 안 간 사람은 병원에 공식적으로 못 가요. 내가 이렇게 여기에 병이 생겨서 이렇다고 해도 사람들이 “시집도 안간 애가 벌써 저런 병이 생겼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좀 뭐 생활이 풍요롭고 내가 진짜 둘이 같이 여행도 갈 수 있고 시내에 같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함부로 막 같이 자고 그런 거 못하거든요. 저기는 부모님들이랑 같이 살기 때문에 저녁에 부모님들이랑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그냥 똑같은 생활인데, 어떻게 남자친구랑 같이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연애를 해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손잡고 다니고 그냥 집에 와서 일해주고, 남자친구가. 내 또 개네 집 가 일해주고. 그게 끝이에요. (사례 4 구술녹취록, 2019/8)

교제하는 남녀 간의 스킨십과 혼전성관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과 같은 대도시나 중국과 인접한 접경도시지역에서는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다니는 연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함경북도 군 지역에서 살았던 사례 4는 시내 쪽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시골’에서는 손잡고 다니거나 팔짱 끼고 다니는 걸 “불건전하다”고 여겼다고 말한다. 사례 5가 살았던 지역에서는 연애하는 남녀가

낮에 손도 잡고 다니기 어려웠다. 간혹 남들 보는 데서 스킨십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상’으로 안 보고 “바람재”라고 말했다. 사례 5는 북한에서도 혼전성관계가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부모님이 이성교제를 허락한 사이에서는 서로를 “신랑(또는 신랑재)”, “색시(또는 새기)”라고 부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소개한다. 여성의 경우, 남자친구가 여러 번 바뀌면 “더럽다”는 오명이 씌여지는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여성들 입장에서 혼전성관계를 하는 것은 상대방과 “미래를 같이 꿈꿀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이다.

여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남자 있으면 남자친구 같이 잘 수도 있잖아요. 같이 자고 그제 남자친구라고 생각하잖아요. 헤어졌다 해도 누구... 헤어졌구나. “남자친구 또 헤어졌구나.” 이렇게 하는데 북한에는 남자 친하면 그건 그냥 같이 사는 거라 보거든요. 친구라 안 하고 “새서방이다.” 그냥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신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붙어 다니다 떨어져... 헤어지잖아요. 헤어지면 흠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 여자가 남자를 한 세 번 정도 교체했죠. 신랑이다 이렇게 했는데 또 헤어지고, 또 신랑이다... 재는 남자를 너무 많이 했다고. 남자들 자체가 더럽다고. “너 몸이 더럽다.”고, 벌써 **세 명 정도 이렇게 교제한 정도면 더럽다는 인식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진짜로 만나면 그냥 사는 걸로 생각해요. 여기는 남자친구잖아요. 헤어져도 상관없잖아요. 그 차이가 너무 심해요. 헤어지면은 큰 창피로 생각하고 여자는 완전 그 수치감으로 생각하거든요. (중략) [남자는] 여자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도 진짜 너무 많이 그러면 “재 완전 바람둥이다.” 이렇게 인식은 가지지만은 “남자가 그렇지 뭐.” 이렇게 말이 넘어가거든요. **“남자가 그렇지.”** (사례 3 구술녹취록, 2019/8~10)

새 세대 여성들의 연애 경험은 한편으로는 기성세대들의 연애 및 결혼 관행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거주지 부근에서 오다가다 만난 남성들과 연애를 하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만남을 이어가기도 한다. 결혼을 생각하면서 남성의 집안 조건과 전망, 사람됨 등 이모저모를 따져보고, 결혼이 바꾸어놓을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회적 출세를 꿈꾸기보다는 남편을 뒷바라지해서 “높이 세우는” 것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성취를 도모하고 있다. 면접에 참여한 20대들은 대부분 북한 사회에서 결혼한 경험 없이 한국으로 왔다. 배급제를 기반으로 했던 당의 통제체제와 젠더체제가 현실 속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는 1990년대에 출생한 현재 20대 여성들이 앞으로 북한 사회 내에서 어떤 실천들을 하게 될지 주목하게 된다.

나. 성적 자기결정권과 몸의 규율

(1) 성교육과 성 지식의 습득

자유로운 연애와 스킨십, 혼전동거 등 섹슈얼리티 측면에서의 새로운 실천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북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성교육 관련 교육내용이 거의 없다. 한국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초급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 중 ‘기초기술’ 과목에서 여학생에 한해서 ‘여성위생상식’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지만,¹⁵²⁾ 해당 교과서에는 관련 내용이 실려 있지 않다. 면접에 참여한 탈북여성들도

152) 남한의 중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초급중학교 교육강령에서는 “여성위생과 조선헌복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응용할 줄 알도록 한다.”고 관련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제1차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평양: 교육위원회, 2013), p. 197.

대부분 학교 재학 시절 월경, 임신과 출산, 성지식, 피임 등을 다루는 성교육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구술하였다. 20대 초반인 사례 9와 30대 후반인 사례 6과 사례 15만 ‘여학생실습’¹⁵³⁾ 시간에 관련 내용을 교육받은 것을 기억하였다. 사례 6은 2차 성징과 임신과 출산에 관해 배웠는데, 임신과 출산은 사람이 아닌 토끼의 예를 들어 배웠다고 하고, 사례 15는 월경에 관한 내용을 배웠다고 말하였다. 20대 초반의 응답자들도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성교육은 교육과정에는 들어있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거나, 교사 재량에 따라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 산전산후휴가 등 법제도적 모성보호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교육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 별도의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의 초경에 관한 이야기는 대부분 당황과 두려움의 서사로 구성된다. 평양에서 살았던 20대 후반의 여성 사례 22는 자신의 첫 월경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월경에 대해서] 저는 안 배웠던 거 같은데요. 그거 할 때 저 울었었어요, 죽는 줄 알고. 그래서 엄마가 괜찮다고. 엄마가 그렇게 말했을 때는 믿지 않았다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깐 “어, 우리도 다 한다.”고 그래서야 내가 나 병이 안 걸렸구나. 엄마가 “아니야, 그거 네가 이제 어른 돼서 하는 거야.”라고 그래도 계속 우니까, 친구들한테 가서 들어봤는데 “우리 몇 달 전부터 했다.” 이렇게 말해서 “그런 거였어?” (사례 22 구술녹취록, 2019/51)

153) 2012년 학제개편에 따라 2013년에 초중등 교육과정도 개정되어, 이전에 ‘공작실습’과 ‘여학생실습’으로 성별에 따라 다르게 교육하였던 ‘실습’ 과목이 ‘기초기술’로 통합되어 남녀 구분없이 가르치도록 바뀌었다. 단, ‘여성위생’과 ‘조선옷’ 관련 내용만은 여학생들에게만 가르치는 것으로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사례 1의 경우에는 어머니에게서 월경에 대한 설명을 미리 들어서 이에 대비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학급의 여학생들이 의자에 생리혈이 묻어나서 같은 학급 남학생들에게 놀림감이 되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¹⁵⁴⁾

학교에서 성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북한 여성들은 성관계, 피임, 낙태, 임신, 출산 관련 지식을 어머니, 여자친구, 아는 언니, 동네 아주머니 등 주위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습득한다. 어머니는 성교육이라기보다는 “결혼하기 전까지 남자와 같이 자면 안된다.”(사례 2)는 식의 딸의 몸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 미혼여성들은 때로 집에 놀러오는 어머니의 친구들이나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나누는 성에 관한 경험담을 듣고 남녀가 “이렇게 성관계를 가진다고 상상해 보기도” 한다(사례 2).

가장 확실한 정보원은 연애할 나이의 ‘언니들’이다. 20대 후반의 사례 3은 북한에서는 성교육도 없고 “야동”도 없기 때문에 “그냥 손 잡고 다니면 임신이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지한 사람이 많지만,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언니들 무리에 들어가면” 성행위나 피임, 낙태 등에 관해 알게 된다고 말한다.

이밖에도 성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유일하게 적법한 성지식의 원천이 되는 것은 여성의학책이다. 20대 초반인 사례 9는 어릴 때는 입맞춤을 하면 임신하는 줄 알았고, 아이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랐는데, 중학교 5학년이 되면서 아이를 어디로 출산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다. 어머니도 안 가르쳐주셨지만, 자신은 “여자라면 약간의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직접 여성의학책을 사

154) 북한 여성들의 월경 경험에 관해서는 안정은, “북한이탈여성의 건강권과 월경 경험 연구” 참조.

서 보았다. 책을 통해 그는 월경주기, 임신, 출산, 피임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2) 피임과 낙태

기혼여성의 피임과 낙태를 국가권력의 인구통치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면, 미혼여성의 피임과 낙태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문제이다. 북한에서는 1980년대 초반에 피임시술 방법으로 자궁내장치가 보급되었고, 인구증가 문제로 인해 1983년에는 여성들의 낙태수술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¹⁵⁵⁾. 그러나 이는 기혼여성에게 해당하는 것일 뿐, 미혼여성의 피임이나 낙태 문제는 공식담론 상에서는 거론되지 않는다. 대학생의 경우,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면 퇴학조치된다는 증언(사례 1, 사례 14, 사례 21)으로 미루어보아, 혼전임신은 사회주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고 때로는 이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도 받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젊은 세대가 이성관계에 보다 개방적이 되면서 혼전성관계와 이에 따르는 피임, 낙태 문제는 북한 여성들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30대 후반의 여성은 이와 관련된 최근의 세태 변화를 지켜보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전에는 시집을 가기 전에는 피임을 안 했어요. 그렇게 남자하고 그런 관계를 생각한다는 자체도 좀 그랬고 그런 관계를 별로... 그리고 피임을 해서 내가 이걸 방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벌써 그 사람하고 그냥 살면 좋은데 만약에 안 살게 되면, 그 몸에 피임한 걸 알게 되면 다시 시집간 상태에서 그 걸 알게 되면 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려고는 별로 안 했

155) 권금상, “북한 여성의 섹슈얼리티 연구: 국가권력과 여성주체 간의 동학을 중심으로,” p. 99.

던 거 같아요. (중략) 지금은 애들이 많이 깨어 있어가지고 연애하는 관계 속에서도 그런 성관계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성관계를 했다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게 소문이 안 좋으니까. 누구도 모르게 가만히 그런 네, 집들에 개인집들에 찾아가가지고 아예 가만히 없애는 거죠. (사례 15 구술녹취록, 2019/30)

위의 구술은 이 여성들이 결혼할 나이였던 시기로부터 십여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크게 달라진 미혼여성들의 성적 실천의 단면을 말하고 있다. 이전에는 혼전성관계 자체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연애관계에서 피임을 하고 혼전성관계를 한다는 것이다. 혼전성관계가 늘어났지만, 혼전성관계에는 여성에게 “책임이 엄청 따르기” 때문에 “남자랑 한번 자려면 진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상황”이다(사례 1). 혼전성관계에서 남성들이 피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피임은 여성의 책임이 된다. 학교에서 성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피임방법은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자기들끼리 피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남자 붙으면 임신하는 거 알고, 임신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하니까 그럼 피임해야 되겠구나. 그건 누가 대주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알거든요. 저는 언니들한테서도 많이 들은 거 같아요. 저보다 많이 이상 언니들 이야기하는 과정에 뭐 엄청 아프다고 그러니까 애를 없애는 거. 북한에서 소파라 하거든요, 긁어내는 거. 배 자기 아프다고. 그거 하는 게 엄청 아프다고. 너네는 절대로 그러지 말고 먼저 피임부터 하라고. 애 생기면 없애는 게 기차게 아프다고. 그렇게 아프다고. 미리미리 예방해야 된다고. 자기 몸 자기 절로 돌봐야 된다고. 언니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었거든요. 아는 언니, 동네언니 뭐 이런. 네, 언니들. 같이 좀 가깝게 친한 언니들. 누구누구 어쨌는데 좀 같이 가달래서 자기 같이 가봤는데, 뭐 그렇

게 아파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남자만 생기면 피임부터 해야 된다.” 네, 저도 그런 거 몇 번 들으니까 겁이 생겼거든요. (사례 3 구술녹취록, 2019/7~8)

북한에서 여성들이 취할 수 있는 피임 방법은 피임약과 ‘고리’라고 불리는 자궁내장치이다. 콘돔과 같은 남성용 피임기구에 대해 알고 있거나 그것을 사용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 피임약은 동네의 ‘약집’에서 살 수 있지만, 복용이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 소수의 “잘사는 사람들이나 소문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이용하고(사례 12), 대부분은 ‘고리’를 낀다. 요즘은 “농촌에, 산골안에 있는 애들 내놓고는” 중학생 때도 연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학교 고학년이 되면 ‘고리를 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사례 9, 사례 10, 사례 12). 사례 3은 결혼 전 연애할 때 자궁내 피임장치를 했다.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서 동네언니들에게서 들었던 낙태수술 이야기나 생각나 무서웠던 그는 여자친구하고 같이 개인의를 찾아가서 피임시술을 했다. 병원에 갈 수도 있지만 처녀가 피임장치를 하러 간다는 것이 ‘창피했다.’ 그는 남자친구와 결혼한 후에 자궁내 피임장치를 제거했다.

북한 사회에서 미혼여성이 몸 안에 장치를 시술하는 형태의 피임을 하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어서, 피임을 못한 여성이 연애과정 중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기도 한다. “북한도 연애한 사람과 굳이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사례 2) 결혼을 원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미혼여성들은 낙태를 선택한다. 낙태는 대부분 병원이 아닌 개인의를 찾아가거나 집으로 불러서 낙태수술을 한다. 개인적으로 낙태를 해주는 이들은 피임시술과 마찬가지로 전·현직 의료인들이다. 미혼여성들은 오히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 것보다 개인집에서 하는 것은 소문을 피할 수 있고, “더 실속있

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선호한다(사례 13).

북한의 젊은 여성들은 또래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며 공식담론에서 수용되지 않는 다양한 성적 실천들을 해나간다. 허가받은 병원이 아닌 비공식 의료체계를 통한 피임과 낙태는 성관계에 따르는 책임이 온전히 여성의 몫으로 부과되는 북한 사회에서 최소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키려는 행동이다. 그러나 미혼여성의 피임시술과 낙태수술은 주로 공적인 보건의료체계 내에서가 아니라 비공식 의료체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생문제나 의료사고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계속 [피임]약 먹기도 귀찮고, 못 사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언제 그런 약까지 살 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얘기 생기는 것도 1년에 한 번 생기든가 그렇잖아요. 그냥 1년에 한 번 없애는 게 낫지, 힘들어도. (사례 12 녹취록, 2019/33)

위의 구술은 피임약을 계속 먹는 것보다 낙태를 계속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모성보호에 대해 무지한 인식을 보여준다. 북한 여성들은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공식담론과 사회적 허용 영역을 뛰어넘는 성적 실천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실천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3) 용모 단속과 ‘스타일’의 추구

북한 여성들은 영상매체 속에서 보고 듣는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옷차림이다. 평양에서 여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에 다녔던 사례 1은 한국 드라마가 유행했던 2010년대 초중반에 한국 드라마 주인공들이 입었던 옷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옷을 입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말한다.

여자니까 아무래도 뭐 패션, 이런 데 되게 눈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드라마에서] 애들이랑 나오면, 뭐 예를 들면 “천국의 계단 봤어?” 그러면서 뭐 그냥, 그 다음날 여자들이 하는 말은 그냥, 뭐 수다 떨고, 대학 때도 같았어요. [드라마에서] 누구 옷 예쁘고, 개 입은 옷 예쁘고. 누가 나오면, 일주일 후면은 그대로 카피해서 옷이 딱 판매가 되거든요. (사례 1 구술녹취록, 2017/21)

사례 1과 비슷한 또래인 사례 22도 중등학교 재학시절 한국 드라마를 보고 “기를 쓰고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머리모양을 이상하게” 해서 염색하고,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을 감추고 다녔다고 말한다. 짧은 치마와 청바지, 종대바지, 뿔다바지¹⁵⁶⁾ 등을 입다가 단속에 걸리면 비판서를 쓰고 “난리가 나지만”, 유행을 따라가려는 젊은 여성들의 노력은 “아무도 못 막는다”(사례 17). 북한 여성들은 한국 드라마 속 한국 여성의 외모를 재현하고, 한국 중산층 가정의 인테리어를 적용해서 집을 꾸미고, 자신의 연인에게 상냥한 서울 말투로 얘기를 걸어보는¹⁵⁷⁾ 방식으로 영상매체 속의 가상현실을 북한 사회에서 현실화한다.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에서 여성의 외모와 옷차림은 개인의 자기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적 관리와 규율의 대상이었으며, 자신의 몸과 외모를 치장하려는 여성들의 욕구는 ‘퇴폐주의 외래문화’의 산물로 여겨져왔다. 그런데 김정은 집권 이후 여성들의 외모에 대한 통제가 다소 완화되고, 화장품과 의류 등 경공업 부문이 강화되면서 여성들의 외모와 관련된 소비품도 늘어났다. 탈북여성들에게 김정은 집권 이후 여성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고 물었을

156) 종대바지는 몸에 달라붙는 바지를 말하며, 뿔다바지는 종아리 부분은 달라붙고 복숭아뼈가 드러나도록 짙막한 바지를 말한다.

157)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p. 189.

때, 가장 빈도가 높은 대답은 외모에 대한 통제가 다소 완화되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전에는 금지되어 있었던 귀걸이와 목걸이 착용을 기혼여성들에게 허용하는 조치가 취해져서 “농촌에서 짐을 지고 밭에 가는 여자들도” 다 귀걸이를 착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귀걸이 길이에 대한 단속이 있어, 귀에 붙는 짧은 귀걸이만 허용하고 길게 늘어지는 귀걸이는 착용을 금지했다. 여성들은 긴 귀걸이를 하고 다니다가 단속하는 규찰대가 보이면 얼른 귀걸이를 빼서 주머니에 넣는 방식으로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돌파해나갔다(사례 21).

〈그림 IV-3〉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북한 여성



자료: 조선신보/연합뉴스(2014년 7월).

최근 북한 여성들의 옷차림에 영향을 준 사건은 퍼스트레이디 리설주의 등장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리설주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행사에 동반참석하고, 공식 선전매체를 통해 모란봉악단, 삼지연관현악단, 왕재산예술단 등 예술단원들의 파격적

인 옷차림이¹⁵⁸⁾ 일반 여성들에게 노출되었다. 이는 선전매체를 통해서도 조선옷이나 점잖은 무채색의 정장옷만을 보아왔던 북한 여성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북한에서 모란봉악단에 이런 거의 나체... 여기다 뭐 이렇게 여
기만 걸쳐 이런 옷...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는 막 모란봉악
단이 그렇게 되고 리설주가 탁 등장을 했는데. 그 어디야? 아마 과
학자거리인지 어디때인지 이렇게 그 테이프 이거 끊을 때 있잖아
요. 준공식 할 때, 딱 끊을 때 그 입고 나왔던 그 옷이 이게 짧은
스커트 치마에다가 이렇게 녹색인데, 이렇게 꼭 묶으면 특 한 건데.
북한에서 사실 옷을 막 진짜 그냥 정장에 거무튀튀한 옷에 항상 뭐
이런 저고리 아니면 그렇게 입었는데, 아니 김정은 위원장의, 똥
수령의 진짜 와이프가 그렇게 옷을 입고 나왔단니까 막 모두 여자
들이 더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 남자들보다. “어머, 저저 뭐야? 이
게 뭐야?” 그 다음부터 막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라고 너무 황당해
서 막 그러다가 옷차림새 그게 보여주는 게, 그럼 북한 사람들에
그걸 보여주면 ‘우리도 그럼 저렇게 해도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사례 21 구술녹취록, 2019/32)

TV를 통해 리설주의 옷차림을 본 사례 21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
국산 나팔바지와 털 달린 가죽점퍼를 입고 길을 나섰다. 그는 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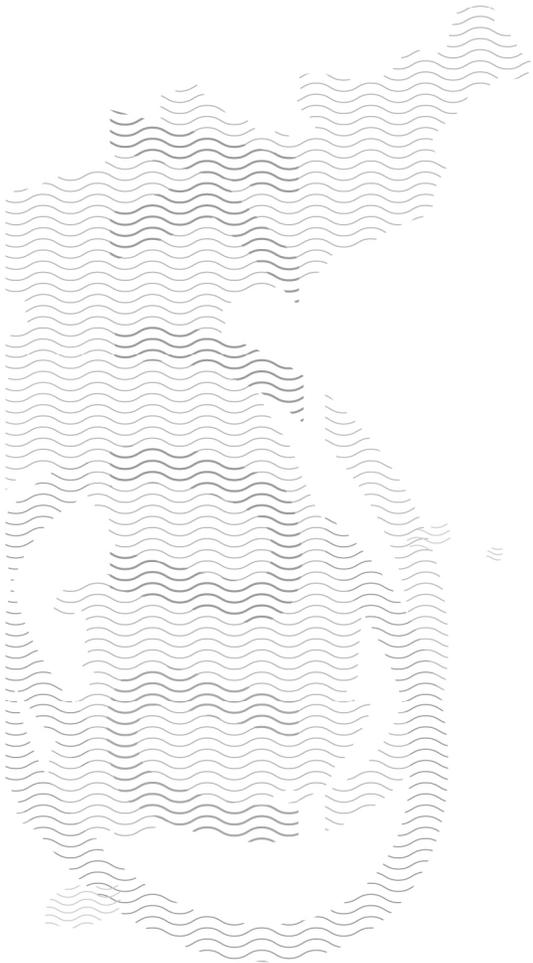
158) 모란봉악단은 2012년 7월에 창단된 전자음악단으로, 평양 만수예술극장에서 시범공연을 통해 첫 선을 보인 후 김정은 체제의 혁신과 변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이 공연은 TV를 통해 북한 전역으로 방영되었다. 왕재산예술단은 최근 북한 무대 공연의 변화를 주도하는 예술단인데, 2017년 7월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성공기념 음악무용 종합공연”에서는 검은색 짧은 탱크탑과 초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 무용단원들이 출현하여 홀라후프를 이용한 ‘룬춤’을 선보였다. 2018년 2월 삼지연관현악단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성공 기원 축하공연’에서는 가수들이 검은색 핫팬츠에 민소매의 빨간색 상의를 입고 노래와 율동으로 무대를 누비는 장면이 등장했다. 전영선, “문화와 유행: 문명국 건설 행보와 욕망 확대,” 박영자 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252~261.

서 여성간부들의 옷차림 단속에 걸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선여성다운 데가 어디 하나 있냐?”는 힐난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속에 걸려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다니겠다.”고 생각했다. 사례 21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짧은 스커트 차림의 리설주의 화려한 옷차림을 보면서 ‘같은 여자인데 우린 왜 못 입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사례 4), 복장단속에 관계없이, 또는 통제를 피해 “그냥 다 그렇게 입고 다녔다.”

여성의 외모에 대한 국가 통제의 틈은 개성의 표현으로서 자신의 몸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이 이전에도 ‘추세’라고 불리는, 주민들의 차림새와 소비풍조에서 일정한 생활양식이 대중적 인기를 끄는 현상이 존재했다.¹⁵⁹⁾ 이전 시기의 ‘추세’ 현상이 집단적 유행을 따르는 행위에 방점이 두어졌다면, 최근 여성들의 외모와 옷차림에 대한 관심은 보다 개별화된 자기표현의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 비슷하게 입는” 대신, “특이한 옷”을 입고, “내 몸을 가꿈”으로써 “나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추구”하는(사례 9) “제멋대로 사는”(사례 5) 여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159) 김석향, “1990년 이후 북한의 소비생활에 나타나는 추세 현상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1호 (2012), p. 193.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김정은 집권을 전후로 한 시기, 북한 여성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젠더정치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정책 및 담론 수준에서 작동하는 위로부터의 젠더정치를 고찰하고, 북한 여성들의 생애사례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 젠더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속에서 여성들의 실천은 젠더정치의 작동을 어떻게 매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Ⅱ장에서는 김정은 연설문과 공식문헌, 문화예술작품 등을 통해 김정은 집권 전후 국가의 젠더정책과 담론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였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사회 기제였던 배급제는 젠더정치의 핵심 기제이기도 하였다. 경제난 이후 남성들은 공식직장에 긴박되어 있는 반면, 여성들은 비공식영역인 시장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수행하였다. 젠더정치의 기반이었던 배급제 체제 하에서 공고하게 유지되어왔던 남성의 권위가 흔들렸고, 여성들은 경제력을 갖추며 자립의 기반을 쌓았다. 여성들의 경제력과 의식의 성장은 기존의 젠더체계에 균열을 야기했다. 대신 남성은 공식노동, 여성은 비공식노동이라는 성역할분담 체계가 형성되었다. 김정은 시대의 젠더정치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김정일 집권 후기부터 김정은 집권 시기에 여성 권리 보장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음에 주목하였다.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녀성권리보장법」은 최근 변화하고 있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젠더정책의 특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법령이다. 이 법령은 국제적 시선을 염두에 둔 정권 차원의 정책적 과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경제난 이후 지난 20여 년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권리를 명문화한 법령들은 정책적 차원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내거나 현실 속에서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달라진 여성의

법적 지위를 선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여성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실천들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의 생애사례에서 나타난,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방식이나 이혼을 통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려는 시도를 하는 모습들은 법·제도적 변화가 열어주는 틈 속에서 이루어지는 젠더실천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조항들은 남녀 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재산권과 상속권 등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함께 기존의 성별화된 규범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국가가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은 “출산의 자유” 조항이나, 미성년자녀 보호에 있어 남성을 후견인으로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양육 관련 조항이 그것이다.

위로부터의 젠더정치의 특징은 여성 권리에 대한 법적 보장과 함께 국가가 여성을 호명하고 인정하는 방식에서 나타났다. 김정은 시대에 여성에 대한 대표적인 호명은 김정은의 연설문이나 기념일 의례에 등장하는 ‘꽃’이다. 국제부녀절이나 어머니날 여성들의 가슴에 달아주는 꽃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애쓴 여성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한 인정과 치하의 의미를 지닌다. 동시에 이는 여성에게 부과되는 가사노동과 생계노동, 사회적 노동의 이중, 삼중부담을 정당화하고 여성들을 각종 사회노동으로 동원하는 기제이다. 여성의 동원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된다. 한편에서는 지식경제시대에 과학기술로 경제적 도약을 이루려는 국가목표에 맞추어 전문성을 갖춘 일군으로서 여성의 역할과 사회활동을 강조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여맹을 중심으로 가두여성에 대해 각종 사회노동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공식부문의 노동력 공백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인정과 결합된 동원을 통해 여성들은 ‘가정의 꽃’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꽃’, ‘나라의 꽃’이 된다.

한편, 여성의 경제력에 기반한 자기표현에 대한 욕구가 사회적으로 표출되면서, 옷차림, 머리단장, 화장 등 여성의 몸과 용모에 대한 통제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정책은 다시 여성들의 자기표현 욕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공식매체에서 보도된 리설주나 예술단원들의 옷차림은 개성의 표현으로서의 자신의 몸과 용모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다음으로, 김정은 시대 국가 젠더담론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사회주의 대가정이라고 하는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더하여 여성의 모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성의 모성과 이를 사회적으로 확대하여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담론은 경제난 이후 국가 복지가 축소되면서 공백이 발생한 고아,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여성의 모성과 희생에 기대어 해결하려는 의도를 내포한다. 이는 수령과 인민을 수직적으로 연결했던 배급제와 사회주의 복지체계가 무너지면서, 수령을 정점으로 했던 사회주의 대가정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여성의 모성을 칭송하고, 개별 가족뿐 아니라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발휘되는 모성을 설득하고 동원함으로써 국가 부재의 공간을 메우고 기존의 '대가정'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젠더정치의 특성을 보여준다.

Ⅲ장에서는 여성들의 생애사 사례를 통해 북한의 젠더정치가 여성들의 구체적인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여성들의 경험의 다양성과 계급, 세대 등 다른 사회문화적 범주와의 교차성을 고려하여, 상류층, 지식인과 중산계층, 시장 상인 여성, 공식 직장의 노동여성, '새 세대' 청년여성의 다섯 가지 범주별로 여성들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생애사례에서 드러나는 젠더정치 관련 논의의 주제를 추출하고 이에 관한 심화된 논의를 전개하였다.

논의의 주제는 크게 공식영역의 여성노동, 시장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영역의 여성노동, 가족제도 및 가족관계, ‘새 세대’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세대문화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각각의 주제별로 가정, 직장 등 사회적 장에서 나타나는 젠더체계의 작동과 여성들의 젠더적 실천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젠더정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젠더정치에 관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경제난 이전 시기 젠더체계의 골간을 이루었던 배급제를 대신하여, 시장의 확대를 거치면서 남성=공식노동, 여성=비공식노동이라는 성별분업체계가 젠더체계로 등장하였다. 경제적 이윤 창출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남성이 담당하는 공식노동 영역에 주어진다. 이 위계적 성별분업체계가 김정은 시대 젠더정치의 구조적 토대가 된다.

경제난 이전 시기, 세대주 중심과 정치적 지위에 따른 배급은 개별 가정에서 남성의 지배와 통제를 정당화하는 물질 토대가 되었고, ‘동등한 공민’인 여성과 남성을 위계화하였다.¹⁶⁰⁾ 가구주의 의미는 세대를 대표하여 배급을 받음으로써 온 가족의 생존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배급제는 사회주의 대가족의 아버지인 수령이 인민을 먹여 살린다는 의미와 남성이 여성을 ‘부양’한다는 이중의 의미를 갖는 젠더화된 기제이다.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과 뒤이은 시장화로 배급제는 군이나 일부 관료, 일부 연합기업소 등에서 부분적으로만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여성들은 공식직장에서 이탈하여 시장을 비롯한 비공식부문에서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나갔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함께 남성

160) 조영주, “북한의 ‘인민만들기’와 젠더정치: 배급과 ‘성분-당원’제도를 중심으로,” pp. 123~124.

노동력의 이탈을 통제하는 국가 정책의 결과, ‘남성노동=공식부문 노동, 여성노동=비공식부문 노동’이라는 젠더 특성을 띠는 노동분업 구조가 형성되었다.

후속연구를 통해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지만, 시장경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젠더에 기초한 노동분업 구조가 형성되는 것은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또는 경제개방을 거친 국가들과 비교할 때,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화 현상을 분석한 이승운 등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경우 1970년대 말 점진적 개혁 시기에 농촌 인력의 도시지역으로의 대거 이주와 국유부문과 비국유부문의 이중구조가 맞물리면서, ‘국유기업 노동=도시호구 노동자’, ‘비국유부문 노동=농민공’이라는 이원화된 구조가 형성되었다. 폴란드에서는 체제전환 초기에 비공식부문이 확대되었는데, 공식부문 일자리보다 소득이 높았던 비공식부문 노동자는 남성, 도시지역 저학력자에 집중되어 있었다.¹⁶¹⁾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구사회주의 국가인 동유럽 국가와는 달리 젠더를 중심으로 이중화된 노동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북한의 젠더화된 이중 노동구조는 공식노동 우위의 위계적 구조이다. 여성들이 비공식부문에서 행하는 노동은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런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들은 여전히 ‘부양’으로 호명된다. 그러나 주민들의 실제 삶에 있어서 대부분 경제적 가치는 공식 노동을 통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연계된 비공식부문의 여성 노동을 통해 창출된다. 이 전도된 관계, 허울과 실제의 불일치는 위로부터의 젠더정치를 전복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젠더담론 상에서 여성들에 대한 인정은 모성과 후대의 보육, 돌봄이라는 재생산

161) 이승운·황은주·김유휘, “북한 공식-비공식 노동시장의 형성과 여성,” pp. 291~293.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성들의 노동에 대한 인정은 전문직을 비롯한 공식 부문 노동에 한정된다. 북한에서 가정의 생계와 국가경제의 상당 부분이 시장과 연계된 비공식부문에서 여성들이 행하는 노동에 기대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인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비공식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실질적인 노동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가는 여성들을 잉여노동력으로 간주하면서 각종 사회적 동원노동과 돌봄노동에 무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노동 영역 내에도 여전히 강고한 성별분업과 성차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젠더화된 이중 노동구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성들은 공식 노동영역에서 경공업 등 ‘여성의 특성’이 요구되는 특정 직업에 편중되어 배치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전문직 여성의 사회진출과 간부 발탁을 독려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성의 사회정치적 영향력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은 용이하지 않으며, ‘남성=관리자, 여성=일반노동자’라는 젠더위계가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식노동 영역에 존재하는 ‘유리천장’은 여성들이 공식노동 부문에서의 직업적 성취와 사회적 성공 대신 시장경제 활동을 통한 경제적 성공을 택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둘째, 경제난과 시장화를 거치면서 경제공동체로 기능이 변화된 가족이 젠더화된 이중 노동구조를 떠받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별 가족은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환경 속에서 성별화된 역할분담에 기초해 가족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실용적인 전략’을 수행해온 주체이다. 북한 사회에서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개별 가족은 ‘대가정’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노동력과 통치이데올로기를, 국가와

수령에 대한 충성과 일체감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해왔다. 여성들은 이 속에서 가족의 일원이 아닌 국가와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호명되었다.¹⁶²⁾ 그러나 경제난과 시장화를 거치면서 가족은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생존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활동 단위로 변화되었다.

경제공동체로서 가족이 가족 구성원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취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가족 안에서 세대주는 국가에 의해 공식직장에 불려나가고, 세대주를 대신해서 여성이 시장활동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이어간다. 공식노동 부문에서 여성의 배제는 곧 노동의 긴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족 내에서 남성은 최소한 여성이 국가의 부름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막아주는 방패막이의 역할을 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는 정치적 자원을 동원하여 비공식영역에서 여성의 시장경제활동을 보호하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북한 사회에서는 일상적인 시장경제활동에 권력이 개입되는데, 여성은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여성은 자신이 공식적 노동영역에서 직위를 얻는 대신 '남편 출세시키기'라는 전략을 활용한다. 여성들은 남편이 대학교육을 받고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그 결과 남편이 좋은 직업지위를 얻게 되면 남편의 권력을 활용하여 장사에 도움을 얻는다. 그러써 가족은 보다 많은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가족, 또는 여성들의 전략은 한편으로는 공식영역과 비공식영역이라는 젠더화된 분업구조와 공식노동 영역 내의 성차별 구조에 기인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젠더체계 속에서 이

162) 김경희·강은애·손명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국가가부장제의 재생산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55권 1호 (2016), p. 138.

루어지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실천이기도 하다. 여성들은 국가 젠더담론의 호소처럼 ‘어머니되기’에 만족하거나 국가를 대신하여 대가정의 돌봄노동이나 대가없는 사회적 동원노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 대신 공식노동으로부터의 배제와 열등한 지위를 오히려 ‘활용’하여 국가의 인정이 주어지지 않는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신의 대리인으로 남편이 좋은 공식직업을 얻는 것을 돕는 방식으로 가족의 생존을 책임진다.

셋째, 가족 내의 젠더질서와 이를 유지하는 장치는 이전 시기와 연속성을 지니지만, 한편으로는 변화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여성들의 시장경험과 경제적 능력 강화가 가족관계 내에서 여성의 발언권 강화나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위계적 관계의 약화,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 등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부의 성역할과 관계는 여전히 사회주의 대가정의 규범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이 온전히 여성의 몫으로 주어지는 가정 내 성별분업구조도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법 제정 등을 통해 가정폭력 등 반봉건적 요소의 척결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제도의 개선이 당장의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는 못하지만, 향후 여성들의 의식변화와 맞물리면서 현실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김정은 집권 이후 모성담론과 재가족화를 강조하는 젠더 담론이 전개되는 가운데, 결혼등록과 동거, 이혼 등 가족을 유지시키는 제도적 장치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배급제도의 약화는 국가 등록을 전제로 한 혼인제도의 쇠퇴로 이어져, 부모의 승인 하에 혼전동거를 하면서 결혼등록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혼에서 중요한 잣대가 되었던 성분과 정치적 계층의 영향력이 상대적으

로 감소하고, 경제적 능력과 정치적 권력을 교환하는 형태의 타 계층 간의 ‘통혼’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 사회에서는 「여성권리 보장법」을 통해 이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가족해체를 막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혼의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적용해 왔는데, 여성들은 이러한 젠더정치에 대응하여 별거를 택하거나 결혼등록을 미루는 방식으로 가족제도의 경직성을 우회해나가는 전략적 젠더수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도와 정책을 가로지르는 여성들의 실천은 김정은 집권 이후 특정 시기에 여성들의 이혼을 허용하는 방침 제시와 같은 젠더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넷째, 젠더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낸 주역은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적 능력을 확보하고 제도/정책/관행을 넘나들며 다양한 실천을 하는 자의식과 자율성을 갖춘 여성들이다. 북한에서 위로부터의 젠더정치와 젠더담론, 정책은 국가의 강압이 아닌 스스로 규율하고 현실과 욕망을 조율하며 행위하는 여성들의 실천, 변화하는 젠더체계 속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확보하고 욕망을 실현하려는 여성들의 전략을 통해 구현되며, 그 과정에서 위로부터의 젠더정치는 굴절되고 변형된다.

북한의 여성들은 국가의 젠더담론에서 강조하는 헌신과 봉사의 심성을 갖춘, 수령/당과 일체가 된 대가정의 구성원이기보다는 경쟁과 이윤, 물질적 행복과 욕망, 개성, 미래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 실재한다. 특히 20대 여성들의 사례에서는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일부 젊은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남성의 반려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것보다는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상대와 ‘낭만적 연애’를 꿈꾸고, 폐쇄적인 성문화 속에서 사회적 허용영역을 뛰어넘는 성적 실천을 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 속에서 결혼을 미루고, 옷차림이나 소비활동에서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며 ‘작은 리설주’를 실천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난 이후 출산을 저하로 형제가 많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성장했고, 어린 시절부터 외부 ‘드라마’와 ‘노래들’을 통해 기성세대와 다른 문화적 경험을 하였으며, 달라진 교육환경 속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다루며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환경이 당과 수령으로부터, 또한 남성의 그늘로부터 독립적인 ‘개인’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닌지 질문하게 된다.

이러한 여성들의 실천 양상에서 계층과 세대, 거주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젊은 세대일수록, 시장을 통한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지만 정치권력과는 거리가 있는 계층에서, 외부사회의 정보와 문화를 접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사회변화의 흐름에 민감한 접경지역이나 대도시 여성들의 경우에 위에서 언급한 양상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섯째, 이상에서 살펴본 바는 기존의 젠더질서에 균열이 일어난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에서는 한편으로 여성들의 생계활동 및 미래를 위한 노동을 비공식부문으로 취급하며 직업적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통제와, 다른 한편으로 경제공동체가 된 가족 내에서 자의식 및 관계의 변화가 현실화되는 등 새로운 흐름이 각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비가역적 변화’의 경로에 들어섰고, 그 변화의 동력은 북한 사회의 경제 위기 속에서 생존을 책임졌던 여성들의 고투이다.

비공식부문에서 여성들의 활동 강화가 사회 전반적인 젠더위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조영주는 시장에 대한 권력 행사와 그에 따른 부의 창출이 여전히 기존의 정치적 권력 집단의 전유물인 상황에서 여

성들은 부의 창출을 위해 기존의 남성 권력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애초에 정치적 권력을 갖지 못한 여성들의 생존이 남성과의 협력이나 남성에 대한 의존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 남성중심 질서가 와해되거나 균열되기보다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결론짓는다.¹⁶³⁾ 여성들이 시장노동에 의해 남편을 출세시키는 경우 경제공동체인 개별 가족의 위상이 높아지고 권력을 통해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결과는 실제 경제활동을 한 여성 노동에 대한 인정으로 연결되지 않고 남성의 지위 향상과 권력 강화로 귀결된다. 따라서 비공식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시장경제활동이 가족관계 내의 권력구조나 사회 전체의 젠더관계의 변화로 바로 이어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국한해서 볼 때 이러한 관측이 옳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 이와는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기적으로 ‘남성노동=공식부문 노동, 여성노동=비공식부문 노동’으로 구분되는 노동분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이와 관련된 젠더권력관계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북한에서 시장화 조치를 실시한 이후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국가경제에서 비공식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힘이 특정한 국면에서 비공식부문 노동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인정이나 비공식부문 노동의 일부를 공식제도 안으로 포섭하는 국가의 대응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젠더정치적 구조적 토대가 되는 노동분업 구조와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가 흔들리면서 젠더권력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선행국가들의 경

163) 조영주, “북한의 ‘인민만들기’와 젠더정치: 배급과 ‘성분-당원’제도를 중심으로,” p. 138.

제체제 전환이나 시장경제 도입 경험 검토를 통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난 이후 젠더정치의 지형을 바꾸어낸 원동력은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위한 여성들의 실천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여성들이 보여주는 실천은 위로부터의 젠더정치와 젠더체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한편으로 그것에 도전하거나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새 세대'라고 지칭되는 젊은 여성들의 젠더수행은 기존 젠더정치에 균열을 일으키는 저항의 발화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더군다나 여성들은 가정경제와 사회 전반을 움직이는 물적 토대로서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 경제력을 갖추고 새로운 자의식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가려고 하는 여성들의 실천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14.
- 박영자. 『북한 여자: 탄생과 굴곡의 70년사』. 서울: 엘피, 2017.
- 솔라미스 파이어스톤 지음. 김예숙 옮김. 『성의 변증법』. 서울: 풀빛, 1983.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페미니즘의 개념들』. 파주: 동녘, 2015.
- 앤소니 기든스 저. 배은경·황정미 옮김.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서울: 새물결, 1996, 2001.
- 이관세·홍순직·장용석·장철운. 『북한 지식 사전』.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 이재경·윤택림·이나영. 『여성주의 역사쓰기: 구술사 연구방법』. 홍천: 아르케, 2012.
- 장지연·김화순. 『통일한국의 노동시장과 여성고용 및 일·가정 양립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 전영선. 『북한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 서울: 경진출판, 2016.
- 조용환. 『질적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2008.
- 조은주. 『가족과 통치』. 서울: 창비, 2018.
- 조정아·임순희·노귀남·이희영·홍민·양계민.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조정아·조영주·조은희·최은영·홍민.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잉에 슈테판 편. 탁선미 외 역. 『젠더연구』. 서울: 나남출판, 2002.
-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 한동호·이금순·도경옥·홍제환·김수경. 『북한인권백서 2018』. 서울: 통일연구원, 2018.

<북한 자료>

- 교육위원회.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평양: 교육위원회, 2013.
- 길수미. 『누구나 아름다와질수 있다』. 평양: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7.
- 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 사전연구실. 『조선말 사전』. 평양: 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 사전연구실, 1962.
- 북한 사회안전부. 『주민등록사업참고서』. 1993. 재인용: 조영주. “북한의 ‘인민만들기’와 젠더 정치: 배급과 ‘성분-당원’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9권 2호, 2013.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_____. 『조선말대사전(중보판)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7.
- _____. 『조선말대사전(중보판) 4』.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 _____. 『조선문화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_____. 『현대조선말사전』.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968.
- _____. 『현대조선말사전(2판)』.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사전연구실. 『조선어
소사전』.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1956.

_____. 『조선말 사전』. 평
양: 과학원출판사, 1962.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17.

중앙통계국. 『201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
사』. 평양: 중앙통계국, 2015.

Chamberlayne, P. J. Bornat and T. Wengraf. *The Turn to
Biographical Methods in Social Science*. New York:
Routledge, 2000.

Education Commission DPRK. *Education For all national EFA
2015 review: DPR Korea*. S.I.: Education Commission,
2014.

2. 논문

강정원. “북한 민속문화의 체계와 구조-일생의례를 중심으로.” 북한민
속연구단 워크숍 자료집, 2019.5.3.

곽수진. “북한 여성의 출산 경험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4.

권금상. “북한 여성의 섹슈얼리티 연구: 국가권력과 여성주체 간의 동
학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김경희·강은애·손명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국가가부장제의 재
생산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55권 1호, 2016.

김미덕. “정치학과 젠더: 사회분석 범주로서 젠더에 대한 이해.” 『한국
정치학회보』. 제45권 2호, 2011.

김민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여성의 이혼.”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

- 학위논문, 2018.
- 김석향. “1990년 이후 북한의 소비생활에 나타나는 추세 현상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1호, 2012.
- 김영규. “북한 가족법상 공민의 지위와 그 변용.” 『법학논고』. 제51집, 2015.
- 김현아. “이동하는 북한 여성의 모성실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박영자. “북한의 젠더시스템과 여성 삶의 전략.” 『동북아연구』. 제16권, 2011.
- _____. “경제난 이후 북한 체제와 젠더의 구조 및 변화.” 『통일논총』. 제25권, 2007.
- _____. “선군시대 북한여성의 섹슈얼리티(Sexuality) 연구: 군사주의 국가권력의 성 정체성 구성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 _____. “북한의 남녀평등 정책의 형성과 굴절(1945~70): 북한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변화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43집 2호, 2004.
- 배은경. “젠더 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여성학』. 제32권 1호, 2016.
- _____. “사회 분석 범주로서의 ‘젠더’ 개념과 페미니스트 문화 연구: 개념사적 접근.” 『페미니즘 연구』. 제4권 1호, 2004.
- 사라 루딕. “어머니의 사고방식.” 배리 쏘온·매릴린 알롬 편. 권오주·김선영·노영주 옮김.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9.
- 서사가. “북한 여성 소비문화의 변화.”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송현진. “북한의 영웅정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안정은. “북한이탈여성의 건강권과 월경 경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석사학위논문, 2019.
- 양문수. “2000년대 북한의 반(反)시장화 정책: 실태와 평가.” 『현대북한연구』. 제15권 1호, 2012.
- 오태호. “북한 단편소설에 나타난 연애 담론 연구.” 『국제어문』. 제58집, 2013.
- 이승윤·황은주·김유휘. “북한 공식-비공식 노동시장의 형성과 여성.” 『비판사회정책』. 제48호, 2015.
- 이재경. “여성주의 인식론과 구술사.” 이재경·윤택림·이나영. 『여성주의 역사쓰기: 구술사 연구방법』 홍천: 아르케, 2012.
- 이지순. “기념일의 경험과 문학적 표상.” 『아시아문화연구』. 제47집, 2018.
- 이희영. “북한 일상생활 연구자료의 생성과 해석.” 박순성·홍민 역음.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 파주: 한울, 2010.
- _____.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제39집 3호, 2005.
- 임옥규. “북한 문학을 통해 본 김정은 체제에서의 국가와 여성-『조선문학』(2012~2013)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제13호, 2014.
- 전영선. “문화와 유행: 문명국 건설 행보와 욕망 확대.” 박영자 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8.
- 조영주. “북한의 시장화와 젠더정치.”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2호, 2014.
- _____. “북한의 ‘인민만들기’와 젠더정치: 배급과 ‘성분-당원’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9권 2호, 2013.
- _____. “북한 여성의 실천과 젠더 레짐의 동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2.
- 조운 W. 스콧 저. 배은경 역. “젠더와 정치에 대한 몇 가지 성찰.” 『여

- 성과 사회』. 제13호, 2001.
- 황의정·최대석. “북한의 여성관련 법제정을 통해 본 여성의 법적 지위의 변화 전망.”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2호, 2015.
- I. 슈테판. “젠더, 성, 이론.”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잉에 슈테판 공편. 탁선미 옮김. 『젠더 연구: 성평등을 위한 비판적 학문』. 파주: 나남출판, 2002. 재인용: 배은경, “사회 분석 범주로서의 ‘젠더’ 개념과 페미니스트 문화 연구: 개념사적 접근.” 『페미니즘 연구』. 제4권 1호, 2004.

3. 기타자료

『로동신문』.

『조선녀성』.

『NK조선』.

『Voice of America(VOA)』.

네이버 <<http://www.naver.com>>.

다음 사전 <<http://dic.daum.net>>.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http://www.unilaw.go.kr>>.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

UIS Statistics <<http://data.uis.unesco.org>>.

UN Women <<http://www.unwomen.org>>.

「가족법」

「녀성권리보장법」

「사회주의로동법」

「사회주의헌법」

「아동권리보장법」

예술영화<눈속에 핀 꽃>(DVD). 평양: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011.

예술영화<우리 집 이야기>(DVD). 평양: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016(평양: 목란비디오, 2017 발행)

『조선대백과사전』 DVD. 평양: 삼일포정보센터, 2001~2005.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2016.7.9., 2016.8.6., 2017.4.27., 2017.7.7., 2017.10.13., 2019.4.12., 2019.4.15., 2019.4.17., 2019.5.5., 2019.5.7., 2019.5.9., 2019.5.10., 2019.5.11., 2019.5.14., 2019.5.18., 2019.5.21., 2019.5.31., 2019.6.7., 2019.7.21., 2019.7.24., 2019.7.25., 2019.7.30., 2019.8.2., 2019.8.7., 2019.8.13., 2019.8.16., 2019.8.22., 통일연구원)

UN Doc. CEDAW/C/PRK/2-4, 2016. 재인용: 한동호·이금순·도경옥·홍제환·김수경. 『북한인권백서 2018』. 서울: 통일연구원, 2018.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2017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7-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7-03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7-04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서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외	8,500원
2017-05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민태은 외	9,500원
2017-06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태은 외	13,000원
2017-07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조한범 외	7,500원
2017-08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	홍 민 외	7,000원
2017-09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임강택	8,000원
201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정성윤 외	8,000원
2017-11	평양과 해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조정아, 최은영	9,500원
2017-12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임강택 외	12,000원
2017-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상기 외	11,000원
2017-14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구연 외	7,000원
2017-15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동호 외	7,500원
2017-1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20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자	13,000원
2017-18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홍제환	7,500원
2017-19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홍 민	6,000원
2017-2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정성윤	6,500원
2017-21-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예의 함의(1부)	전병근 외	9,500원
2017-21-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예의 함의(2부)	전병근 외	9,500원
2017-22-01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현승수 외	10,000원
2017-22-02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현승수 외	9,500원
2017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3,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2017-02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20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외
2017-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홍제환
2017-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외

〈Study Series〉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2018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8-01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8-02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이규창 외 14,000원
2018-03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성기영 외 10,500원
2018-04	국경협력의 가능성과 미래	이기태 외 9,000원
2018-05	북한과 주변국의 국경안보	이기태 외 8,000원
2018-06	중국 초국경 경제협력 연구: 통일 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사점	현상백 외 12,000원
2018-07	KINU 통일인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인식	이상신 외 11,000원
2018-08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전략	조한범 외 8,000원
2018-09	북한의 주민 이탈과 법적 대응	박영자 외 11,500원
2018-10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방식의 모색	임강택 외 9,500원
2018-11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김진하 외 9,500원
2018-12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홍제환 외 9,000원
2018-13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이우태 외 11,000원
2018-14	북한의 핵전략 분석	홍우택 외 6,500원
2018-15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도경옥 외 10,000원
2018-16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총괄보고서)	김상기 외 5,500원
2018-17	북핵 종합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촉진전략	정성윤 외 21,000원
2018-18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방안	이기태 외 12,000원
2018-19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홍 민 외 20,500원
2018-2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김상기 외 10,000원

2018-21	북한에서 국가-사회관계 양상 연구	한동호 외 14,000원
2018-2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박영자 외 13,500원
2018-23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오경섭 외 12,000원
2018-24	한반도 평화변영과 남북중 협력방안	정은이 외 9,500원
2018-25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신종호 8,500원
2018-26	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신종호 외 12,0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8-01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박영자 외
2018-02	2018년 미국 중간선거 평가와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18-03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서보혁 외
2018-04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나용우 외

〈Study Series〉

2018-01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Establishment for Peaceful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Hong, Min·Cho, Han-Bum·Park, Ihn-Hwi
2018-02	2017 Survey of Inter-Korean Integration	Park, Juhwa·Rhee, Minkyu·Cho, Won-Bin
2018-03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un Regime	Hong, Jea Hwan
2018-04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Policy	Chung, Sung-Yoon·Lee, Moo Chul·Lee, Soo-hyung
2018-05	Eight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y and Society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Park, Young-Ja et al.

2019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9-01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미국의 적대국 관계정상화 사례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이기태 외 8,000원
2019-02	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김갑식 외 17,500원
2019-03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도경욱, 인준형 8,500원
2019-0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이재영, 김주리 8,000원
2019-05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서보혁 외 12,000원
2019-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이재영 외 11,500원
2019-07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전더정치	조정아 외 11,000원
2019-08	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핵문제'와 '개혁·개방'의 조합을 중심으로	박영자 외 11,000원
2019-09	남북연합 연구: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무철 외 15,000원

2019-10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통일전략	신종호 외	18,000원
2019-11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홍석훈 외	9,000원
2019-12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이우태 외	9,000원
2019-13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나용우 외	10,000원
2019-14	북한 외교정책: 정책패턴과 북핵외교 사례분석	김진하 외	10,000원
2019-15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오경섭 외	9,500원
2019-16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김수경 외	7,500원
2019-17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14,500원
2019-18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의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 - 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9-19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 정책	이상신 외	24,000원
2019-20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총론: 평화·경제·화해 협력 구상	서보혁	10,000원
2019-21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서보혁 외	14,000원
2019-22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9-22-01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8,500원
2019-22-02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4,500원
2019-23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조정아 외	12,000원
2019-24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홍민	21,500원
2019-25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	정은이 외	14,000원
2019-26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19-27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	현승수 외	14,000원
2019-28	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교통 협력	최창호 외	10,000원
2019-29	주변국의 사이버 현황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채재병 외	8,500원
2019	제3세대 인권과 북한	인도협력연구실 편	16,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9-01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김상기 외
2019-02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이기태, 배정호
2019-03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김석진, 홍제환
2019-04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한국인의 주요 인접국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이상신 외

<Study Series>

2019-01	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 With a Focus on the Status of Infant Nutrition	Hong, Jea Hwan
---------	--	----------------

- 2019-02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Do, Kyung-ok · Baek, Sangme
- 2019-03 South Koreans' Perception on Peace: With a Focus on Peace, War,
the Way Peace is Realized, and the Attitude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Kim, Kap-Sik · Park, Juhwa

KINU Insight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 민
20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곤
2017-0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박영자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1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2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정은미
2019-03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김주리
2019-04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이지순
2019-05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북한에 주는 함의	이재영
2019-06	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서보혁
2019-07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이해	조한범
2019-08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김갑식 외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도경옥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옥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	도경옥 외 24,500원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한동호 외 24,000원
북한인권백서 2019	김수경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김수경 외 24,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통일연구원
201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7~2018	통일연구원
2018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19	2020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2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1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2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2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1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2 (2019)	10,000원

기타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7	북한 내 이동의 자유	한동호 외
2017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7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2018	북한의 건강권	이금순 외
2018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Lee, Keumsoon et al.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김진하 외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통일연구원

